2002 災難管理計劃

안양시



시립평촌도서관
RF008425

참
350.8
안69ㅈ
2002

2002災難管理計劃



安 養 市

목 차

Ⅰ. '2002.재난관리 여건과 시책방향 ——— 5

1. '2001재난관리업무 추진 성과 ——— 7
2. '2002재난관리 여건과 시책방향 ——— 10

Ⅱ. 기본방침 ——— 11

1. 목 적 ——— 13
2. 추진방침 ——— 13
3. 계획의 대상 및 범위 ——— 14
4. 민방위계획과 방재계획과의 관계 ——— 14
5. 안양시 재난관리 상황보고 - 전파체계도 ——— 16

Ⅲ. 재난예방 시책 추진 ——— 17

1. 재난관리체계 확립 ——— 19
2.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체제 구축 ——— 27
3.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관리 ——— 42
4. 안전점검 ——— 71
5.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 75
6. 재난관리체제 구축 ——— 80

Ⅳ. 재난의 수습·복구대책 ——— 83

1. 재난발생 보고 및 출동태세 확립 ——— 85
2. 긴급구조대책 ——— 88
3.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 99
4. 재난의 항구복구대책 ——— 102
5. 재난사고 수습사례 ——— 108

Ⅴ. 분야별 재난대비대책 추진 ——— 111

1. 화재사고 ——— 113
2. 유류사고 ——— 120
3. 가스사고 ——— 124
4. 교통사고 ——— 133
5.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사고 ——— 141
6. 도로, 교량사고 ——— 147
7. 상수도사고 ——— 151
8. 하수도사고 ——— 156
9. 산불사고 ——— 159
10. 식품·위생사고 ——— 162
11. 수질오염사고 ——— 166
12. 전염병 사고 ——— 175
13. 유기시설 안전사고 ——— 185
14. 경기장사고 ——— 188
15. 묘지붕괴사고 ——— 192
16. 항공기사고 ——— 196
17. 공동구사고 ——— 200

Ⅵ. 유관기관 재난관리계획 ——— 207

1. 기관별 임무 ——— 209
2. 경찰서(안양,과천) ——— 213
3. 안양교육청 ——— 227
4. 안양소방서 ——— 239
5. 육군제1580부대 ——— 271
6.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 275
7.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 281
8. 한국통신 안양전화국 ——— 291
9.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 313

Ⅶ. 재정투자계획 ——— 329

1. 기본방침 ——— 331
2. '2002년도 사업재원 ——— 331

Ⅷ. 재난관리 업무 평가 ——— 333

1. 목 적 ——— 335
2. 추진방침 ——— 335
3. 주요평가 항목 ——— 335

4. 추진계획 ——— 336

Ⅸ. 행정사항 ——— 337

2002년도 재난대비 동원계획

1. 관련근거 ——— 346
2. 방 침 ——— 347
3. 세부동원계획 ——— 347
4. 재난관련 부서별 임무 및 책임 ——— 353
5. 재난수습 단계별 조치내용 ——— 361
6. 재난대비 동원자원 현황 ——— 363
Ⅰ. 인력자원 현황 ——— 365
Ⅱ. 장비 현황 ——— 369
Ⅲ. 수용시설 현황 ——— 372
Ⅳ. 의료시설 현황 ——— 372
Ⅴ. 물자 현황 ——— 373
7. 주요 동원자원 현황 ——— 375
Ⅰ. 인명구조대 ——— 377
Ⅱ. 기능인력 ——— 377
Ⅲ. 헬기 현황 ——— 378
Ⅳ. 차량구난 견인업소 현황 ——— 378
Ⅴ. 중장비 현황 ——— 379
Ⅵ. 의료기관별 세부현황 ——— 382
Ⅶ. 수용시설별 세부현황 ——— 385
8.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동원대비 체제 ——— 387
▣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 389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 390
▣ (주)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 ——— 392
▣ 안양소방서 ——— 397
9.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 ——— 403
10. 주요 재난사고 수습사례 ——— 427
11. 재난유형별 대응 가상시나리오 ——— 447
12. 장비지원 동의서 및 단가계약 ——— 457
13. 부 록 ——— 471
가. 관내 각종 사고발생현황 및 수습결과 ——— 473
나. 재난유형별 상황전파 체계도 ——— 479
다.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 480
라. 유관기관 현황 ——— 481

Ⅰ. 2002災難管理 與件과 施策方向

1. '2001災難管理 業務推進 成果

2. '2002災難管理 與件과 施策方向

여 백

Ⅰ. 2002災難管理 與件과 施策方向

1. '2001.災難管理業務 推進 成果와 敎訓

가. 재난관리체제 구축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4시간 상황관리 체제 유지) - 1일6명(주간2, 야간4명)

○ 비상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11개기관

○ 소방서 119상황실 직통전화 설치운영 (2780) : '98. 7월~

○ 재난대비 각종 훈련 연습실시

- 긴급구조 훈련
  - '2001. 5.30 : 조선일보사옥
  - '2001. 10. 26 : 국토연구원

나. 재난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대책 강구

○ 월·계절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실시 : 9회/2,806개소

○ 재난예방을 위한 일일교사제 운영 : 55회 55개소 32,002명

※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20개교,유치원 2개소

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

○ 법적근거 : 재난관리법 제56조

○ 제정일자 : 98. 9. 29

○ 기금의 용도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안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정비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안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 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이주비 융자(2천만원 이하)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못하는 경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 융자(2천만원 이하)
-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③+④)	기 금 내 역			④2002년도 확 보 액	비 고
		①확보	②사용	③잔액		
재난기금	977,970	777,476	0	777,476	200,494	

라. 재난위험시설 해소

○ 비산동 주택축대 철거 및 재축조

-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489-31,32
- 규 모 : L=9m H=3.5m
- 상 태 : 배수불량으로 토압증가 및 주택화장실 바닥 침하
- 지정해제 : 2001. 7. 축대 철거 및 재축조로 2001.11.1 지정해제하고 D급에서 → B급으로 중점관리 시설로 조정관리

○ 양지4교 재가설

-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195-42
- 규　　모 : L=23.85m　B=25m
- 상　　태 : 중성화 현상 및 미세 망상균열
- 재가설공사 : 2000. 12. 21 ~ 2002. 3. 15 재가설공사

2. 2002 災難管理 與件과 施策方向

가. 2002 재난관리 여건

○ 국가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등 재난관리분야 투자위축 예상

○ 성수대교 붕괴사고('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 부천 L.P.G 가스 충전소 폭발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99년), 화성씨랜드 화재와 성남 유흥주점 화재사건(2000년), 광주 입시학원 화재사건(2001년)등 끊임없이 재난사고는 발생되고 있어서 2002년에도 주변 인근 시·군의 사례를 교훈삼아 재난예방과 안전의식의 경각심 제고

○ 90년대 평촌신도시 건설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의 급속건설, 대형건물 증가, 교통량의 증가등으로 재난의 대형화 추세

○ 사회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재난유형의 다양화와 재난대비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

나. 2002재난관리시책 방향

○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구축,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등으로 재난관리 안정의 해가 되도록 행정력 집중

○ 사후수습보다는 사고예방이 되도록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예방사업 및 경제적인 재난관리 사업추진

○ 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립,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등으로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처

○ 안전문화의식의 확산으로 안전문화의 정착

Ⅱ. 基 本 方 針

1. 目 的

2. 推進方針

3. 計劃의 對象 및 範圍

4. 民防衛計劃과 防災計劃과의 關係

여 백

Ⅱ. 基本方針

1. 目 的

○ 가스폭발, 화재, 건축물 붕괴 등 인위적인 재난에 중점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행정태세를 강화하고

○ 사태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推進方針

○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체계를 보강하여 위기관리 능력제고

- 재난의 예방·예찰활동 강화
- 사태수습에 따른 인적·물적자원 관리
- 유관기관과의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 협조
- 사태발생시 신속한 동원 및 지원체제 유지

○ 재난상황의 신속한 동원 및 지원체제 유지

- 재난신고 접수 즉시 응급조치 및 대응방안 강구
- 유관기관간 긴밀한 지원·협조체제 유지

○ 관내 시설물 및 건축물 예방관리 강화

- 관계기관 소관시설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위험(우려)시설물 점검 실시

○ 지역주민 안전 재난의식 함양

- 민방위대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지방지, 우리안양, 유선방송 등)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재난취약시설물 주변의 대피 및 응급복구 훈련 실시

3. 計劃의 對象 및 範圍

○ 관련실·과·소 소관 재난위험요소

- 개별법상 허가 관리하는 시설, 건축물
  - 재난예방 및 관리책임 추진

○ 관련 재난 책임기관 소관 재난위험요소

- 유관기관에서 허가 관리하는 시설, 건축물 등
  - 재난책임기관, 안전관리추진 협조 또는 이행 촉구와 사전정보 관리 계획 수립

<재난관리법의 적용대상>

○ 재난관리법은 대규모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기타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고에 적용됨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대처하고 있음

○ 재난관리법은 인위재난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구조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난에 적용된다. 즉, 태풍, 폭풍, 호우, 폭설, 해일, 지진 기타 이상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인위재난과 더불어 긴급구조구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제33조)

4. 民防衛計劃 및 防災計劃과의 關係

○ 민방위계획은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방재·구조·복구·군사작전상 노력 지원을 포함하는 재난관련 기본계획으로서 각종 인위재난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방·수습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바, 재난관리계획은 민방위계획중 인위재난분야의 계획이며,

○ 방재계획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에 관한 계획임.

구분	재난관리계획	민방위계획	방재계획
근 거	재난관리법 제3조	민방위기본법 제10, 1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4~21호
대 상	대형화재, 붕괴, 폭발등 인위재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민방위 사태	태풍, 홍수, 가뭄, 지진등 자연재해
계획의 구 조	○국가 재난관리계획 ○지역 재난관리계획 - 시도 계획 - 시군구 계획	○민방위 기본계획 ○민방위 집행계획 - 시도 계획 - 시군구 계획	○방재기본계획 ○방재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지역방재계획
계획의 내 용	○'2002국가재난관리 여건과 전망 ○기본방침 ○재난예방시책 추진 ○재난의 수습복구 시책추진 ○분야별 재난대응대책 추진 ○유관기관 재난관리계획 ○재난관리업무 평가 ○기타	○민방위운영계획(행자부) ○화생방방호계획(행자부) ○재난관리대책(행자부) ○자연재해대책(행자부) ○소방안전대책(행자부) ○시설물안전관리대책 (건설교통부) ○대형교통사고 방지대책 (건설교통부) ○전염병대책(보건복지부) ○산업재해대책(외교통상부) ○수질(식수)오염대책(환경부) ○방사능 재해대책 (과학기술처) ○산림재해대책(산림청) ○해양오염대책(해양수산부) ○수난구호대책(해양수산부)	○2001방재계획 평가 ○'2002방재집행계획 - 추진방향 - 재해사전대비계획 수립 - 재해상황관리대책 수립 - 신속한 재해복구 - 방재과학기술 및 제도연구

5. 安養市 災難管理 狀況報告 · 傳播 체계도

건 축 물 붕 괴 사 고
- 건축사 협회 : 247-6129
- 소방서 : 387-0045
- 건설협회 : 253-4551

도 로 시 설 물 사 고
- 지방국토관리청 : 02-777-8341
- 도로공사지방본부 : 281-3461

대형교통사고
- 안양경찰서 : 388-1670
- 과천경찰서 : 02-504-7112

→

행정자치부 종합 상황실
행 정) 2691~5
FAX 2699
일 반) 731-2691~5

↑

경기도 종합 상황실
행 정) 3660, 3661
FAX 3668, 3669
일 반) 249-3660, 3661

↑

안양시 종합상황실
행 정) 2225, 2162, 2167 2458
FAX) 주)2854, 야)2226, 2854
일 반) 389-2225, 2162, 2458
FAX) 주)389-2226, 2854

↑

구 상 황 실
행 정) 538(동안, 만안)
일 반) - 만안 389-3538,9
- 동안 389-4538,9
FAX - 만안 389-3430
- 동안 389-4430

←

화 재 산 불 사 고
- 소방서 : 387-0045
- 군부대 : 459-0113
- 경찰서 - 안양 : 388-1670
  - 과천 : 02-504-7112
- 지방산림관리청(경기) : 294-1091
- 공군항공부대 : 220-1114

가스 · 석유사고
-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 : 254-0651
- 삼천리도시가스 : 454-3002
- 소 방 서 : 387-0045

전기 · 통신시설 사고
- 한전 안양지점 : 450-2203
- 전기 안전공사 안양지점 : 474-1821~4
- 한국통신 안양전화국 : 382-0007(당직실)
  383-0060(선로기술과)
  384-0060(선로기술과)

<공 통>

- 교육청 : 380-7001
- 한국산업안전공단지부 234-8116
- 안양병원 : 469-0151
- 안양모범운전자회 : 442-6273
- 안양전화국 : 449 - 0007
- 한강홍수통제소 : 02-596-4053
- 수원기상대 : 292-0365
- 메트로병원 : 467 - 9998,9
- 개인택시안양지부 : 460-1231
- 육군1580부대 : 468-5181, 5468
- 폭발물처리반 : 441-3623
- 건설협회 경기지사 246-9461
- 한림대병원 : 380-1500
- 적 십 자 : 238-1140

Ⅲ. 災難豫防施策 推進

1. 災難管理體系 確立
2. 災難對備 綜合狀況管理體制 構築
3. 安全點檢 및 災難危險施設 管理
4. 安全點檢
5. 災難管理基金의 積立 運用
6. 災難管理體制 構築

여 백

Ⅲ. 災難豫防 施策推進

1. 災難管理體系 確立

가. 안양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목적

-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조정 및 재난예방과 원활한 재난수습 체제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구성근거

- 재난관리법 제9조 제1항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구성인원(별 첨)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 시장(위원장) 및 위원 12명
- 실무위원회 : 부시장(위원장) 및 위원 16명

○ 기 능

- 안양지역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지역내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기타 재난관리법에 정하는 지역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행
- 당해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 및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 운영계획

- 안전대책위원회 : 연2회 개최(상·하반기)
  - 재난관리계획의 심의결정 및 기관별 재난관리업무 협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
  - 기타 대형 재난발생시 수시 개최
-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 연2회 개최(상·하반기)
  - 기관별 재난관리계획 수정·보완
  - 안전대책위원회 부의사항 실무협의
  - 기관별 협조사항 협의등 기관·단체별 공조체계 구축
  - 기타 대형 재난발생시 수시 개최

※ 안전대책운영규정(안양시 훈령 제320호 : '97. 8. 7)

安養市 地域安全對策委員會

직	대 책 위 원 회			비 고
	소 속	직 위	전 화 번 호	
위 원 장	안양시	시 장	행)2002,389-2002	
위 원	안양시	부 시 장	행)2010,389-2010	
위 원	안양경찰서	경찰서장	388-1670	
위 원	과천경찰서	경찰서장	02)504-7112	
위 원	안양시 교육청	교 육 장	380-7001	
위 원	안양소방서	소방서장	384-0111	
위 원	167연대 3대대	대 대 장	442-1290	
위 원	육군 1580부대	부 대 장	443-4249	
위 원	안양전화국	전화국장	449-0007	
위 원	한국전력안양지점	지 점 장	456-4111	
위 원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	점검부장	254-0019	
위 원	한국전기안전공사안양지점	지 점 장	474-1821	
위 원	안양시	건설사업소장	행)2033,389-2033	
간 사	안양시	하수과장	행)2450,389-2450	

安養市 地域安全對策實務委員會

직	실 무 위 원 회			비 고
	소 속	직 위	전 화 번 호	
위 원 장	안양시	부 시 장	행) 2010, 389-2010	
위 원	안양시 총무국	총 무 국 장	행) 2010, 389-2023	
위 원	안양시 복지환경국	국 장	행) 2027, 389-2027	
위 원	안양시 도시교통국	국 장	행) 2031, 389-2031	
위 원	안양시 건설사업소장	소 장	행) 2033, 389-2033	
위 원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장	소 장	행) 2035, 389-2035	
위 원	안양교육청 재무과	재 무 과 장	380-7076	
위 원	안양경찰서 경비과	경 비 과 장	388-1523	
위 원	과천경찰서 경비과	경 비 과 장	02) 504-7122	
위 원	안양소방서 방호과	방 호 과 장	387-0045	
위 원	한전안양지점 배전운영과	운 영 과 장	450-2214	
위 원	안양전화국 소통관리과	소통관리과장	442-0800	
위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점 검 과 장	254-0019	
위 원	한국전기안전공사안양지점	기 술 과 장	474-1821	
위 원	167연대 3대대 군수장교	군 수 장 교	459-0113	
위 원	1580부대	군수보좌관	468-5468	
위 원	안양시 하수과	하 수 과 장	389-2450	
간 사	안양시 재난관리	재난관리담당	389-2167	

나. 안양시 사고대책본부 구성

○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43조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사고관련 유관기관장

○ 구　　성 : 5개 대책반, 11개 실무반

○ 구성일자 : '97. 9. 6(안양시 훈령 301호)

○ 기　　능

- 당해 지역 재난의 수습에 관한 업무의 총괄
-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의 요청
-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 파견 요청
- 기타 재난의 예방·수습에 관한 협의·조정

○ 본부장의 권한(법 제44조)

- 관내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 협조 요청
-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

○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유형별 사고〉

① 도로 및 도로시설(교량, 터널, 지하도, 육교 등의 대형붕괴·폭발사고)

② 대형화재사고　③ 대형 교통사고　④ 대형 산불사고

⑤ 대형 화생방사고　⑥ 대형 건축물 붕괴사고　⑦ 대형 환경오염사고

⑧ 기타 복합적 요인에 대한 대형사고등

○ 안양시 사고대책본부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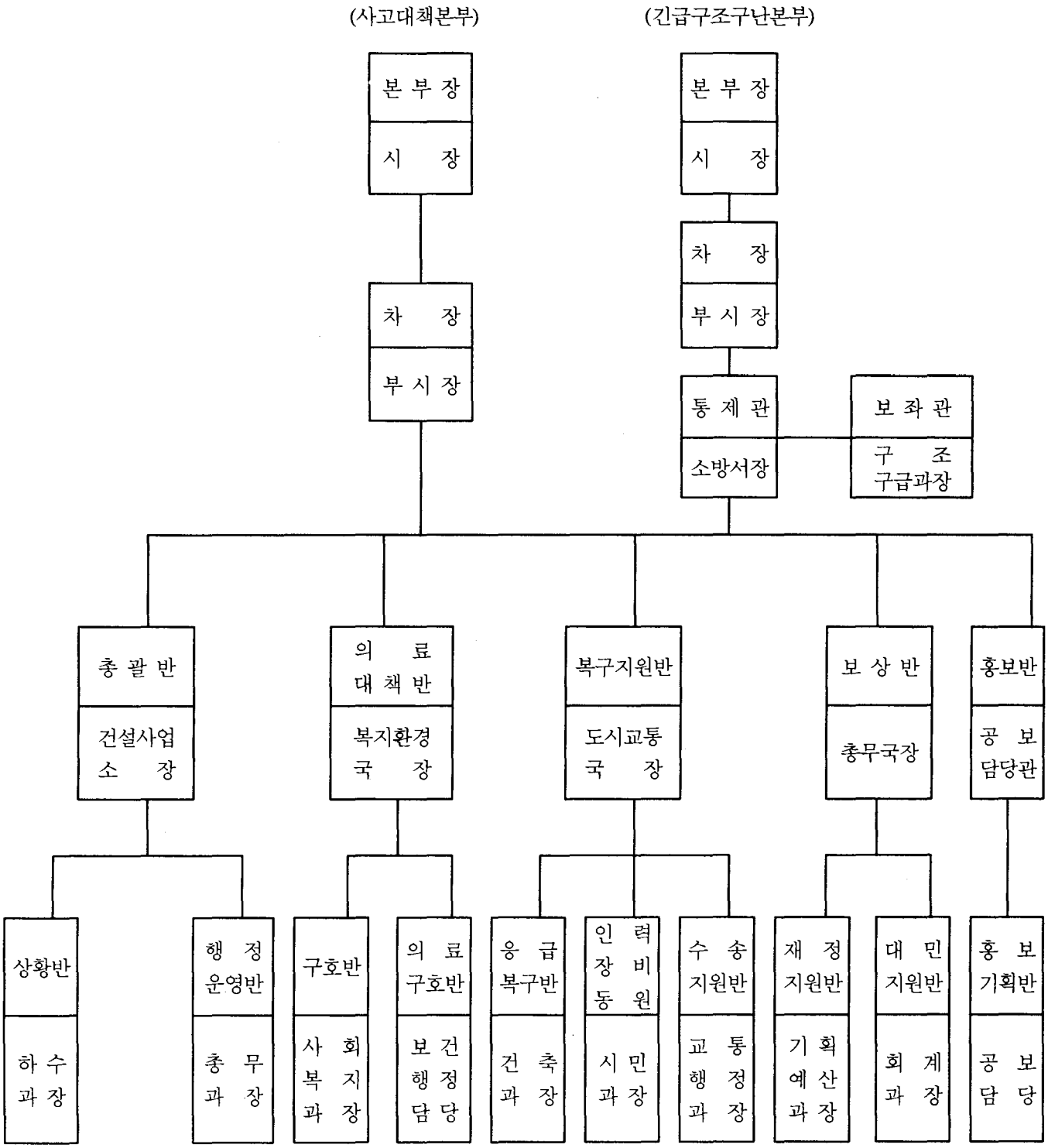

○ 지역사고대책본부 반별 분장사무

구 분		실무반장	분 장 사 무
대책반별	실무대책반		
총괄반 (건설사업소장)	상 황 반	하수과장	1. 대책본부의 운영관리 총괄 2. 현지대책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3. 재난에 관한 정보상황 전파 4. 사고발생, 진행, 결과등 각종상황 관리 5.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6. 주요인사 대책본부 방문시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대책반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행정운영반	총무과장	1. 초동상황보고 및 전파 2. 민심수습등 지역안전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인력 및 주민동원에 관한 사항 5. 외부기관·단체인사 방문시 의전에 관한 사항 6. 대책본부 직원의 복무·후생에 관한 사항
의료대책반 (복지환경국장)	구 호 반	사회복지과장	1. 수용시설 제공 2. 장례에 관한 사항 3. 의연금품 관리 4. 이재민 수용 및 구호상황의 파악과 조정통제 5. 구호물자의 집행 6. 의료대책반내 다른 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구 분		실무반장	분 장 사 무
대책반별	실무대책반		
	의료구호반	보건행정담당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2. 의료시설 지정 및 조정 3. 급수 및 방영대책 4.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복구지원반 (도시교통국장)	응급복구반	건 축 과 장	1. 응급처치에 관한 협조요청 및 조치 지시 2.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 3. 복구지원반내 다른 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력·장비 동 원 반	시 민 과 장	1.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인력동원 조정 2. 장비동원 3. 응급복구용 장비의 지원 및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수송지원반	교통행정과장	1. 복구수송 지원계획 수립 2. 복구 인력·장비 수송차량의 확보 및 지원
보 상 반 (총묵국장)	재정지원반	기획예산과장	1. 예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2. 운용예산 확보 3. 예산지원 및 결산 4. 보상반내 다른 반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대민지원반	회 계 과 장	1. 피해보상 협의조정 2. 사고수습에 필요한 회계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공보담당관)	홍보기획반	공 보 담 당	1. 사고발생 수습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2. 각종 지원활동에 대한 주민계도 3. 기타 언론보도에 관한사항

○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일련번호	재난사고유형			수습주무부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화재	화재	주택, 집단촌, 시장, 빌딩, 공장	소방서
		산불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녹지공원사업소
2	붕괴사고	대형건축물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도시교통국
		도로시설물	도로, 교량, 구조물등	건설사업소
		광산사고	매몰등	재정경제국
3	폭발사고	가스·유류사고	가스류, 유류	재정경제국
		화공약품	화공약품류 등 위험물질	소방서
4	교통사고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도시교통국
		열차	철도, 지하철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항공기	비행기, 헬기	서울지방항공청
5	화생방사고	원전사고	방사능유출, 오염	건설사업소
		유독가스사고	유독가스유출, 중독	건설사업소
6	체육시설 및 유기장 사고	놀이기구	회전기구, 미끄럼기구, 기타유기시설	복지환경국
7	환경오염	상수도오염	유류, 유독물등	상수도사업소
		토양오염	유류, 유독물등	복지환경국
8	전기사고	전기	대형정전·감전, 변압기폭발	한전안양지점
9	기타사고	가스사고	연료가스 누출	재정경제국
		상수도사고	대형상수도관 파열(간선도로)	상수도사업소
		공사장사고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소관국
		기타사고	기타사고	소관국

2. 災難對備 綜合狀況管理體制 構築

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기본방향

● 재난상황의 24시간 종합상황관리체제 구축

- 행자부 ↔ 도 ↔ 시 ↔ 구 연계 운영
- 재난상황관리 보고·전파체계 확립
- 상황관리 전담요원 배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 재난단계별 상황근무체제 운영

● 유관기관·단체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근무체계

● 상황실 운영 : 2002. 1. 1 ~ 2002. 12. 31

● 근 무 지 : 종합상황실

● 근 무 반 : 2개반(전·후반 2교대 근무)

- 전반 : 09:00 ~ 18:00(동절기 09:00 ~ 17:00)
- 후반 : 18:00 ~ 익일09:00(동절기 17:00 ~ 익일09:00)

● 근무인원 : 1일 6명

나. 재난상황 24시간 유지관리 및 사전대비 태세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히 상황 파악, 접수, 전파, 보고 관리로 재난 누수방지

○ 인위재난 주무부서로서 초동단계 대처 철저

○ 재난 수습·복구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 보고 및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토록 조치

○ 재난시설 복구·피해에 대한 보상협의 등 지원

다. 상황관리체계

1) 기본방향

○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제 구축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연중무휴 근무
- 구, 도, 유관기관간 보고·연락·전파체계 유지

○ 재난단계별 상황근무 체제 운영

- 상황근무는 평시 및 비상시로 구분 실시
- 평시는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상황 종합관리
- 비상시는 재난규모(1, 2, 3급)에 따라 별도 상황근무반 운영

○ 대형재난시는『종합상황실』과『현장상황반』설치 운영

- 종합상황실은
  - 재난전담 종합상황실 주·야간 교대 근무
- 현장상황반은 재난현장에 파견, 상황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관련 실국 및 구청 직원으로 근무조 편성

〈비상근무대상 재난의 구분〉

○ 1급 재난 : 관련실과 및 긴급구조본부 직원 비상근무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야 할 정도의 대형재난
- 중앙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 2급 재난 : 관련실과 직원 비상근무

-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수습·복구해야할 재난
-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 3급 재난 : 관련실과 직원 비상근무

- 중형규모의 재난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재난

2) 운영계획

○ 평시 상황관리

- ● 근무인원 : 1일 6명
- ● 근 무 지 : 재난종합상황실
- ● 근무시간 : 24시간 (주 · 야간 교대 근무)
- ● 상황근무자 임무
  - 각종 재난사고 상황의 접수 · 확인
  - 재난유형 · 규모등 판단, 계통보고
  - 유관기관 통보 · 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
  - 재난관련 정보파악 확인(경찰서,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언론보도 현황)
  - 모든 재난상황 총괄 정리보고 및 전파
- ● 안전관련 정보수집 및 조치
  - 안전 · 재난관련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 전파
  - 관계부서별 정보내용에 따른 안전조치 신속이행
- ● 상황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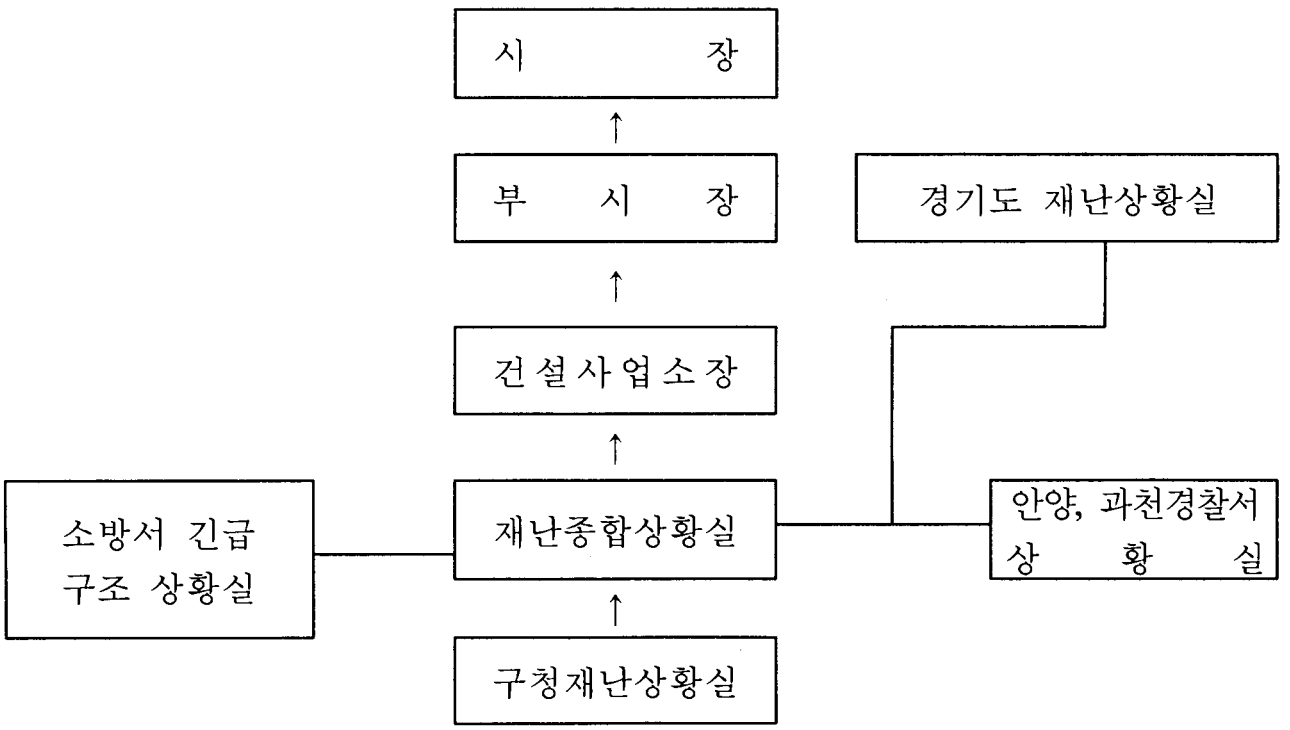

○ 비상시 상황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시기 : 1, 2급 재난발생시
- 운영체제 : 상황실 근무인원 - 6명
- 근 무 반 : 재난규모별 근무
- 근 무 지 : 종합상황실
- 근무시간 : 전·후반, 2교대 근무
  - 전 반 : 09:00~18:00, 후반 18:00~익일 09:00
- 임 무
  - 재난의 발생·진행·수습 과정 등의 상황을 종합관리
  - 구청, 도 상황실, 관련기관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관계부서 등에 대한 상황전파 및 수습·복구 지원대책 등을 협의·조정·추진

  ※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하는 대규모 재난발생 등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
- 상황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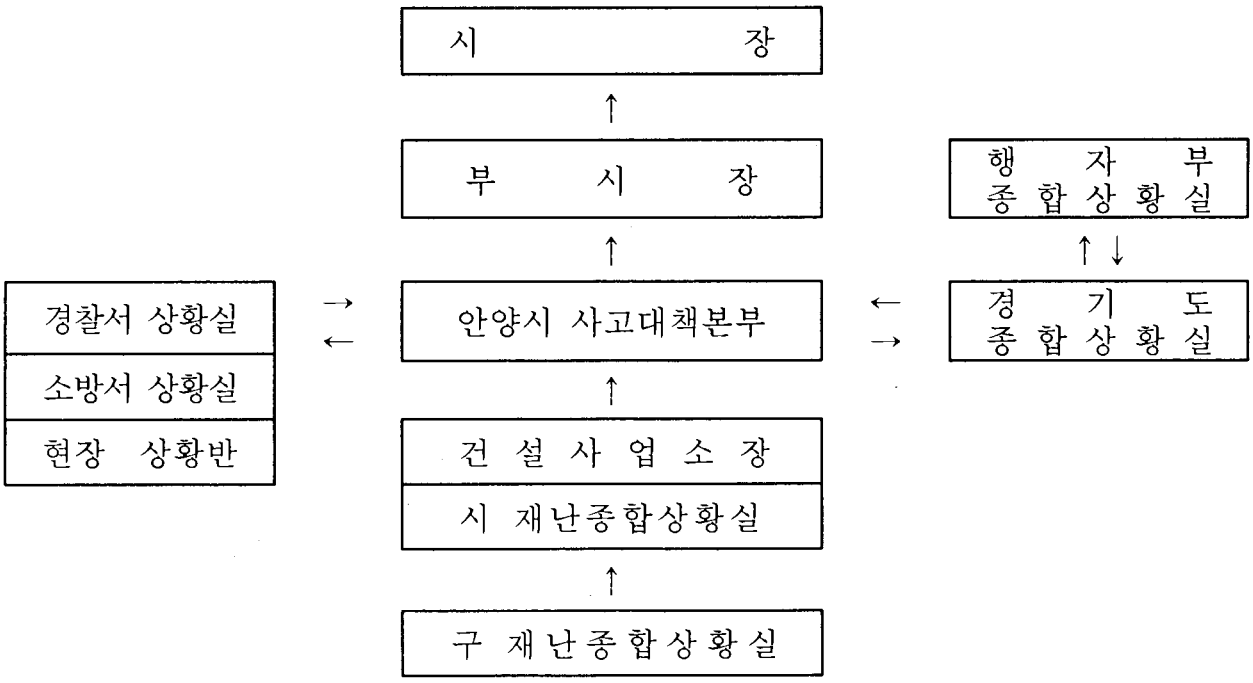

현장상황반 운영

- 운영시기 : 1·2급 재난발생시
- 운영체제 : 관련국에서 운영
- 근 무 지 : 재난발생 현장
- 근무시간 : 8~12시간씩 교대근무(1일 2~3교대)
- 임　　무
  - 재난현장에서 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등과 긴밀히 협조 사고수습 및 복구지원업무 수행
  - 사고수습상황 등을 종합상황실에서 수시 연락, 필요한 조치 강구
- 보고체계
  - 현장 → 종합상황실 → 건설사업소장 → 부시장 → 시장

〈상황반 편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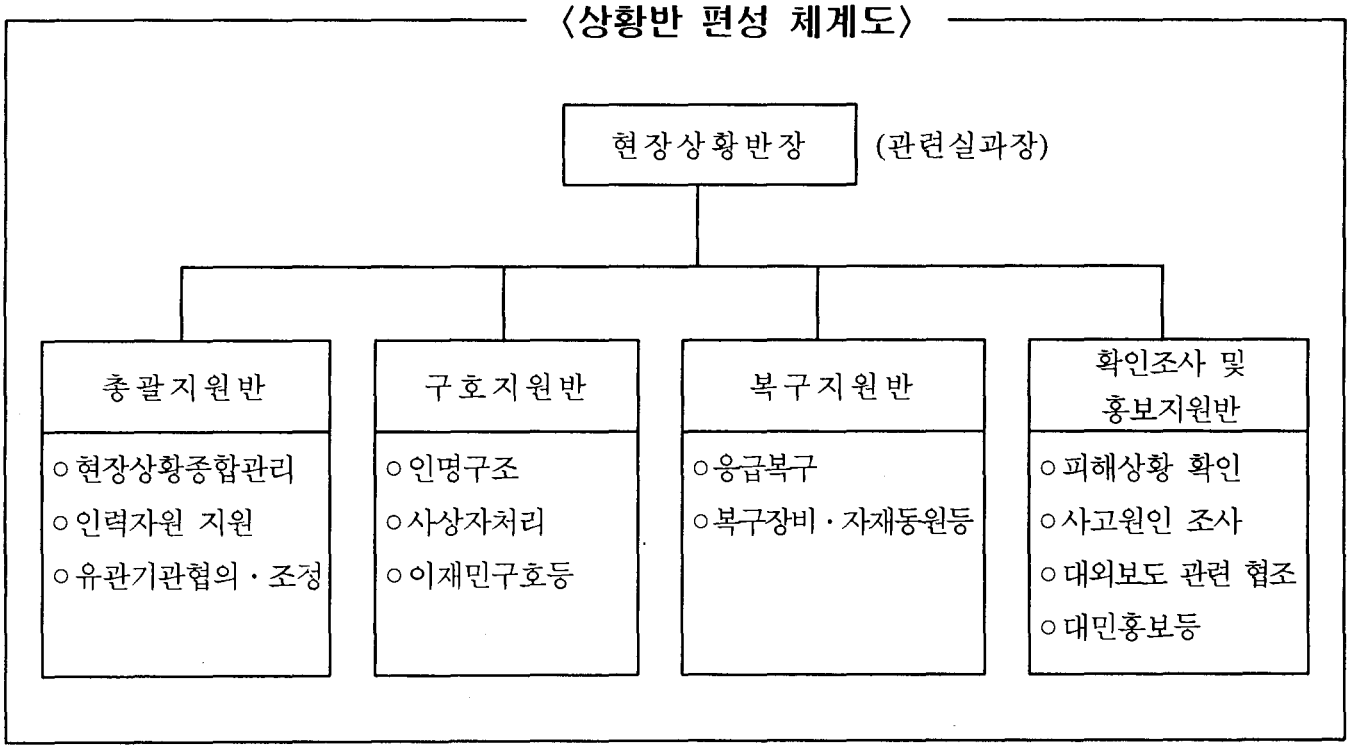

3) 비상근무실시

○ 비상근무 결정 보고체계

- 평시 종합상황실 근무자→하수과장→건설사업소장→부시장→시장

○ 비상소집 연락체계

- (근무유형 결정후) 종합상황실 근무자→각반장→반원

※ 하수과 (종합상황실 및 소방본부 산하에 비상연락망 비치)

○ 수송대책

- 현장상황반 등의 현지단체 수송은 재정과 차량배치 협조
- 긴급시는 개별적으로 현장에 집결토록 연락조치

○ 급식대책

-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하수과 소관예산에서 지원
- 현장상황반은 기획예산과 협의·조치

4) 비상근무자 편성 및 임무숙지

○ 재난규모별 비상근무반 운영체제에 따라 근무자명단을 편성 관리

○ 인사이동등 직원 근무지 변동시마다 정비, 유사시 소집·근무에 차질 없도록 사전 대비

○ 반별 기능 및 임무등을 해당부서에 통보, 전직원 공람 숙지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대처 계획】

〈대형사고 유형〉

① 도로 및 도로상의 교량·지하도·육교 등의 대형사고(도로과)

② 대형 화재사고(소방서)

③ 기타 복합적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나 부서간에 관련업무소관이 불분명한 대형사고등(하수과)

상황의 흐름도

①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 ② 긴급구조구난 및 응급조치 ⇒ ③ 사고대책본부설치

⇒ ④ 수습복구활동 ⇒ ⑤ 보상협상등 최종마무리

단계별 처리계획

1)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단계

○ 상황접수 : 종합상황실, 소방서 긴급구조구난본부, 경찰서 상황실 등

○ 보고 및 전파

- 자체보고 : 상황실 → 건설사업소장 → 부시장 → 시장
- 유관기관 : 상황실 → 유관기관·단체등, 유관부처등

2) 긴급구조구난 및 응급조치 단계

【긴급구조구난 활동】

○ 총　　괄 : 안양시 긴급구조본부(본부장 : 시장)

○ 활동내용

- 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 조치
- 필요시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등 지원요청

※ 현장지휘 - 구조구난본부 통제관(소방서장)

- 긴급구조기관 및 자원봉사자 임무부여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 현장 접근통제, 교통정리등

〈긴급구조구난기관(법제2조 6호 및 령 제3조)〉

○ 중앙119구조대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대한적십자사
○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 해양경찰청 및 경찰서
○ 군의 탐색구조부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 행자부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긴급구조 인력·장비 갖춘 기관)

【응급조치 활동】

○ 조치권자 : 시장

○ 조치내용

- 민방위대원의 동원 또는 준비명령 하달
- 대피명령 및 경계구역 설정
- 응원요청(인근 시·군) 및 소요경비 부담
- 응급부담(인근거주자 응급조치 종사, 토지·가옥 사용)등

3) 사고대책본부 설치 단계

○ 설치근거 : 재난관리법 제43조

○ 설치시기 : 대형재난 발생시(화재는 소방서에서 전담)

○ 조직체계: 사고대책본부장(시장), 대책위원회(관련실국장), 상황실 및 각 대책반 편성

【대책위원회】

- 운 영 :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이 소집
- 기 능 : 복구 및 피해보상 대책, 재난예방대책등 협의

【대책본부상황실】

- 설치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회의실

  ※ 재난상황, 시기 등에 따라 결정 운영
- 실무담당반 설치 : 총괄담당등 기능별 5개 대책반11개 실무반
- 반 편 성 : 관련실과 및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
- 임 무 : 당해 재난수습·복구업무의 총괄 및 조정 지역사고대책본부 지도·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현장상황반】

- 운영체제 : 현장상황반장(관련실국장)
- 근 무 지 : 재난발생 현장 또는 인근지역
- 임 무 : 재난현장에서 사고수습 및 복구업무 지원 사고 수습상황 등을 대책본부 상황실에 수시 보고

※『비상시 상황관리계획』에 의한 운영체계와 동일

4) 수습 · 복구 단계

〈 대 응 방 향 〉

○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안양 지역사고대책본부 책임하에 추진
○ 도 또는 중앙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 사고대책본부에 지원 요청
○ 수시 대책위원회 소집, 수습대책 및 관련부서 협조 방안 협의
○ 대책본부상황실과 현장상황반간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적시 적절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지원

○ 이재민 수용 및 사상자 수습대책
- 기존 수용시설 활용 및 임시수용시설 확보(학교, 교회, 공공기관등)
- 응급구호용품 긴급활용 및 급식조치, 방역소독(적십자사, 부녀회, 자원봉사자, 보건소)
- 사상자 병원 분산수용, 신원파악, 유족 및 부상자 관리등
- 사고유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상자 보상

○ 현장주변등 질서 유지
- 사고현장, 후송병원, 주요통행로 주변 원활한 교통로 확보
- 불요불급한 인원에 의한 인명구조 · 긴급복구 지연사태 예방

○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 통신 · 상하수도 · 전기 · 가스시설등 우선 복구
-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편성, 사고원인 · 피해내용등 파악
- 피해조사 완료후 항구 복구대책 추진

5) 보상협의등 마무리 단계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 지원 · 협조
- 합동분향소 설치, 영안실 확보, 안내공무원 배치, 사망자 명단 파악 게시
- 장례비 지급 · 장지, 화장장 알선

○ 피해자 대표단 구성 및 보상협의 주선 · 중재

6) 안전관련정보의 수집체계 확립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예방 및 발생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예상되는 재난사고의 예방 및 수습에 교훈·정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정보의 관리

○ 관리대상

- 사건·사고는 초동단계 대응방법에 따라 규모가 확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되거나 인지한 제반 사건.사고 특히, 전치 4주이상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거나 1백만원이상의 재산손해가 있는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 관련기구, 인사, 예산, 행사에 관한 사항
- 재난·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조치사항

○ 재난관리 정보원

- 재난관리 상황일지
- 재난구조, 구호, 복구등 수습에 관한 처리문서
- 방송, 신문등 언론보도 내용
- 통계, 도표, 화보, 홍보물등 기타 자료

□ 정보수집 및 관리요령

○ 재난·사고에 관하여는 필요에 따라 과정별 또는 종료후에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접수부터 피해보상, 평가에 관한 일체를 기록 관리

○ 일일보고, 신문, 방송등 정보원을 통하여

- 재난관련 기관장행사 참여 동향, 회의개최, 안전진단등 사항을 파악하여 스크랩하여 관리하는 한편
- 유관기관, 관련실과에 확인하여 구체적 내용은 전화, FAX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된 정보원 근거로하여 작성

○ 재난·사고의 발생의 경우에는 VTR촬영기를 이용하여 생생한 전개과정을 촬영하여 보존(공보담당관실 협조)

○ 수집된 정보는 기록관리하며, 또한 전산화에 대비한 PC입력 관리 (작성서식 별첨)

○ 특히, 정보는 사실에 기초하여 확인한 근거로 정확히 작성관리하여 문책을 두려워 왜곡하거나 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별첨>

재난사고 발생 기록관리 요령

1) 사고개요

○ 발생일시
○ 사고장소
○ 사고원인
○ 피해상황
○ 사고전개 및 수습경과

2) 신고접수 및 전파

○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접수
  • 접수시간
  • 접 수 자
○ 최초보고자 및 보고시간
  • 지휘부 보고

하 수 과 장	→	건설사업소장	→	부 시 장	→	시 장

  •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보고·전파

기 관 명			
수 신 자			
전 파 시 각			

3) 재난사고 대처상황

○ 구조·구난인력 및 장비투입

구분 \ 기관별					
인력	투입기간				
	최초투입일시				
	인력(연인원)				
장비	종류				
	대수				

○ 응급가료

의료기관명 \ 기관별	계	1일	2~3일	4~7일	2주간	3주간	4주이상

○ 이재민 구호

(단위 : 명/천원)

구호종류 \ 구호기관	계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 수습상황

○ 이재민 피해보상

피해종류	계	위로금	보상금	이주대책비	기 타	재 원
계						국 비
사 망						지방비
부 상						성 금
재산피해						기 타

○ 응급·복구 또는 항구 복구상황

구분 / 시설별	사업량	집행액	공사기간		사용월일
			착 수	준 공	
계					
주 택					

5) 사상자 조치상황

○ 사망자 명단 명(남 : , 여 :)

성 명	연 령	성 별	주 소	안치병원	직 업	비 고

○ 부상자 명단 명(남 : ,여 :)

성명	연령	성별	주 소	안치병원	직 업	비 고

6) 기타사항

○ 재난사고, 대응평가 결과 분석

○ 신문, 방송 보도사항 및 화보

3. 安全點檢 및 災難危險施設 管理

가) 목 적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 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

○ 안전관리업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지도, 지원방안 강구

○ 재난위험시설 등의 「점검-조치-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예방

나) 근 거

〈재난관리법 제18조(재난의 예방)〉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재난관리법 제20조(재난위험시설 등의 관리)〉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또는 재난위험지역을 지정한때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정비·보수
- 재난위험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다) 안전관리대상 범위

○ 재난관리법상「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 지방자체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공공단체등이 직접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 지역내에 소재한 재난위험시설·지역(민간소유시설 포함)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재난관리 책임 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 재외공관
- 시·도의 교육청
- 국립동물검역소
- 국립식물검역소
- 지방산림관리청
- 체신청
- 환경관리청
- 국립검역소
- 지방노동청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항공청
- 지방철도청
- 한국가스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통신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공항공단
- 한국수자원공사
-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부산교통공단
- 한국원자력연구소
-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④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 원자력발전소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분됨.

※ 재난관리법 제2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2조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안전대책위원장 및 지역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기관소관의 위험시설에 대하여도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촉구하여야함.

○ 따라서 시설물 종류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구체적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유지관리의무, 안전검사권한, 인허가권등)에 따라야 할 것임.

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1) 중점점검 관리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비 고
○도로시설 (자치단체 관리구간)	
- 교 량	○연장20미터 이상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 터 널	○전수관리
- 육 교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 지하도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 축대·옹벽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로서 높이 5m, 연장 20m이상
- 기타 도로부대시설	○기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등
○지하철 - 교량, 터널, 역사등	○전수관리
○삭도, 궤도 - 삭도·궤도법 적용대상	○전수관리 - 체육시설 : 스키장리프트등 - 관광시설 : 케이블카등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기구는 제외
○토목공사장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인 대형공사장 ○총 공사비 50억원이상인 중단된 공사장
○유·도선 - 내수면의 유선·도선장	○전수관리(5톤이상 동력선) - 해수면 유·도선 제외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건축물 분야〉

구 분	비 고
○지방 공공청사	○연면적 330㎡이상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등에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다중이용건축물	
- 판매시설	○연면적 1,000㎡이상인 시장, 백화점, 상가
- 대형숙박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등
- 종합여객시설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등
- 공연시설	○연면적 300㎡이상인 극장, 영화관, 연예장등
- 집회시설	○연면적 300㎡이상인 예식장, 회의장, 공회장
- 관람·전시시설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체육관, 운동경기관람장, 자동차 또는 자전거 경주장등
- 종합병원	○전수관리
- 위락·휴게시설	○연면적 300㎡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등
- 청소년 수련시설	○연면적 1000㎡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건축물등
○대형건축물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기타건축물	
- 일반건축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 옹벽·석축	○높이 5m이상으로서 연장 20m이상인 옹벽·석축
- 기 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
○대형광고물	○독립된 높이 4m이상 광고판(탑)
○대형건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00㎡이상인 건축공사장
○중단된건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00㎡이상인 중단된 건축공사장
○위험물질취급시설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 가스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지역정압기
- 유독물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 화학물질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2) 안전점검 요령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적용대상시설

- 특별법상의 1종, 2종 해당시설은 동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95. 7. 7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정한바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동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적용

〈특별법상 점검종류별 개요〉

점검종류	실시시기	점검내용	실시자자격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주요부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육안검사	초급 기술자 수준
정밀점검	수중항만시설 : 4년에 1회이상 건축물 : 3년에 1회이상 기 타 : 2년에 1회이상	시설물 전체부위를 면밀하게 육안검사 및 간단한 기구에 의한 측정	고급 기술자 수준
긴급점검	관리주체나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	〃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로 10년이상 경과시설물 대상)	5년에 1회이상	정밀한 육안검사와 다양한 시험 및 측정	특급 기술자 수준

○ 개별법 적용대상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시설물(1, 2종시설물)이외의 시설, 지역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또는 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하고
-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별도 긴급점검(일제조사등)을 실시

○ 시설물상태 평가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구분에 따라 5가지 단계로 상태를 평가

등급	상 태
A급	문제점이없는 최상의 상태 → 안전시설
B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요
C급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요
D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구조적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 제한 여부판단요
E급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요

※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5-1 규정내용 참조

〈개별법상 시설물 종류별 점검방법(예시)〉

시설종류	관련법조항	점 검 방 법
도로시설물 (노면, 교량 터 널 등)	○국도유지보수 운영규정 (건교부 훈령) 제5조, 제12조	○년 2회이상 점검실시, 점검결과 기록보관 ○주 1회 정기순찰, 필요시 수시순찰 실시
	○지방도로유지·보수운영 규정 (행자부 훈령) 제6조, 제13조	○년 2회이상 점검실시, 점검결과 기록보관 ○정기순찰 ┌ 시군도 : 월1회 이상 └ 지방도 : 월2회 이상
	○운행제한 차량 단속요령 (건교부 훈령)	○표지판 설치, 단속방법등 규정
	○지방도로과적 차량단속 운영 규정 (행자부 훈령) 제9조~12조	○고정단속 : 통행이 빈번한 도로 ○정기단속 : 월4회 이상 ○수시단속 : 필요시(위반차량증가시등) ○합동단속 : 분기별 2회이상(시도, 시군, 경찰서합동)
공 동 주 택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 공동주택관리 규칙 제3조의3	○일방공동주택 ┌ 정기점검(년2회 이상) : 해빙기 및 우기대비 └ 특별점검 : 태풍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 ○위 점검결과 안전도가 취약한 재해우려 공동주택 : 매월 1회이상 점검
일 반 대 형 건축물(1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5천㎡ 이 상)	○건축법 제26조 및 제70조 제4항 ○시행규칙 제23조	○건축물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 등을 조사 - 조사결과를 시장등에게 제출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전문기관에 의한 구조안전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함.
지 방 공 공 시 설 물	○시·도·영조물등 관리 규정 제4조(시·도훈령)	○수시점검 : 수시 또는 주1회이상 구역내 순시 ○정기점검 : 매년 2회(3, 9월) 종합점검대책 수립 ○특별점검 : 전면적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시설종류	관련법조항	점 검 방 법
건 설 공 사 장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시행령 제46조의2	○일일점검 : 건설업자 자체기술인력으로 매일 안전점검실시 ○정기안전점검 :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공사는 총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별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 실시 ○정밀안전진단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있을 때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무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수 있음.
유 · 도 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시행령 제12조	○신규검사 : 사업면허신청 또는 사업신고시 ○정기검사 : 면허 또는 신고후 매1년마다 - 검사기관 : 시도지사, 해양경찰청장
삭도·궤도	○삭도·궤도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9조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제83조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관청 검사>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1년) 만료시 ○시설변경검사 : 인가받은 시설의 변경을 완료한때 ○일시검사 :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받고 그 개선을 완료한 때 - 검사기간 :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 <사업자 자체점검> ○삭 도 ┌ 일상점검 : 매일 삭도사용전 점검 및 순환시 운전 └ 정기점검 : 3월마다 ○궤 도 ┌ 정기점검 : 동력차 - 1년 6월, 객차 - 1년 └ 일상점검 : 안전운행을 할수 있는 상태로 수시점검
소규모댐 (자치단체 관 리)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시행령 제21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칙 제10조	○시설관리계획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도시가스 시 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5 및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완성검사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공시 ○정기검사 : 년 1회 ○수시검사 : 필요시 - 검사기관 : 가스안전공사

마) 재난위험시설 · 지역 등의 지정 및 해소 추진

1) 지정방법

○ 지정방법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 지정·관리를 위하여 소관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 및 수시 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라 ① 재난위험시설·지역 ②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 구분 지정
-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협조 요청(지도)
- 재난위험시설 등의 지정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2) 관리 및 책임자 지정

○ 관리카드 작성 기록 관리

- 대상시설 : 재난위험시설·지역(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포함)
- 작성시점 :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과 동시에 작성
- 관리주체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부서에서 작성관리하고 재난관리부서에서 사본을 보관(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주에게도 카드를 배부하여 기록관리토록 지도)
- 점검실명제 실시
  - 시설관리카드에 관리책임자를 명기하고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자를 반드시 명기

● 기록사항

- 소유주, 유지관리주체, 위험요소, 설계도등 자료보관처, 관리책임자, 장·단기 위험해소계획, 위치도 및 전경, 과거 재난발생상황,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재난발생시 수습관련 정보(유관기관·단체등)

※『점검 및 조치사항』란은 동카드를 통해 시설물의 위험정도, 위험진행상태 등을 판단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위험시설지정 이전에 실시한 주요점검 진단내용도 소급 기재

○ 관리책임자 지정

● 재난위험시설·지역지정과 동시에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정 : 시설물관리부서 국장급(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급)
- 부 : 시설물관리부서 과장급(과장이 없는 경우 계장급)

● 관리책임자 의무

- 위험요소 진행등 상황파악 관계기관 통보 및 조치촉구
- 보수·보강등 정비에 따른 지도 및 지원
-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정기점검 월1회이상, 수시점검 필요시)

바) 장단기 정비계획 수립 시행

○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시행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위험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장·단기 계획은 총괄적인 장기계획과 1년단위의 단기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정비·관리 및 재원대책 등을 포함

※ 시설물별로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시설관리카드에 기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정비계획에 의한 보수·정비 소요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 신속한 보수·정비 추진(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종합계획수립)

- 예산내용(예시) : 정밀안전진단비용(보상금 포함), 안전진단장비 구입비, 개·보수비, 철거비등

○ 민간소유시설에 대하여도 재정투자계획에 의한 장·단기정비계획 추진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법상의 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 및 지원방안을 강구

사) 안전조치 명령

○ 안전조치 명령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보수 또는 보강등 정비 ③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함
- 안전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방법등이 기재된 안전조치 명령서를 당해시설 소유자등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 통지)

○ 안전조치결과 통보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증빙서류, 사진 등을 첨부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금지조치(제한·금지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아) 응급조치

○ 발동요건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함

○ 종사자 근무명령 등

- 시장·군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기·가스·수도·통신·수송·소방·토목·건축·의료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나 종사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응급조치 종류

- 동원명령 등(제34조)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원의 동원명령
  -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출동 요청
- 대피명령(제35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체제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
- 경계구역의 설정(제36조)
  - 경계구역을 설정 응급조치 종사자외 출입 기타행위의 금지·제한하거나 경계구역에서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
- 강제대피 조치(제37조)
  - 대피·퇴거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한 경우 강제대피 및 강제 퇴거시킬 수 있음
- 응원(제38조)
  -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할구역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 소속공무원의 파견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응급부담(제39조)

-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거주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기타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안전·응급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재난관리법 제59조(벌칙)

- 안전조치 불이행자(동법 제23조제1항)
- 경계구역에의 출입 또는 제한 명령에 위반한 자(동법 제36조제1항제1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재난관리법 제60조(벌칙)

- 대피명령(제35조제1항)에 위반한 자
- 경계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제36조제1항제2호)에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제39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조치 종사명령(제40조 제1항)에 위반한 자

⇒ 200만원이하의 벌금

자) 안전점검주체 및 점검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안전점검은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함

● 공공시설 : 관리주체, 민간시설 - 시설소유 또는 관리자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안전진단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 특히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하여 실시

○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관계법 규정대로 성실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 점검하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주관으로 긴급점검 등을 실시

○ 점검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고발등 제제 조치 시행

〈관계법령 벌칙 규정(예시)〉

○ 재난관리법 제59조
-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발행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 안전관리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고근거
- 재난관리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 재난관리법 제13조(재난위험시설 등의 관리) 제3항

○ 보고체계
- 시(재난관리) → 도(건설계획과) → 행자부(안전지도과)

○ 보고종류 및 보고주기
- 정기보고 : 재난위험시설 관리 상황
  - 매분기 추진실적 상황을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
  -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 재평가 결과보고(상반기 4. 5, 하반기 10. 5)
- 수시보고 : 재난예방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 재난위험시설물 : 총 5개소 5개시설물

(2001. 11. 28.현재)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소 재 지	지정 및 해제 사유	유지관리 주 체	위험 등급	지 정 일 (해제일)	관 리 책 임 자
5개소	5개시설						
공장주택 1	1개동 1층 단독 연면적 : 326.5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 '76. 9. 6준공	동안구 평촌동 93-7	○천장 슬라브 일부에 양생 처짐	서영진	D	2001.10.23	정 : 동안 건축교통과장 부 : 동안 건축담당
성우연립 2	3개동중 1동 총 34세대중 14세대 연면적 : 810㎡ ※ '79.12.24준공	동안구 평촌동 59-9	○지반 침하로 인한 벽체 모서리 균열	신창민 등14인	D	'98. 6.15	정 : 동안 건축교통과장 부 : 동안 건축담당
양지 4교 3	L=35.8m B=35m	만안구 안양1동 1195-42	○중성화 진행으로 철근부식 현상	안양시 도로과	D	'99. 4.12	정 : 건설사업소장 부 : 도로과장
중앙지하도 상 가 4	L=96m, B=23.1m 면적 : 2,381㎡ 175점포 ※ '78. 6. 2준공	만안구 안양1동 1189-1 (중앙로)	○보 및 슬라브에 균열 ○구조체 설계기준 미달 내하력 부족	안양시 회계과 도로과	D	'99. 8.11	정 : 건설사업소장 부 : 도로과장 ○주요구조부(보, 슬라브, 기둥) 유지관리
비산대교 5	L=92m B=25m ※ '75준공, 확장 '90.11	동안구 비산동	○구조적 내하력 및 내구성 부족	안양시 도로과	D	2001. 4.11	정 : 건설사업소장 부 : 도로과장

▣ 2001하반기 일제점검결과 총괄표

(2001. 11월 현재)

구 분		전 체 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관련부서
			계	A	B	C	계	D	E	
합 계		1,890	917	727	153	37	5	5		
도로시설	교 량	60	36	15	1	20	2	2		
	터 널	1	1	1						
	육 교	32	3	2	1					
	지 하 도 (지하상가내의 지하도 제외)	26	6	6						
	축대·옹벽 (건물부대시설 제외)									
지 하 철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3	3	3						
토목공사장	대 형 공 사 장	3	3	3						
	중 단 된 공 사 장	1	1	1						
유·도 선		1								
기타 토목시설물		1	1	1						
지 방 공 공 청 사		75	59	56	2	1				
공동주택	아 파 트	1,256	424	306	118					
	연 립 주 택	161	130	112	10	8	1	1		
다중이용건축물	판 매 시 설	26	25	16	9		1	1		
	대 형 숙 박 시 설	4	4	3	1					
	종 합 여 객 시 설									
	공 연 시 설	11	6	5	1					
	집 회 시 설	21	8	8						
	관람·전시시설	3	3	1	2					
	종 합 병 원	4	4	4						
	위락·휴게시설	17	17	17						
	청소년수련시설	2	2	2						
대 형 건 축 물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10	9	5	1	3	1	1		
	옹벽·석축	10	10	1	5	4				
	기 타	2	2		1	1				
대 형 광 고 물		17	17	17						
건축공사장	대 형 공 사 장	28	28	28						
	중 단 된 공 사 장	3	3	2	1					
위험물시설	가 스 취 급 시 설	92	92	92						
	유 독 물 취 급 시 설	11	11	11						
	화학물질취급시설	9	9	9						

▣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내역

구 분		대 상 범 위	조 사 결 과		
			계	만안	동안
합 계			922	503	419
도로시설	교 량	○연장 20m이상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38	26	12
	터 널	○전수관리	1	1	
	육 교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3	3	
	지 하 도 (지하상가내의 지하도 제외)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6	6	
	축대·옹벽 (건물부대시설 제외)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시설로서 높이 5m, 연장20m이상			
	기타도로부대시설	○기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등			
지 하 철		○전수관리			
삭도·궤도		○전수시설(체육시설 : 스키장 리프트, 관광시설 : 케이블카)			
유원시설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3	2	1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	2	1(의왕)
	중단된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	1	
유·도 선		○전수관리(5톤이상 동력선)			
기타 토목시설물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1	1	
지방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연면적330㎡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 건축물	59	26	33
공동주택	아 파 트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424	238	186
	연립주택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131	66	65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상점과 백화점등 도·소매시장	26	13	13
	대형숙박시설	○연면적 1,000㎡이상	4	3	1
	종합여객시설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등			
	공연시설	○연면적 300㎡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6	4	2
	집회시설	○연면적 300㎡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 발매소, 회의장등	8	5	3
	관람·전시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운동경기 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등	3	1	2
	종합병원	○전수관리(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포함)	4	2	2
	위락·휴게시설	○연면적 300㎡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등	17	9	8
	청소년수련시설	○연면적 1,000㎡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건축물등	2	1	1
대형건축물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10	1	9
	옹벽·석축	○건축 5m, 연장20m이상	10	6	4
	기 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시설	2	1	1
대형광고물		○독립된 높이 4m이상의 것	17	6	11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총 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바닥면적 10,000㎡이상	28	13	15
	중단된공사장	○총 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바닥면적 10,000㎡이상	3	2	1
위험물시설	가스취급시설	○충전소, 판매소, 지역정압기	92	54	38
	유독물취급시설	○유독물 보관·저장소	11	5	6
	화학물질취급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9	5	4

▣ 중점관리대상 『B급』 시설물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총 계	153개 시설물			168
도로시설	교량 및 육교	명 학 대 교	호계동	L:90m, B:3m	○교각 빔에 균열(보수)	1
		진 흥 육 교	안양1동	L:29.1m, B:6m	○I형 거더도장(페인트) 박리등	1
지방공공청사		석수3동사무소	석수3동 600-3	연 727.4㎡	○기둥, 벽체균열	1
		호 계 도 서 관	호계2동 923-34	연 2,763㎡	○별관동 식당,학생열람실 증축 부분 균열 및 변형	1
공동주택	아파트	청 원 아 파 트	안양2동 80-4	2개동 150세대	○조적 줄눈부 균열	2
		화 양 아 파 트	안양4동 709-16	7개동 31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7
		동 명 아 파 트	안양5동 613-21	1개동 5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동 덕 아 파 트	안양5동 708-196	9개동 22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9
		동 산 아 파 트	안양7동 150-2	2개동 77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동성1차아파트	안양7동 155-2	3개동 141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3
		동성2차아파트	안양7동 190-6	4개동 20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4
		문 양 아 파 트	안양7동 143-4	1개동 4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은하2차아파트	안양7동 154-5	1개동 7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일 승 아 파 트	안양7동 132-2	2개동 2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적성1차아파트	안양7동 144-12	1개동 4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적성2차아파트	안양7동 138-5	1개동 2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정동2차아파트	안양7동 152-8	1개동 36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화남1차아파트	안양7동 126-5	1개동 37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명 학 아 파 트	안양7동 126-5	4개동 34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삼 신 아 파 트	석수1동 373-3	4개동 11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백조2차아파트	석수1동 373-3	5개동 14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장미·공영아파트	석수1동 388-1	8개동 16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석 수 아 파 트	석수2동 308-5, 6	3개동 9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삼 신 아 파 트	박달2동 607-1	7개동 27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7
		우 성 아 파 트	비산1동 515-2	8개동 29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8
		기 오 아 파 트	비산1동 554-10	1개동 3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성 도 아 파 트	비산1동 557-7	1개동 3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주공3단지아파트	석수3동 786번지	10개동 42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0
		덕 산 아 파 트	비산1동 554-8	1개동 16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뉴타운1,2,3차(아)	비산3동 354-10	8개동 91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8
		임 곡 아 파 트	비산3동 377	2개동 8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대 화 아 파 트	관양1동 1409-4	2개동 3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신 태 양 아 파 트	관양2동 1461-9	2개동 7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대 도 아 파 트	평촌동 54-1	4개동 159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4
		주 공 아 파 트	호계3동 813	3개동 181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3
		삼 신 아 파 트	호계3동 639-2	6개동 27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6
		양 수 아 파 트	호계3동 848-2	2개동 11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삼 천 리 아 파 트	호계3동 843-1	4개동 24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4
	연립	이 화 연 립	안양6동 492-19	1개동 24세대	○2층슬라브 철근노출	1
		명 학 시 장 연 립	안양6동 434-3	1개동 33세대	○외벽균열	1
		한 미 연 립	안양7동 150-1	2개동 32세대	○벽체균열및 철근노출	2
		제 일 연 립	안양7동 137-8	2개동 28세대	○벽체균열	2
		삼 성 연 립	안양8동 398-35	2개동 28세대	○가동벽체에 줄눈 균열	2
		푸 른 연 립	안양8동 394-86	2개동 28세대	○노후 및 벽체균열	1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제원(규모)	취약내역	비고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남부시장	안양1동 622-229	연 1,755㎡	○시설물노후	1
		석수시장	석수2동 387-288	연 2,929㎡	○시설물노후	1
		중앙시장	안양4동 676-44	연 6,029㎡	○시설물노후	1
		청원시장	안양2동 688-17	연 5,394㎡	○시설물노후	1
		관악시장	안양2동 41-5	연 1,297㎡	○시설물노후	1
		육동시장	안양6동 434-3	연 5,626㎡	○시설물노후	1
		중부농·수산물(삼신시장)	안양1동 622-337	연 3,714㎡	○시설물노후	1
		안양월드	안양3동 900-10, 57	연 28,827㎡	○지하주차장 및 6,7층 미세균열	1
		뉴코아백화점	범계동 1040-1	연 63,106㎡	○지하6층주차장 보에 미세균열	1
	관람시설	안양종합운동장	비산3동 1025	연 33,412㎡	○지하공동구 누수 및 스텐드 파라펫 부식	1
		문예회관	안양8동 550	연 15,084㎡	○건물 방수불량, 기둥벽체 균열	1
	대형숙박시설	코암	안양6동 431-10	연 1,190㎡	○가스시설 외부 노출	1
	공연시설	안양극장	안양4동 676-116	연 684㎡	○벽체균열	1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삼신연립가동벽체	호계3동 919-2	연 800㎡, 지상2층	○조적벽체 배부름 현상	1
	옹벽석축	정우(아)옹벽	안양3동 911-1	L:40m, H:5m	○배수구 불량 및 균열	1
		석산연립옹벽	안양9동 산 66-6	L:110m, H:1~17m	○배수구 불량 및 균열	1
		중앙감리교회축대	안양4동 708-235	L:15M, H:3~4M	○석축부 부실	1
		비산1동주택축대	비산1동 489-31,32	L:9M, H:3.5M	○석축부 배부름	1
		일신아파트옹벽	호계1동 999-25	L:100m, H:.5m	○석축 및 옹벽 균열	1
	부대시설	세원연립담장	박달1동 42	L:65m, H:1.6m	○담장전도 위험	1
건축공사장	중단된건축공사장	중앙아파트	안양동 817-15	연 17,985㎡	○공사중단 사업장	1 1

▣ 중점관리대상 『C급』 시설물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총계	37개 시설물			25
도로시설	교량	삼 막 교	석수2동	L:20m, B:21.4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박락발생 및 배수관 막힘	1
		만안삼성교	석수2동	L:20m, B:21.3m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스라브 박리, 박락 발생	1
		삼 성 1 교	석수1동유유산업입구	L:26m, B:8m	○슬라브 및 교대에 백태발생 ○하부기초 세균 및 배수구 막힘	1
		삼 성 2 교	석수1동유원지매표소앞	L:26m, B:8m	○슬라브 균열 발생 ○교대에 백태침식 및 세굴발생	1
		석 수 교	석수1동	L:30m, B:5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양 명 교	안양1동 양명고앞	L:95m, B:7m	○슬라브 박락 및 철근노출 ○주형에 균열 및 파손	1
		명 학 육 교	안양6동	L:45m, B:30m	○교좌장치 녹발생 ○공용년수 경과에 따른 노후발생	1
		신 촌 교	석수1동	L:30m, B:5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임 곡 교	안양1동	L:100m, B:12m	○슬라브 균열 및 신축이음고무재 파손 ○배수관 길이 부족	1
		삼 성 교	석수2동	L:45.5m, B:20m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교좌장치 받침판 부식 ○스라브 균열발생	1
		인 덕 원 교	관양2동	L:60m, B:5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관 양 교	관양2동	L:60m, B:7.5m	○슬라브 파손 및 주형균열 파손 ○배수관 길이 부족	1
		덕 천 교	비산2동	L:73.5m, B:18m	○신축이음 본체마모 및 파손 ○교대 균열 발생	1
		내 비 산 교	비산3동	L:72m, B:4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학 운 교	비산동	L:67m, B:25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수 촌 교	관양동	L:74m, B:3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동 안 교	비산3동	L:65m, B:9m	○신축이음 파손 스라브 균열발생 ○교각에 균열 및 박락,철근노출	1
		전 파 교	호계2동	L:72m, B:14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호계고가차도	호계동	L:255m, B:15.3m	○주형에 용접불량 ○교좌장치에 도막 박리	1
		동 양 교	호계2동	L:50m, B:6.7m	○받침장치의 부식심화	1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총계	37개 시설물			25
지방공공청사		관양2동사무소	관양동 1482-3	L:940.68㎡	○건축바닥 침하로 균역발생	1
공동주택	연립	삼 건 연 립	안양2동 42-10	1개동 16세대	○상가 벽체에 균열	1
		동 남 연 립	안양8동 398-34	3개동 46세대	○벽체균열	3
		삼 우 연 립	안양9동 759-8	2개동 15세대	○벽체균열	2
		효 진 연 립	안양9동 1037-1	2개동 26세대	○외벽균열	2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삼 아 연 립	평촌동 97	2개동 20세대	○G동 2층 난간전도 위험 ○F동 발코니 접합부 균열	4
		충혼탑 및 무허가 다가구주택 및 옹벽석축	안양5동 618-29 (임명재) (83년준공추정)	지상5층(L=21m) 석축 : 1.8~2.5m 세맨벽돌	○건물계단부 크랙 과다 ○하단 석축 공극과다 위험	1
	옹벽석축	화 양 (아) 옹 벽	안양4동 709-19	L:100M, H:3~6M	○진입로 옹벽 상단 균열	1
		강남2차(아) 옹벽	호계2동 923-29	L:60M, H:6M	○옹벽 단면부 노후	1
		경 남 (아) 축 대	호계2동 914-36	L:50M, H:2.5M	○시공재료 접합부 분리	1
		동남연립석축	안양8동 398-34	L:21M, H:4.5M	○슬라브 선단 블럭담장 기움	1
	부대시설	황 궁 빌 라 담 장	호계2동 923-1, 2	L:10M, H:2M	○담장전도 위험	1

▣ 1·2종 시설물 현황

종별 / 시설물별		계	1종	2종	비 고
계		312	140	172	
민간시설	소 계	288	134	154	
	공 동 주 택	271	131	140	
	다중이용시설	14	2	12	
	일반건축물	3	1	2	
공공시설	소 계	24	6	18	
	교 량	12	6	6	
	배 수 문	2		2	
	상하수시설	3		3	
	건 축 물	7		7	

관리번호	

등 급

災難危險施設·地域管理카드

○ 시설명 :

○ 위 치 :

안 양 시

여 백

□ 위치도 및 전경

〈위 치 도〉

축적 50,000 : 1 행정지도

〈전　　경〉

사　　진

□ 시설개황

<table>
<tr><td>시 설 명</td><td colspan="2"></td><td>위치</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주 체</td><td colspan="2"></td><td>유지관리주체
(연 락 처)</td><td colspan="2"></td></tr>
<tr><td>시 설 개 요
(건축년도, 시설규모,
건물구조 등)</td><td colspan="5"></td></tr>
<tr><td>위 험 요 소</td><td colspan="5"></td></tr>
<tr><td>설계도등 시설물
관련자료 보관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재난관리 책임기관
관리 책임자</td><td>구 분</td><td>소 속</td><td>직 급</td><td>성 명</td><td colspan="2">연 락 처</td></tr>
<tr><td>정</td><td></td><td></td><td></td><td>주 간</td><td>야 간</td></tr>
<tr><td>부</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장단기 위험해소 계획

〈단기대책〉	〈장기대책〉 ※ 연차별 예산투자 계획을 반드시 명기

□ 재난대비 체제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연 락 처		담당 직무 분야 (임무)
		주 간	야 간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한국전력, 가스공급회사, 병원등 재난수습 유관기관 · 단체

□ 참고사항

※ 과거 재난발생 현황, 주변환경등 특이사항 기재

□ 점검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종류)	일 시	점 검 결 과	점검자 (인)	조 치 사 항	확인자

※ 확인자는 재난관리책임자 이상 상급자가 확인

4. 安全點檢

○ 각종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 보수·보강 함으로써 재난사고를 방지케 하였음

가. '2001 안전점검 실적

○ 사업개요

- 재난위험 시설물 정기점검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 도출된 위험요인의 지속관리 및 해소 조치

○ 추진실적

-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 및 해소
  - 대 상 : 5개소 5개시설물(2000년당초 6개소 7개시설물)
  - 점 검 : 84회
  - 실 적

    해 소 : 2개소 2개시설(보수 및 재축조)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조사 및 안전점검
  - 대 상 : 1,890개시설
  - 점 검 : 2회
  - 중점관리 : 총 917개소 (A급 727개소, B급 153개소 ,C급 37개소)

● 특별점검(16회 점검)

- 특별점검(사고취약위험요인징후시) : 4회 .
- 취약시기(명절전, 연말연시)점검 : 3회
- 월별 취약시설물 점검 : 9회
- 조 치

  적발건수 : 466건
  조　　치 : 421건(90.3%)
  조 치 중 : 45건

※ 미조치 사유 : 예산 미확보 및 민간관리주체의 관심부족

나. '2002안전점검 계획

○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 재난위험 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정 · 고시 ---------- 년2회(3,9월)

● 재난위험시설물의 점검관리

- 정기점검실시 ———————————————— 년12회(매월1회)
- 특별 안전점검실시 ————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참여(년2회)

● 재난위험시설물의 해소 추진

- 관리 책임자 지정 ———— 시설물 관리부서 국장급 임명(구청은 과장)
- 해소대책 추진 —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부서의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

○ 1 · 2종 시설물의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의 확인 점검

- 유지관리계획 시행 및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 ———— 년2회(5,10월)
- 안전점검결과 위험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및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주체 교육 및 홍보실시

- 년간 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의 필요성
- 보수·보강등 시공기술 교육(시설안전관리공단 협의)
- 관리주체 간담회를 개최 문제점을 발굴 개선책 추진

○ 재난취약시설물 특별점검

● 계절별(해빙기, 우 기, 풍 수 해, 동절기)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년4회(3, 6, 9, 11월)

● 취약시기별(설날, 추석절, 연말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년3회(2, 9, 12월)

● 다중이용시설물 관계기관 합동점검(전기·가스분야) ———— 년2회(4, 8월)

다. 월별 점검계획

대 상 / 월 별	점검유형별	재난위험시설물 (5개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917개시설)	1·2종시설물 (312개시설물)
1월	도 자체계획	○	ㅇ지방공공청사	
2월	취약시기별 시 자체계획	○	ㅇ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시장, 극장, 종합병원등) ㅇ지하공동구	
3월	상반기 점검 계절별 점검	○	ㅇ중점관리대상시설물 (917개 시설물) ㅇ해빙기 취약시설물 (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등)	
4월	시 자체특별 점검	○	ㅇ전기·가스분야 특별점검 ㅇ도로시설(교량, 육교, 지하도)	
5월	도, 시 자체계획	○	ㅇ행락철점검(유기시설, 유도선등)	○
6월	계절별 점검	○	ㅇ우기대비 취약시설물 (대형공사장, 지하공공시설물등)	
7월	도, 시 자체계획	○	ㅇ휴가철 이용시설 (수영장, 청소년 수련시설등) ㅇ대형광고물	
8월	계절별 점검 시 자체특별 점검	○	ㅇ풍수해 대비 취약시설물 ㅇ전기·가스분야 특별점검	
9월	하반기 점검 취약시기별	○	ㅇ중점관리대상시설물 (917개 시설물) ㅇ추석절 취약시설물 (백화점, 시장, 극장, 종합병원등)	
10월	계절별 점검 도, 시 자체계획	○	ㅇ집회장 ㅇ예식장	
11월	도 자체계획	○	ㅇ위험물질 취급 및 저장시설	○
12월	취약시기별 계절적 점검	○	ㅇ동절기 취약시설물 (다중이용위락시설, 공사장) ㅇ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시장, 극장, 종합병원등)	

5. 災難管理基金의 積立·運用

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 년간 최저 적립액 :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

○ 2002기금 확보액 : 200,494천원

○ 법적근거 : 재난관리법 제56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 관련조례 제정 : '98. 9. 29

○ 기금의 용도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안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안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 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이주비 융자(2천만원 이하)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못하는 경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 융자(2천만원 이하)

●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2002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현황

● 조성액 : 977,970천원

- 1999년 187,145천원(기금179,414+이자7,731)
- 2000년 355,249천원(2000년 기금 190,366+1998년 기금 164,883)
- 2001년 235,082천원(기금192,241+이자42,841)
- 2002년 200,494천원

● 조성근거 : 재난관리법 제56조, 안양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확보 예상액 : 977,970천원 (2002. 1. 31현재)

- 조 성 액 : 927,398천원
- 이자발생액 : 50,572천원

• 기 업 은 행 : 977,970천원 (원금 977,970천원 1년만기 정기예금)

• 조 성 액 : 927,398천원+이자액 50,572천원 = 977,970천원

○ 200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운용기준 : 조례 제3조

-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이상을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 50% 미만을 당해연도 운용자금으로 관리

● 2002년도 (2002. 1. 31현재) 확보 예상되는 977,970천원중 적립금(50.1%)과 운용자금(49.9%)계좌로 각각 관리

- 적 립 금 계좌 : 489,963천원(977,970천원중 50.1%)
- 운용자금 계좌 : 488,007천원(977,970천원중 49.9%)

○ 2002년도 확보예상 적립금 및 운용자금 예탁

● 총기금액 : 977,970천원

● 적립자금 : 489,963천원

● 운용자금 : 488,007천원

● 예금종류 결정 (추후 2002. 1월말에 비교 결정)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설치근거 : 안양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9조

○ 운영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건설사업소장
- 위　　원 : 회계과장, 하수과장, 지역경제과장, 녹지공원사업소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 간　　사 : 재난관리담당

○ 위원회 심의사항

- 기금의 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 기금의 결산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안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마.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직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위 원 장	부 시 장	이 석 우	행) 2010	
부위원장	건 설 사 업 소 장	강 철 원	행) 2033	
위 원	회 계 과 장	안 규 환	행) 2170	
〃	하 수 과 장	배 찬 주	행) 2450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기 성	행) 2270	
〃	녹지공원 사업소장	이 근 선	행) 2410	
〃	건 축 과 장	김 남 수	행) 2390	
〃	도 로 과 장	조 양 호	행) 2430	
간 사	재난관리담당	이 훈	행) 2167	

6. 재난관리체제 구축

○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완벽한 재난종합관리체제를 구축

○ 사후수습보다는 사고예방이 되도록 예방 점검·확인 행정 구현

가. 재난현황체제 구축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1일6명

○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 강화 ——— 11개기관

- 안양, 과천경찰서, 안양소방서, 한전안양지점, 가스안전공사등

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재난관리체제 확립

○ 2002재난관리계획 및 동원계획 수립 ——— '2001. 12월

○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내실 운영 ——— 년2회

○ 재난관리기금 내실운영

- 2002재난관리기금(2002. 1. 31 기준예상) ——— 977,970천원

  ※ 2002년도 적립금 200,494천원

- 기금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수시

○ 재난통신지원단 내실운영 ——— (100명)

○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내실운영

다. 재난대비 각종 훈련실시

○ 긴급구조훈련 ——— 년1회

○ 재난대비 도상훈련 및 수습훈련 ——— 년1회

○ 재난상황 도상훈련 ——— 년1회

○ 비상통신훈련 ——— 년1회

라.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관리

○ 재난위험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정·고시 ——— 년2회

○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년4회

○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년3회

○ 다중이용시설물 관계기관 합동점검 ——— 년2회

○ 1·2종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의 확인점검 ——— 년1회

여 백

Ⅳ. 災難의 收拾·復舊對策

1. 災難發生報告 및 出動態勢 確立
2. 緊急救助 對策
3. 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4. 災難恒久 復舊 對策
5. 災難事故 收拾事例

여 백

Ⅳ. 災難의 收拾·復舊對策

1. 災難發生報告 및 出動態勢 確立

가. 재난발생보고

○ 신고내용 :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이 발생할 징후가 있을시

○ 신고장소 : 시·구재난종합상황실, 당직실, 소방서상황실, 경찰서상황실

○ 보고방법 : 전화, 구두, FAX등(재난사실을 인지한 최단시간내)

○ 조　　치 : 자체 계통보고, 상부기관 보고, 유관기관 전파

○ 보고내용

- 재난발생개요 : 일시, 장소, 사고원인, 피해내용
- 응급조치내용 및 현장 상황
- 향후전망 및 대책

나. 출동태세 확립

○ 상황의 판단

- 가스폭발, 붕괴등 각종 재난유형별로 구분 상황접수와 동시 출동여부 판단
- 규모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관련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여부

다.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확립

○ 재난규모에 따른 사고수습

- 대규모(2개이상 시·군에 걸쳐 발생) : 도지사
- 중소규모 재난발생 : 시장

○ 재난발생시 수습대책

- 출동명령 및 요청
  - 공무원비상소집, 민방위대원의 동원 또는 준비명령 하달
  - 소방서장,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등에게 출동등 필요한 조치 요청

- 종합병원 의료진 비상근무등 필요한 조치 요청
- 재난유형별 동원자원 관리 및 활용

● 대피명령 및 경계구역 설정
-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주민이나 거주자에게 대피 명령
- 경계구역 설정, 응급대책 종사자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며 퇴거 명령 조치
- 경계구역 설정사항과 제한 및 금지행위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공고

○ 지원요청 및 경비부담
●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시 다른 시장에게 관계 공무원을 파견 요청
● 지원을 받은 시장, 유관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 파견 및 소요경비 자체 부담
- 인 력 : 잠수부, 해병전우회, 의료요원, 부녀회, 헌혈
- 장 비 : 헬기, 모터보트, 견인차, 조명차, 발전차, 취사차량등

○ 현장주변등 질서유지
● 사고현장, 사상자, 병원후송, 주요통행료 주변의 원활한 교통난 확보
- 대중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 조정, 교통통제 등의 조치
● 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소, 병원, 수용시설간 긴급연락체계 확립
●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인명구조, 긴급복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2차 사고방지대책
● 기름 유출등 상수원 오염방지
● 가스, 유독물질에 의한 오염, 폭발등 대책강구
● 우회도로 지정등 교통통제 및 신속한 차체 인양

○ 사상자 구호대책
● 헌 혈 : 공무원, 군부대, 학생, 기업체, 민간인등
● 사상자 후송 : 보건소등과 협조 관내 후송병원 사전준비
● 입원병원 현황 및 명단 작성 공고(사고대책본부, 병원, 분향소등)
● 합동분향소 설치 : 위패, 영정, 양초, 향, 식사, 담요등 제공
● 자원봉사단체 지원 요청 : 적십자사, 해병전우회, 부녀회등

○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피해조사

- 사고대책본부와 사고관련 관계기관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고발생요인, 책임소재, 피해현장 등을 조사
- 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대책본부에서 책임자 부담등 복구하도록 조치

● 현장복구

- 전문기술요원 투입으로 화재, 폭발등 2중 피해유발요인을 철저히 진단하여 제거 및 조치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등 주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시설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선 복구
- 사고대책본부에서 피해조사가 완료된 후 항구적인 복구 공사계획을 수립 시행(재난기관과 협의)

2. 緊急救助 對策

가. 긴급구조 활동

○ 안양시 긴급구조본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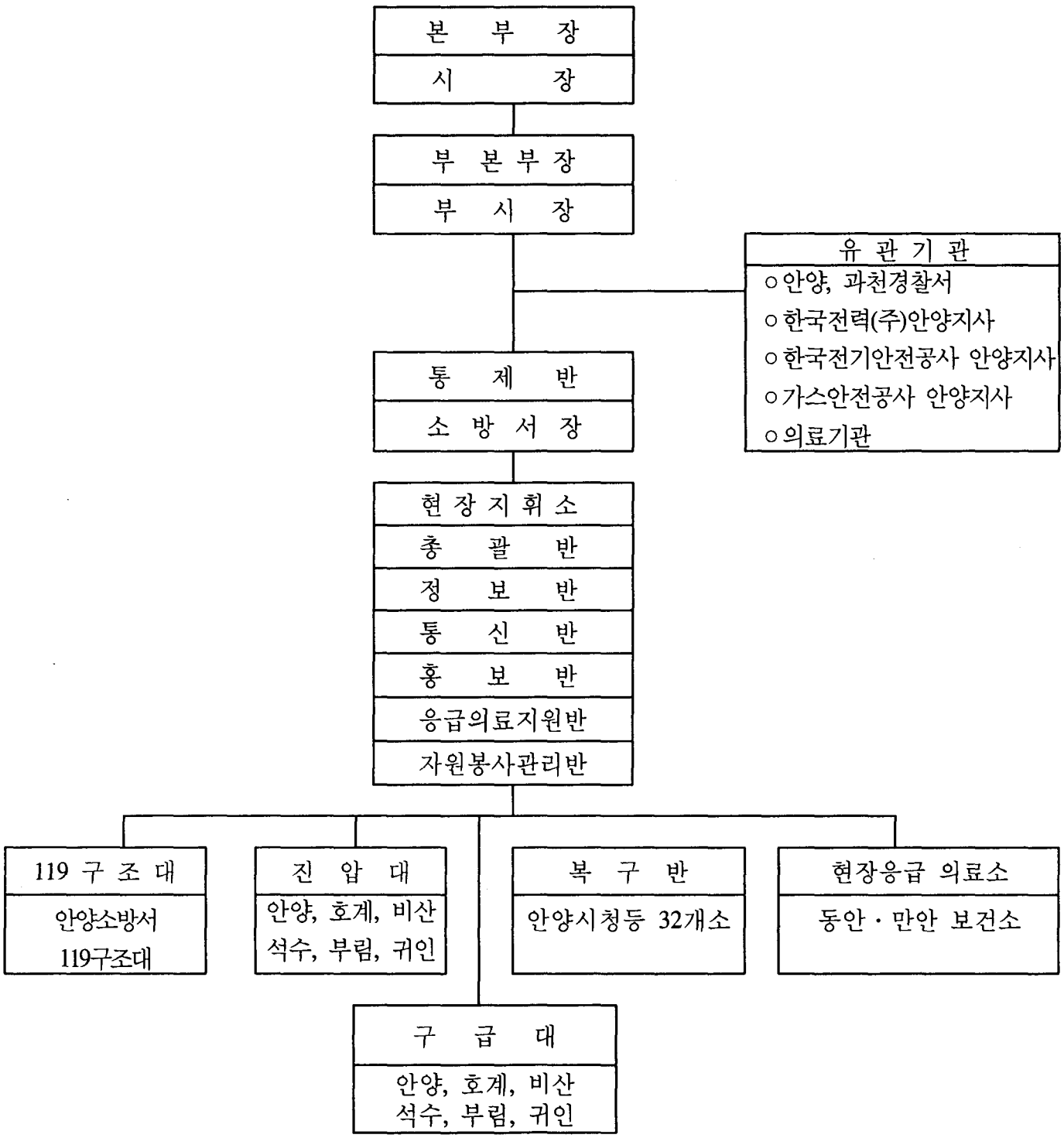

나. 조치내용

○ 정확한 상황판단

- 재난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상황판단
- 활동방침 결정

○ 경계구역(통제선)설정 운영

- 경계구역
- 위험구역의 설정

다. 긴급구조기관(법 제2조 및 령 제3조)

○ 중앙 119구조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 군의 탐색구조분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통신, 대한석탄공사

○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한국잠수협회, 삼성3119구조단

○ 기타 내무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등

라. 긴급구조상황실 운영

○ 장 소 : 소방서상황실

○ 운 영

- 근무인원 : 5명
- 근무시간 : 09:00 ~ 익일 09:00 (24시간 상시)

○ 임 무

- 화재의 신속접보 및 보고
- 대형 및 주요화재시 소방응원조치등 상황 대처
- 각종 사건·사고등 동향 접보 및 보고
- 통신 기자재 관리 유지
- 기타 긴급 지시사항 이행

마. 현장지휘본부

1) 지휘본부

가) 설치기준

○ 재난의 양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

- 소규모 : 자체소방력(1개대)으로 진압 가능
- 중규모 : 인근 1~2개 소방력지원으로 진압 가능
- 대규모 : 본부단위 소방력의 투입과 외부지원 필요시

○ 소규모 재난이라도 복잡성등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나) 설정시 조치

○ 방재센터 있는 건물은 방재센터내(무선장애시 옥외 설치)

○ 지휘본부의 위치 등을 출동 각대에 통보

2) 지휘요령

가) 지휘기본

○ 인명구조 최우선, 소화활동은 연소저지 주목적

○ 화재상황, 부대집결 및 기능장악, 구체적인 명령

○ 특히 화재, 대규모재난시 군·경의 특수부대, 민간구조대등 신속한 응원 요청

나) 지휘본부의 임무

○ 현장의 장악 : 각 기능별 구조대 통합조정 지휘(방송시설 확보)

○ 종합상황 파악 : 대상물상황, 현재상황, 인명·작업·확대위험 파악

○ 관계기관 연락 : 행정기관, 경찰, 가스, 전기, 수도등

○ 필요부대 확보 : 응원요청, 예비대의 확보

○ 휴대무선의 통제 및 유무선 통신망 구축, 교대요원 확보, 경계선의 설정

○ 활동방침 결정 및 필요 기자재의 확보

○ 현장 홍보 및 현장보고

3) 긴급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가) 사고수습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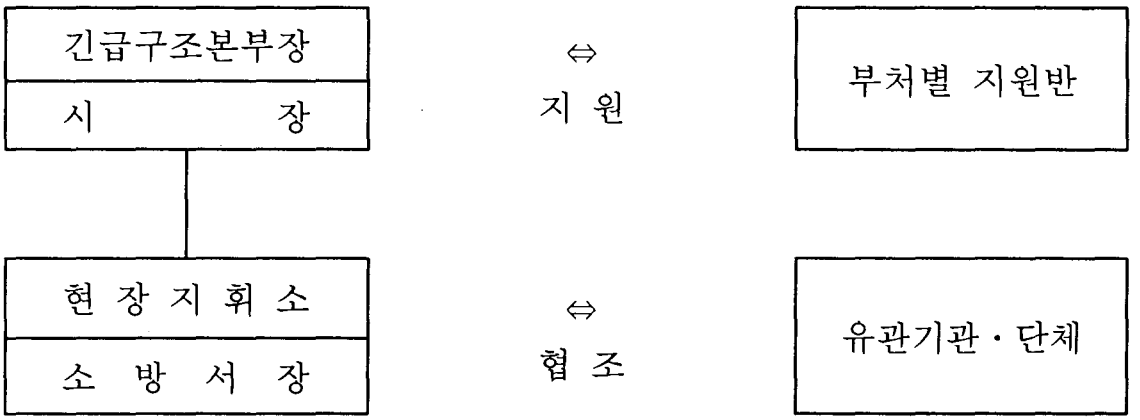

○ 현장접근통제, 경비(경찰, 군)

○ 현장구조·구급(경찰, 군, 자원봉사자등 협조)

○ 구조전략을 위한 협의 및 종합대책수립(구조기관 대표)

○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의료기관)

○ 중장비등 동원여부 판단(관련기관)

○ 자원봉사 업무 종합 조정 통제

나) 긴급구조재난본부

구분	본부장	임 무
중앙	행자부장관	○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 조정 ○ 긴급구조 기관간의 역할 분담 ○ 긴급구조 기관이 행하는 구난활동의 지휘통제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 상시 상황실 설치 운영 ○ 재난발생시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소속 직원 파견 요청 ○ 통제관 1인을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명 ※ 지역구조본부장은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하여 총괄, 조정
도	도 지 사	
시.군	시 장 군 수	

다) 운영위원회

구 분	위원장	임 무
중 앙	행자부차관	○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조정
위 원	○ 다음중 본부장(행자부장관)이 위촉 - 행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라)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구분	설치위치	통제관	운영체계	임 무
중앙	행자부소방국	소방국장	상시운영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도	도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시군	소 방 서	소방서장		

마) 현장지휘소

구분	통제관	임 무
중앙	소방국장	○ 현장 접근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선 설치·운영→경찰청 협조 ○ 긴급구조기관의 요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인력 관리 ○ 공동지휘 통신망 구성 ○ 종합적 구조전략을 위한 전문기술팀 편성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기관과의 대책회의 ○ 사태별 전문구조요원 적정 배치 ○ 헬기 연락관 지정 공조체제 유지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보건소, 대한적십자사등 협조 ○ 긴급구조장비 물품등 수급관리 ○ 구조구급요원, 자원봉사자 생필품, 숙식지원 요청 ○ 긴급구조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출입통제
도	소방본부장	
시군	소방서장	

4) 시 『현장지휘소』

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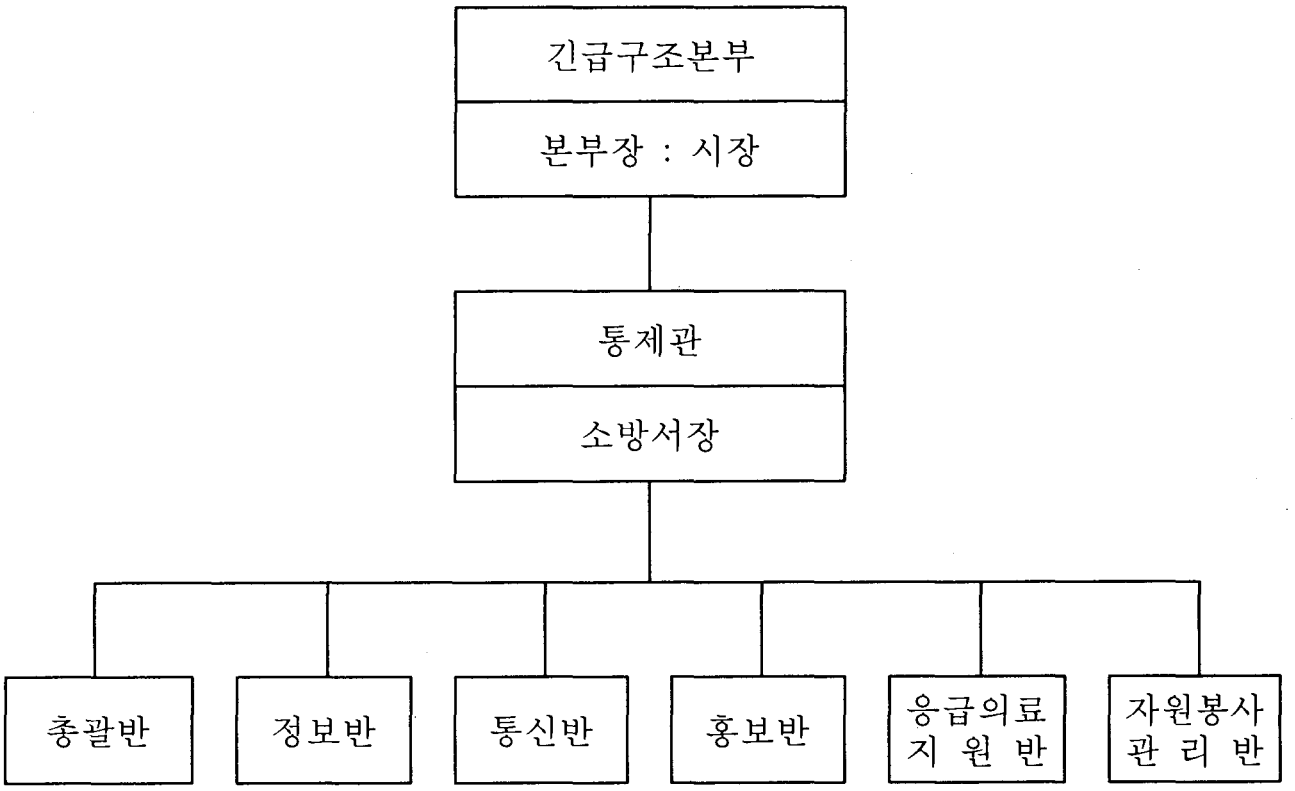

※ 경찰, 군등 긴급구조기관의 현장지휘소는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경찰·군 연락관은 현장 출동부대중 상위부대의 지휘관 또는 참모

○ 각 담당반장은 소방서의 분야별 해당간부가 담당

나) 시장이 현장에 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 구조본부장인 시장은 현장지휘본부장을 통하여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휘 통제

○ 긴급구조본부 구성요원은 시장의 분야별 해당 참모가 담당하며 지휘본부장(통제관)산하 각 담당관의 업무 지원

※ 보도지원반, 자원봉사반장은 시장 판단하에 시의 간부가 업무대행 가능

다) 각 반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총 괄 반	○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본부장 보좌 ○재난원인 조사 및 재해실태 파악 ○소방활동 상황파악 및 2차 재해발생위험 파악 ○재해경과의 기록 및 상황보고
정 보 반	○관계자료의 확보 및 대상물 실태 파악 ○인명위험 및 재해의 확대위험 파악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정리 및 종합등 ○사상자 발생요인 파악
통 신 반	○현장지휘망 및 유·무선 ○명령전달, 통신연락 및 관계기관과의 구축
홍 보 반	○현장상황 촬영 기록보존 ○기타 언론관련 업무
응급의료지원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긴급의료제공기관과의 협조등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사상자 처리
자원봉사 관리반	○자원봉사자의 등록접수 ○민간전문가등 직할지원대의 관리 및 소모물품의 관리 및 배포등

바. 장비 및 인력동원

1) 유관기관 정보관리(평상시 관리체제 유지)

가) 지원출동 가용자원정보관리 및 협조체제 구축

○ 구조요원, 경비요원, 중장비조작요원

○ 소요 중장비 보유업체 파악 관리

○ 의료기관 현황, 응급병상수 및 전문과목 현황 파악

나) 전문기술단체, 학회등 관리

○ 건축, 토목, 방사능 기술등 전문지식 소유자(단체)

○ 폭발물, 특수위험물 자격자등

2) 관계기관, 단체와의 연계

○ 관계기관, 단체의 협조 및 정보필요시 → 출동요청

○ 전문지식, 미소유 특수장비 필요시 → 지원요청

예) 사고종별 전문기술자, 첨단 구조장비등

- 토사 또는 건물붕괴 : 토목·건축기술자, 토목기계장비
- 승강기관계사고 : 승강기회사의 기술자
- 진입불능인 건물내 사고 : 경비용역 회사원
- 인쇄기 등의 사고 : 기계제조회사의 기술자
- 전기사고 : 전기안전공사, 전력회사의 기술자
- 가스사고 : 가스공사기술자 또는 안전공사요원등
- 폭발물·위험물사고 : 폭발물·위험물 처리업자, 기술자

3) 자원봉사자 현장관리 강화

○ 접수창구 일원화 전문분야별 활용방안 강구

○ 기능별 현장 지휘책임자 지정 통제

○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숙식 및 휴게공간 제공

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1) 응급의료소 설치장소 선정 요건

○ 2차 재해위험이 없는 장소

○ 구급대 등의 진입, 이송로를 별도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지형이 평평하고 쉽게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 군중에 의한 혼란의 염려가 없는 장소

2) 부상자 카드 작성 활용

○ 다수 부상자 사고는 사회성과 뉴스성이 큼

→ 혼란한 초기단계부터 부상자 관리 중요함

○ 부상자카드 작성으로 부상자 인적사항, 이송병원등 정확관리

○ 매스컴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모든 소방활동에 긍정적인 큰 영향을 줌

3) 부상자 조치(현장 전문의 긴급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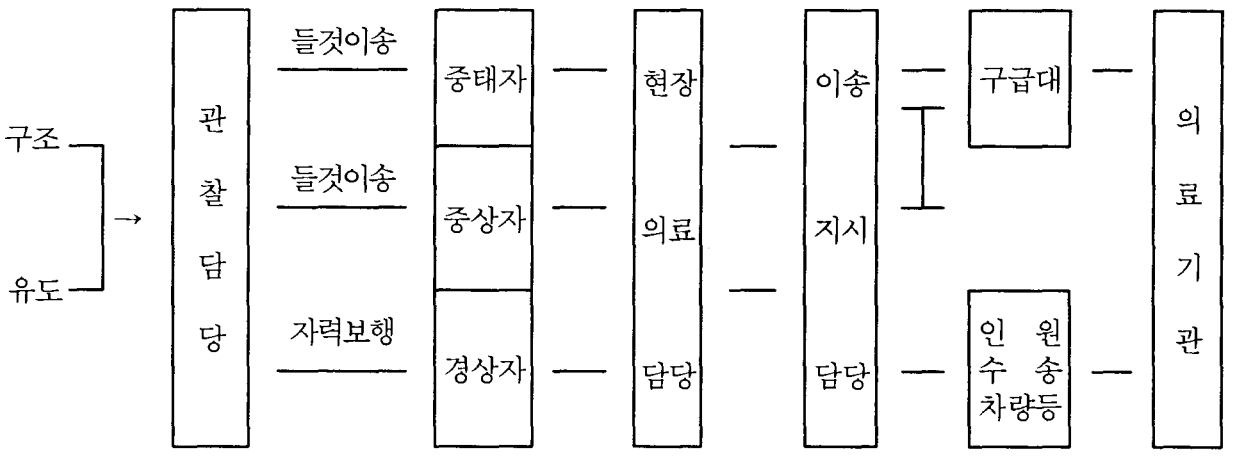

아. 현장보도

1) 주민에 대한 홍보

○ 위험정보의 통보, 소방활동에의 협력 요청

○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부상자 소재 제공

○ 경계구역, 교통통제 등의 통보와 협력 요청

○ 교통규제, 경계구역 등의 해제통보, 협력 요청

○ 소방대의 활동내용, 구조상황등

2) 보도관계자에 대한 홍보

○ 보도의 통합운용(보도지원반장이 정례 또는 수시 브리핑)

○ 보도진에 대한 협조 요청(구조 구난지역 통제선 출입제한등)

○ 현장지원 협조(통제선 출입시 완장 패용, ID카드 발행등)

○ 출동인원 장비등, 구조·구급활동사항 및 향후 구조활동 방향

○ 보도발표시 필요한 사항

- 사고일시, 장소, 책임자, 사고개요, 부상자, 사고상황등
- 부상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부상정도, 수용병원등)
- 기타 참고사항

3. 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가. 사고대책본부 설치

○ 설치시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의 효과적 수행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었을 때

○ 조직체계

- 본부장(시 장) : 본부의 의장이 되며 본부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
- 차 장(부시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
- 대책반장(국장) : 5개 책임관으로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업무 분담
  - 총 괄 반(건설사업소장) : 대책본부 운영관리 총괄
  - 의료대책반(복지환경국장) 수용, 의연금, 구호물자, 의료대책반 운영등
  - 복구지원반(도시교통국장):피해복구에 따른 장비, 인원관리 및 계획수립등
  - 보상반(총무국장) : 피해보상 협의조정, 예산회계에 관한사항등
  - 홍보반(공보담당관) : 언론보도, 주민계도등
- 실무반(과장) : 14개반으로 구성 대책반을 보조하며 반원의 통솔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 당해 재난과 관련된 업무협의
  -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 유관기관 협조사항 정리
- 재난의 유형별, 규모에 따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및 중앙사고 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장·단기대책 마련
- 지역상황 및 사태진단에 따라 장비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나. 실무반 편성

○ 총괄지휘 : 시장 (하수과)

- 상황실운영 및 근무조 편성 : 하수과
-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관리 : 하수과 (소방서 협조)
- 재정대책 : 기획예산과

○ 인명구조 및 의료 : 긴급구조구난본부 총괄·지휘

- 현장인명구조 : 소방서(군부대, 경찰, 민간단체 지원)
- 부상자 치료 : 보건소(현장치료→병원후송)
- 사상자 처리 : 보건소(병원안치, 영안실 확보)
- 실종자 수색관리 : 소방본부, 군부대, 경찰서

○ 현장수습·복구 : 현장상황반 설치·운영

- 응급복구 : 도시교통국(군부대, 경찰, 민간단체 지원)
- 장비, 물자지원 : 도시교통국
- 소방대책 : 소방서
- 전기공급 :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 통신대책 : 한국전기통신공사 안양, 평촌전화국
- 위험물처리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 교통통제 및 소통대책 : 경찰서
- 방범, 질서유지 : 경찰서
- 현장, 근무자 급식 : 총무과

○ 이재민 구호

- 이재민 수용, 구호, 급식 : 사회복지과(학교, 교회, 공공기관, 적십자사, 부녀회 지원)
- 방역, 보건, 의료 : 보건소
- 급수대책 : 상수도사업소

○ 언론·홍보대책

- 언론대책 및 주민홍보 : 공보담당관실
- 주민정보 신고사항 처리 : 공보담당관실

다. 재난수습복구 기본사항

○ 대응방향

-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지역사고대책본부 책임하에 추진
-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사고대책본부 또는 관련부처등과 협의 대책강구
- 수시 대책위원회 소집, 수습대책 및 관련기관 협조방안 협의
- 대책본부상황실과 현장과의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적시 적절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지원

○ 구조활동 및 구호대책 추진

- 긴급구조활동 전개
- 사상자 병원 분산수용 및 신원파악, 사망자 장례지원 및 부상자 관리등
- 기존 수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확보, 생활필수시설 설치
- 응급구호용품 긴급활용 및 급식 조치, 방역소독

○ 현장주변등 질서유지와 교통대책

- 사고현장, 후송병원, 주요통행로 주변 원활한 교통로 확보
- 보도진 등에 의한 인명구조·긴급복구 지연사태 예방
- 대중교통 노선의 조정 및 교통소통대책 마련

○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피해시설 응급복구 추진,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등 우선 응급복구
- 합동조사반 편성, 사고원인·피해내용조사 및 항구복구대책 추진

○ 상황의 기록 유지 및 보전 철저

- 발생 → 수습 → 복구등 일련의 상황관리일지
- 회의보고 및 지시문어, 언론보도내용, 현장사진등

4. 災難恒久 復舊對策

가. 피해조사 및 재난원인 분석

○ 사고대책본부, 관계기관 및 사계전문가(지역재난전문위원회)등으로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

○ 사고원인규명, 분석 및 근원적 사고재발방지대책 추진

나. 피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항구복구계획 수립, 복구 추진

○ 피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항구복구계획 수립, 복구 추진

- 공공시설 사고관련 주무부서 중심, 유관부서 합동추진
- 예산확보대책 강구(국비, 지방비등)
- 민간시설 : 소유자 복구 능력, 다각적인 복구대책 강구

○ 피해보상(배상) 및 치료대책

- 보상(배상)업무 추진절차

재난복구 및 보상(배상) 계획수립 → 재난사고 조사 분석 → 보상(배상) 기준설정 → 보상(배상) 협의추진 → 보상(배상)금 지급·정산

- 단계별 표준 행동요령
  - 재난복구 및 보상(배상)계획 수립 : 재난복구 및 수습, 피해자 보상, 지역안전대책 수립등
  - 재난사고 조사·분석 : 인명 및 재산피해, 이재민현황, 책임소재, 보상능력 유무 판단등
  - 보상(배상)기준 결정 : 대상자 파악, 배상내용 결정, 금액산출
  - 보상(배상)협의 추진 :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당사자 선정, 범위, 금액, 방법등 결정
  - 보상(배상)금 지급·정산
    - ·보상(배상) 협의결과에 따라 보상(배상)금 지급
    - ·보상(배상)금 확정후 정산 지급
    - ·사고책임자 규명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 행사
- 치료대책 : 경상자 치료대책, 중상자 장기치료 대책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

배상금 지급신청	○ 주민등록등본 및 소명자료 첨부
↓	
배상인원등조사	○ 배상발생원인 확인 조회 ○ 기타 자료조사
↓	
배상심의회심의	○ 배상결정서 작성 ○ 배상결정 통지
↓	
배상결정동의 및 지 급 청 구	○ 배상결정동의시 동의서 제출 및 지급청구 ※ 결정에 불복시 부동의서 제출
↓	
배 상 금 지 급	○ 청구일부터 2주이내 배상 (국방부, 도등)
↓	
재 심 신 청	○ 기각일부터 2주이내 신청
↓	
구 상 권 행 사	○ 가해 공무원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

※ 국가 또는 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민사법에 따라 보상업무 추진

국가배상법 등의 배상·보상기준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적 용 대 상	배 상 · 보 상 기 준	비 고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상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도로·하천·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망자】** ○장례비 - 1일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 ○유족배상(일실수입) - (월수입-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생활비용 • 독 신 : 40% • 부양가족1인 : 35% • 부양가족2인 : 30% • 부양가족3인 이상 : 25% ○위자료 - 본 인 : 800만원 (세대주인 경우 50%가산) - 배우자 : 본인의 1/2 - 부 모 • 미혼자의 부모 : 본인의 1/2 • 기혼자의부모 : 본인의 1/4 - 자 녀 : 본인의 1/4 - 형 제 : 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기타 직계 존비속 : 피해자 본인의 1/8 주) 1. 피해자 본인의 1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감액함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범위안에서 위자료를 가감함.	【배상금 지급 절차】 <배상금 지급신청> - 배상심의회 <심의·결정> - 증인신문 감정·검증등 - 심 의 - 4주일이내 배상결정 <결정서의 송달> - 심의회의 배상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이내 결정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함. - 배상금 지급 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송달된 날로 2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 <신청인의 동의> <배상금 지급> - 지급기관 : 해당지방 검찰청등 -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

구분	적 용 대 상	배 상 · 보 상 기 준	비 고
		【부상자】 ○요양비 : 병원치료기간 중 모든 치료비 ○개호비 :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 임금으로 부상자의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내(완치후 신체의 장해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 ○위자료 - 본 인 : 800만원×노동력 상실율 (세대주인 경우 50%가산) - 배우자,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1/2 - 부모 · 자녀 : 피해자 본인의 1/4 - 형제자매, 동거인인 시부모 · 장인 · 장모 · 기타 직계존비속 : 피해자 본인의 1/8 주) 1. 신체장애가 없는 상해의 경우 - 상당성 있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에 5,000원, 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신체장애의 경우 - 피해자 본인이 1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 감액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범위안에서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음	※ 배상결정의 효력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체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구분	적 용 대 상	배 상 · 보 상 기 준	비 고
		○ 일실수입 - 요양기간중 수입손실은 손실액 전액 -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보수액 ×장애율×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 취업가능기간,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율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 장례비(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유족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1급, 1,340일분~14급 50일분 ○ 요양급여 : 통상 의료비의 전액 ○ 휴업급여 : 요양기간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위자료 지급 규정은 없음	※ 정부가 행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 보상기준:현행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동일 (위자료 및 생계비율 인정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과 대동소이함)
	○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 재해보상 - 제외되는 선박 - ①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②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 장례비 :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 ○ 유족보상 - 직무상 사망한 경우 : 승선평균 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사망한 경우 : 승선 평균 임금의 1,000일분 ○ 장애보상 : 산업재해보상 보호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신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 상병보상 · 4개월 초과 : 매월 통상임금의 70%상당액 보상	

국가배상법 배상기준과 법원판례와 비교

구분	국가배정법 배상기준	법 원 판 례	비 고
장례비	- 1일남자 평균 임금의 100일분	- 임중에 의함 통상, 입증곤란으로 100만원~15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	-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이 피해자에게 다소 유리
일실수익	- 중간이자 공제방식 : 라이프니츠식(복리공제) - 생활비율 • 독 신 : 40% • 부양가족1인 : 35% • 부양가족3인 이상 : 25%	- 중간이자 공제방식 : 호프만식 (단리공제) - 생활비율 • 입증에 의하고 있으나 통상 입증상 곤란으로 1/3에서 인정처리하거나, 독신의 경우 재판부가 40%로 직권 평가하는 예도 있음.	- 법원의 인정기준이 피해자에게 유리 ※ 평균임금 100만원 생활비율 1/3인 경우 두계수의 최고 차액은 약 2,850만원임 (이유 : H계수 240이상은 불인정) - 국가배상법의 배상 기준이 보다 합리적임. (일본 판례도 유사)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이 유리함
위자료	- 청구권자별로 위자료 정액화 • 본 인 : 800만원 (세대주 본인은 50%가산) • 자 녀 : 본인의 1/4등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범위안에서 가감함	- 사무실 세대주 사망인 경우 • 위자료 총액이 3,000~3,500만원 수준	- 법관의 개인차에 의한 주관성, 자의성의 배제, 재판의 예측성, 동종다량사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위자료액의 정액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유력하게 대두됨 -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이 합리적이고 탄력적 조정도 가능함.

5. 災難事故 收拾事例

○ 안양6동 건축공사 현장 인근주택 붕괴사고

구 분	내 용
1. 사고개요	
가. 사고일시 및 장소	○ '96. 8. 28 18:00경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나. 사고원인	○ 신축공사장 지하 10m정도 터파기 공사중 토류벽이 토압에 밀려 인근지반 및 건축물 붕괴
다. 피해상황	
○ 인적피해	○ 없 음
○ 물적피해	○ 건축물 - 완파(1동) : 8가구 13세대 45명 - 반파(2동) : 7가구 16세대 36명 - 붕괴우려(4동) : 18가구 22세대 76명
2. 사고수습 현황	
가. 응급조치	○ 주민대피 유도 : 12:00~17:00 ○ 시 사고대책본부 설치 : 8. 28 19:30 ○ 공사장 토류벽 H빔 보강 : 코너스트러트, 띠장등 ○ 상수도관손괴 응급조치 : 8. 28 22:50단수(131세대) ○ 하수구 유입차단 및 공사장 토사 되메우기 ○ 이재민 구호 등 조치 - 이재민 수용 : 45세대 146명 인근여관수용 등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계측기 설치(그간 63회 분석) ○ 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현장초소 설치(순찰)
나. 배상 및 보상 ('96. 9. 20현재)	○ 보상대책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 ⇒ 현재까지 보상실적 없음 ○ 전세입주자의 이주대책 추진(20세대중 13세대)

○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균열 사고

구 분	내 용
1. 사고개요	
가. 사고일시 및 장소	○'97. 7. 23 15:57
	-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박달교(램프C교)
나. 사고원인	- 경수산업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T형 교각 두부 인장철근
다. 피해상황	설계오류(정착장 부족)
○인적피해	○없 음
○물적피해	○T형교각 두부 V형으로 파손
○기 타	○경수산업도로 교통통제('97. 7. 23 15:57 ~ 7. 24 06:15)
2. 사고수습 현황	
가. 응급조치	○소방서 상황실에서 최초 상황접수(7. 23 16:06)
	○관련 공무원 현장 도착(7. 23 16:15)
	○철골을 이용한 임시 지지대 설치 완료(7. 24 06:10)
	○경수산업도로 차량통행 재개(7. 24 06:15)
나. 항구조치	○대한토목학회 정밀안전진단(7. 31 ~ 9. 30)
	○교각 재시공을 위한 가벤트 설치(8. 20)
	○사고 교각 재시공 및 차량통행 재개(11. 30)

여 백

Ⅴ. 分野別 災難對應對策 推進

1. 火災事故
2. 油類事故
3. 가스事故
4. 交通事故
5. 建築工事場, 老後建築物事故
6. 道路·橋梁事故
7. 上水道事故
8. 下水道事故
9. 산불事故
10. 食品衛生事故
11. 水質 汚染事故
12. 傳染病事故
13. 遊技施設 安全事故
14. 競技場事故
15. 墓地 崩壞事故
16. 航空機事故
17. 공동구 사고

여 백

Ⅴ. 分野別 災難對應對策 推進

1. 火災事故

○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 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화재사고 원천봉쇄
○ 만약의 화재시에는 완벽한 진압작전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추진방침

○ 소방서장 책임하에 현장행정 수행
○ 철저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강구
○ 신속한 사태대응 및 수습

2) 예방대책

가. 특별 소방안전점검

○ 회수 및 시기 : 년 2회(4, 10월)
○ 대상 : 30개소(현황별첨)
○ 방법 :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전문분야 합동점검
○ 중점점검사항
- 피난시설 설치 유지상태
- 피난, 방화시설 설치 유지상태
- 전기, 건축, 가스 등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정밀조사
- 화재진압활동상 장애요인
- 기타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나. 화재예방 경계활동 강화

○ 취약지역 기동순찰 실시 - 1일 2회

○ 화재취약대상 간부 지도책임제 실시 - 월 2회

○ 화재취약시기 비상경계근무 실시 - 이상 기상시 등

○ 화재예방환경조성 - 불조심 표어, 포스터 제작 배포

다. 화재진압태세 확립

○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 2개소

○ 소방훈련 실시

- 출동훈련 1일 2회이상, 도상훈련 월1회이상, 합동훈련 년1회

○ 차량, 장비 정비철저 - 일일, 주간, 월간 정비

○ 특수 화재진압훈련 - 월1회 이상

○ 소방응원출동 협정 체결 - 군포소방서외 7개시, 군부대2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월1회 213개소

라. 소방상황실 운영

○ 운 영

- 근무인원 - 5명
- 근무방법 - 1일 5명씩 격일제 근무(09:00～09:00)
- 본부직원 상황실장 근무 - 1일 1명

○ 임 무

- 화재의 신속접보 및 보고
- 대형 및 주요화재시 소방응원조치 등 상황대처
-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접보 및 보고
- 통신 기자재 관리 유지
- 기타 긴급 지시사항 이행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안양소방서

○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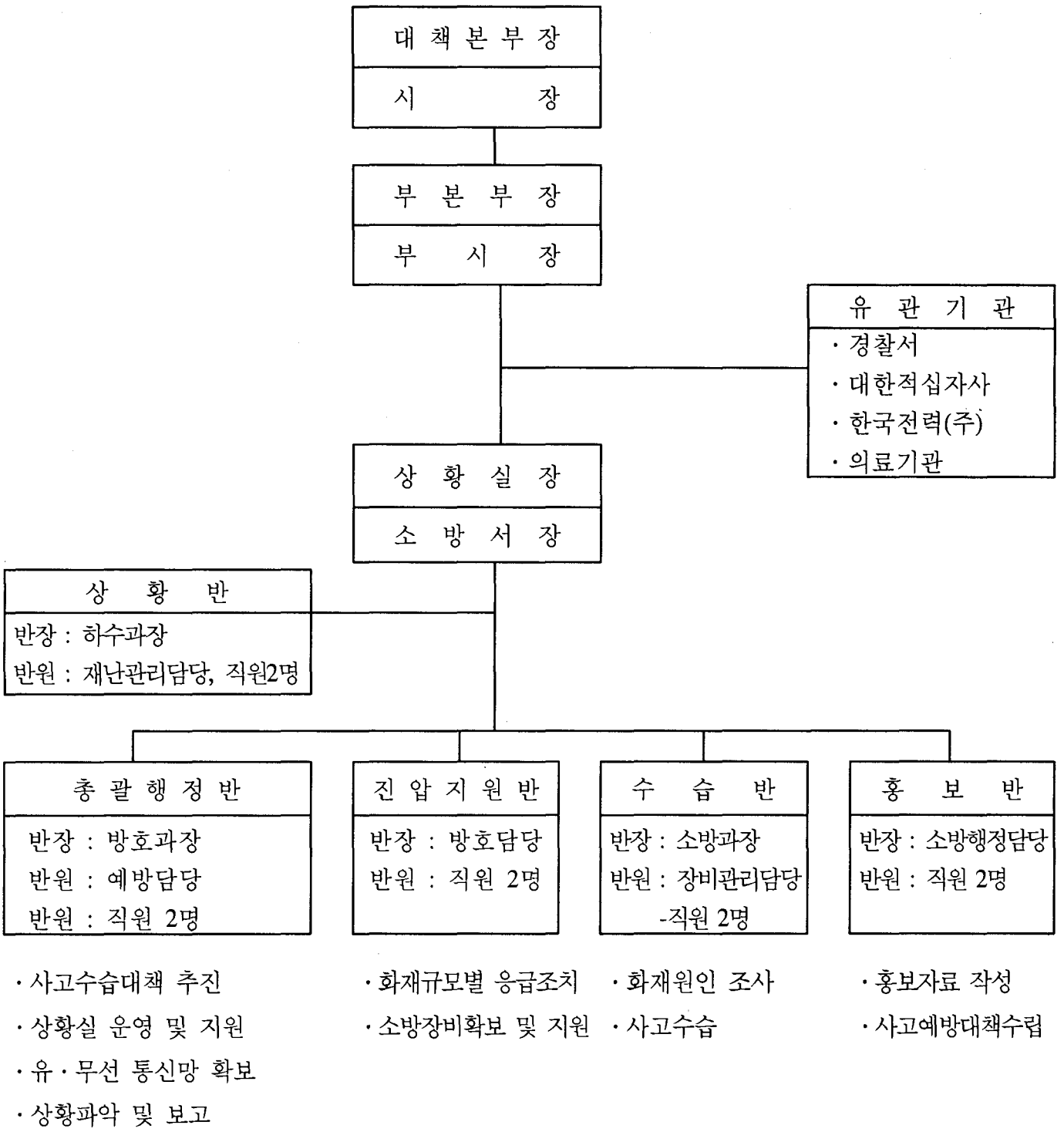

나. 소방상황처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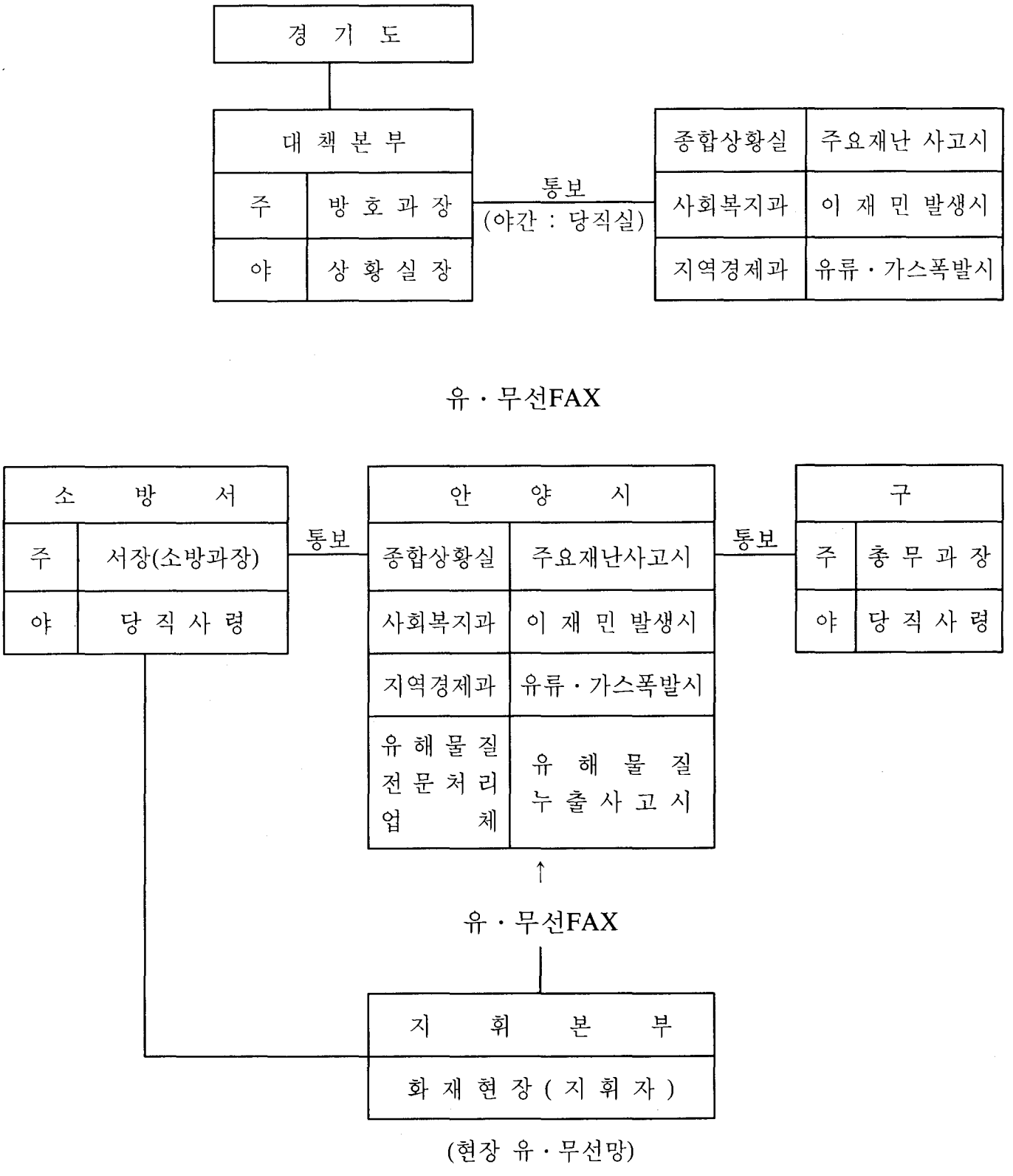
경 기 도
대 책 본 부
주
방 호 과 장
야
상 황 실 장
통보
(야간 : 당직실)
종합상황실
주요재난 사고시
사회복지과
이 재 민 발생시
지역경제과
유류 · 가스폭발시
유 · 무선FAX
소 방 서
주
서장(소방과장)
야
당 직 사 령
통보
안 양 시
종합상황실
주요재난사고시
사회복지과
이 재 민 발생시
지역경제과
유류 · 가스폭발시
유 해 물 질
전 문 처 리
업 체
유 해 물 질
누 출 사 고 시
통보
구
주
총 무 과 장
야
당 직 사 령
유 · 무선FAX
지 휘 본 부
화 재 현 장 (지 휘 자)
(현장 유 · 무선망)

다. 소방응원 협정 체계

구 분	대 상 명	비 고
군 부 대	공군8249, 육군1580부대	
자 위 소 방 대	동양나이론(주), 대한페인트 · 잉크(주)	
소 방 서	수원, 과천, 광명, 부천, 성남, 안산, 군포	
관 외 소 방 서	서울 구로	

화재발생 현황

○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유형 / 년도별	계	실 화	방 화	미 상	기 타
계	2,014	1,367	243	135	269
1991	168	129	2	-	37
1992	156	109	15	-	32
1993	168	69	18	27	54
1994	203	123	31	20	29
1995	241	149	40	4	48
1996	286	199	26	6	55
1997	263	214	36	13	-
1998	312	243	50	19	-
1999	61	43	8	10	
2000	92	48	5	27	38
2001	64	41	12	9	2

○ 원인별 발생 현황

원인별 / 년도별	계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난로	아궁이(주방)	담배	성냥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계	1,950	671	37	46		38	4	225	16	61	137	231	484
1991	168	58	11	4	-	4	-	22	-	4	12	2	51
1992	156	38	1	4	-	2	1	19	1	7	16	15	52
1993	168	47	1	1	-	4	1	11	3	5	10	18	67
1994	203	82	6	6	-	3	-	27	3	7	9	31	29
1995	241	93	3	3	-	11	-	20	3	12	8	40	48
1996	286	97	2	7	-	9	2	41	1	15	24	26	62
1997	263	85	1	9	-	3	-	35	3	2	23	36	66
1998	312	115	7	5	-	2	-	35	2	9	26	50	61
1999	61	25		5				8			5	8	10
2000	92	31	5	2				7			4	5	38
2001	64	22	3	2			9					12	16

□ '2001년 현황

○ 인 명 : 73명(사망5, 부상68)

○ 재 산 : 1,089백만원(동산 · 부동산포함)

대형화재 취약지대상

순번	대 상 명	위 치	대표자	건물현황		특수장소 구 분	관리 구분	비 고
				층수	연면적 (㎡)			
1	코암관광호텔	안양6동 431-10	이영규	5/1	2,091.54	호 텔	2급	
2	뉴안양관광호텔	안양6동 395-2	김병대	10/3	6,465.00	〃	2급	
3	삼원프라자호텔	안양1동 674-251	백낙금	8/2	6,879.71	〃	2급	
4	알 프 스 호 텔	호계3동 972-8	김완기	6/1	2,479	일반숙박	2급	
5	도정오피스텔	안양8동 548-46	도희연	19/6	17,020.88	오피스텔	1급	
6	호 정 타 워	안양6동 529-13	문연식	18/4	25,582.51	〃	1급	
7	중 앙 시 장	안양4동 676-44	김진동	3/1	7,415.59	시 장	2급	
8	(주) 세반평촌	달안동 1109-3	강법명	5/2	28,923.00	백화점	1급	
9	뉴코아백화점	호계동 1040-1	(주)뉴코아	12/6	63,106.24	백화점	1급	
10	킴스아울렛 백화점	호계동 1039-3	(주)뉴코아	12/7	69,632.62	백화점	1급	
11	안양본백화점	안양1동 668-33	이종철	6/2	8,384.18	백화점	2급	
12	2001아울렛	안양4동 627-187	김희준	7/4	35,415.71	쇼핑센타	1급	
13	무방 E-마트	비산2동 411-5	이동근	4/5	27,748.53	쇼핑센타	1급	
14	유천안양월드	안양동 900-10, 57	김병학	7/5	28,807.98	쇼핑센타	1급	
15	중앙지하상가	안양4동 1189-1	전형수	0/1	2,795.80	지하상가	2급	
16	역전지하상가	안양1동 1189-1	채선준	0/1	15,655.00	지하상가	1급	
17	대한페인트잉크(주)	박달동 615	한영재	3/1	35,198.00	위험물 제조소	1급	
18	삼 성 물 산	관양동 922	신세길	5/1	27,007.09	공 장	1급	
19	효 성 T & C	호계동 183	조석래	8/1	76,309.56	〃	1급	
20	킴스아울렛	호계동 1039-3	(주)뉴코아	12/7	69,632	백화점	1급	
21	대 영 모 방	안양7동 196-121	김영식	3/1	8,296.46	〃	2급	
22	동화약품 (주)	안양7동 189	이우용	6/1	29,091.00	〃	1급	
23	조 일 제 지	호계1동 615-1	배영환	3/1	18,275.36	〃	1급	
24	LG 전 선	호계동 555	권문구	3/1	64,098.00	〃	1급	
25	크라운제과	관양동 810	윤영주	4/1	33,450.62	〃	1급	
26	대 한 전 선	관양동 785	유채준	14/1	88,296.00	〃	1급	
27	동일테크노타운C	관양동 889-1	고재일	7/2	22,209.13	〃	1급	
28	유천팩토피아	안양7동 196	문상학	8/3	72,317.04	공 장 (아파트형)	1급	
29	삼우프라자	관양동 1505-25	오규원	10/2	5,876.94	복합건물	2급	
30	천 양 유 통	안양1동 674-62	홍천표	6/1	4,160	복합건물	2급	
31	LG POWER(주)	관양동 1014-1	조방래	3/1	22,234.15	업무시설	1급	

※ 선정기준 : 숙박시설(호텔, 5층이상여관), 판매시설(시장, 백화점 6,600㎡이상), 공장(15,000㎡이상) 11층이상 고층건물,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

2. 유류事故

○ 위험물 사용물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유류 사고를 예방하고

○ 만약의 유류로 인한 사고시는 신속한 대응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추진방침

○ 철저한 유류사고 예방대책 강구

○ 신속한 사태 대응 및 수습

2) 예방대책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석유저장소 점검

○ 시　　기 : 2회이상(상 · 하반기)

○ 주　　관 : 지역경제과(협조 : 소방서)

○ 대　　상 : 관내 영업중인 주유소 55개소, 석유류 저장판매업소 45개소

○ 점검내용

- 케노피 및 고정주유설비 주변의 가연성 장식물
- 고정주유설비 주변 전기시설의 설치
- 고정주유설비 주변에 휴지등 가연성 경품의 적치행위
- 석유등 제품 적치행위
- 주유소내 가스시설 용기보관 상태 및 호스연결상태
- 케노피 기둥 · 상부 · 방화벽등을 가연성 재료로 피복

나. 무허가 석유판매업소 단속

○ 시　　기 : 년 1회

○ 단속대상 : 무허가 석유판매업소

- 주유소, 저장소, 석유일반 판매소, 무허가 위험물 이동탱크

○ 단속방법

- 특별단속 : 취약시기 불시 단속
- 평시단속 : 주유시설 점검시와 병행

○ 중점단속내용

- 무허가 위험물 저장·운반행위 등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지역경제과 (협조 : 안양소방서)

○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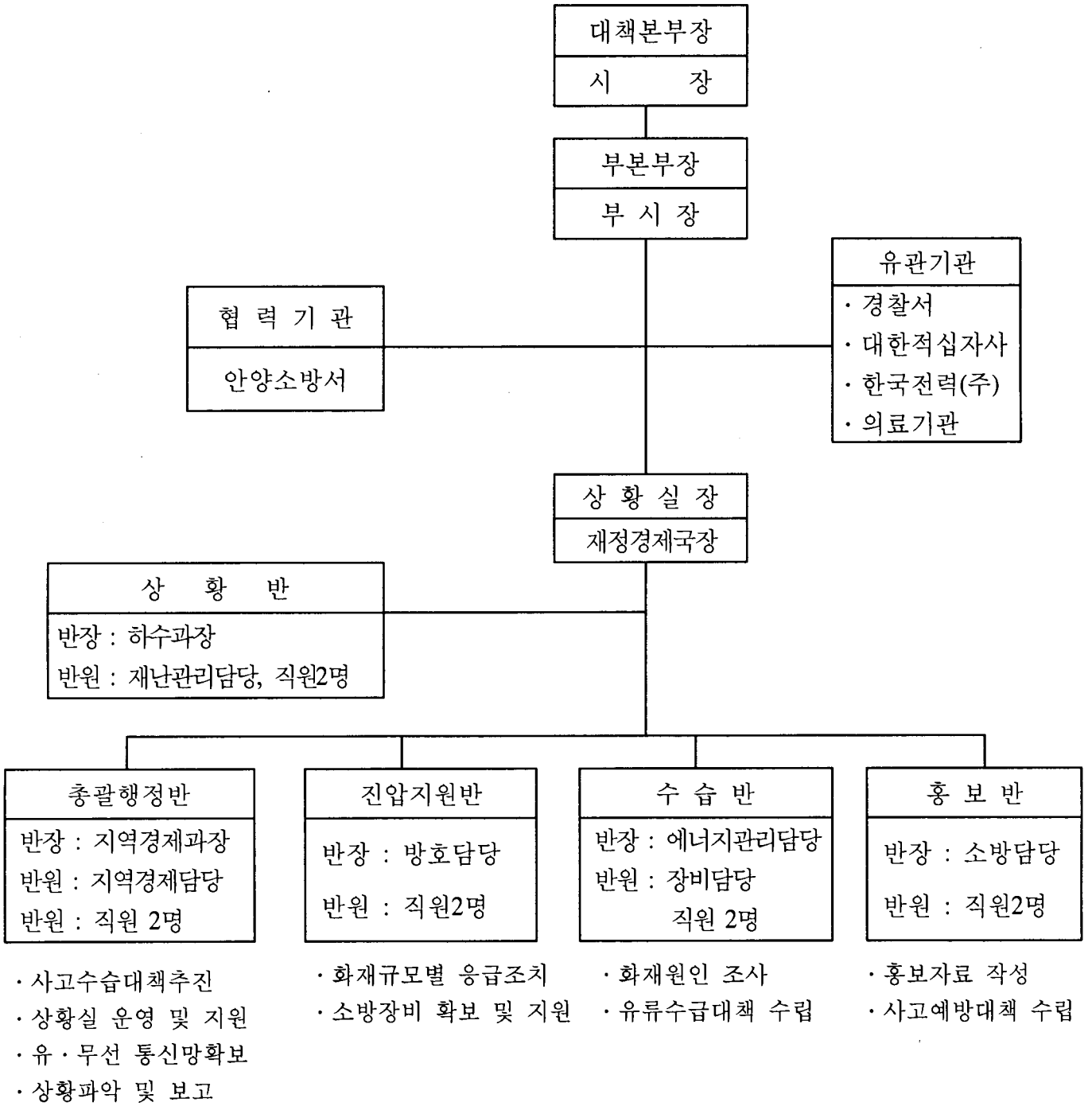

대량위험물 제조소 현황

대 상	위 치	대표자	위 험 물 허 가 량		소방조직	
			품 명	용 량	소방차	조작인원
(주)디피이아이	박달동 615	한영재	4류(휘발유외 87종)	3,000이상 ~10,000미만	화학1대	30
효성 T&C	호계동 183	조종래	4류(경유외 32종)	3,000이상 ~10,000미만	화학1대	7
LG POWER(주)	관양동 1014-1	조방래	4류(경유외 2종)	3,000이상 ~10,000미만	포 터 트레일러	5

3. 가스事故

○ 대형가스시설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로 대형가스사고 사전예방
○ 유사시 초기 수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

1) 추진방침

○ 엄정한 가스시설 법정검사 및 지도, 점검으로 사고요인 발본색원
○ 유관기관간 종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으로 가스사고의 조기수습
○ 유사시 가스공급 중단으로부터 주민불편 해소

2) 예방대책

가. 가스공급시설 법정 검사

○ 대 상 : 6개소(LPG 충전소5, 도시가스 회사 1)
- 도시가스시설 : 정압기 49개소
- LPG충전소 : 자동차 3, 복합 2(용기 · 자동차)

○ 정기검사 : 년1회 (가스안전공사)
○ 주요검사항목
- 지하배관 및 저장탱크의 기밀유지상태 및 가스누설 여부
- 지하배관 및 저장탱크의 비파괴 검사
- 시설의 전기적 절연 및 방폭성능 유지여부
- 기타 법적기준 적합여부등

나. LPG충전소 지도 점검

○ 시 기 : 2002. 6월, 12월
○ 방 법 : 합동 지도, 점검반 편성운영 (도, 시,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 중점사항

- LPG 공급시설의 법적시설 적합여부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안전관리책임자 상주여부
- 미검용기 충전 여부
-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 실시여부

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도 점검

○ 시　　기 : 2002. 3월, 6월

○ 방　　법 : 도, 시, 가스안전공사 합동

○ 점검사항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법적시설기준 적합여부
- 집중호우시 지반붕괴 또는 침하로부터 배관의 안전성
- 각종공사(지하철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굴착지점내 배관의 안전성
- 각종 공급시설,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여부 및 관리상태
- 노후 공급시설 방치여부 등

라. 조치사항

○ 도시가스회사별 주요지역에 비상공급설비 설치

○ 도시가스회사간 간선배관망 비상공급설비 설치

○ LPG 사용가 복합용기 설치유도 및 장려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지역경제과

○ 설 치

- 시 : 사고수습 대책본부 및 복구반
- 운영 : 대형 및 일반가스사고 발생시 운영

○ 구 성 : 시본청 및 협조기관 (별첨 1 참조)

- 본 부 장 : 시 장
- 부본부장 : 부시장
- 상황실장 : 재정경제국장
- 대 책 반 : 3개반 (총괄행정반, 수습반, 상황전파반)

○ 기 능

- 총괄지휘 (긴급출동반, 시 사고수습대책본부, 복구반)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인원, 장비 동원
- 기타 사고원인, 피해, 복구상황 파악 및 조치계획 수립

나. 사태발생시 신고체제 확립

○ 가스사고 신고센터 설치운영

- 도 : 공업지원과, 종합상황실
- 시 : 지역경제과, 종합상황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031-254-0019)
- 삼천리도시가스 (031-454-3002)
- 긴급출동반이 편성된 가스공급사 (4개반 8명)

○ 신고 및 조치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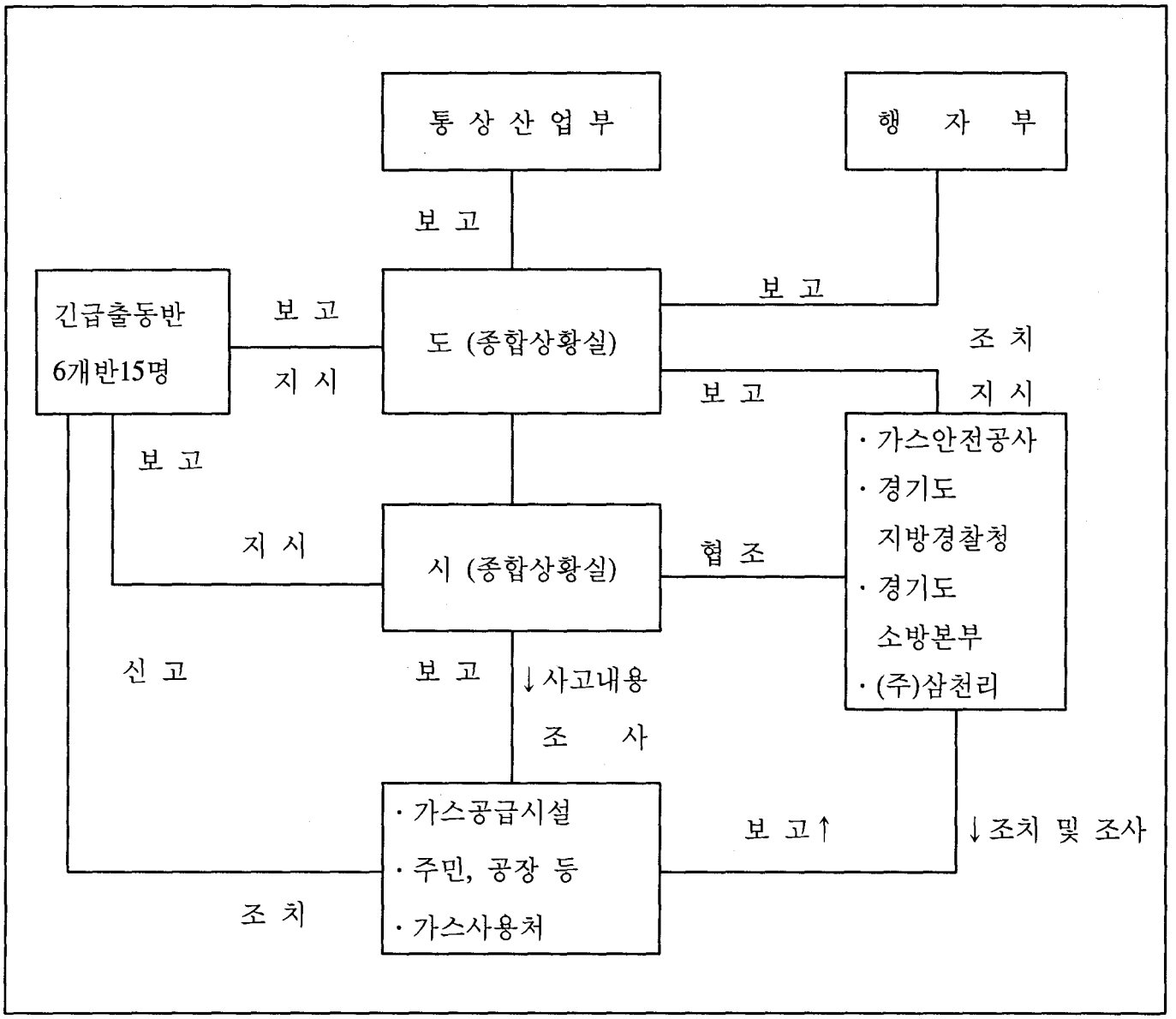

┌ 가스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 - 별첨 1참조

└ 대형가스사고 우려시설 내역 - 별첨 2참조

○ 임 무

- 단계별 조치 (행동) 사항
  - 1단계 : 사고 발생후 ~ 2일 이내

- 행정반 -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 피해주민 대피 및 후송조치
  - 2단계 수습, 복구대책 수립
- 수습반 - 시대책본부, 복구반, 긴급출동반 총괄지휘, 통솔
  - 사고현장 피해인명 구출
  - 사고현장 정리, 정돈
  - 가스누설차단 및 가스 재폭발 방지조치
  - 기타 피해범위 확산방지 및 요긴급사항 조치
- 홍보반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인력, 장비동원
  - 각종 동향파악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 가스시설 안전검사 및 복구활동 저해요인 조사
  - 가스사고 수습 및 복구요령, 기술지원
- 안양경찰서 - 인명 및 재산피해 조사
  - 사고원인조사, 주민동향 관리
  - 사고지역 경계강화
- 안양소방서 - 복구요령 및 기술, 장비, 인원지원
  - 화재진압
- (주)삼천리 - 긴급복구반 현장출동
  - 인명구조 및 사고현장 복구
  - 중단된 가스공급 재개 및 피해주민 보상대책마련

- 2단계 : 사고발생 2일 이후 ~ 복구 완료시까지

- 행정반 - 1단계 수습결과에 따라 세부복구계획 수립
  - 주택 사용불가 가구의 임시 주거지 마련 및 7일간의 기초 생필품 지급
  - 관할 보건소활용 부상자치료 및 의약품 지급
  - 사상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
  - 기타 원활한 복구를 의한 유관부서(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자체복구가 불가한 유관부서(기관)협조가 필요한 사항)
- 수습, 홍보반 - 주택복구작업 지원 및 자재수송
  - 급수 및 하수, 전기시설 복구지원
  - 각종 가재도구 정리, 정돈
  -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자연공급 추진
  - 기타 주거환경복구 및 개선사항 지원등

<별첨 1>

가스사고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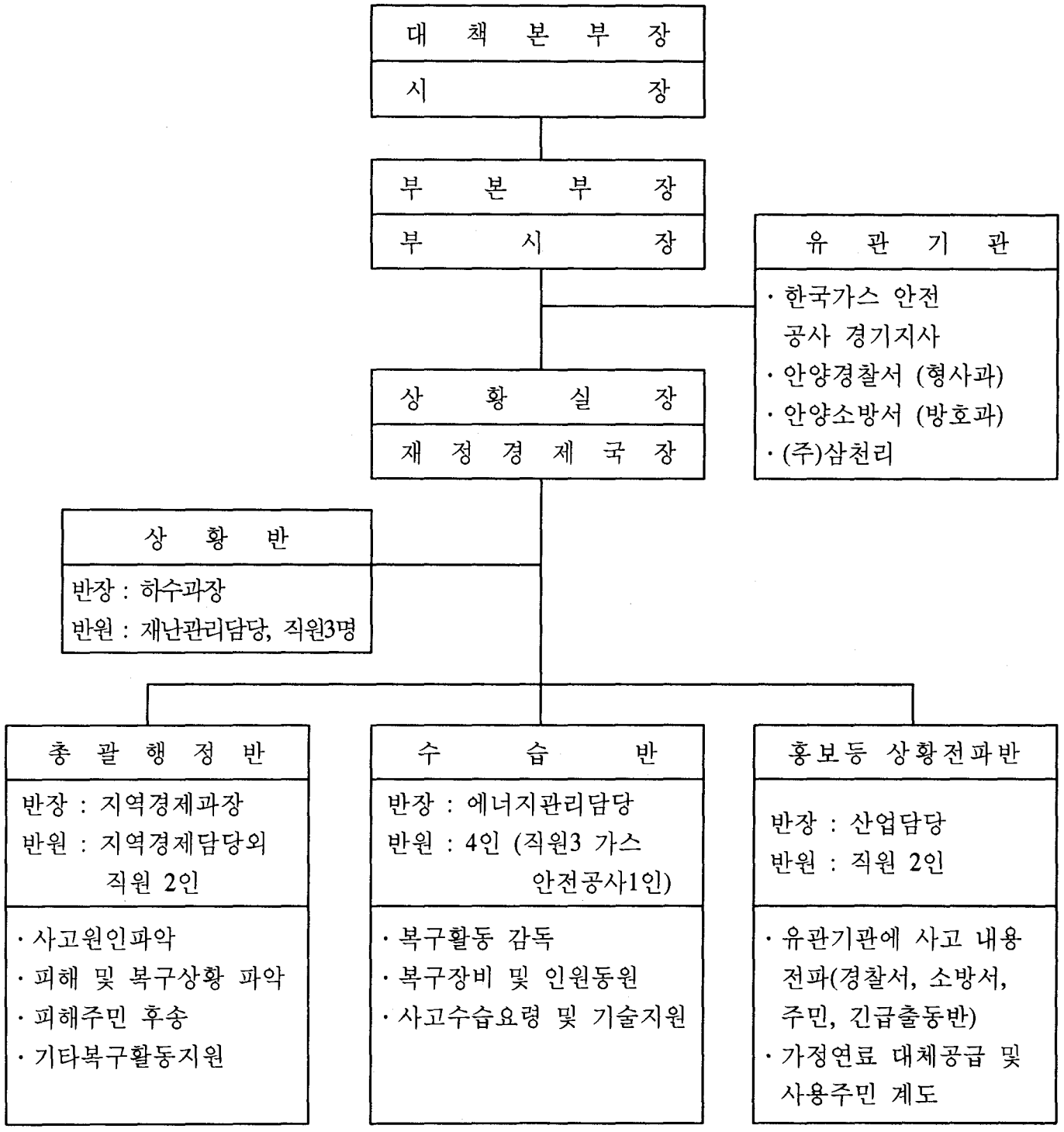

<별첨 2>

도시가스사고 우려시설 내역

구 분	배 관(km)	정 압 기	밸 브 박 스	비 고
현 황	270	49	315	

<별첨 3>

LPG충전소 현황

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저장능력	업 종
1	SK안양충전소	박좌훈, 김석조	안양시 석수동 252-2	97.3톤	복 합 (자동차+용기)
2	(주) 삼표에너지	윤 용 진	안양시 안양7동 206-12	60톤	복 합 (자동차+용기)
3	상신가스충전소	이 정 남	안양시 관양동 1383-6	10톤	자동차
4	동일석유(주) 신안충전소	김 배 근	안양시 호계동 1028-7	20톤	자동차
5	안양LPG충전소	우 종 국	안양시 비산동 1083	10톤	자동차

<별첨 4>

119 신고시스템 운영체계

□ 신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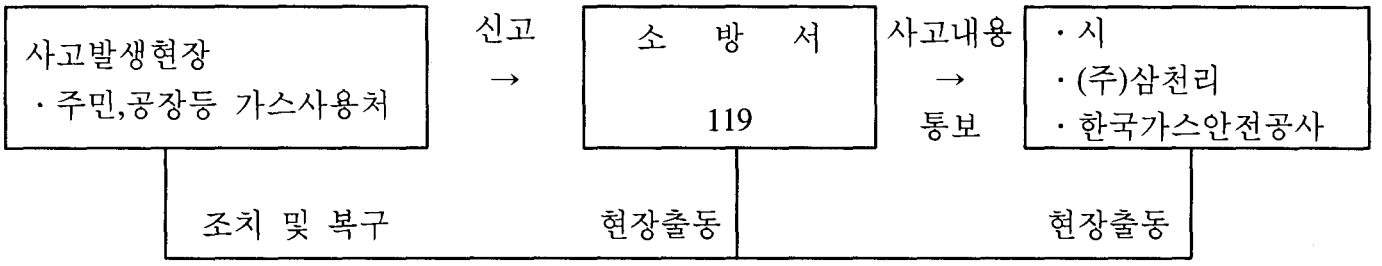

□ 기관별 행동요령

기 관 별	행 동 요 령
시 (종합상황실)	○ 상황전파
시 (지역경제과)	○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 복구대책 및 가스공급 방안 마련 ○ 긴급복구반 현장출동 ○ 사고원인 조사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현장 정리정돈 ○ 피해주민 이주대책 및 생필품 지급 ○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 (가스회사와 협의)
소 방 서	○ 사고내용 유관기관에 전파 ○ 소방차 및 구급차 현장출동 ○ 화재진압 및 부상자 응급조치후 병원 후송 ○ 복구장비 및 인원지원
한국가스안전 공사경기지사	○ 사고원인조사 ○ 가스누설차단 및 재폭발방지 조치 ○ 가스사고 수습 및 복구요령, 기술지원
(주) 삼 천 리	○ 긴급복구반 현장출동 ○ 인명구조 및 사고현장 복구 ○ 중단된 가스공급 재개 및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

<별첨 5>

가스사고시 복구장비 및 인력현황

업 체 명	비 상 대 기 조	보 유 장 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031)254-0019 (주)삼천리 454-3002	2개조 8명	○ FID : 1대 ○ 응급조치 장비세트 : 1세트
	2개조 8명	○ FID : 1대 ○ 누설검지기 : 10대

도시가스 공급기지 현황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비 고
평촌 정압기지	동안구 관양동 1014-1	압력조정, 계량 및 분배 기능	
석수 정압기지	만안구 석수동 396-6	압력조정, 계량 및 분배 기능	

도시가스 시설 현황

도시가스사	배 관	정 압 기	밸브박스	비 고
(주)삼천리	270㎞	49	315	

4. 交通事故

〈사업용 자동차 사고〉

○ 교통사고의 취약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사전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초기에 수습함으로써 승객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1) 추진방침

○ 교통사고 취약요인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 안전운행관리 강화 및 특별점검 실시

2) 예방대책

가.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대책 (버스, 전세버스, 택시, 사업용)

○ 시기별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시 기 : 봄, 여름, 가을(추석절), 겨울(설날)
- 대 상 : 운송업체

○ 행락철 운행질서 확립대책 수립시행

- 시 기 : 4, 8월
- 대 상 : 전세버스업체

○ 업체별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 시 기 : 전년도 12월
- 대 상 : 보유차량 10대이상 차량업체

나. 운송업체 안전점검 실시

○ 운송업체 안전점검 실시

- 시 기 : 4~9월
- 대 상 : 시외버스 등 25개 업체

○ 차량의 일제점검 실시

- 시 기 : 4~5월, 9~10월
- 대 상 : 전 운송업체 차량(대여차 제외)

다. 사업용(영업) 자동차 교통사고 급보 요령

○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첨 사고급보체계 및 사고보고서에 의하여 신속하게 보고

- 보고대상 (업체)
  -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전락 또는 화재의 발생
  - 사망자 또는 6인이상 중상자 발생

○ 보고기한

- 유선보고 : 24시간 이내
- 서면보고 : 72시간 이내
- 보 고 처 : 종합상황실
  - 시청 교통행정과 (TEL : 031-389-2292, 2293)
  - 구청 건축교통과 (TEL : 만안031-389-3367, 3368 동안031-389-4367, 4368)
- 급보체계에 의한 시 및 구청 보고대상
  - 사망자가 5인 이상이거나 중상자가 10인 이상인 사고는 시를 경유 도에까지 보고

○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종합상황실을 통하여 접수 장부 또는 상황실장 및 교통행정과장에게 보고하고, 일지에 보고내용 기록을 유지

○ 상황실장은 특히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사고 급보요령을 철저히 주지시켜 사고보고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상황실에 사고보고서 상시 비치

○ 사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실 및 사고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 시(교통행정과)
  - 구청(건축교통과)

사업용(영업) 자동차 교통사고 급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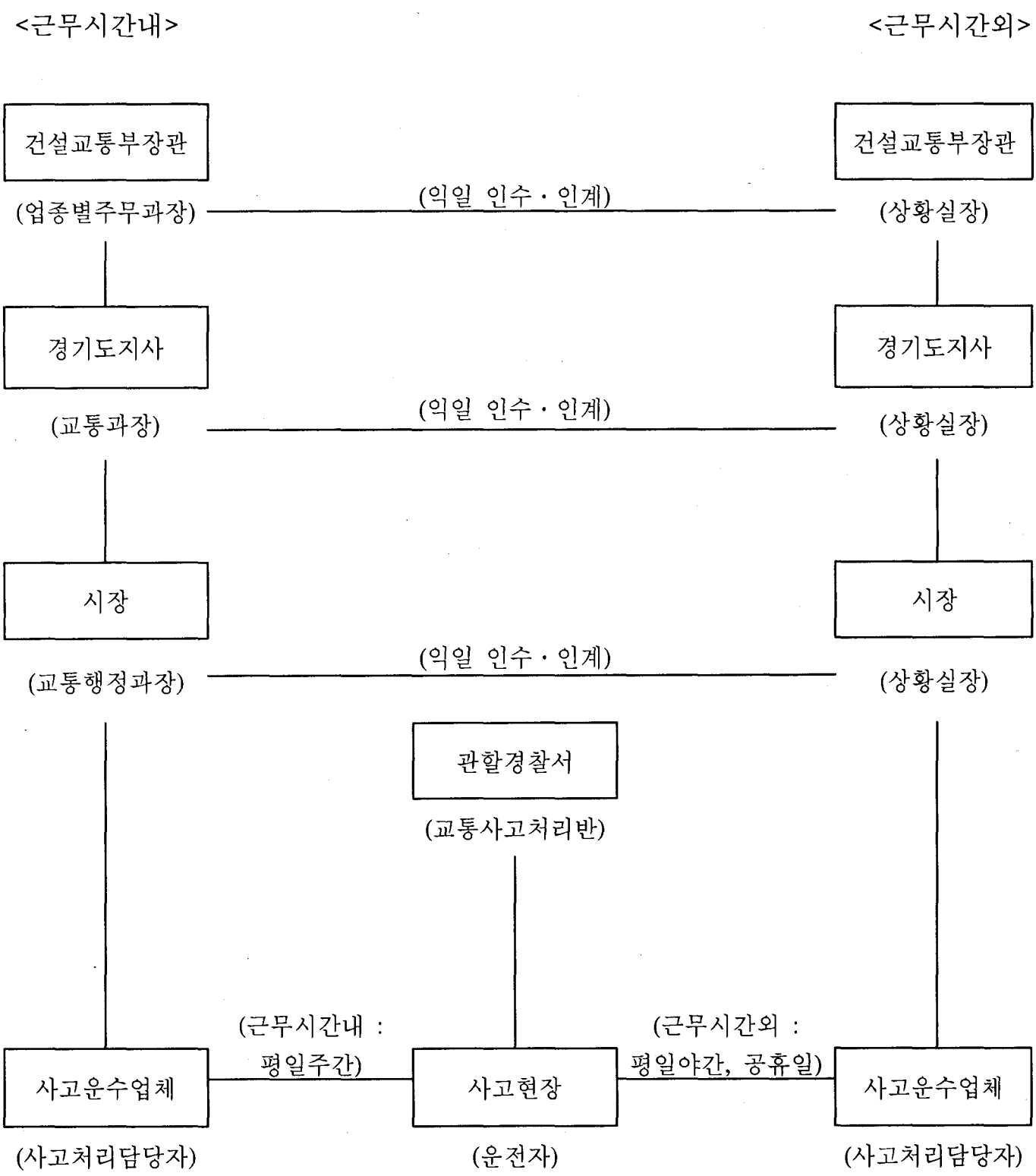

사 고 보 고 서

보고일시 : 2002. . .

① 사 고 명				
② 사 고 일 시 (날 씨)	2002. . .( )			
③ 사고장소				
사고차량	④ 가 해 차 량 번 호	⑤ 사 용 자 (사 업 체)	⑥ 피 해 차 량 번 호	⑦ 사 용 주 (사 업 체)
운행구간 (노 선)	⑧ 기 점		⑨ 종 점	
⑩ 사 고 원 인	⑪ 사 고 개 요	⑫ 피 해 상 황	⑬ 조 치 사 항	
⑭ 보 상 능 력	□ 책임보험 · □ 종합보험 · □ 공제 · (□)			

<표 1>

교통사고 수습대책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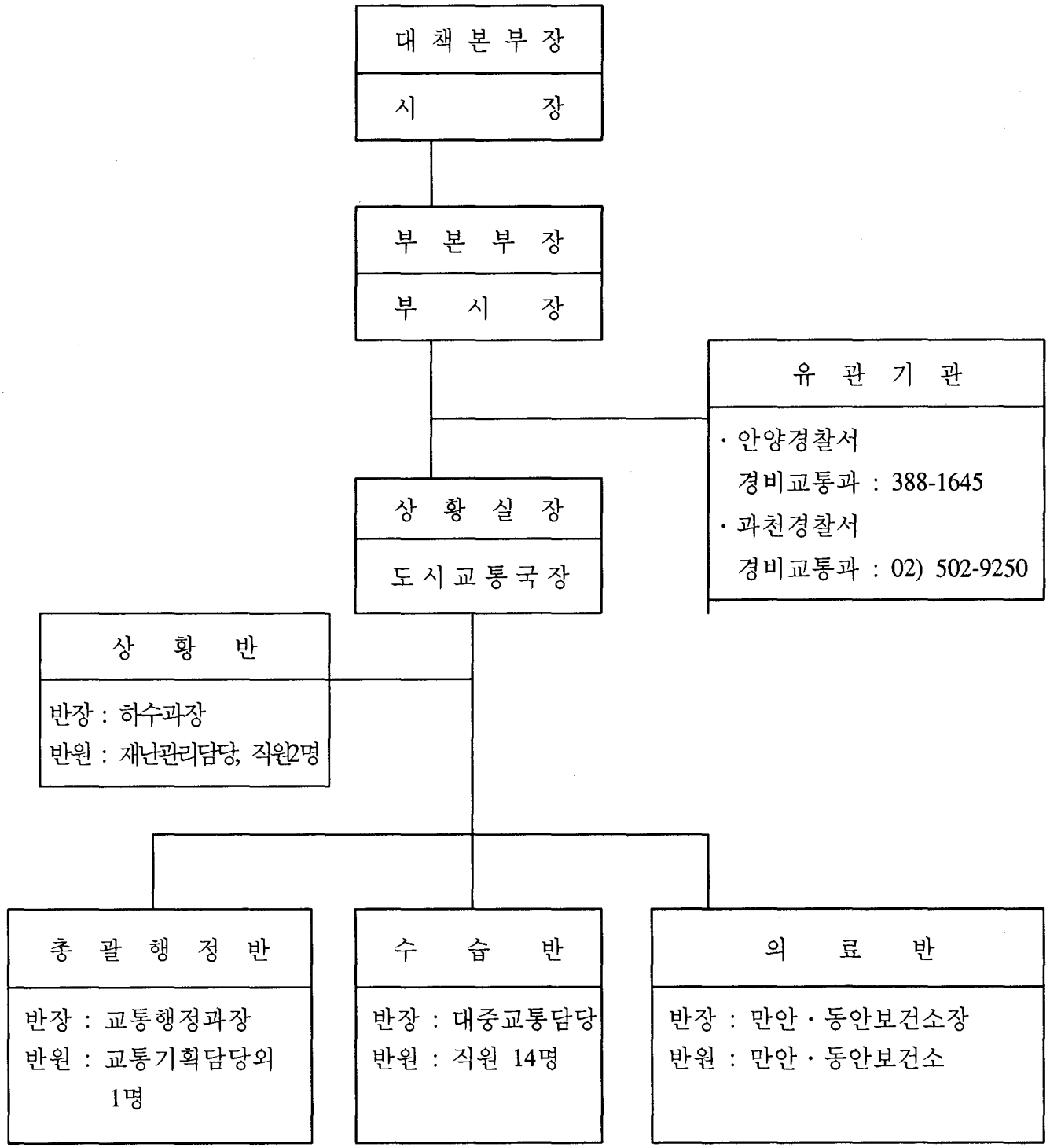

〈일반자동차 사고〉

○ 지역별 교통사고 다수 및 우려지점을 파악 관리하여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과 초기의 수습체계를 확립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1) 추진방침

○ 지방경찰청 및 도로관리부서와 연계 대상지점 파악·관리
○ 적기유지보수, 도로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강화등 사고 방지책 사전강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통안전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2) 예방대책

가.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활동 강화

○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 조기시행
○ 주말, 교통체증 심화, 눈·안개 등 특이상황시 교통경찰 인력증가 배치 : 각 경찰서
○ 사고다발 및 우려지점내 이동식 모형 순찰차 배치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 운영 내실화 : 횡단보도 및 사고발생 우려지점으로 전환
○ 반상회, 유선TV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어린이,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 및 예비군 등 사회 주도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확대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교통행정과

○ 구 성 (표 1참조)

- 평시에 교통행정과내 교통사고 줄이기(예방) 상황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 즉시 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상황실장(도시교통국장), 현장지휘소 및 4개반으로 편성

※ 경찰서와 책임분담 및 지원

○ 운 영

- 사고발생규모 및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 시행
-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상황을 각 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 수행

5. 建築工事場, 노후建築物 事故

○ 건축공사장 및 대형건축물의 사고 예방체제의 확립
○ 사고발생시 조기 수습체계 마련으로 피해의 최소화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차질없는 건축행정 추진

1) 추진방침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
○ 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한 예방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
○ 공사장별 자율적인 예방 및 수습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행정체제에서 지원

2) 예방 및 관리대책

가. 노후 불량건축물

○ 대 상 (2002. 11. 현재)

시설명	시설규모	소 재 지	지정사유(위험요소)	유지관리 주 체	위험 등급	지정일자	책임관리자 지정
공장주택	1개동 '76. 9. 6준공	동안구 평촌동 93-7	○2층 슬라브 처짐	서영진	D	2001.10.23	정 : 도시교통국장 부 : 건축과장
성우연립	3개동중 1동 총 34세대중 14세대 '79.12.24준공	동안구 평촌동 59-9	○지반 침하로 인한 벽체 모서리 균열	신창민등14명	D	'98. 6.15	정 : 동안 건축교통과장 부 : 동안 건축담당

○ 안전관리 점검

- 시 - 점검 책임반 : 부시장
  - 점검반 편성 : 공무원, 건축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 점검사항

-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도괴위험성) 여부와 위법내용
- 전기, 가스, 난방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소방, 가스설비 설치)
- 기타 축대등 위해 발생요인 점검

○ 점검결과

- 점검결과「건축물 안전심의회」를 구성 점검결과 판정

○ 조치계획

- 요보수 판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은 주민자체에서 자진해서 보수토록 통보
- 재건축 판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은 관리카드 작성, 재건축 결의후 재건축 토록 행정통보

나. 사고 취약지에 대한 점검실시

○ 요보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대　　상 : 진단결과 요보수 건축물
- 점검기간 : 매월 1회를 원칙(우기등 필요시 증감)
- 점검방법 : 자체판단에 의거 실시

○ 점검사항

- 건축물의 운영관리 실태
- 안전관리이행실태 및 기타 행정지시사항 추진실태

○ 점검결과 조치

-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 기타 중요 미비사항은 사진촬영 및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다. 재건축 판정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 대　　상 : 진단결과 재건축 건축물
○ 점검기간 : 매월 1회를 원칙 (우기등 필요시 증감)
○ 점검방법 : 관리카드를 작성 지정된 책임 공무원이 순찰실시
○ 점검사항
- 건축물의 현재상태 및 위험성 여부
-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기타 행정지시사항 추진실태

○ 점검결과 조치
-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 기타 중요 미비사항은 사진촬영 및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라.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실태점검

○ 대　　상
- 점검일 기준 사업승인된 공동주택 건설 현장

○ 점검기간 : 반기별 1회
○ 점검방법
- 확인점검 : 점검대상을 전수조사 후 점검실시

○ 점검반 편성
- 시 건축과장 주관으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점검사항
- 아파트 품질관리 실태 및 감리업무 이행실태
- 안전관리 이행실태 기타 행정지시사항 추진실태

○ 공사중단된 건축공사장

시 설 명	현 공 정	층수(지하/지상)	연면적(m^2)	위　치
중 앙 아 파 트	지하1층골조공사중	1/20	17,985 (136세대)	만안구 안양2동 817-15, 16, 17
현 대 코 아	골조공사완료	8/12	38,408	만안구 안양1동 668-29
대한생명평촌사옥	기 초 공 사	5/19	24,631	동안구 범계동 1043

마. 건축공사장 안전 사전관리

○ 관리대상

- 상주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5층이상 바닥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 분양목적의 상가건축물,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 조사시기 : 착공, 중간검사, 기타 필요시 점검

○ 점검방법

- 착공신고시 : 위해방지시설 설치 및 시공자, 감리자 교육
- 중간검사시 : 안전관리 실태점검
- 기타필요시 : 공사중 시공자(감리자) 안전관리 지도

○ 조치사항

- 자체점검계획 수립 지시
- 자체점검 이행실태 확인

바. 위험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검반 편성

- 건축과 주관으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점검사항

- 위험대상 건축물 관리실태(관리카드 등)
- 공사장 위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자체점검 실시상황(현장일지 등)
- 관리카드에 의한 책임공무원 지정 운영실태 등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건축과

○ 구 성(표 1참조)

- 대책본부장 : 시장
- 부본부장 : 부시장
- 상황실장 : 도시교통국장

○ 운 영

- 평시에 건축과내 건축공사장 사고예방상황실을 설치하여 사고발생 즉시 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상황실장(도시교통국장), 현장지휘소 및 3개반 편성 운영하되 사고 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운영

○ 반별임무

- 총괄 및 상황반 : 상황관리, 보고체제 유지(상급, 유관기관)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피해상황 파악, 보상대책
- 방호구조반 : 주민대피 및 주민통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경계, 사상자 인명구조
- 응급복구반 : 붕괴사고 발생상황 파악, 재해시설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각종 장비동원, 상황별 대책수립
- 구호반 : 부상자 및 이재민 구호지원대책, 이재민 사후처리대책, 수용소 설치 (재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건물 : 학교, 마을회관, 노인정, 교회 등)

<표 1>

건축공사장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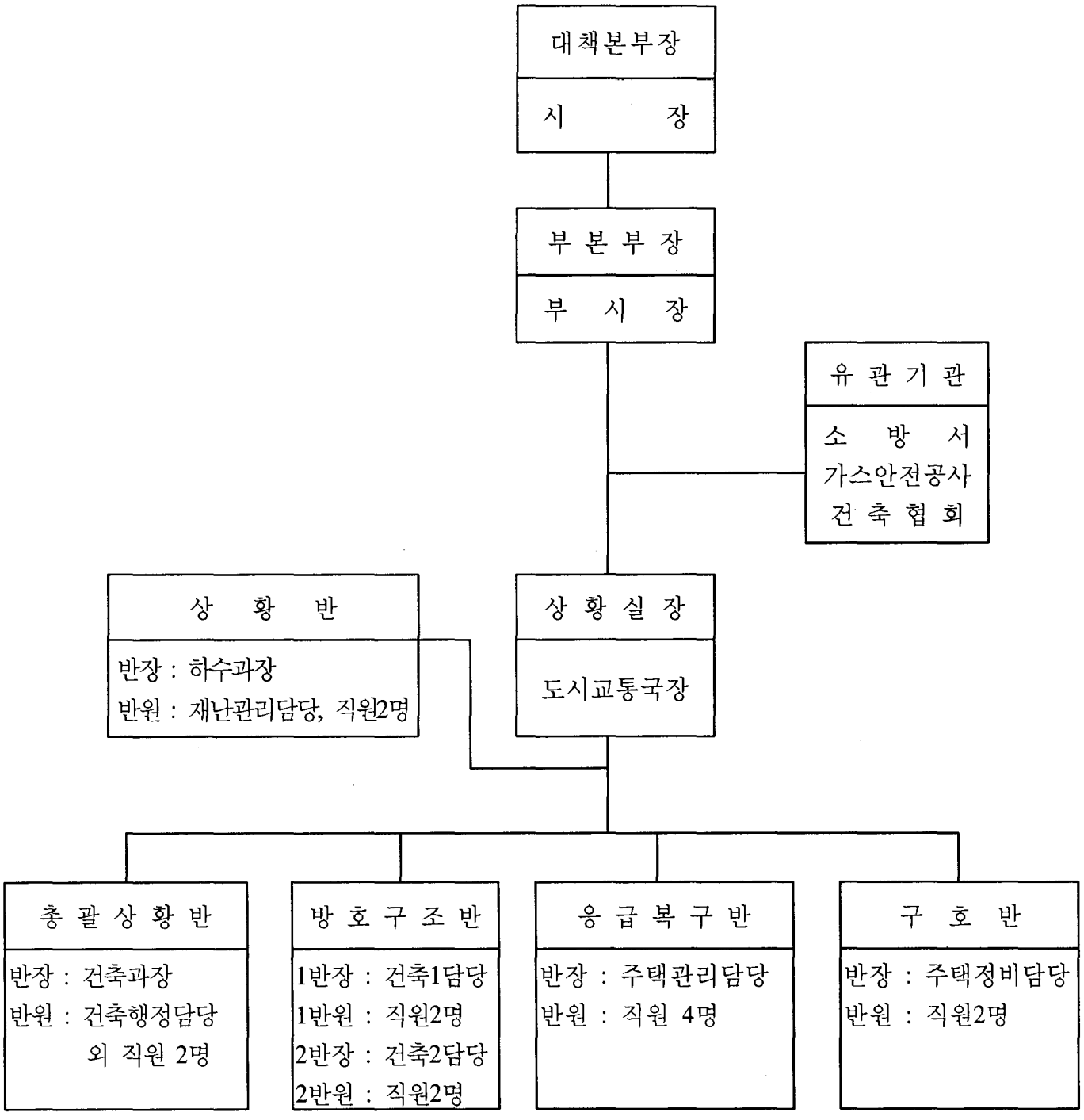

6. 道路, 較量事故

○ 위험교량에 대한 통행제한과 순찰점검등 안전대책을 강구 안전사고 사전예방
○ 사고발생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습대책으로 인명, 재산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 복구로 도로기능 제고

1) 추진방침

○ 위험도로, 교량 안전점검강화 및 통행제한등 완벽한 대책 수립
○ 안전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고대책반 및 순찰점검반 운영
○ 복구장비, 자재, 인원의 긴급동원태세 및 유관기관 협조 유지

2) 재난예방 대책

가. 안전관리대상(교량) : 58개소

○ 국도 : 6개
○ 시도 : 52개소

나. 재난예방세부계획 수립

○ 점검시기
- 일상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정기점검 : 21회이상
- 긴급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대 상 : 54개소

다. 재난위험시설물

○ 대 상 : 3개소(양지4교, 비산대교, 역전지하상가)
○ 점 검 : 월1회
○ 재난위험시설 관리 책임자 지정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도로과

○ 구 성 (표1참조)

- 평시에 도로과내에 도로, 교량 사고예방 상황실을 설치하여 도로, 교통사고 발생 즉시 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상황실장(건설사업소장) 현장지휘소 등 4개반으로 편성

○ 운 영

- 사고발생시 규모와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자체결정 시행
-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상황을 각 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수행

○ 반별 임무

- 총괄행정반 및 상황반 :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상급, 유관기관) 사고전파 및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방호구조반 : 도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파악, 재해시설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각종 장비동원, 상황별 대책수립
- 응급복구반 : 붕괴사고 발생상황 파악, 재해시설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각종 장비 동원, 상황별 대책 수립

나. 사태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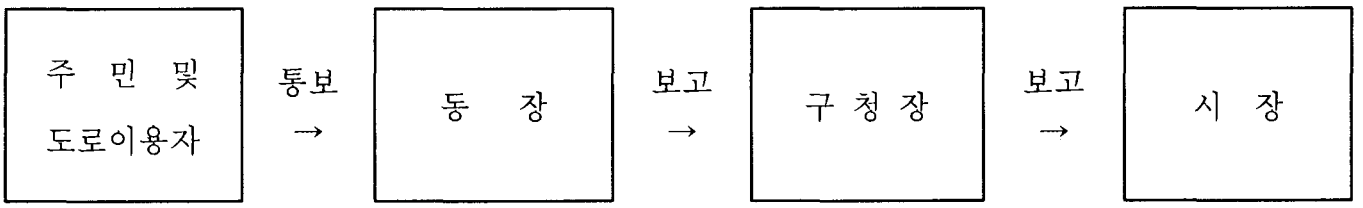

도로 · 교량붕괴사고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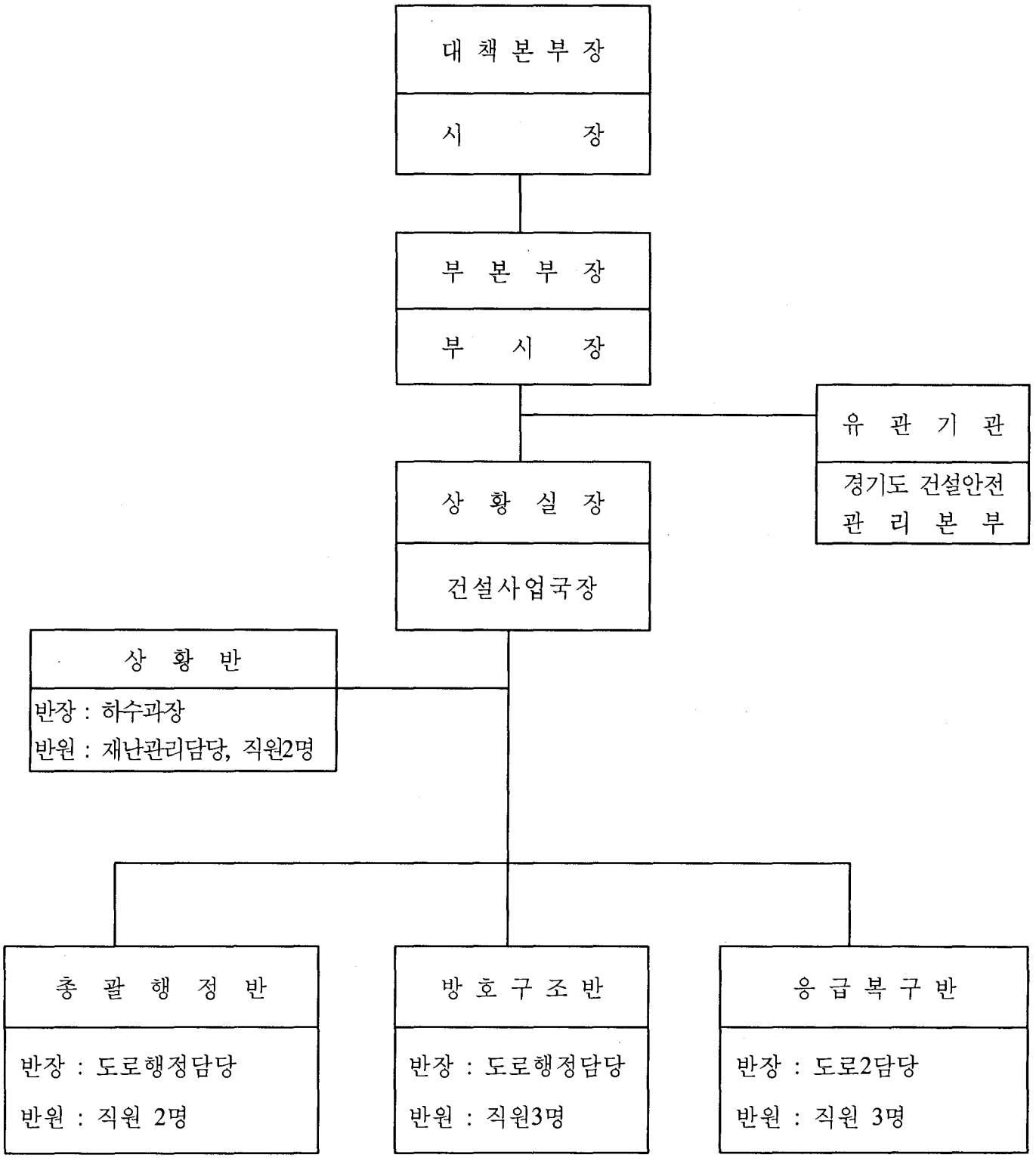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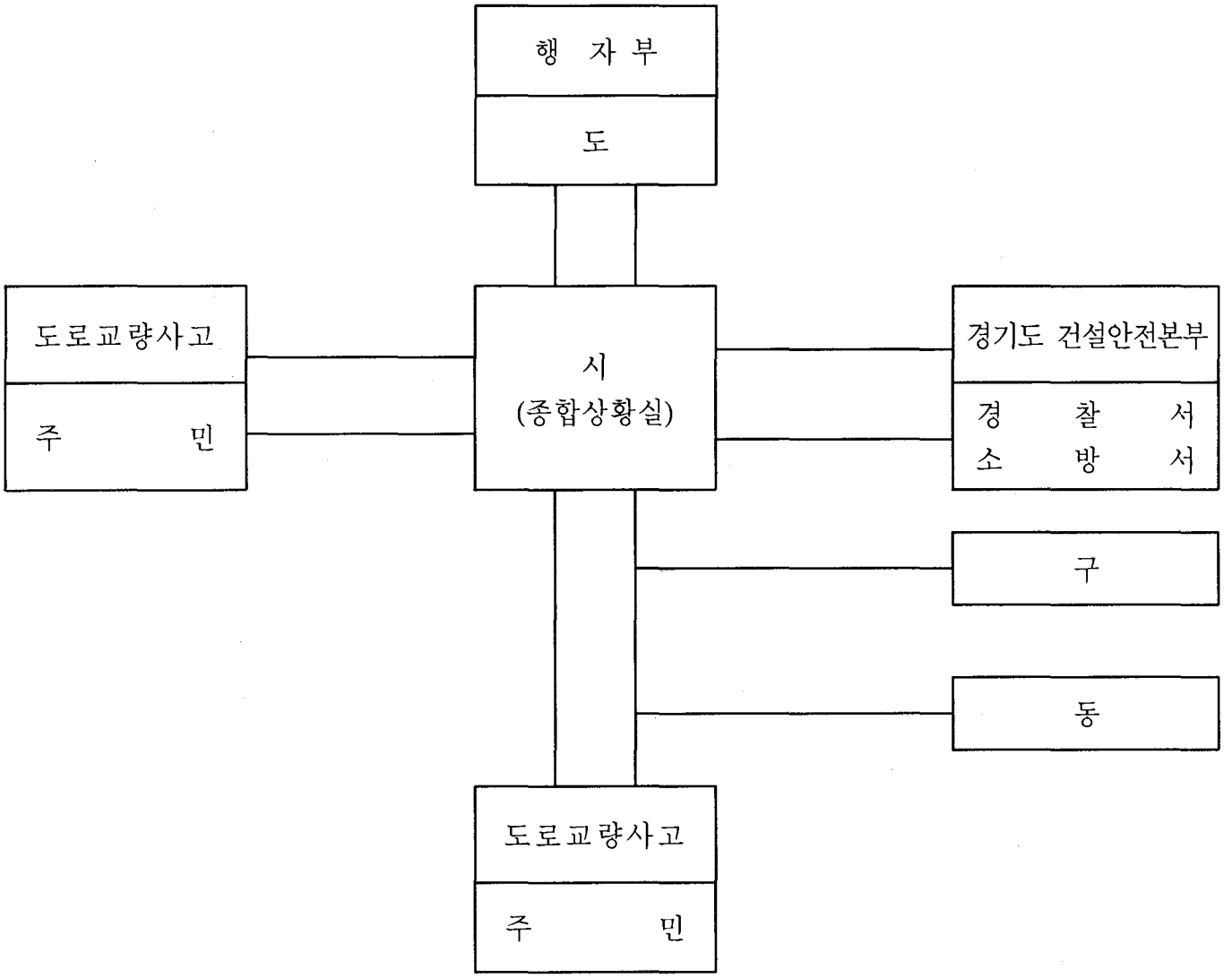

7. 上水道 事故

○ 지역단위 각종 설비 (염소설비, 전기설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과 초기에 수습체계 확립

○ 상수도 시설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1) 추진지침

○ 시설물 관리대책 강구

○ 염소 사용시설 안전관리

○ 전기사고 방지 근무태세 확립 및 근원적 사고방지 대책 강구

○ 소방, 한전,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2) 예방대책

가. 상수도 시설물 실태조사

○ 기 간 : 2002. 3~4

○ 대 상 : 상수도 시설물관리, 시설공사현장, 수질관리, 염소시설·전기소방 안전관리

나. 시설물 점검강화

○ 전기설비

- 대용량 전기설비 :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주기적 점검
- 소용량 전기설비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행업소로 하여금 점검

○ 염소설비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 또는 자체점검 실시

○ 소방설비

- 소방서와 유기적인 합동점검

○ 시설물 관리 및 수질오염 대책

- 수해예방 시설물 점검
- 정수 수질관리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 : 시, 상수도사업소,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소방서
- 점검회수 : 매년 1회 이상
- 주요점검사항
  - 수해예방 시설물 사전점검
  - 정수 수질관리
  - 정수장, 배수지 관리
  - 염소설비 사용 안전규칙
  - 전기안전 규정 이행여부
  -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상수도사업소

○ 구 성 (표 1참조)

- 평상시 상수도 시설물 사고대비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고발생 즉시 대책 본부 운영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상황실장(상수도사업소장), 현장지휘소 및 4개반으로 편성

○ 운 영

- 사고발생시 규모와 예방피해 정도에 따라 자체 결정 시행
-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상황을 각 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 수행

○ 반별임무

- 총괄 및 행정반
  - 상황관리 , 보고체계 유지(상급, 유관기관), 사고전파 및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수습반
  - 상수도시설물 사고 발생상황 파악, 사태별 대책지시, 각종상황 기록유지
- 통신반
  - 유·무선 통신망 유지, 각종 보고 및 홍보의 통신망 지원, 수도사고 상황에 따라 주민 급수방안 및 절수 등 수습대책 홍보

나. 사태 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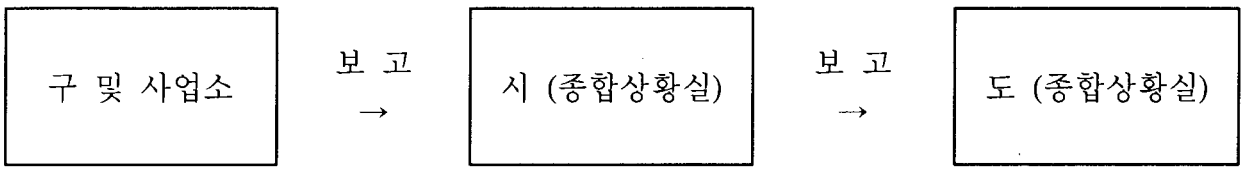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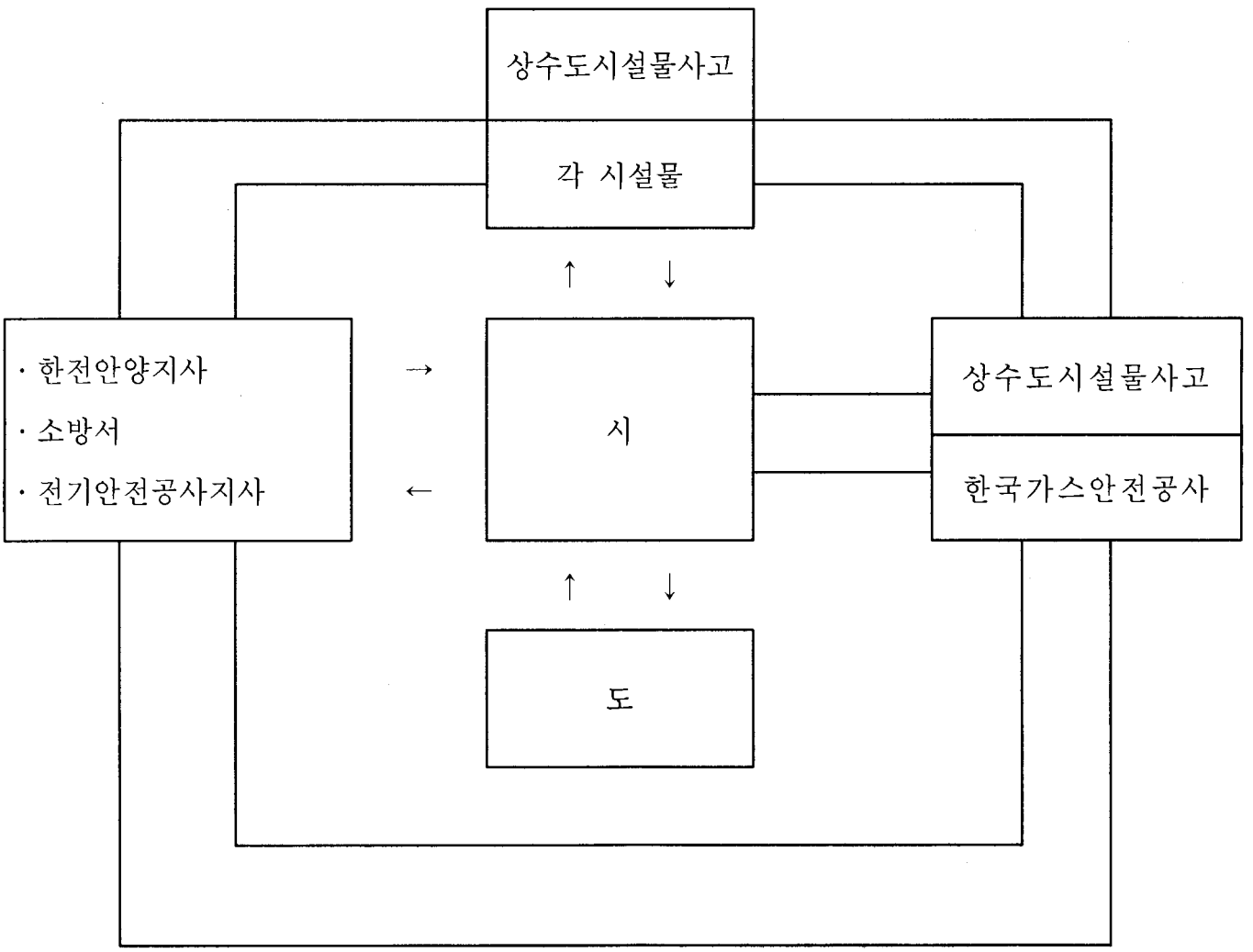

<표1>

상수도 사고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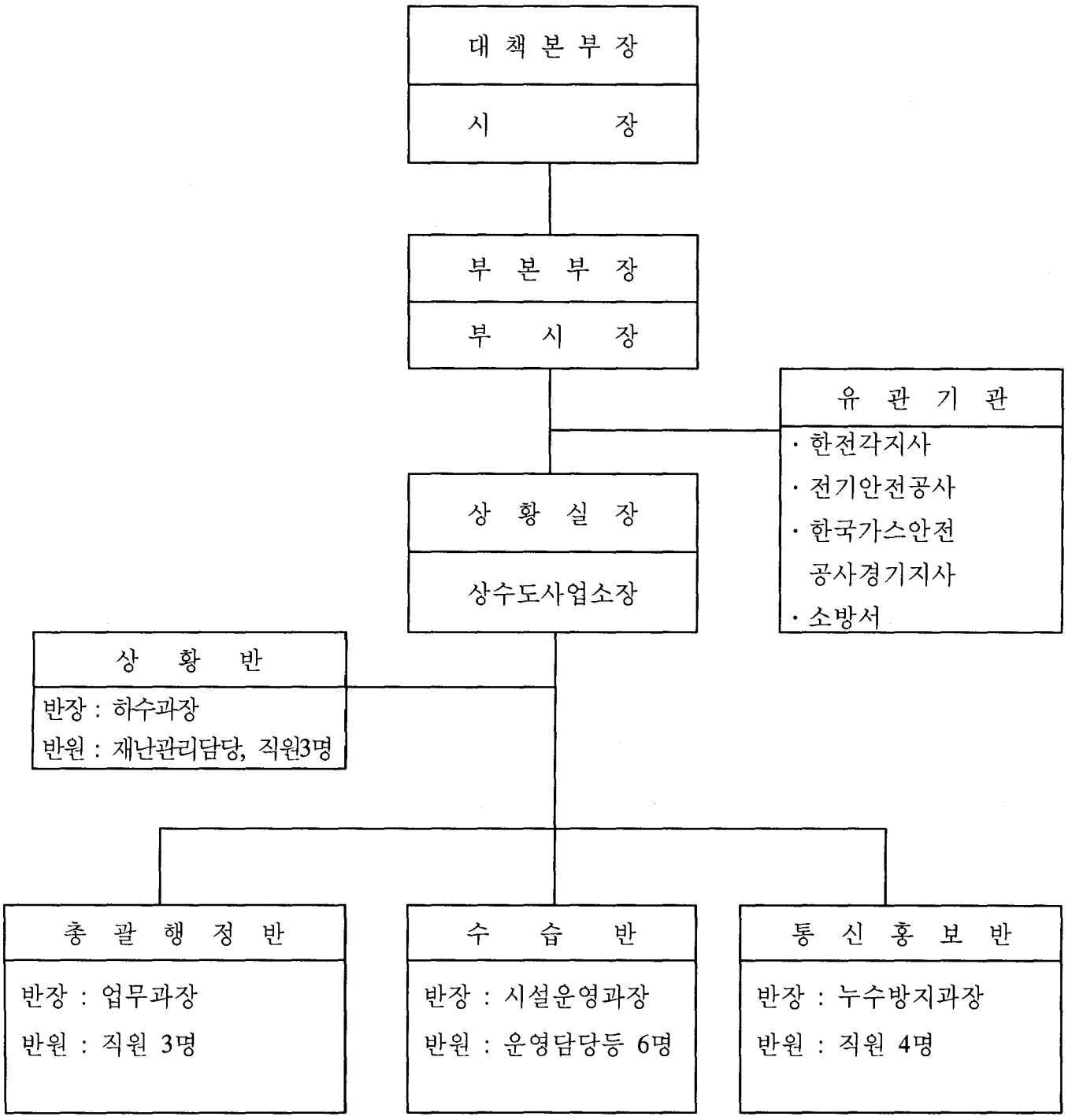

8. 下水道 事故

○ 주민 편익시설과 관련있는 하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책을 수립조치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 신속한 복구체제 수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1) 추진방침

○ 각종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지별 사전점검 및 조치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확인점검 강화
○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 구축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만전
○ 사전에 사고사안을 감안 상황보고 체계유지 및 긴급복구반 편성
○ 365일 생활기동순찰반과 연계한 순찰실시

2) 예방대책

가. 하수도 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완

○ 기　　간 : 매년 5~6월
○ 점검대상 : 하수도 맨홀상태
　　하수도시설물 관리
　　배수불량지역 및 퇴적물 제거 상태등

나. 시설별 점검강화

○ 하수도 맨홀 안전조치
- 맨홀퇴적물 준설 및 하수관 파손상태 점검 (취약지 중점점검)
- 배수불량지역 수시확인하여 조치

○ 소방설비
- 인화성 유류 가연성가스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하여 소방서와 유기적인 합동점검

○ 안전장비 확보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등 안전장비확보 상태점검

○ 감전 및 추락방지시설

- 추락방지용 난간대설치여부 및 기기의 사용에서는 전원표시의 확인 및 사용 점검 이행

○ 기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 대하여 점검실시

- 점검반 편성 : 상수도사업소
- 점검회수 : 매년 1회이상(상 · 하반기)
- 주요점검사항
  - 기존시설물 붕괴방지
  - 풍수해의 예방대책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건설사업소

○ 구 성

- 평상시 하수도시설물 사고대비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고발생 즉시 대책본부 운영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상황실장(건설사업소장) 현장지휘소 및 3개반으로 편성

○ 운 영

- 재난사고발생시 피해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자체결정 시행
-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을 각 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 수행

○ 반별임무

- 총괄 행정반
  상황관리, 보고체계유지(상급, 유관기관), 사고전파 및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 체제구축
- 수습반
  하수도 시설물 사고발생 상황파악, 사태별 대책지시, 각종상황 기록유지
- 통신 홍보반
  유무선 통신망 유지, 각종보고 및 홍보의 통신망 지원

나. 사태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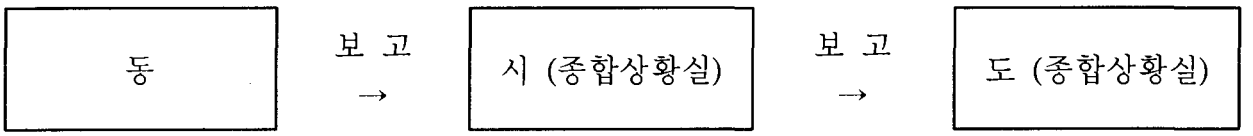

다. 하수도 사고수습 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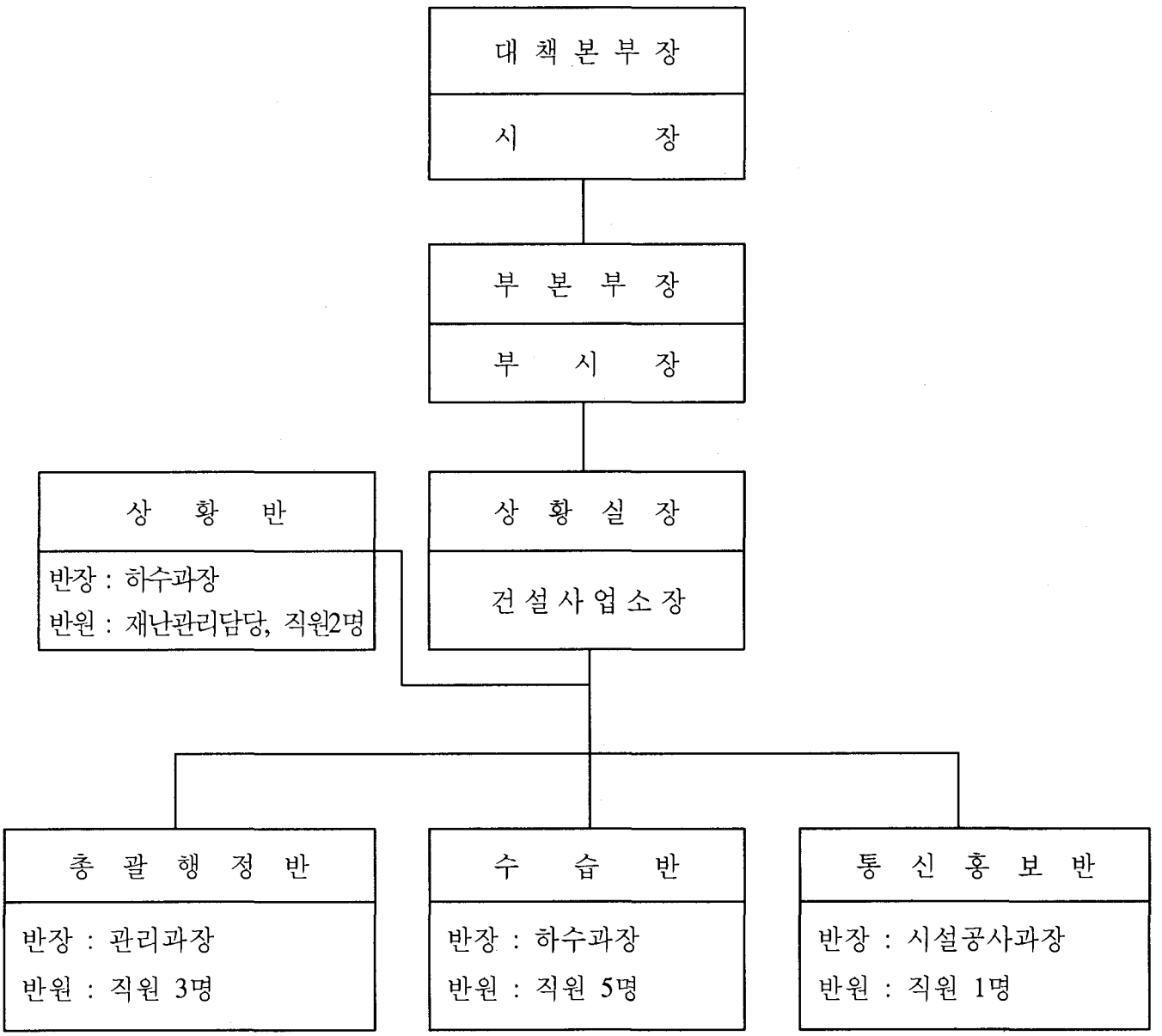

9. 산불事故

○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 업무의 효과적 추진 ○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의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

1) 추진방침

○ 예방방지 근무태세 및 전 행정력 집주
○ 예방위주의 근원적인 방지대책 강구
○ 감시 및 신고, 출동태세 강화로 초동진화 주력
○ 군, 경, 민방위 등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체제 유지강화
○ 산림애호의식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예방대책

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기관 : 3개소 (시 : 녹지공원사업소, 구 : 건설과)
○ 기　　간 : 봄　철 - 02. 15 ~ 05. 15
　　가을철 - 11. 01 ~ 12. 15
○ 근무시간 : 09 :00 ~ 20 : 00 (비상시 24시간)

나. 초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 유급감시원 취약지 고정배치
○ 산불 감시초소 운영
○ 명예 산불보호 요원 위촉
○ 마을별 산불신고소 설치

다. 진화대 조직 대응태세 확립

○ 구, 동별 진화대 조직

라.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 통제

○ 마을별로 일정계획 수립 공동소각

마. 유관기관, 군부대 헬기 지원체제 구축

○ 도 항공대 헬기 항시 지원체제
○ 군항공대 헬기 진화 지원체제
○ 도 경찰청 헬기 계도방송 및 산불발생 감시

바. 산불방지 홍보활동 강화

○ 유선 TV, 신문 등 대중홍보매체 적극 활용
○ 주말, 공휴일 캠페인 집중실시
○ 현수막, 입간판, 깃발게시 부착 및 전단 배부

3) 수습대책

가. 산불발생 즉시 수습대책 상황실 운영 - 녹지공원사업소

○ 본부장 - 시 : 시 장
- 구 : 구청장
○ 유관기관, 군부대 등 진화지원 조치

나. 산불 발생시 시청, 구청 특별진화대 및 일반진화대 투입

○ 진화대장 : 녹지공원사업소장, 소방과장, 의용소방대장
○ 진화조장 : 시 산림담당, 구 녹지담당

다. 산불진화

○ 1단계 : 동력펌프, 동력톱 등 인력 기동장비 및 불갈퀴, 삽, 낫 등 인력장비 동원 진화
○ 2단계 : 인력에 의한 진화가 어렵고 확산 우려시
- 도 헬기 출동요청
- 산림청 헬기 지원요청
- 상황에 따라 방화선 구축

○ 3단계 : 도 및 산림청 헬기에 의한 초기진화가 어려울시
- 인근 군부대 헬기 지원 요청

라. 가해자 조치 : 사법처리 (사건송치)

산불수습대책본부

지휘본부장 : 시장

부본부장 : 부시장

동원 및 지휘	진 화	보 급
반장 : 총 무 국 장	반장 : 녹지공원사업소장	반장 : 총 무 국 장
<반원> 총무과장외 전직원 <임무> · 산불발생 즉시 본부장, 부본부장에게 보고 · 민방위대 동원요구 · 인근부락 및 기관에 연락 동원 및 수송 진화지휘 · 상부기관에 보고 ※ 상황유지 하수과	<반원> 녹지공원사업소장외전직원 공보담당관외 〃 감사담당관외 〃 기업지원과장외 〃 국제협력과장외 〃 세정과장외 〃 문화예술과장외 〃 체육청소년과장외 〃 회계과장외 〃 환경위생과장외 〃 지역경제과장외 〃 교통행정과장외 〃 도시과장외 〃 건축과장외 〃 도로과장외 〃 시설공사과장외 〃 상수도사업소장외 전직원 <임무> · 진화작업 뒷불정리	<반원> 기획예산과장외 전직원 사회복지과장외 〃 해당보건소장외 〃 여성과장외 〃 <임무> · 차량동원 · 진화장비 및 급식보급 · 부상자 구호 및 진료

10. 食品衛生 事故

○ 집단 식중독등 식품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과 초기 수습체계 확립

○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로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

1) 추진방침

○ 부정·불량식품 단속태세 확립 및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
○ 보건정보 모니터요원의 신고체제 강화로 유사시 신속대처
○ 상설기동단속반 설치운영으로 위생관리 사전지도 점검

2) 예방대책

가.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 시 기 : 연중
○ 대 상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 중점단속사항
- 식품접객업소 등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상태
- 물수건등 위생처리업소 시설기준 적정여부
- 식음료, 제조, 가공, 조리, 판매시설 위생상태
- 식용얼음, 냉면육수, 수족관 해수등 적합여부

나. 위생관계 종사자 교육

○ 시 기 : 2002. 7월중
○ 대 상 : 대량 생산급식 제공업체 종사자
-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관리인

○ 교육내용
-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 위생적인 식생활 요령
- 식중독 예방관리 지침 안내

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철저

○ 검사시기
- 정기검사 : 분기 1회이상
- 임시검사 : 장마철 등 전염병 발생우려시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정비

○ 염소소독
- 평상시 : 잔류업소 8.2ppm유지
- 전염병 발생시 : 8.4ppm유지
- 수동식 소독방법 개선
- 소독약품 확보지원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 본부설치 운영 - 표1

○ 구 성 : 3개반
- 시 : 1개반
- 구 : 2개반
- 보건소 : 2개반

나. 반별임무

○ 역학 조사반 : 식중독 등 유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
○ 환자 수송반 : 환자 및 접촉자등에 대한 후송 및 응급조치
○ 방역 기동반 : 주민 보건계몽, 교육 및 주위환경 방역활동

다.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 환자 발생지역에 역학조사반 파견
- 1차 조치 : 환자치료, 역학조사, 보건교육
- 2차 조치 : 병원균 확인

○ 환자 및 보호자 관리
- 환 자 : 지정병원 즉시 입원 조치

● 보호자 : 보균검사 실시

라. 사태발생시 신고 체계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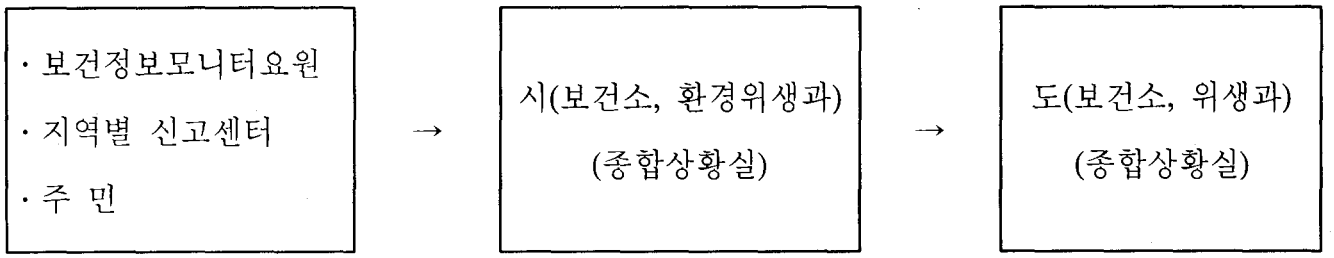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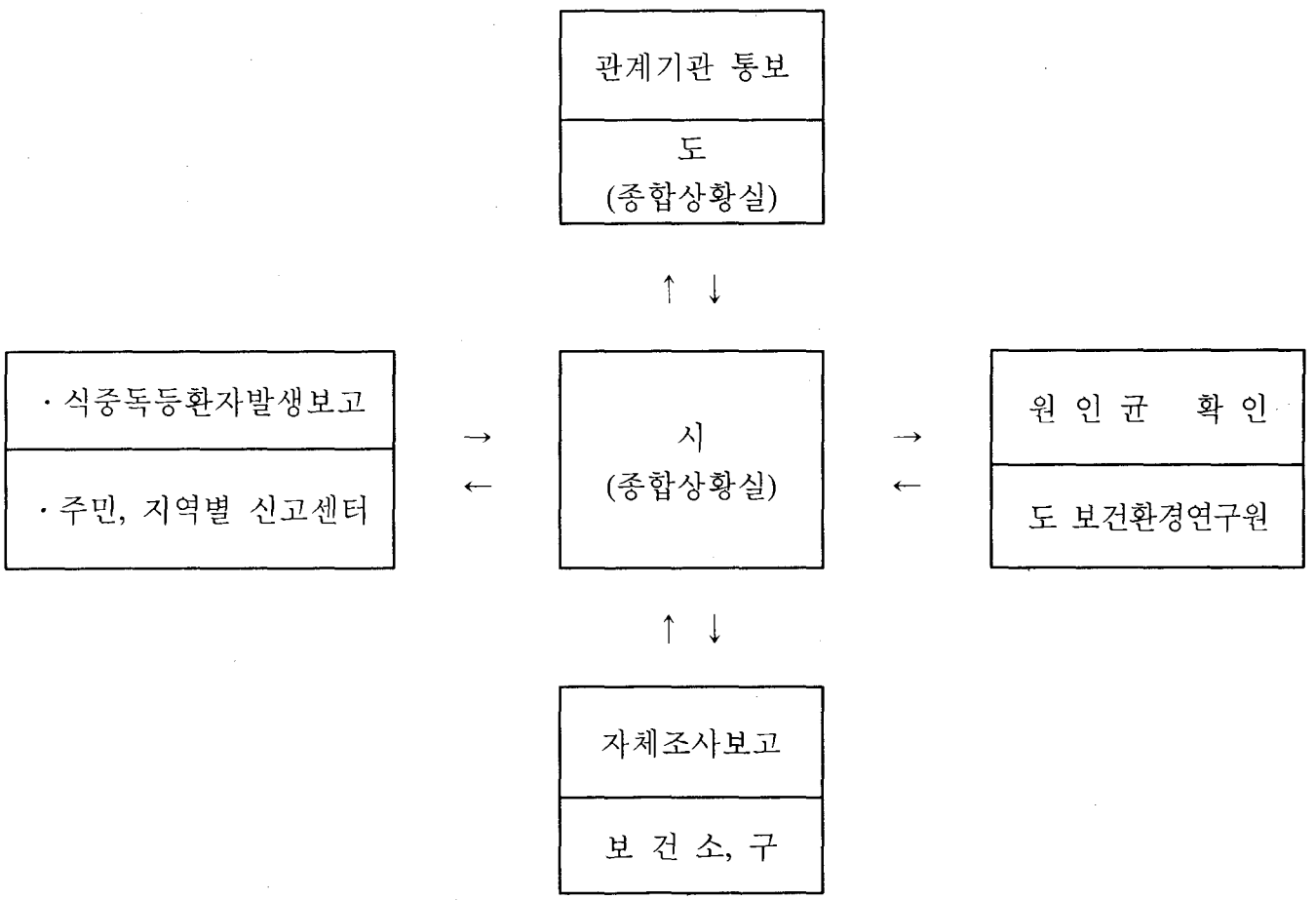

식품위생사고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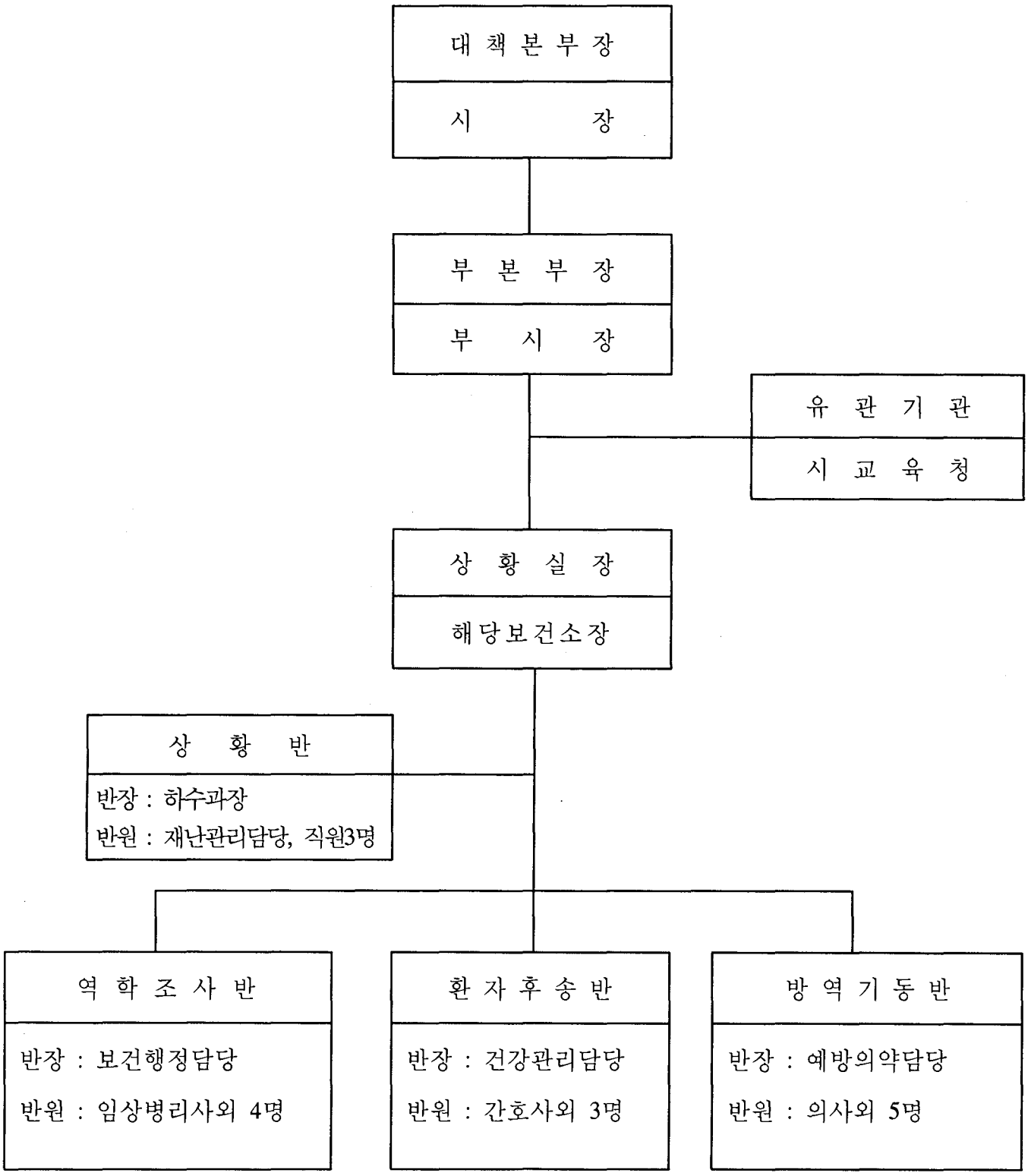

11. 水質汚染 事故

○ 유독물질의 취급, 판매 및 운송, 사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수질오염 사고의 예방
○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추진방침

○ 오염물질별 특성파악에 따른 우발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시 방제 능력 배양
○ 방제장비, 자재 확보 비치로 오염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와 오염피해 최소화

2) 예방대책

가. 사고 발생원 관리강화

○ 유독물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유출 방지시설 설치 및 방제장비, 자재확보 비치
○ 유독물 운반 및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전 및 관리교육 실시
○ 오염물질별 방제요령 카드화 비치 및 숙지
○ 유독물 관리자 상근

나. 관기기관 사고 대처능력 제고

○ 자체 방지대책을 기초로 오염 사고방지 철저
○ 오염 유해물질별 방제요령을 참고 해당유독물 방제요령 카드화 비치 및 숙지
○ 사고 방제요령 자체교육 실시
(환경 관리인 교육등 각종 기회교육시 병행실시)

○ 민방위교육 훈련시 오염사고 방제교육 훈련실시

(사고발생 사고, 방제요령 및 방제장비, 자재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다. 시설장비 확보

○ 기 관

- 상수도사업소 : 소석회 살포기
- 안양소방서 : 소방차, 가스제거차량, 고가사다리
- 보건소 : 응급차

○ 업 소 : 소화기, 방독면, 중화제, 흡착제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 본부설치 운영 - 환경위생과

○ 구 성(표 1참조)

- 평시 환경위생과내 예방 상황실을 설치하여 사고발생 즉시 대책본부로 전환운영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상황실장(복지환경국장) 및 2개반으로 편성

○ 운 영

- 사고발생시 규모와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자체결정 시행
- 사고 제반상황을 각반별, 업무 소관별로 책임수행

<표 1>

수질오염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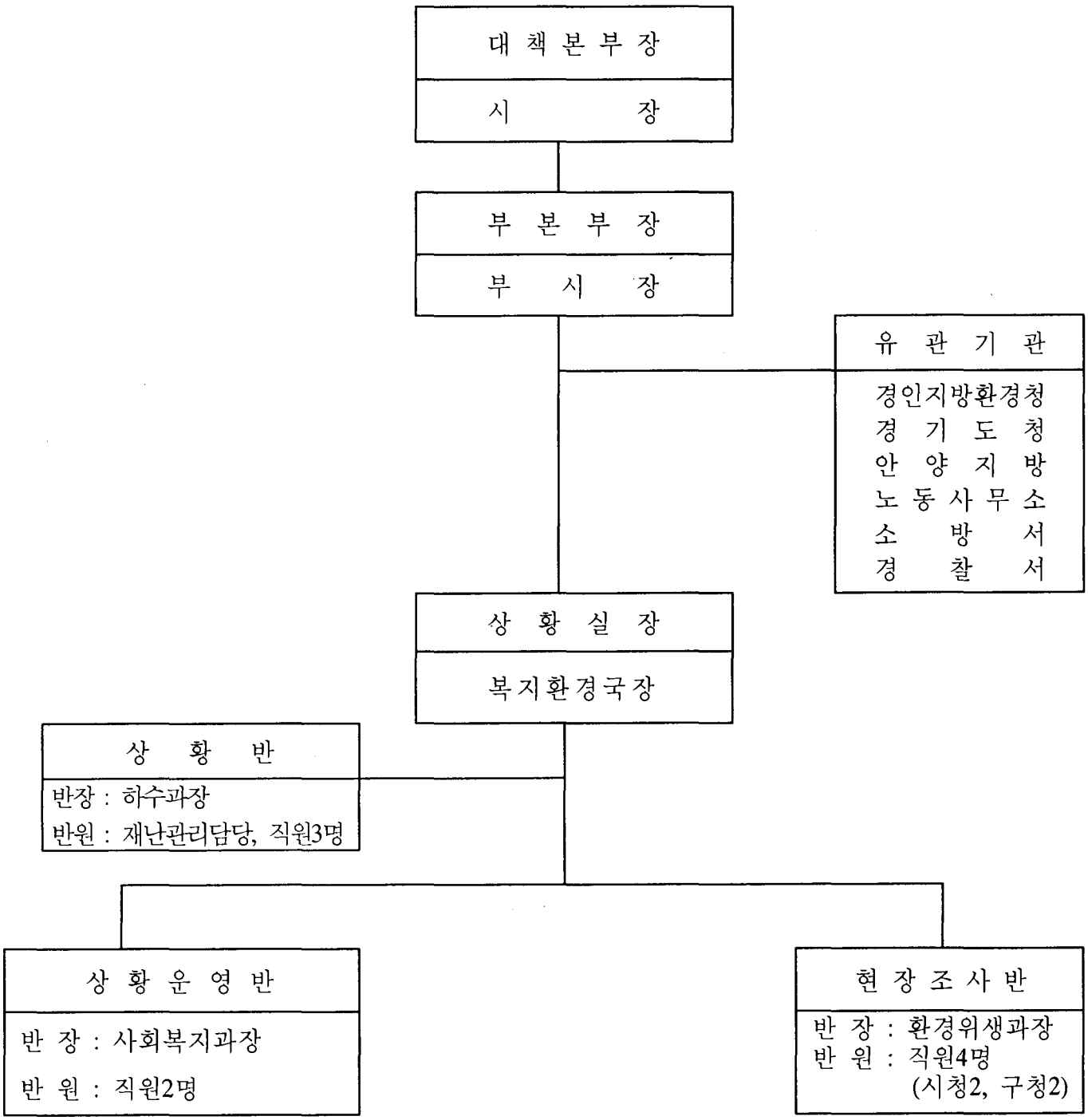

○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임무부여

부 서 별	추 진 업 무	비 고
안 양 시	○ 환경오염 사고 방지대책 수립 시행 ○ 환경오염 사고시 방제인력 및 장비동원 등 방제조치 ○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자재확보 ○ 사고지역 인근하천 긴급 오염방지 ○ 사고지역 인근주민 홍보	
안 양 경 찰 서 과 천 경 찰 서	○ 환경오염사고시 방제인력 및 장비동원 등 방제조치 지원 ○ 환경오염사고시 주민대피 조치, 피해상황 파악 교통통제 등 ○ 기타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자체대책 수립시행	
안 양 소 방 서	○ 환경오염사고시 방제인력 및 장비동원 등 방제조치 지원 ⇨ 소방차, 매연가스제거차량, 고가사다리등을 동원하여 확산방지 ○ 기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자체대책 강구	
안양지방노동 사 무 소	○ 사업장내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 및 인명피해 대책수립 ○ 기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자체대책 강구	
상수도사업소	○ 상수원에 오염물질(유독물)유입시 대책수립 시행 ○ 사고지역 인근주민 홍보 ○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자재확보 ○ 기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자체대책 수립시행	
보 건 소	○ 환경오염사고시 주민피해 조사 ○ 피해주민의 응급조치 및 후송 ○ 기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자체대책 수립시행	

나. 신고체계 확립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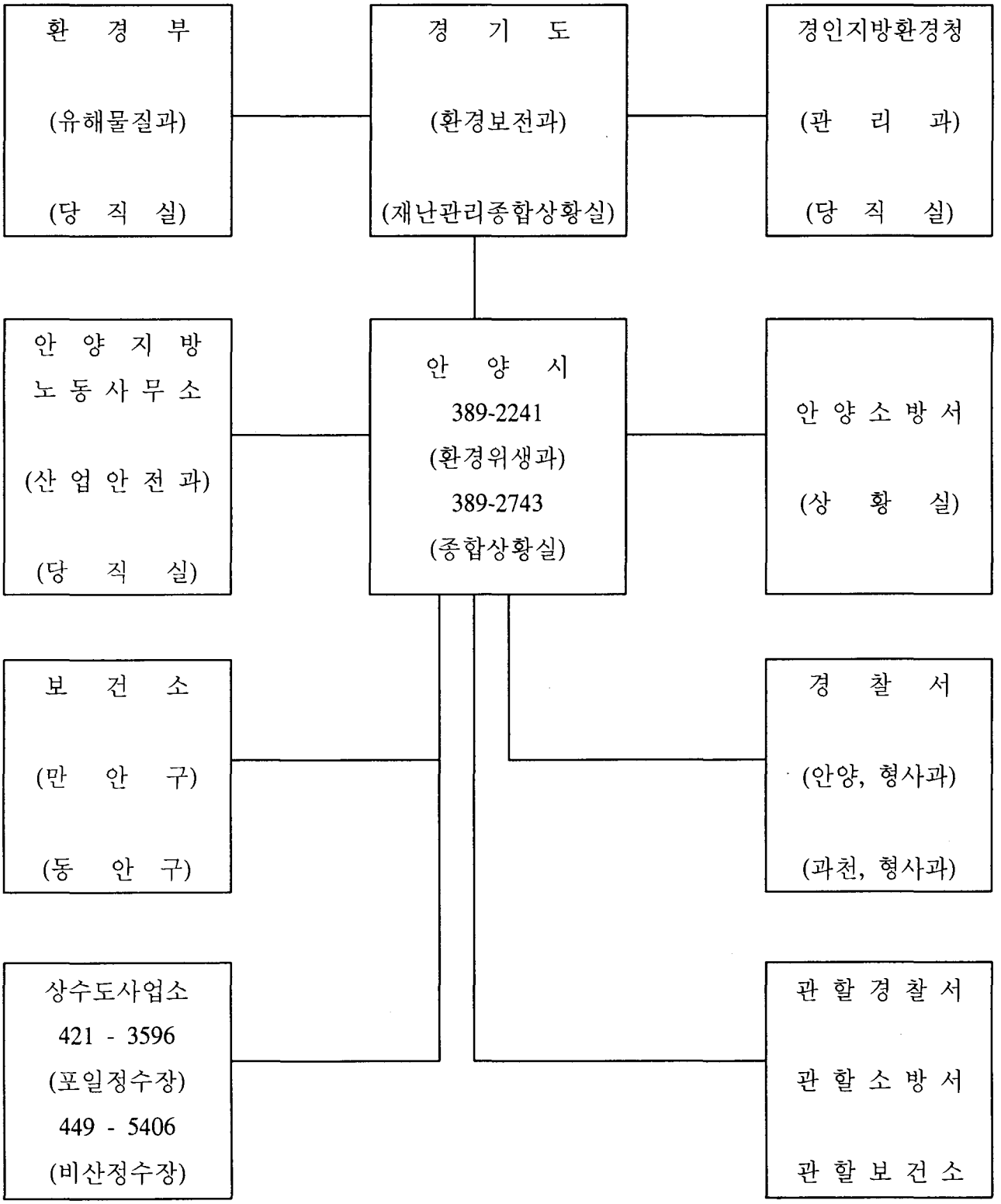

다. 사태조치 및 행동요령

○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나 최초 발견자는 즉시 유관기관 신고

- 시청, 소방서, 경찰서, 노동관서등에 사고위치, 사고물질명, 사고규모 등을 신고

○ 사고 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통제 및 인화성 물질제거

○ 인명구조 및 피해범위 확산방지 조치

○ 유관기관 사고사실 전파로 공조체제 유지

- 관련기관의 응급조치 방제인력, 장비 및 자재동원

○ 사고 발생물질에 알맞는 방제작업 실시

○ 관계기관 도착시 사고상황을 설명 신속한 방제가 되도록 조치

라.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등 지정·관리현황 : 44개소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조사대상 시설구분	지정관리 등 급	지정사유	전화번호
1	환경사업소(대우)	박달2동 664	건축물등 24동	A	정화시설	469-2235
2	청 소 사 업 소	평안동 897-1	폐기물소각장	A	200톤/일	389-2251
3	상 수 도 사 업 소	비산1동 산166	상수처리	A	122,000톤/일	389-2591
4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박달2동 664	건축물등 15동	A	정화시설	469-2235
5	대한잉크페인트(주)	박달2동 615	유독물사고	A	자체방제	467-6062
6	L. G 전 선 (주)	호계1동 555	유독물사고	A	자체방제	428-4101
7	현 길 석 유	안양8동 847-19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7-7590
8	상 신 주 유 소	호계2동 899-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4-5145
9	열 린 주 유 소	비산3동 1055-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385-7500
10	두 성 주 유 소	안양2동 693-23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7-8058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조사대상 시설구분	지정관리 등 급	지정사유	전화번호
11	그 린 주 유 소	호계동 966-54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3-0121
12	호 계 주 유 소	호계동 1006-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5-8825
13	제 일 주 유 소	비산동 540-9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9-2796
14	근 화 주 유 소	평촌동 870-5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1-4277
15	한 강 주 유 소	관양동 900-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2-8697
16	새 안 양 주 유 소	평촌동 81-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1-4797
17	청 강 주 유 소	비산1동 405-24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386-5151
18	영 화 석 유	호계2동 899-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1-3252
19	L G 칼 텍 스	비산3동 1055-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3-4196
20	석 정 주 유 소	석수동 280-16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66-1702
21	남 경 주 유 소	석수동 102-1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71-3467
22	쓰리원 주 유 소	호계동 900-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5-9146
23	한 진 주 유 소	안양5동 329-10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8-7733
24	대 한 전 선(주)	관양2동 785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0-9150
25	(주) 효 성	호계2동 138-2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8-1112
26	오 성 제 지(주)	관양2동 813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2-0570
27	조 일 제 지(주)	호계3동 615-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52-5573
28	대 영 모 방(주)	안양7동 196-12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66-2131
29	수 석 농 산(주)	박달2동 620-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74-1600
30	동화약품공업(주)	안양7동 189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44-2331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조사대상 시설구분	지정관리 등 급	지정사유	전화번호
31	삼덕제지(주)	안양4동 782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49-4131
32	오뚜기(주)	평촌동 180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1-2127
33	크라운제과(주)	관양2동 810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2-1681
34	엘지파워(주)	평안동 976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0-1982
35	제일산업(주)	석수2동 477-10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72-7351
36	평촌폐기물소각장	평안동 879-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3-3588
37	로디아폴리아마드	호계2동 909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8-1131
38	동양섬유	평촌동 872-3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1-2511
39	동아오츠카	석수2동 450-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73-0073
40	(주)조양	관양2동 984-3	수질오염사고	A	3종	421-7400
41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귀인동 934-1	수질오염사고	A	3종	389-2631
42	만안주유소	안양6동 541--2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66-1702
43	유진주유소	석수동 389-14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73-5151
44	LG칼텍스	호계동 986-12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9-5185

○ 유독물 사용업 등록현황

번 호	업 소 명	소 재 지	취 급 품 목	년간취급량 (톤)	전화번호
1	수 석 농 산 (주)	만안구 박달2동 620-5	수산화나트륨등	292	449-8640
2	동 아 오 츠 카(주)	만안구 석수동 450-1	수산화나트륨등	400	473-0073
3	L G 전 선(주)	동안구 호계동 555	크레졸등	2,122	428-4102
4	(주) 디 피 아 이	만안구 박달2동 615	톨루엔등	25,095	467-6065
5	삼성특수화학(주)	동안구 관양2동 913-4	크실렌등	650	421-3731
6	동화약품공업(주)	만안구 안양7동 189	메탄올등	493	444-2331
7	(주) 효 성	동안구 호계2동 183-2	메틸렌등	984	428-1112
8	대 한 전 선 (주)	동안구 관양2동 785	가성소다등	394	420-9153
9	엘 지 파 워 (주)	동안구 평촌동 897-2	염산등	146	420-2553
10	대 한PPG (주)	만안구 박달동 615	크실렌등	200	466-6077
11	대한잉크화학(주) PPI	만안구 박달동 615	톨루엔등	1	467-6350

12. 전염병 사고

1) 만안보건소

□ 전염병 발생 사고

○ 전염병 발생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과 조기 수습체계 확립
○ 전염병 관리체계 및 주민홍보 강화로 전염병 발생 사전 방지

1). 추진방침

○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유사시 신속대처
○ 환자 조기발견사업 강화로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
○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제거

2). 예방대책

가.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기　간 : 년중
○ 편　성 : 1개반 6명
○ 구　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요원, 소독수
○ 임　무
- 역학조사 실시(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 환자 및 접촉자등에 대한 관리
- 환경위생 조사 및 환자, 개달물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
-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나. 하절기 비상근무

○ 기　간 : 5. 1~9.30 (6개월간) 20:00까지
○ 운　영 : 1개조 2명
○ 내　용
- 주요 모니터 대상기관에 집단 설사환자 발생유무를 매일 확인
- 전염병 집단발생 우려지역 감시활동 강화

다. 전염병환자 격리병원 지정

○ 기　간 : 년 중

○ 지　정 : 병원급이상 2개소

○ 내　용

- 관내 집단환자 발생등 유사시 환자 후송 및 격리 치료
- 제1군 전염병환자 발생시 즉시 격리 및 치료조치

라.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 기　간 : 년중

○ 대　상 : 병·의원, 약국, 각급학교, 산업체보건관리자, 통반장등

○ 임　무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전염병(의사)환자 발견,검체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통보
-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전화통보

마. 방역소독 강화

○ 기　간 : 4. 1~9.30

○ 대　상 : 취약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하천, 침수지역등)

○ 내　용

- 취약지역 및 재해지역에 대한 살충·살균소독 실시
- 재해대비 전염병예방약품 비축관리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 본부설치 운영 : 만안구보건소

○ 구　성

- 대책본부장 : 시장
- 부 본 부 장 : 부시장
- 상 황 실 장 : 보건소장
- 대　책　반 : 3개반

나. 반별임무

○ 역학조사반 : 전염병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검체채취 및 검사실시

○ 환자수송반 : 집단 전염병환자 발생시 후송 및 응급조치

○ 방역기동반 : 환자등에 대한 방역소독 및 주민 보건홍보 활동

다.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 환자 발생지역에 역학조사반 파견

- 1차조치 : 역학조사 및 검체채취
- 2차조치 : 검체검사 및 원인규명

○ 환자후송 및 격리, 치료 조치

- 환 자 : 지정병원에 즉시 입원 및 격리 조치
- 접촉자 : 보균검사 실시 및 보건교육

○ 환자 및 환자주변에 대해 살균소독 실시

○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라. 사태발생시 신고체계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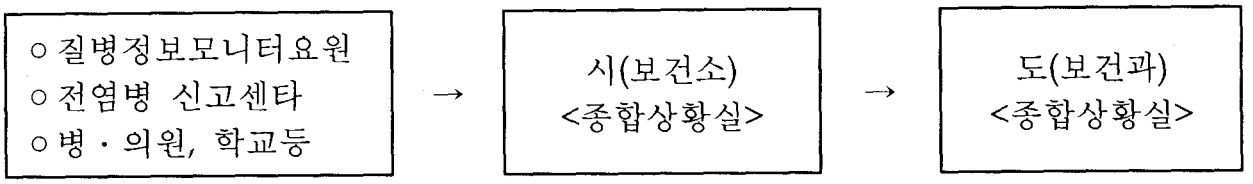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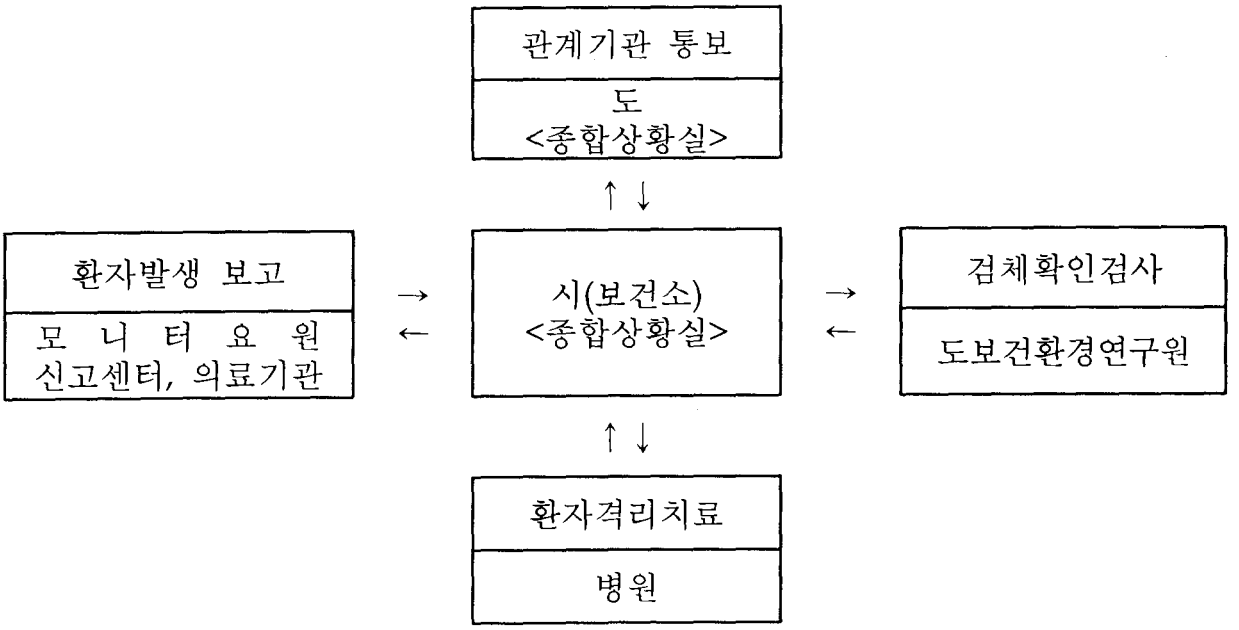

○ 제1종 전염병환자 진료 및 격리시설 지정 : 2개병원/46병상

구 분	격리시설명	소 재 지	대 표 자	병 실 수	병 상 수
만안	메트로병원	안양8동 342-105	이계순	4	16
	안양병원	안양5동 613-9	이상택	7	30

○ 방역소독장비 보유현황

계	방역차량	연 막 소 독 기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기 타
		차량용	휴대용			
15	1	3	3	2	6	

○ 재난대비용 비축소독약품 보유현황

살 충 제(l)			살 균 제(l)			우물소독약(kg)	비 고
계	연막	분무	계	옥외용	옥내용		
390	130	260	200	80	120	360	

○ 주민홍보 및 계도

● 예방홍보

- 주민의 전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방어 능력 배양
- 관련부서와의 협조
  - 문화공보담당관 : 유선방송, 지방신문, 인터넷등
  - 각동사무소 : 앰프방송 활용

전염병 발생시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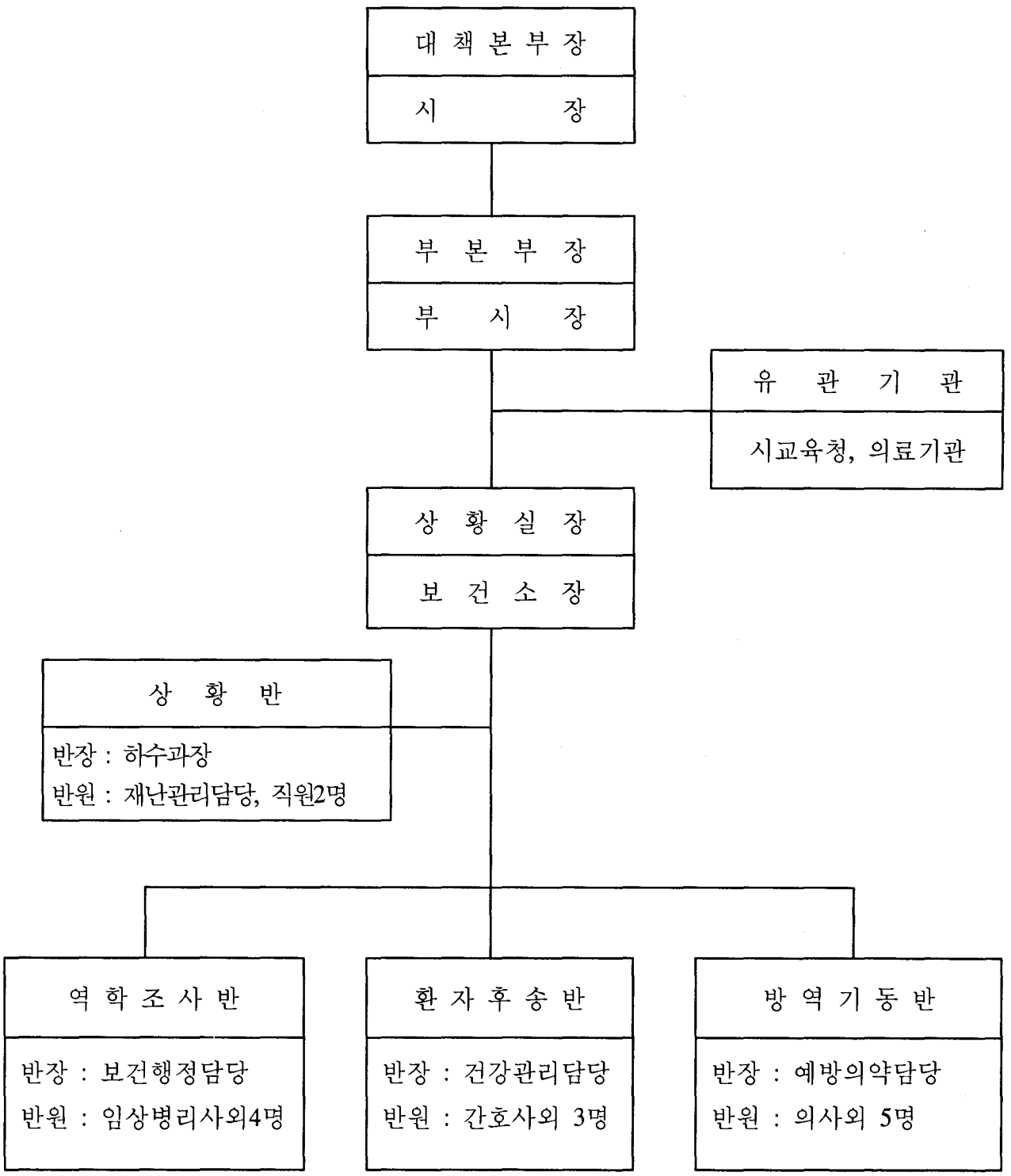

2) 동안보건소

가. 전염병 대책계획

1) 목 적

○ 최근의 기상이변 및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의 유행방지를 위하여 각종 예방활동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재난사전 대비에 적극 대처코자함

2) 방 침

○ 전염병 조기 발견 치료 및 확산방지

○ 전염병 예방접종 내실화

○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

3) 추진계획

가) 발생전 대책

○ 예방접종 철저

● 기초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체면역을 부여

● 성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필요시 확대 적용

○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편 성 : 1개반 6명

● 구 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소독수, 운전기사

● 임 무

- 역학조사(발생원인 규명 및 세균검사)
- 환자 및 접촉자등에 대한 조치
- 주민 보건계몽 교육
- 살충, 살균 소독과 기타 보고사항등

○ 환자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확립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운영방법 : 각종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주민 또는 보건기관등에 예보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대비

- 신고체제

환 자 (병의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	보 건 소	→	도 보건과

○ 방역요원의 전문성 확보

● 방역 및 예방접종요원, 산업장 보건관리자, 학교양호교사, 소독업자등에 대한 교육실시로 전염병 관리능력 부여

○ 취약지역 관리 강화

계	영세민지역	침수우려지역	하천변	하수구	기 타
37	2	6	21	8	-

● 취약지역(영세민 밀집지역, 침수예상지역, 하천변등)을 사전 파악하여 동 지역에 대한 주1회이상 방역소독 실시

○ 보균자 찾기 검사 강화

● 감염자 추적 관리

- 장티프스, 콜레라등 급성전염병 감염자의 수시검사 강화를 통한 질병전파 방지
- 기왕력자에 대해서는 2년간 6개월에 1회 보균검사로 질병전파 방지

나) 발생시 대책

○ 방역기동반의 신속 대응체제 확보

●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운영

- 환자발생 신고시 즉각 방역활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비상방역 근무조(6명)를 편성 24시간 가동

● 환자발생시 단계별 대응 조치 실시

- 1단계 : 방역기동반 현지 출동 및 조치
- 2단계 : 환자 및 접촉자 격리 수용 및 가검물 채취
- 3단계 : 전파경로 및 감염원 추적 조사
- 4단계 : 환자 및 인근지역 방역소독(급수원, 화장실, 쓰레기장, 하수구등)
- 5단계 : 주민보건홍보 및 계몽

○ 환자신고 체제의 강화

● 질병 정보 모니터망(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 학교)과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한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 강화

신 고 자	조 치 사 항	
	보 건 소	도
○ 의사, 한의사 ○ 환자가족 ○ 기관의장 ○ 지역민방위대장 ○ 기타 주민	○ 환자확인 ○ 환자격리 ○ 역학조사 ○ 현지방역 및 보건계몽	○ 재확인 ○ 방역지원 ○ 역학조사

○ 전염병 발생지역에서는 집단배식을 가급적 금하고 환자발생지역에 출입을 피하도록함

○ 환자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보균검사 및 보건계몽실시

○ 홍보강화로 주민 개개인의 질병관리 능력배양 및 민심안정 도모

가) 전염병 관리체제

○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계	병의원	약 국	양호교사	사회복지시설	산업체보건관리자	통반장등	비 고
88	12	7	18	2	32	17	

○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구 분	의 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요원	소독수
1개반/6명	강영주	김미덕	황영주	김창희	전창성	1명

○ 자율방역단 구성

계	자연마을	영세민지역	침수예상지역	인구밀집지역	기 타
37	7	1	1	6	22

○ 제1종 전염병환자 진료 및 격리시설 지정 : 2개병원/35병상

구 분	격리시설명	소 재 지	대 표 자	병 실 수	병 상 수
동안	한성병원	호계3동 968-18	조광열	5	30
	한림대성심병원	평안동 896	윤대원	1	5

○ 방역소독장비 보유현황

계	방역차량	연 막 소 독 기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기 타
		차량용	휴대용			
22	1	3	3	2	12	1

○ 재난대비용 비축소독약품 보유현황

살 충 제(ℓ)			살 균 제(ℓ)			우물소독약(㎏)	비 고
계	연막	분무	계	옥외용	옥내용		
390	130	260	200	80	120	2	

○ 재난대비용 전염병예방약품 보유현황 : 장티푸스 300명분

○ 주민홍보 및 계도

● 예방홍보

- 주민의 전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방어 능력 배양
- 관련부서와의 협조
  - 문화공보담당관 : 유선방송, 지방신문, 인터넷등
  - 각동사무소 : 앰프방송 활용

전염병 발생시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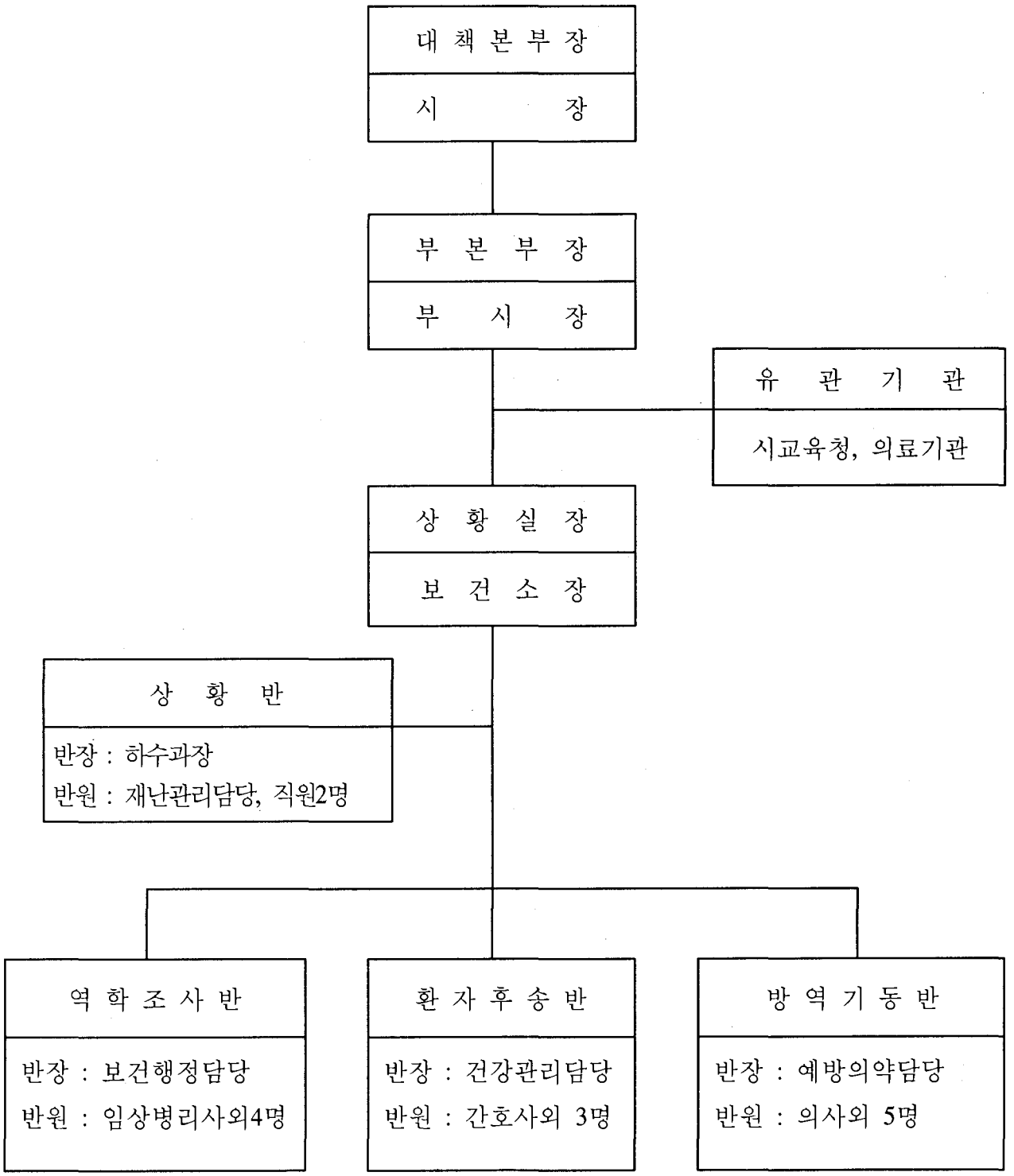

13. 유기施設 安全事故

○ 유기시설 안전점검 철저로 이용자 안전도모

○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예방 및 유사시 신속대처

1) 유기시설 현황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유면적(㎡)	허가(신고)일자	안전검사 대상시설
코아랜드	장하림	호계동 1040-1 (범계동뉴코아내)	576	1995.05.25	3개시설 (우주탐사대,해적선 ,회전목마)
싸이버월드	박정애	안양1동 674-265 (1층)	262.15	2000.12.15	1개시설 (싸이버인스페이스)

2) 추진방침

○ 유기시설 정기 안전점검 철저

○ 시설별 안전관리요원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대처

3) 예방대책

가. 유기시설 안전성검사 실시

○ 검사기관 : 종합유원시설업협회

○ 검사회수 : 년 1회이상

○ 주요 검사내용

- 유기시설 종합안전진단
- 유기시설 일일 안전점검 실시여부
- 유기시설 고장, 파손등 안전상태

○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 개선완료 후 재검사 결과 적합시 운행

나. 관리실태 정기점검

○ 점검기관 : 도, 시, 구

○ 점검회수

- 도 : 반기 1회이상 (년2회)
- 시 : 분기 1회이상 (년4회)
- 구 : 월 1회이상

○ 주요 점검내용

- 안전성검사 실시 여부
- 일일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부 관리실태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 본부설치 운영 - 문화예술과

나. 사고발생시 조치

○ 해당업소

- 인명피해시 긴급후송 안전조치
- 사고 유기시설 보수 철저 및 점검 확행

○ 시

- 환자후송에 따른 차량 및 행정지원
- 사고 유기시설 보수 지도감독 철저
- 업소 사후관리 철저

<별첨 1>

유기장 사고 수습대책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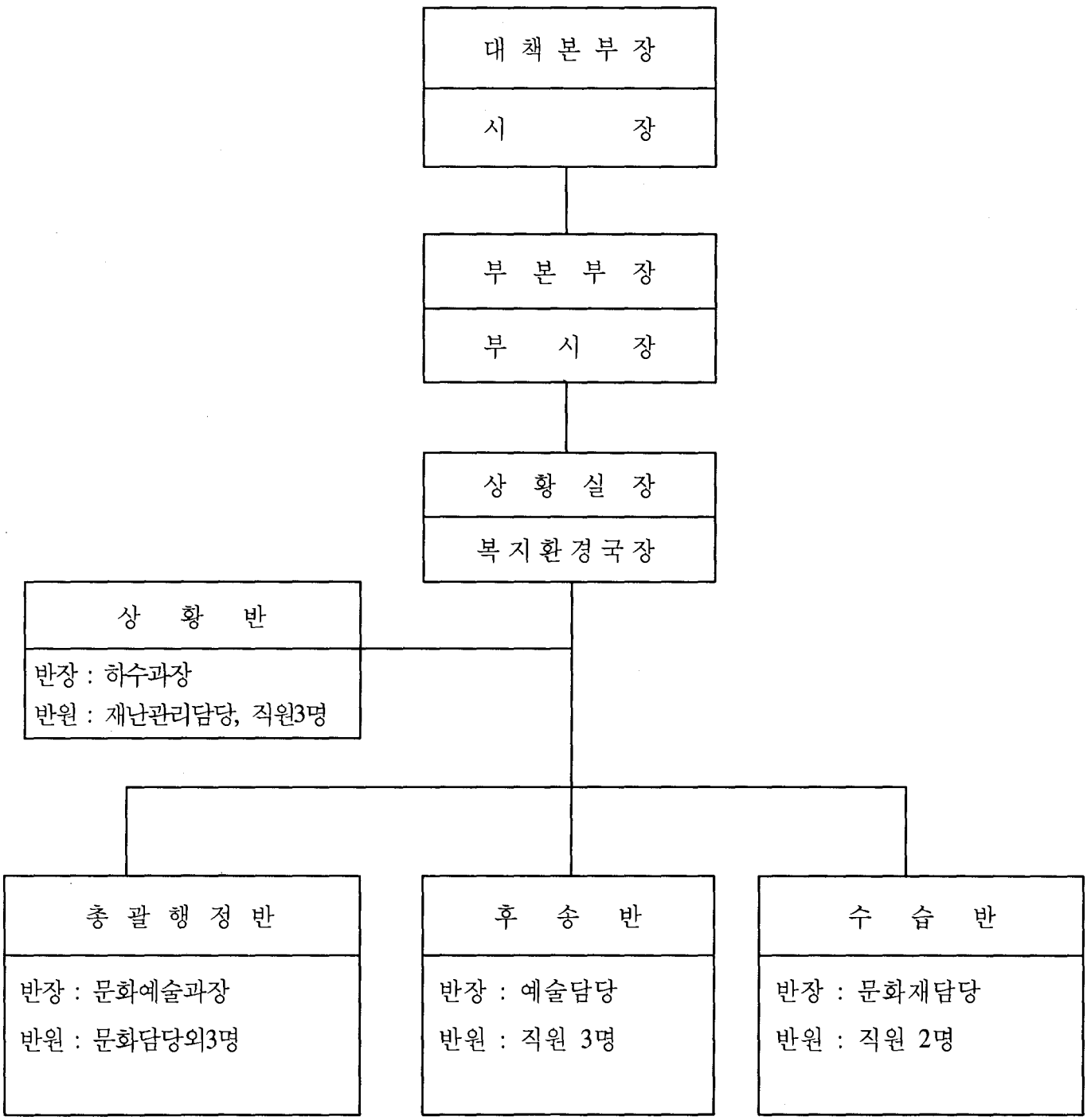

14. 競技場 事故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운동 경기중 관중 난동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상황을 조기 수습하고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함

1) 추진방침

○ 종합운동장 시설이 수시·정기점검 및 전문기관의 정기진단을 받아 재난을 사전예방

○ 주민피해우려 체육시설 중점 점검관리

○ 관중 난동 조기수습

2) 예방대책

○ 체육시설 정기안전도 점검실시

- 기 간 : 2002. 4~5월, 9~10월
- 대 상 : 7개소
  - 종합운동장 : 1개소
  - 야외수영장 : 1개소
  - 인 공 암 벽 : 1개소
  - 실내빙상장 : 1개소
  - 실내수영장 : 1개소
  - 다 이 빙 장 : 1개소
  - 체 육 관 : 1개소

○ 중점점검시설·상설 점검반 편성운영

- 상설 점검반 편성 : 1개반 5명
- 중점점검시설 : 인공암벽, 운동장스탠드, 하구비등, 조명타워, 다이빙장, 야외수영풀장, 실내수영풀장, 실내체육관 지하주차장

○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점검실시(사단법인 한국시설안전진단공단)

- 주요점검사항 : 구조상 주요부분의 균열발생 점검 및 보수점검, 구조안전 위험부분의 파악 및 조치관리 각종 재난시 대처요령 비치 및 교육훈련실시

○ 각종 재난대비 보상보험등 가입 및 재난대책 예산확보

3) 각종 재난시 수습대책

○ 사고발생 즉시 지정병원 응급실, 소방서 등에 구조 요청

○ 사고 즉시 수습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각 반별 임무실시

-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 상황실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3개반으로 편성

○ 운 영

- 사고발생시 규모와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자체 결정시행
- 사고의 전파와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각 반별 업무 소관별로 책임 수행

○ 구 성

-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 상황실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3개반으로 편성

○ 운 영

- 사고의 전파와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즉시 보고 및 각반별 소관임무 수행
- 사고발생시 규모와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보고 및 자체결정 시행
- 기타 대민 피해보상 진행 및 협의 조정

○ 반별 임무

- 총괄 및 행정반 :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상급 · 유관기관) 비상소집, 유관기관 긴급출동태세 협조유지, 피해상황파악 보상추진
- 복 구 반 : 경기장 사고발생 상황파악, 재해시설 응급조치 및 긴급 복구 각종장비 동원으로 조기 원상복구
- 지 원 반 : 사고수습활동 지원 및 기타 지시사항처리

- 운영 : 화재, 관중 난동 등 각종 재난발생시 긴급운영 및 조치

※ 수습대책본부 편성표 : 별첨

나.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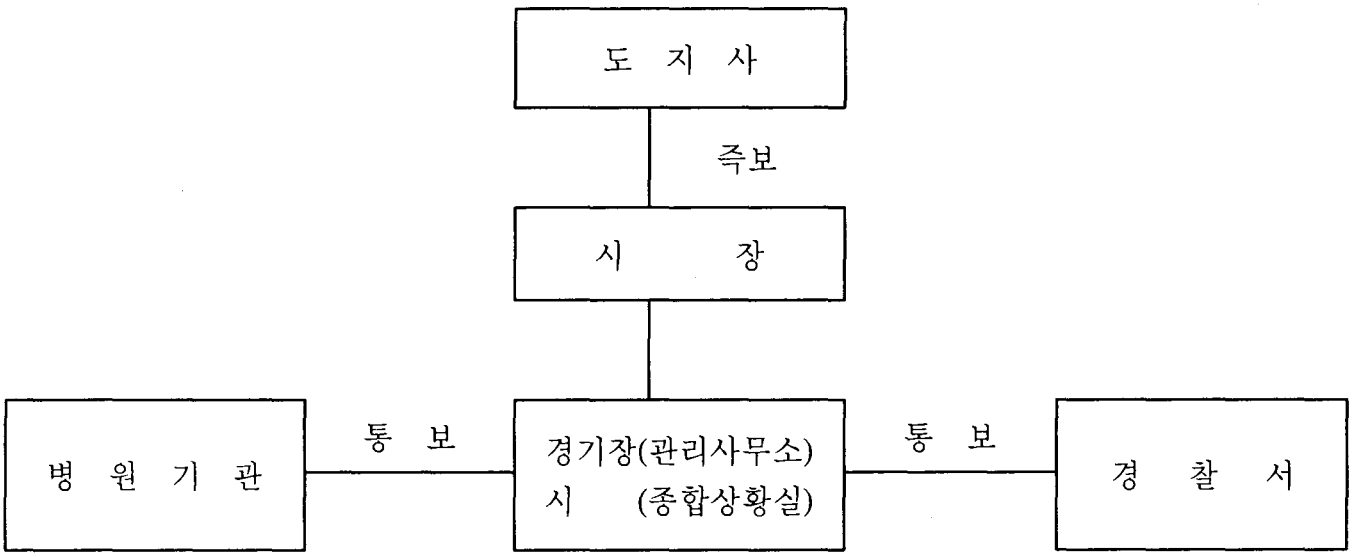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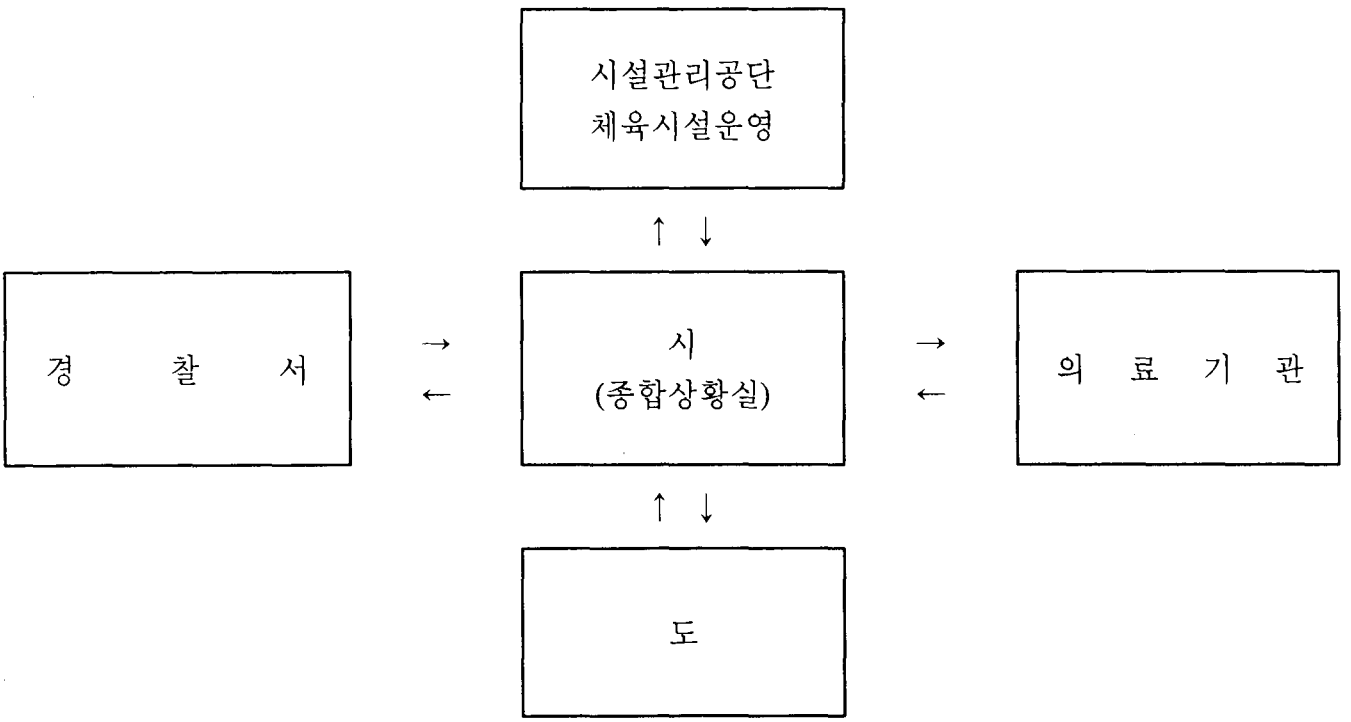

경기장 사고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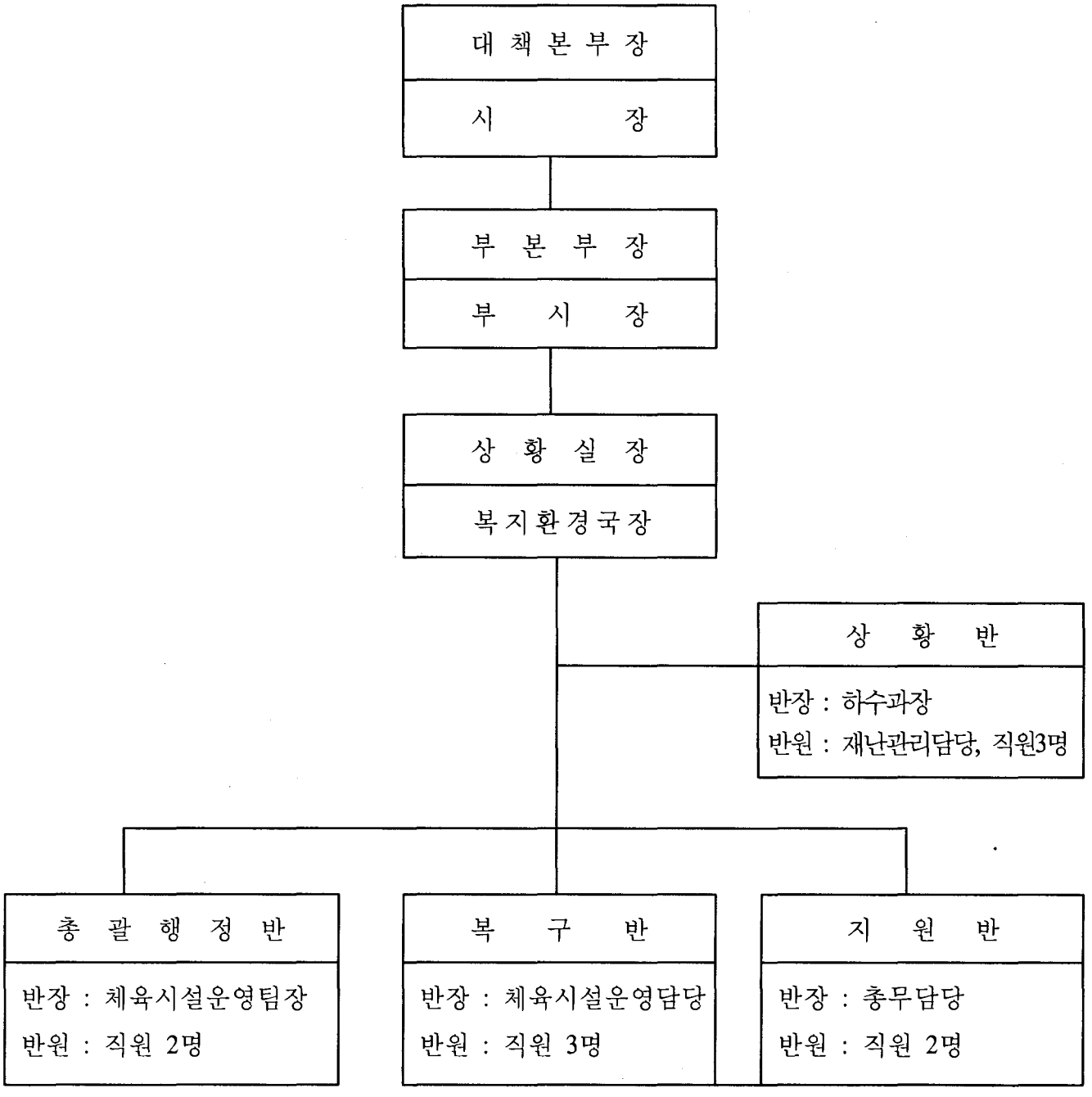

15. 묘지崩壞 事故

○ 호우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묘지 붕괴사고의 예방과 조기 수습체계 확립

○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1) 추진방침

○ 묘지 붕괴사고의 사전 예방대책 강구

○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 민방위, 재단법인묘원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2) 예방대책

가. 묘지 붕괴사고 사전예방

○ 수방자재 사전확보 조치

- 마대, 피복용 비닐, 말뚝, 가마니 등
-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수립
-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

○ 피해우려지역 중점관리

- 현지점검 : 매년 5월, 11월(2회)
- 관리대상 : 2개소
  - 청계공동묘지 : 338,500㎡ 11,615기
  - 안 산 공 원 : 50,083㎡ 780기

나. 피해예방활동 강화

○ 피해우려지역 사전 정비지도

- 기　　간 : '2001. 5 ~ 6월 정비완료
- 정비사항 : 축대보강, 배수로정비, 잔디식재, 측구공사 등

○ 기동순찰반 2개조 4명 순찰활동 강화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 본부설치 운영 - 사회복지과장

○ 구 성 (표 1참조)

- 평시 사회과내 묘지 붕괴사고방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묘지 붕괴사고 발생즉시 대책본부로 전환운영
-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상황실장(복지환경국장), 현장 지휘소 및 3개반으로 편성

○ 운 영

- 사고발생시 규모와 예방피해 정도에 따라 자체결정 시행
-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상황을 각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 수행

○ 반별임무

- 총괄 및 행정반 :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상급 · 유관기관)
  사고전파 및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수　　습　　반 : 사태별 상황파악 및 대책수립 추진
  사고 종합분석 평가
- 홍　　보　　반 : 각종 상황파악 및 홍보
  묘지피해 연고자 파악 및 피해상황 전파

나. 신고 및 보고체계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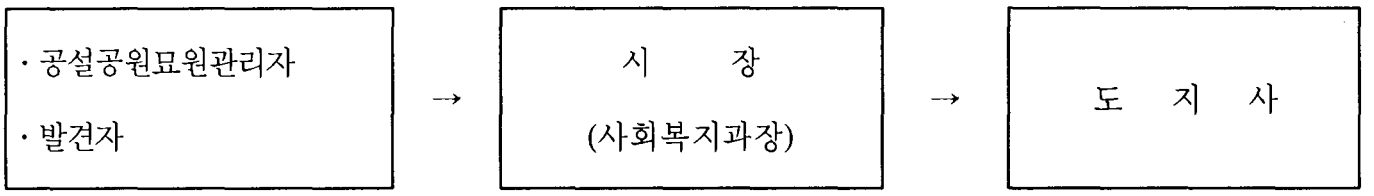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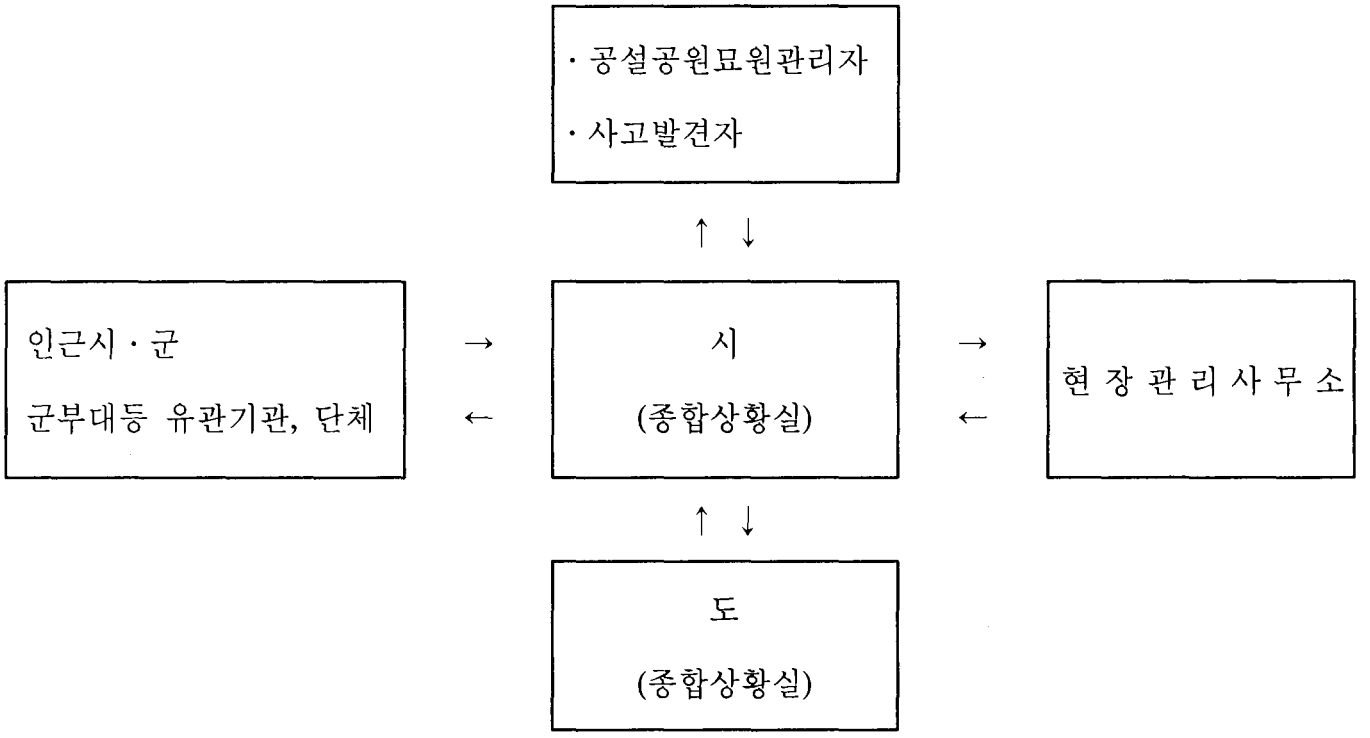

<표 1>

묘지붕괴사고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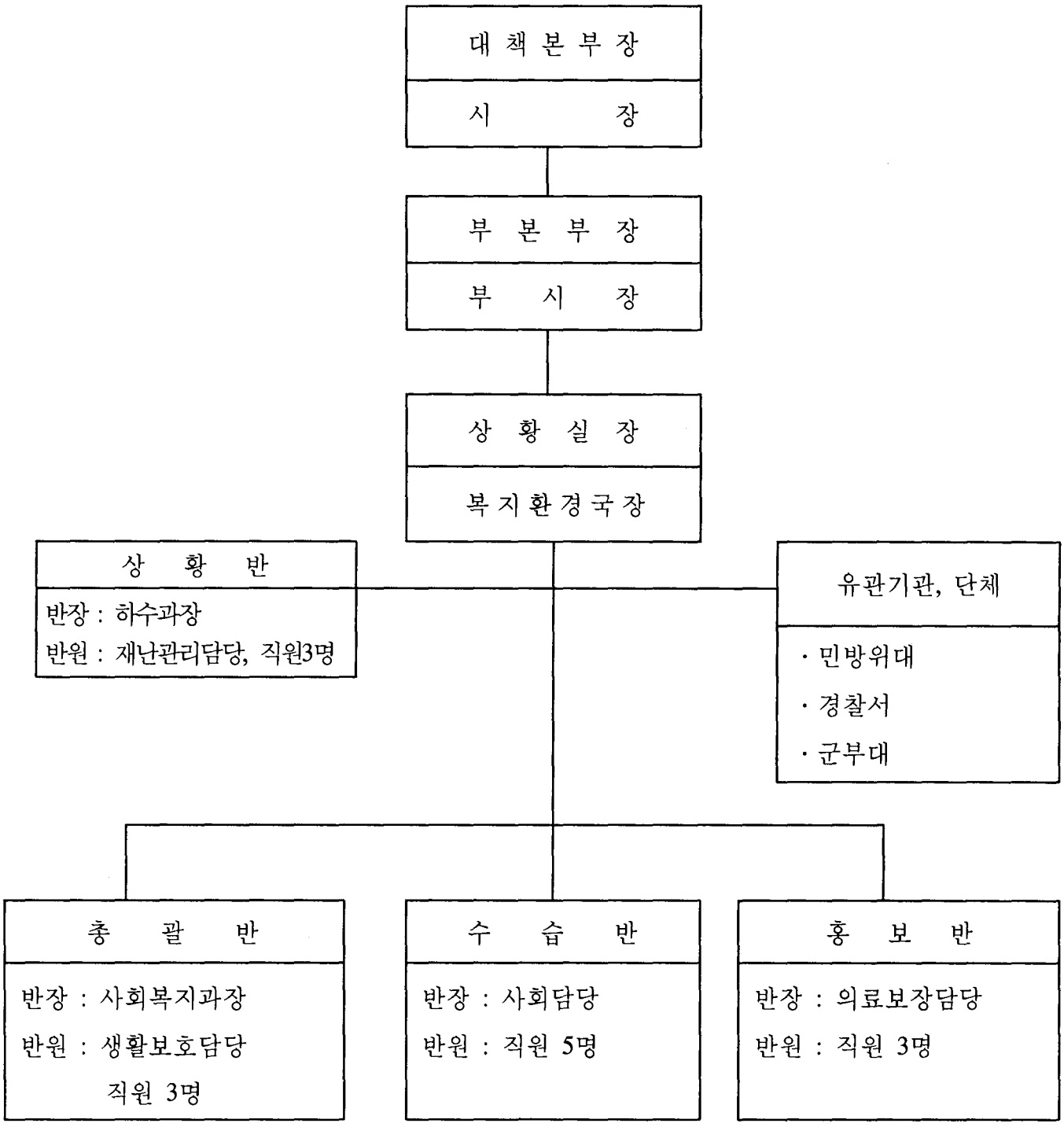

16. 航空機 事故

1) 추진방침

○ 항공기 사고신고 및 인명구조 태세 확립
○ 항공기 사고 신고체계 구축
○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작업 추진

2) 사고구조 및 수습대책

〈목 적〉

○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사고발생시 신고체계 구축

가. 추진방침

○ 항공기사고 특성을 감안함
- 사고신고체계구축
- 신속 구조활동을 위한 기동력 및 의료시설 확보

※ 항공기사고의 특성

○ 산간, 오지, 도심등 불특정지역에서 발생
○ 악천후에서 발생가능성 높음
○ 극심한 인명피해와 구조시간 지연시 사상자 급증

나. 추진계획

○ 사고발생시 신속 구조활동을 위한 자치구조체계 구축
○ 시전역 신고망 구축 : 구, 동, 통

다. 세부추진계획

○ 신고체계망 구축

- 항공기 사고특성을 감안한 신고체계 구축
  - 사고최초접수 및 신고기관 : 시전역 동사무소
  - 상급기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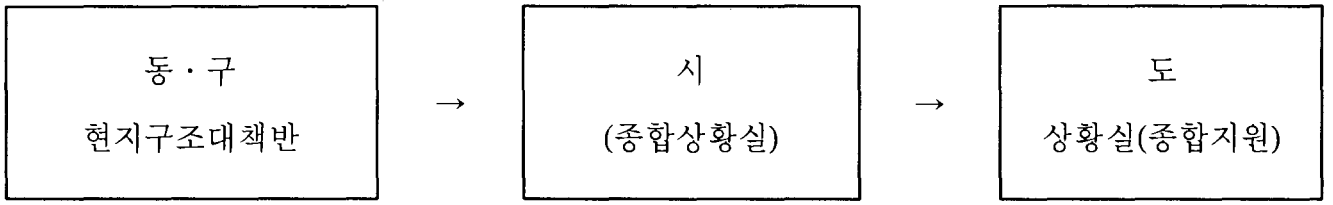

○ 전시민의 사고신고 요원화

라. 긴급 인명구조체계 유지

○ 인명구조 대책본부설치 : 사고신고 접수 즉시

- 본부장 : 시장
- 통제관 : 소방서장

〈대책본부요원 임무〉

① 사고지점 확인후 상황전파

○ 기관 - 동사무소에 구조지시

- 전담반별 임무부여 출동지시

○ 유관기관 : 경찰서, 군부대, 기타 필요기관 단체협조요청

② 상급기관 보고 : 동 → 구 → 시 → 도

③ 정확한 상황관리

○ 구조반편성 및 임무부여(사전숙지)

- 구 조 반 : 사고현장출동 인명구조
- 후 송 반 : 구조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안전후송
- 의료지원반 : 인근 의료기관 및 병원(사전지정 및 사후 입원치료) 지정
- 소 방 반 : 소방관련부서(화학소방장비 확보)

○ 항공기사고 특성에 대비한 장비 사전확보

- 인력에 의한 구조용품 : 들것, 손전등, 삽, 도끼, 기타
- 악천후에 대비한 용품 : 우의, 비닐, 방한용 모포, 기타
- 기타 응급용 의료장비 및 구급용품등

○ 인근 시, 군 협조 지원의무

- 지역 관할구역없이 긴급구조
- 협조요청시 즉각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의무
-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구조

<별첨 1>

○ 항공기사고 신고 및 인명구조

최초목격자 (신 고)	→	동사무소, 파출소 (주민동원)	→	시 청 (총괄지휘)
		①접수 즉시보고 ②현지주민 동원 구조지시		확인후 ①상황파악 ②구조대책 강구 ○구조반별 임무 부여 및 출동 ○유관기관 협조 요청 ③도에 상황보고

○ 구조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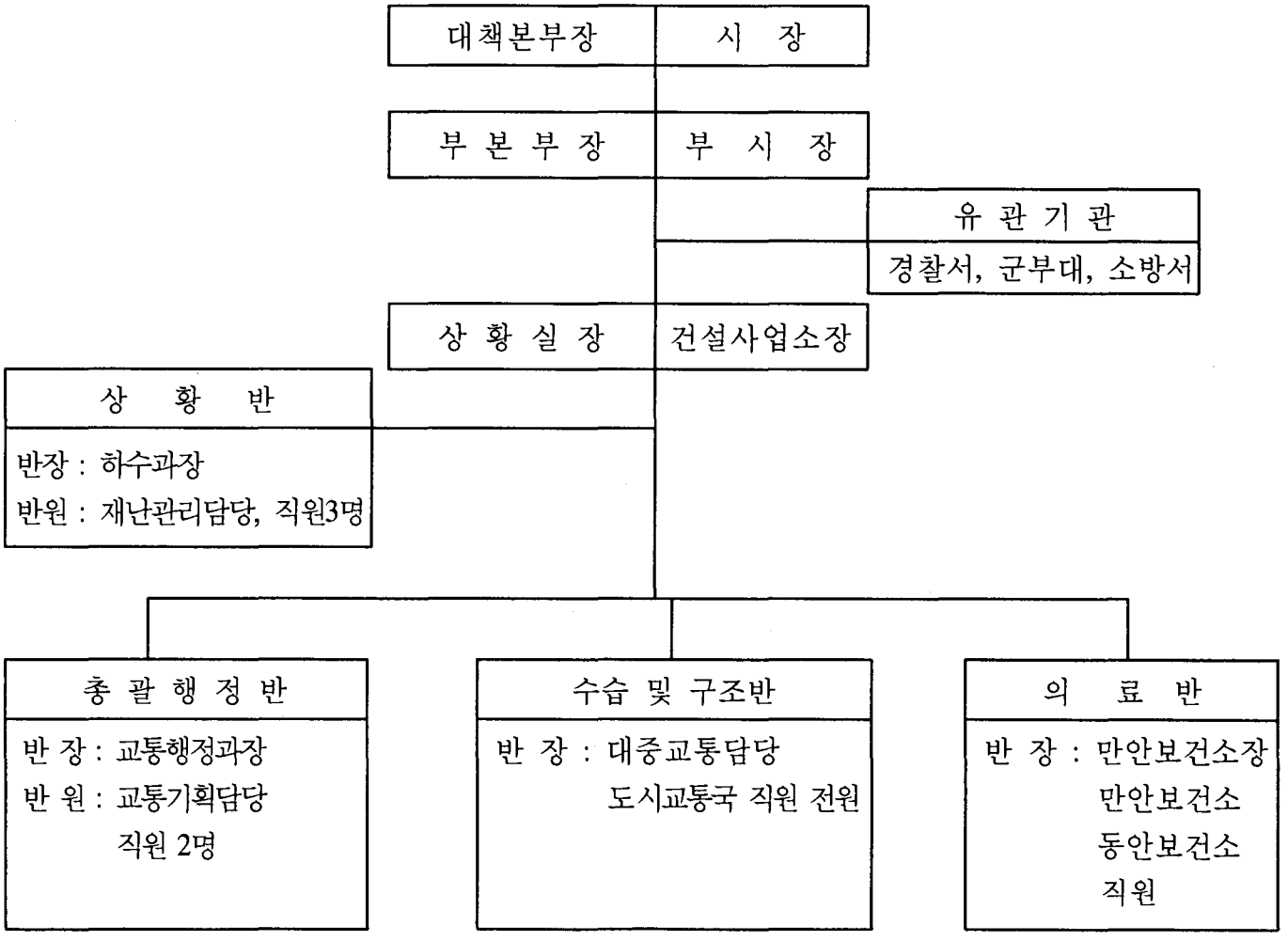

17. 공동구 사고

○ 평촌공동구(상수구, 통신구, 전력구) 시설물에 대해 화재등 비상발생을 대비,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비상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공동구의 제기능을 유지하여 국가 중요 시설물인 공동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방침

○ 공동구 시설물 점검 철저
○ 공동구 출입자 철저 통제
○ 점용(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2) 예방대책

가. 평상시

○ 점검조 편성 운영(2인 1조)
- 년중 일일 일상점검 및 수시 현장 확인
- 공동구 관리사무소 상시 근무
- 점검내용
  - 구조물 상태 및 부대시설물 이상 여부
  - 화기 및 인화성 물질 유입여부
  - 환기구 시건장치 상태등
- 년 1회 합동점검 실시(관리기관, 점용 유관기관)

○ 공동구 출입자 철저 통제 및 지상시설물 방호 강화
- 출입자 철저 통제
  - 출입자 명부 기록(신분확인)
  - 안전교육 실시등

● 지상 시설물(환기구) 방호 강화

- 환기구 전자감응장치 설치

- 환기구 시건장치 확인 및 순찰

○ 공동구 보안관리 지침작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공동구 보안관리 지침 작성(200. 1. 27)

- 관련근거 : 도 건설95300-78(2001. 6. 12)호

- 보안목표 : 국가보안목표 "다"급 지정

→ 통제구역 : 공동구 중앙제어실,공동구 입구(사무실)

→ 제한구역 : 공동구 현관입구(공동구 출입자 철저통제)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안양소방서간 : Hot-Line설치 운영

- 공동구 관리사무소 ↔ 안양소방서간 설치

→ 공동구 비상(화재등) 발생시 신속한 상호 연락망 구축

• 안양경찰서 : 일일 순찰 점검

• 군부대(2506 3대대)

→ 공동구 주요시설 방호카드 작성

→ 공동구 국가 중요시설 방호진단

※ 점용(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제 유지

나. 비상시

○ 공동구 시설물 점검중

● 이상 발견시 점용기관에 즉시 통보

● 현장확인등

○ 비상 복구반 편성 운영

- 동안건설 58700-387('97 2.27)호에 의거
- 상수공무 58442-20('97. 1. 4)호에 의거
- 한전안양지(배) 850-880('96.12.11)호에 의거
- 평촌전화 58700-722('96.12.13)호에 의거

  → 자체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 비상연락체계 확립

- 점용(유관)기관과 상시 비상연락망 체계 확립

3) 수습대책

가.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동안구 건설과(공동구 관리사무소)- 지역경제과

○ 구 성 (별표 1참조)

- 동안구 건설과의 공동구 관리사무소내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

  → 사고발생 즉시 수습대책본부로 전환

- 수습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 부본부장(구청장), 상황실장(건설과장), 각 수습반

○ 운 영

- 사고발생시 피해 여부에 따라 자체 수습
- 각 점용기관 비상 복구반 운영

○ 관기기관 반별 임무

- 행정지원반 : 동원인원급식, 비상근무 수명, 비상상황관리 및 집계
- 시설복구반 : 긴급복구 및 사고예방 파악, 상황별 대책 수립, 공동구 출입 통제 및 초기 안전시설 작동
- 현장지원반 : 물자동원 및 지원, 소요장비 수배 및 확보
- 상 황 반 : 상황보고 및 상황체제 유지, 비상상황 홍보
- 지 원 반 : 각종 제반사항을 지원

나. 사태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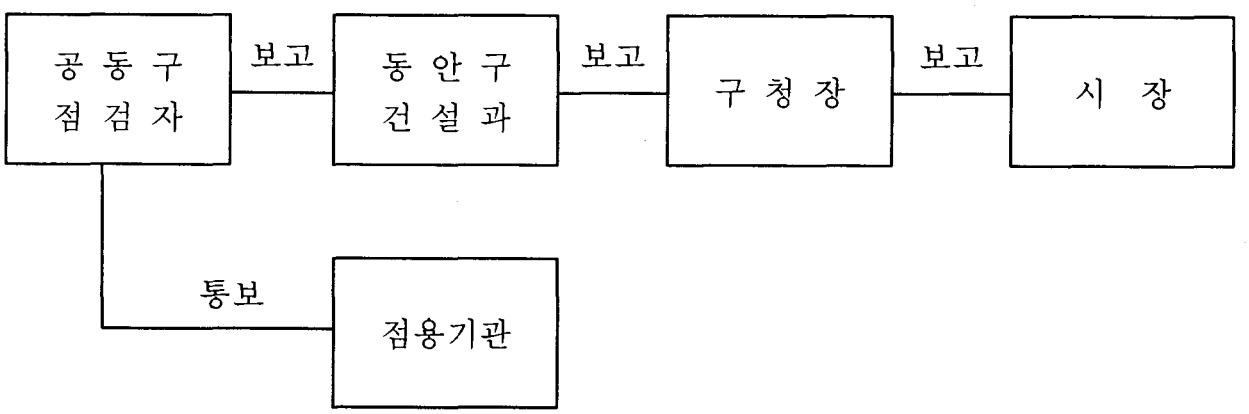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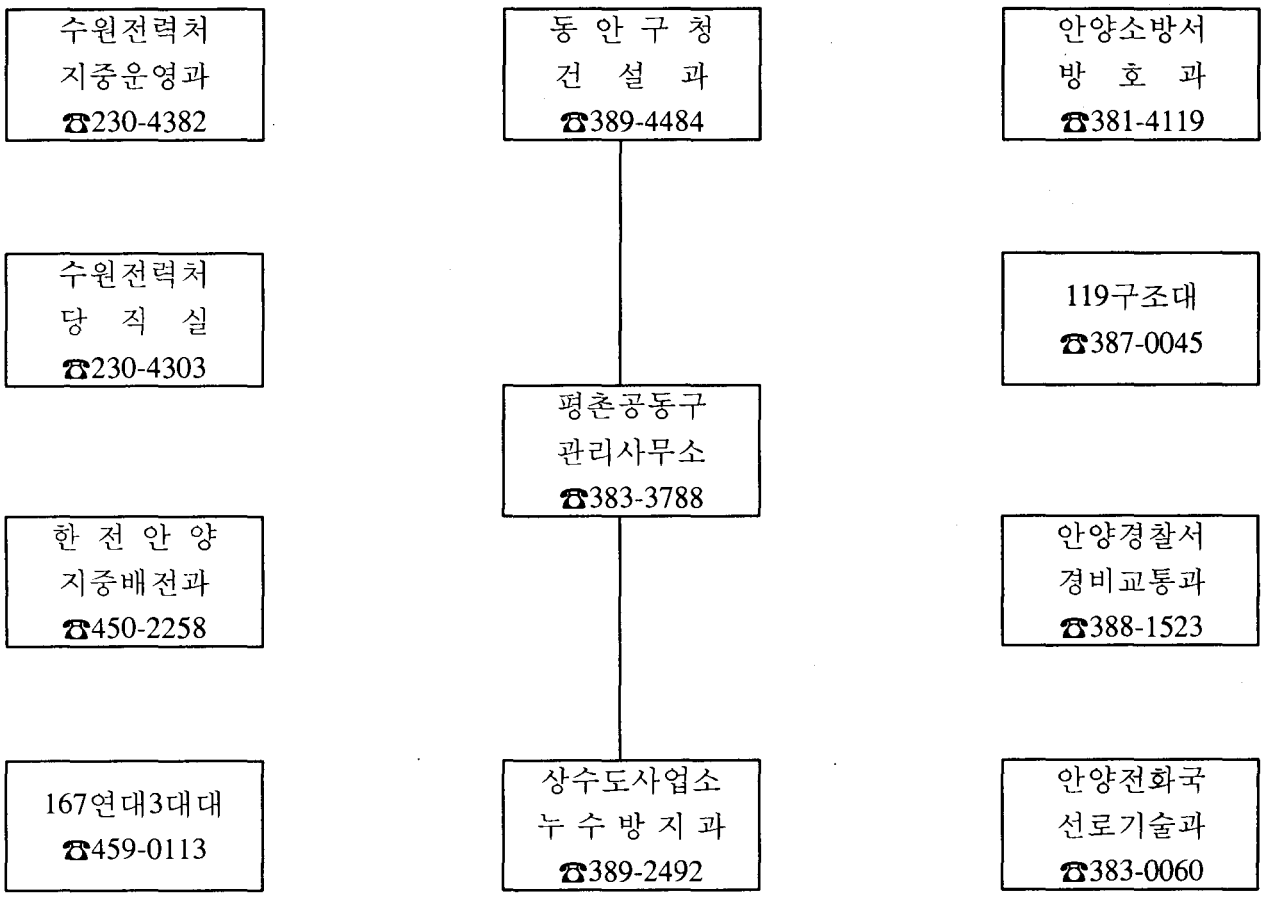
수원전력처
지중운영과
☎230-4382
동 안 구 청
건 설 과
☎389-4484
안양소방서
방 호 과
☎381-4119
수원전력처
당 직 실
☎230-4303
119구조대
☎387-0045
평촌공동구
관리사무소
☎383-3788
한 전 안 양
지중배전과
☎450-2258
안양경찰서
경비교통과
☎388-1523
167연대3대대
☎459-0113
상수도사업소
누 수 방 지 과
☎389-2492
안양전화국
선로기술과
☎383-0060

공동구 비상시 수습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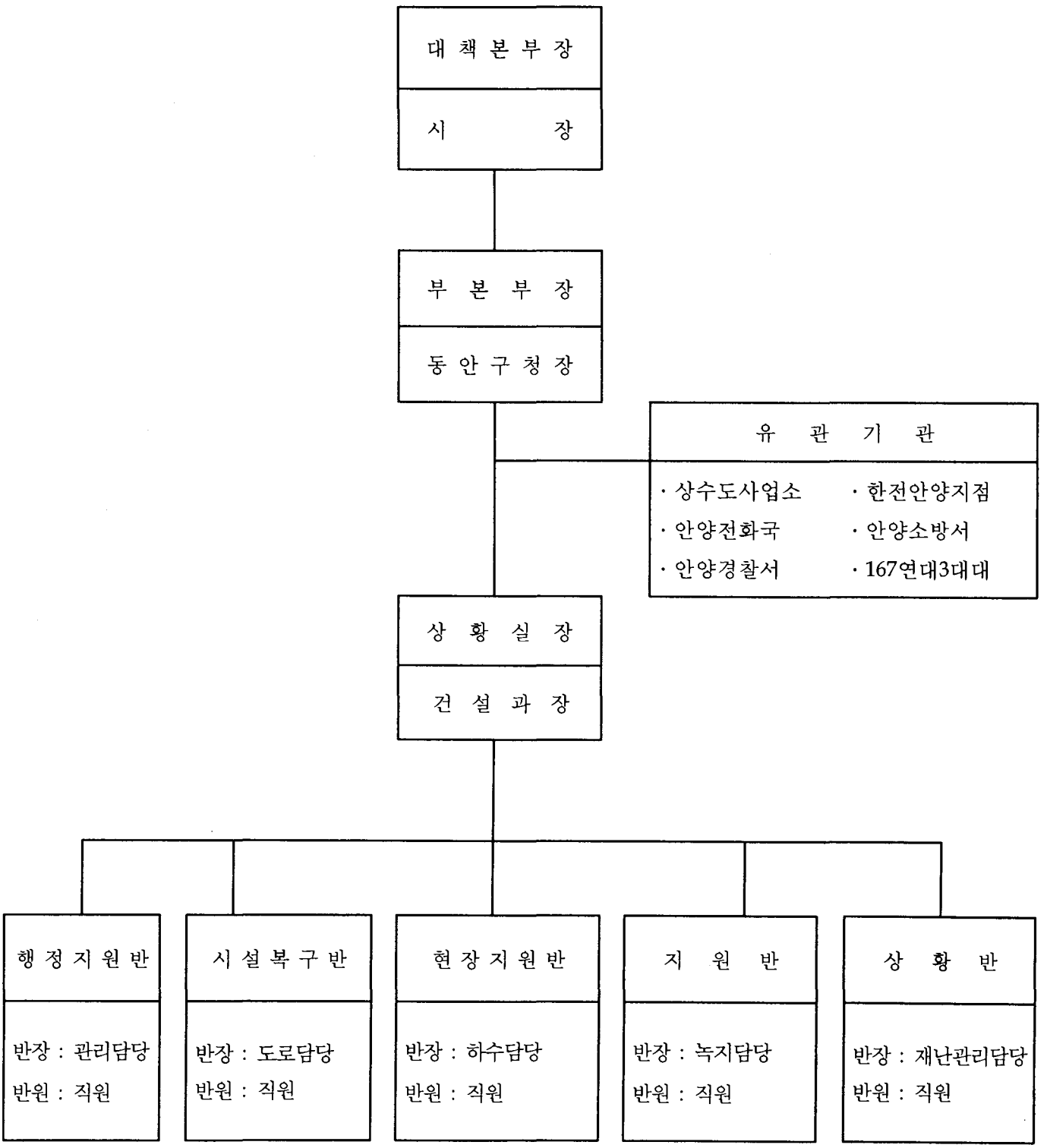

여 백

Ⅵ. 有關機關 災難管理計劃

1. 기관별 임무
2. 경찰서
 가. 안양경찰서
 나. 과천경찰서
3. 경기도 안양교육청
4. 안양소방서
5. 1580부대
6.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7.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8. 한국통신 안양전화국
9.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본부

여 백

Ⅵ. 有關機關 災難管理 計劃

1. 機關別 任務

소 속	분 장 사 무
안 양 시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	1. 사고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2.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시 강력히 대응 3.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 - 위험지구 교통통제, 정원초과, 과적차량 단속 등 4. 민생정보 활동을 통한 사고 위험요소 적출 통보
안양교육청	1.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학교신축 등 대형공사장과 학교주변 절개지 축대 등 - 구조 및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 난방시설의 위험성 2. 수학여행, 행사참여 등 학생이동시 안전수칙 준수 - 전세버스, 유도선 등 이용시 사전점검 실시 3. 요보수 건축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안양소방서	1. 화재 취약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2. 화재 취약요소 사전제거 확행 3. 화재시 응급조치사항 이행 실태 능력점검 4. 유류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성 점검 여부 5. 유류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성 여부 결정 6. 소방시설 관리자 선임여부 등
육군1580 부대	1. 재해발생시 인명구조활동지원 구조차량, 구급차, 구급요원, 구급장비 등 동원 2. 화재발생시 소화활동 지원

소 속	분 장 사 무
한국전력공사 안 양 지 점	1. 취약설비의 점검 정비 2. 개폐장비 증설 및 노후불량 설비 교체 3. 취약철탑의 기초 보강 4. 재래시장, 극장 등 다중집합 시설의 배전 실태 점검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안 양 지 점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 2.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한 국 통 신 안양전화국	1. 재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망의 생존성 확보 2. 긴급통신 지원체제 구축 3. 대상시설 집중 감시시스템 확충과 시설물관리 체계화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경 기 본 부	1. 가스보관 및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지하배관 및 저유탱크의 기밀유지 상태 및 가스누설 방지 3. 시설의 정기적 절연 및 방폭성능 유지여부 확인 4. 기타 법정시설 및 기술기준과의 부합 상태 등

2002 재난관리 계획

안 양 경 찰 서

여 백

2. 경 찰 서

가) 안양경찰서

가. 2002년 자체 재난대비 계획

□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1단계 (준비단계)	2단계 (경계체제)	3단계 (비상체제)
기상	○ 호우·태풍주의보 발령시	○ 태풍·호우경보 발령시	○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조치	○ 풍·수해 발생우려지역 예방순찰활동 강화 ○ 시설주에게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주의 촉구 ○ 산간계곡 및 행락지 야영객 주의 환기	○ 1단계 임무 계속 수행 ○ 동원 경력·장비사전 대비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1, 2단계 임무 계속 수행 ○ 풍·수해 전담반 편성운영 ○ 풍수범람, 축대붕괴, 산사태 등 우려지역 주민대피 ○ 긴급상황 발생시 헬기지원 및 인명구조활동 전개 ○ 시·도 재해대책본부 협조, 인적·물적 피해상황 신속 보고체제 유지

□ 단계별 조치사항

재난(해)관리 위험개소 (5개소 : 침수2, 산사태3)

○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

위험개소	위 험 장 소	위험요소	파 출 소 별
5	○ 안양7동 일원	침 수	○ 덕천
	○ 안양천 저수부지 주차장	침 수	○ 호원, 덕천, 안양, 만안, 관악, 박달
	○ 병목안	산사태	○ 양지
	○ 남서울 고속전철 진입로 절개지	산사태	○ 박달
	○ 박달동 대림ⓐ 뒤 절개지	산사태	○ 박달

□ 구조 및 지원

○ 상황보고 전파체제 확립

(긴급종합상황반 및 현장상황반 편성 운용 : 대규모피해 발생시)

● 긴급 종합상황반

직 책	편성인원		소 속	계 급	성 명
반 장	1		상황실장 (주무과장이 실장인 경우 경무과장)		
접 수 반	2	정	경 비	경 장	박 병 호
		부	경 비	경 장	한 재 필
상황확인반	2	정	방 범	경 장	조 한 웅
		부	형 사	경 장	정 혁
통 신 반	2	정	정 보	경 장	문 형 수
		부	형 사	경 사	문 재 환
전 파 반	2	정	통 신	경 사	김 동 선
		부	경 무	경 장	이 시 열
홍 보 반	2	정	정 보	경 사	전 현 우
		부	정 보	경 사	정 정 훈
종 합 반	2	정	방 범	경 사	황 명 구
		부	수 사	경 장	김 태 창

● 긴급현장 상황반(1/10, 상설 : 즉시 현장진출)

직 책	편성인원		소 속	계 급	성 명
반 장	1		주 무 과 장		
상황확인반	4	정	방 범	경 사	최 승 묵
		부	방 범	경 장	백 대 현
		정	정 보	경 장	김 정 진
		부	정 보	경 장	손 철 기
전 파 반	2	정	정 보	경 사	유 희 곤
		부	정 보	경 장	김 주 년
통 신 반	2	정	통 신	경 장	정 하 식
		부	방 범	순 경	이 창 용
홍 보 반	2	정	수 사	경 장	강 문 봉
		부	경 무	경 사	황 인 오

○ 인명구조체제 확립

● 상황발생 신고접수 동시 즉각출동 구조활동 전개

단계별	경 력	구 조 장 비			출 동 요 령	비 고
		장비명	규격	수량		
1단계 (초동단계)	112 타격대 112 순찰차 교통순찰차 형 기 차 싸 이 카	들 것		2	○사태발생시 신고 접수동시 즉각 출동 ○출동경력과 차량등 인명구조 장비 확보 - 대비 : 구명로프, 구명대, 구명환, 구조망, 인명, 구조인양기, 구명자일, 튜브, 핸드폰, 쌍안경, 들것, 구급약품등 ※ 상황실 상시 비치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 확립	
		구 명 환	HKJ-3	1		
		경 찰 조 끼 (구난조끼)		11		
		방 탄 조 끼		11		
		경 찰 모		15		
		사 과 탄	KM-25Ⅲ	20		
		사과탄주머니		6		
		모 포		10		
2단계 (지원단계)	방 순 대 1단위부대 견인차등	구 급 낭	25m	1		
		로 프	SB-R	1		
		써치라이크	ZM-1500	4		
		쌍 안 경	완88-1	2		
		핸드마이크		20		

○ 민·관·군 협조 총력구조체제 유지 : 상황발생시 즉시 협조요청

- 119구조대, 민간산악구조대등
- 군 특수구조대
- 군헬기, 앰브런스등 구조장비 지원요청
- 인명구조 유관기관 단체 비상연락체제 유지
- 안양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 위험요인 제거
- 재난(해)현장 경력지원시 현장지휘 연락관 파견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구조활동 전개

○ 상황보고 철저

- 시간대별 출동, 도착, 조치상황
- 사망, 실종, 부상자등 인적사항과 물적 피해액 신속 정확히 파악
- 수색 및 구조상황
- 동원경력 및 장비현황
- 기타 민·관·군 지원 및 협조사항등

○ 가용경력·장비 최대동원, 인명구조 및 복구지원

- 인명구조 요청시 관할 불문하고 인력 및 장비지원
- 주민고립 및 인명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조
- 피해지역 이재민 안전지역 대피 및 복구활동 지원
- 도로침수 및 교통두절지역 안전관리
- 대형 입간판 설치 및 교통경찰 배치, 차량우회 조치

□ 행정사항

○ 경무과장은 풍·수해 발생시 구조장비 및 자체 차량지원계획 별도수립 시행

○ 경비과장은 인명구조장비 점검 및 112타격대, 현장상황반 장악, 상시 출동태세 확립

○ 상황실장은 재해신고 접수시 즉보 및 행당과 통보,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신속 대처

○ 각 파출소장은

- 재난발생(우려)시 112순찰차등 현지 진출 순찰강화 및 주민통제, 대피요령 사전홍보 관계기관과 협조등 사전대비책 강구
- 관할지역내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위험축대, 제방등 각종 취약개소에 대하여 정밀 파악 사전점검 확행 및 순찰강화로 재난예방에 만전

2002 재난관리계획

과 천 경 찰 서

여 백

나) 과천경찰서

가) 2002년 재난관리계획

○ 매년 재난관리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 발생

○ 적극적인 인명구조·피해예방 및 사후 복구 활동을 통한 봉사경찰상 확립

□ 기본방침

○ 피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순찰강화로 피해 최소화

○ 인원·장비 총동원 적극적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복구

○ 경비·교통·방범기능 합동, 종합적 상황관리 및 대처

○ 경찰 조치사항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 사전예방 단계】

○ 중점 활동사항

● 피해 우려지역 중점 순찰·점검

관할 시·군·구와 사전 협조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위험축대·제방, 공사장 등 취약개소 파악

- 위험요인 발견시 건물주, 유관기관등 통보·조치 유도

●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피장소 및 이재민수용시설 등 사전 지정·관리·주민홍보, 유사시 신속·적절히 활용

● 재해대비 출동태세 및 장비점검

- 5분 대기대, 112·교통순찰차 등 외근요원 출동태세 확립

- 출동요소별 보유장비 사전점검 및 사용안전수칙 등 숙지

● 유관기관간 협조 및 통신체제 구축

기관별 주무부서 및 담당자등 연락망 확보·비치

【2단계 : 상황대처 단계】

○ 기　간 : 사태발생시

○ 중점활동 사항

● 비상근무체제 확립(사태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별)

※ 재난·재해발생시 사태의 정황에 따라 비상발령
(경찰청 훈령283호 "경찰비상업무규칙")

- 각급 지휘관 24시간 비상연락체제 확립
- 재해경비 담당직원 24시간 상황유지
  -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갑·을조로 편성, 연락체제 확립
  - 필요시 교통·방범등 기능별 합동, 협조체제 구축
  - 기상 및 피해상황, 경찰활동 등 파악 보고·하달·전파
  - 경력·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
  - 지방제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처리

● 상황전파 및 초동 출동태세 확립

- 종합상황실 중심 상황의 파악·전파
  관할 불문 신고접수, 외근경찰 및 유관기관에 전파, 합동조치

● 현장지휘본부를 통한 현장관리 및 지휘체제 확립

- 산사태, 건물붕괴등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지휘본부 설치
- 정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유가족 등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극 제공

● 피해우려지역 집중 순찰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 파출소·교통 등 외근요원 취약개소 집중 배치
- 기상예보에 따라 재난관리부대 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용으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주력
- 하천범람, 산사태등 피해우려지역 주민대피 유도

● 교통통제 및 관리

- 침수·유실·두절등 도로상황 파악
- 통제구역 입구 입간판, 바리케이트 설치 및 차량우회
- 우회기관 및 주민대상 교통상황 정보 제공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 적극 협조)

【3단계 : 복구수습 단계】

○ 기　간 : 수해복구 전까지

○ 중점활동 사항

● 수해복구 지원반 : 경비과 경비계 설치

● 경찰조치 필요부분 적극 발굴·지원

- 시·군·구, 재해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
- 피해지역별 현지 점검을 통한 조치 필요사항 발굴
  - 파출소장이 피해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수해복구 관련 제반 문제점 점검·개선

● 피해지역에 상설부대 집중 투입·복구작업 지원

-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및 쓰레기 제거
- 유실도로·제방 복구작업 지원
- 침수 농경지 및 과수원 등 농작물 피해복구
- 침수지역 방역활동 등
- 지원기간중 경찰조끼 착용 및 경력 교양 철저

● 수해지역 교통관리 및 방범활동

- 긴급 구호물자 수송차량 수송로 확보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 및 필요시 일반차량 통행금지
- 상가·주택 등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
  - 이동방범파출소 및 특별순찰함 설치·운용
  - 지원물자 등 강·절도 예방

● 이재민 수용시설에 치안 서비스센터 운용

-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등에 대한 보호·지원(필요시 여경동원)
- 수사활동·복구진척등 진행사항에 대한 필요정보 지원
- 기타 각종 주민생활 편의 지원

● 피해주민의 여론 및 동향 파악

- 정부정책수립 및 조기수습에 필요한 관련정보 수집, 주민동향 파악을 통한 집단적 항의시위 등 대비

□ 관내 재난(해)발생 위험개소(20개소)

(산사태3, 침수4, 저수지2, 대형공사장11)

○ 산사태 우려지역

위험개소	위 험 장 소	위 험 요 소	파출소별
3	○ 관악산 등산로	○ 등산객 고립 및 산사태 우려	중 앙
	○ 관악산 등산로(망해암로)	○ 등산객 고립 및 산사태 우려	비 산
	○ 청계산 등산로	○ 등산객 고립 및 산사태 우려	대공원

○ 침수 우려지역

위험개소	위 험 장 소	위 험 요 소	파출소별
4	○ 갈현동 21번지 찬우물 지하차도	○ 침수우려	별 양
	○ 과천6통 347번지 비닐하우스 일대	○ 침수우려	별 양
	○ 선바위역 삼거리	○ 침수우려	대공원
	○ 대한전선 앞 학의천변 주차장	○ 침수우려	운동장

○ 저수지 제방

위험개소	위 험 장 소	위 험 요 소	파출소별
2	○ 과천저수지 일대	○ 범람우려	대공원
	○ 백운저수지 일대	○ 범람우려	내 손

○ 대형공사장

위험개소	위 치	공 사 명	면 적 (m^2)	시 공 사	파출소
1	과천시 관문동 3	과천관문체육 공원조성공사	54,330	한 보 건 설	중 앙
2	과천시 별양동 1-25	코오롱(주) 제2사옥 신축공사	37,319	코 오 롱 건 설 (주)	별 양
3	과천시 갈현동 641	우정병원신축	55,862	의료법인우정병원	별 양
4	안양시 비산3동 1025	안양체육관 및 빙상장 신축공사	44,504	두 산 건 설 (주)	운동장
5	안양시 평촌동 130-1	영풍아파트 공사	8,889	영 풍 산 업 (주)	인덕원
6	안양시 비산동 183	환경개선재개발사업	78,399.70	주 택 공 사	비 산
7	안양시 바산동 459	재건축	129,398.69	삼 성 건 설 (주)	비 산
8	의왕시 내손동 414	의왕조합내손(아)현장	5,400	삼 성 물 산 (주) 주 택 부 문	내 손
9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본사 사옥	27,828	경 남 기 업 (주)	내 손
10	의왕시 포일동 518	포일동 동아연합 주택 조합(아)신축공사	13,660	동아건설산업(주)	내 손
11	의왕시 내손동 771, 774	의왕 반도보라빌리지 건축공사	10,900	반도종합건설(주)	내 손

□ 구조 및 지원

○ 상황보고 전파제 확립(긴급 종합상황반 및 현장상황 편성 운용 : 대규모 피해발생시)

- 긴급현장 상황반 (1/10, 상설 : 즉시 현장 진출)
- 긴급종합 상황반 (1/12, 상설 : 상황실에 위치 보고, 전파체제 확립)

○ 인명구조 체제 확립

단계별	경 력	인명구조장비			출동요령	비 고
		물품명	규격	보유량		
1단계 (초동단계)	5분대기대 112 순찰차 교통순찰차 형 기 차 (형사당직반) 싸 이 카 헬 기	지 렛 대		2	○사태발생 신고 접보동시 즉각 출동 ○출동경력과 차량등은 인명구조 장비 확보 대비 : 구명로프, 구명대, 구명환, 구조망, 인명, 구조인양기, 구명자일, 튜브, 핸드폰, 쌍안경, 들것, 구급약품등 ※ 상황실 상시 비치 ○24시간 상시 출동태세 확립	
		동력절단기	HA-1050(42″) HA-900(36″)	2		
		들 것		5		
		12m접사다리	TK90-1	1		
		구 명 환	HKJ-3	3		
		경찰조끼 (구난조끼)		10		
		방탄조끼		5		
		호신용조끼		10		
		경 찰 모		10		
		사 과 탄	KM-25III	17		
		사과탄주머니		5		
		모 포		10		
		헤 머		1		
		삽		1		
		톱		1		
		곡 괭 이		1		
2단계 (지원단계)	기 동 대 전 경 대 방 순 대 형 기 반 1단위부대 견인차등	도 마 칼		1		
		갈 고 리		1		
		구 급 배 낭		1		
		로 프	25m, 50m	3, 1		
		리코라이트	SB-R	5		
		쌍 안 경	ZM-1500	2		
		완 강 기	완88-1	3		
		해 독 제 킷	MK-1	7		
		피부제독킷	MK258	7		
		탐 지 기	M-8	7		
		핸드마이크	PA-535BS MST-337BSW	2		

2002 재난관리계획

경기도 안양교육청

여 백

3. 京畿道 安養敎育廳

1) 목 표

○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및 예방위주의 방제행정

○ 예방위주의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 재해로부터 학교시설 및 교직원·학생보호

○ 안전관리대책 업무의 과학화

○ 재난대비태세 강구 및 대응·복구능력 강화

○ 재난관리 단계별 표준행동절차 마련 및 유관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기본방향

○ 학교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책 수립

○ 완벽한 재난수습태세 구축

○ 사업계획에 대한 재난관련사항 검토 의무화로 재해요소의 근원적 해결 추진

○ 재난관련 기관간 상호협조 및 조속한 지원체제 확립

○ 안전관리요원의 자질향상과 적응력 제고

3) 추진계획

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체제의 정비

1)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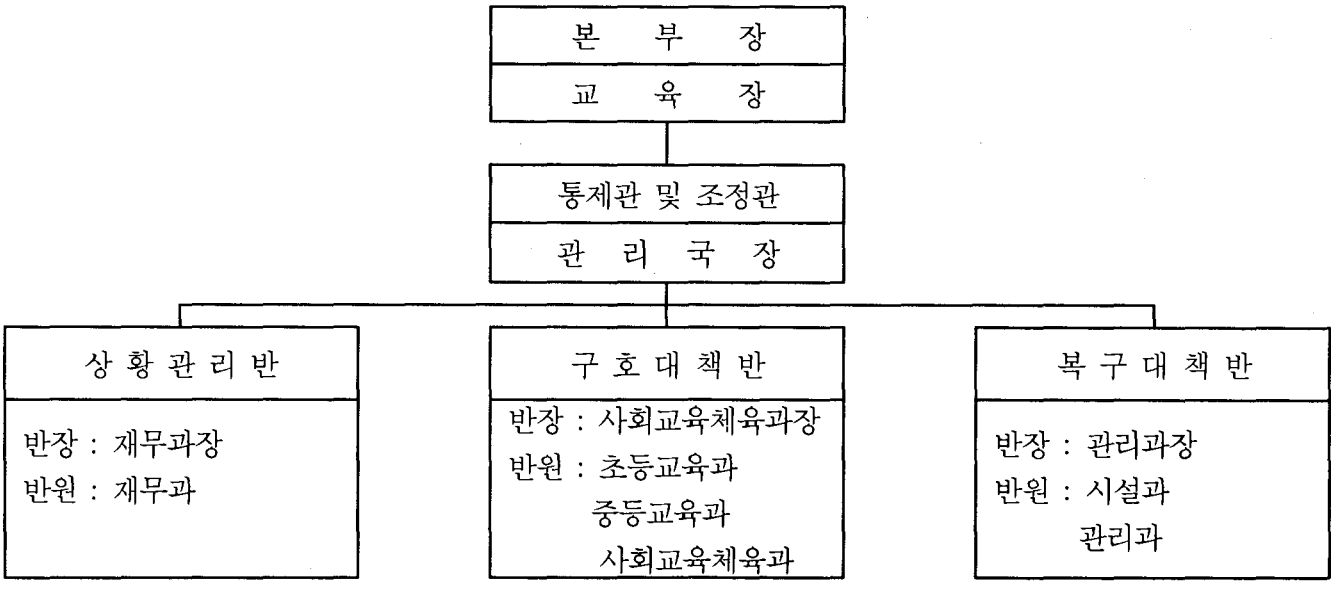

2) 임 무

○ 본부장 : 본부회의시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한다.

○ 통제관 : 본부장을 보좌하며 실무반을 지휘 감독한다.

○ 상황관리반

- 상황반 조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의 현장방문시 자료 작성
- 문서수발
-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 관한 사항

○ 구호대책반

- 응급방역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 구호상황의 파악
-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
- 의연금품에 관한 사항

○ 복구대책반

-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 피해상황수집에 관한 사항
-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복구상황 파악
- 관계기관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3) 재해 단계별 근무체제

○ 재해대책 근무체제를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등 3단계로 구분하여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 각 과(학교)에서는 재해대책 요원에게 임무 및 비상연락망을 사전 주지시켜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구 분	교 육 청	각 급 학 교
준 비 체 계 (주의보시)	재무과 2명	교육청에 준하여 편성 운영
경 계 체 계 (경 보 시)	재무과 2명	
비 상 체 계 (관내 대부분 지역재해시)	6개과 합동근무 (방제조직에 따라 윤번제 편성운영)	

4) 보고체제

○ 학교장은 각급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할구청장·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교육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 조치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대규모 피해상황 및 중요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본청으로 직접 보고

● 재해보고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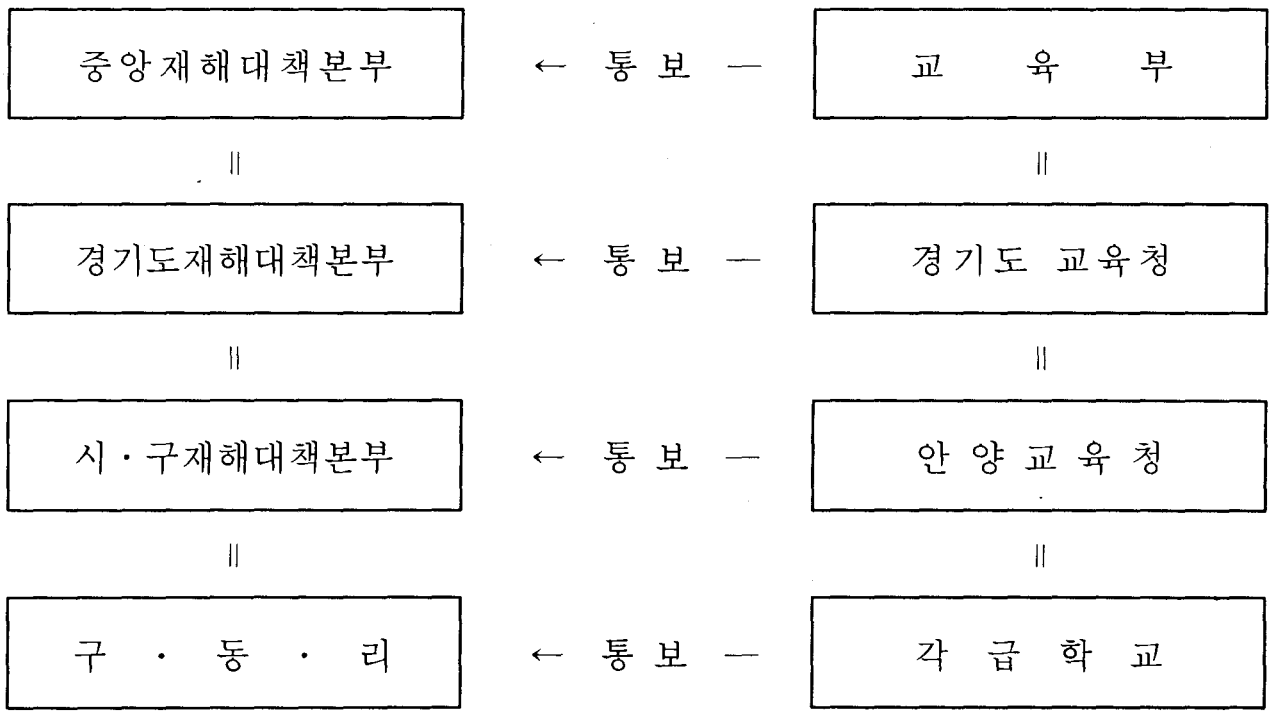

○ 보고종류별 보고시기

● 일일보고

- 제1단계 준비체제 및 평상시 : 재해발생후 3시간내 보고
- 제2단계 경계체제시 : 매일 10시 기준 12시까지 보고
  매일 20시 기준 22시까지 보고
- 제3단계 비상체제시 : 매일 10시 기준 12시까지
  매일 20시 기준 22시까지 보고

● 최종보고 : 강우, 강설등 재해원인 종료된후 2일 이내

● 확정보고 : 최종보고후 5일 이내

● 보고방법 : FAX를 원칙(전화 병행)

5) 협조체제

○ 재해대책 유관기관 상호협조체제 구축으로 유사시 상호협조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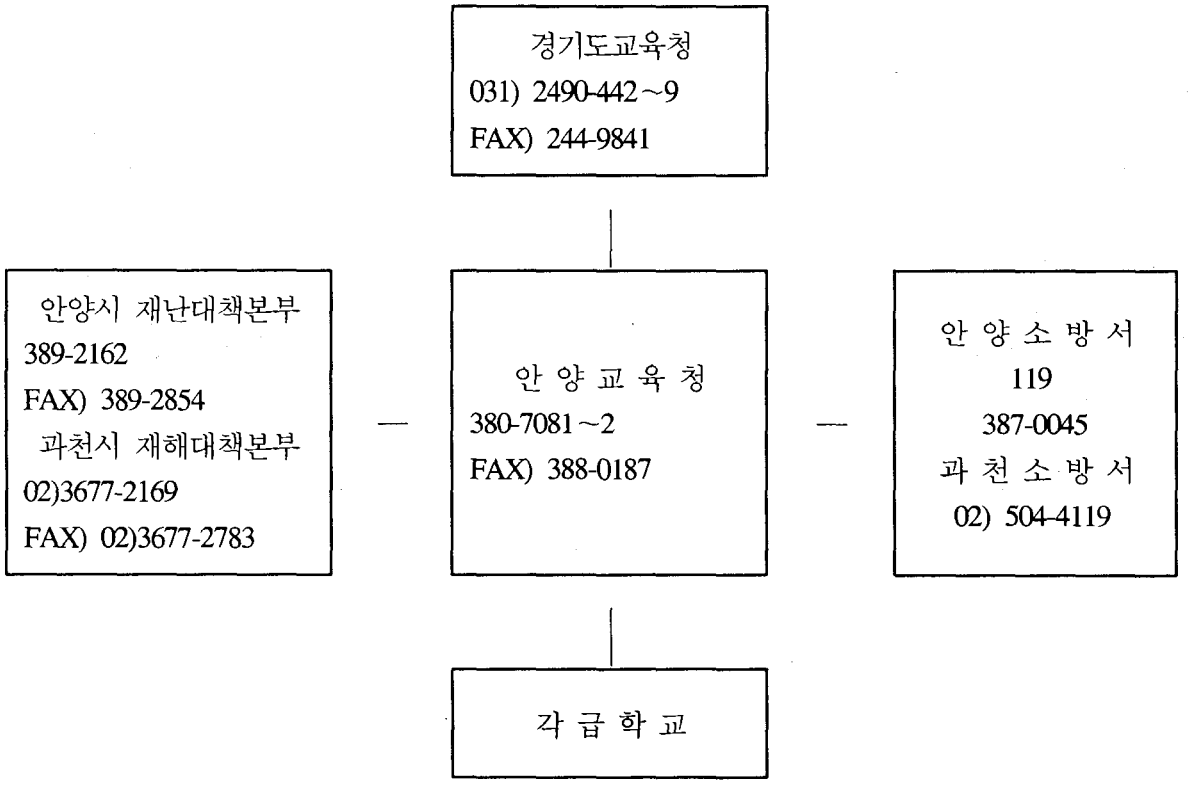

나.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활동의 강화

1) 학교시설 보호대책

○ 위험시설의 개·보수비등 긴급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학교에 조기 배정토록 한다.

○ 재해에 대비한 사전 조치사항은 우기전인 6월중순까지 완료토록 한다.

○ 중요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할것이며, 불안전개소 및 수해·설해 상습지의 현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해사항의 기록보존으로 재해 재발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한다.

○ 위험축대·담장등을 점검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배수로 및 옥상의 홈통등이 토사의 퇴적으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가마니, 새끼, 삽, 말목, 비닐등 수방자재를 비축하고 사용량을 즉시 보완한다.

○ 설해방지대책은 재설장비, 위험지구표시, 적사장 설치등을 강설기전인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한다.

2) 이재학생대책

○ 재해로 인한 교과서의 유실학생에 대하여는 전년도 교과서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학용품은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 공급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이재민에 대한 간접지원사업(공납금 면제)등을 감안하여 지역내 재해 발생시는 수해 대상자에 대한 피해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제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한다.

3) 이재민 수용대책

○ 수용지정기관은 이재민 발생시 수용에 따른 수용시설의 배치 및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토록 한다.

○ 시·군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이재민을 수용토록 요청시 시설물의 활용에 적극 협조하고 이재민 수용 현황을 즉시 보고한다. (별첨 : 이재민 수용 현황 참조)

○ 집단 이재민 발생시 기 지정된 학교건물 혹은 천막등을 동원 일시 가건물을 확립하여 질서있게 수용하고 시·군 재해대책 본부에서 구호품을 공급받아 지급한다.

○ 학교시설이 이재민 수용에 활용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점검하여 시설물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 이재민 수용에 따른 화기의 단속(취사장 지정등)은 물론 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침수 및 이재민을 수용했던 시설물에 대한 사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방역 소독약품(살충제, 살균제등)을 확보하고 각종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4) 학생에 대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시 수업대책

○ 학생들의 방제교육 및 훈련은 관련교과(단원) 교육시 방제의 필요성과 재해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연계 실시한다.

○ 민방위 훈련시 긴급대피 및 복구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 학교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조기귀가, 임시휴교등)을 취하며, 학생의 등·하교를 지도한다.

5) 태풍재해로 인한 학교시설물 예방대책

○ 호우 및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우리교육청 및 학교의 재해대책 관계 공무원은 즉시 비상근무 조치한다.

○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피해예방과 피해발생에 대비한 근무 태세확립을 지시(협조)한다.

○ 중요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특별지정하여 시설물을 수시 점검토록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6) 설해로 인한 학교시설물 예방대책

○ 설해예방은 강설기전인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한다.

- 제설장비 확보
- 위험지구표시판 설치
- 급·경사 진입로 적사장 설치

7) 지진대비 계획

○ 신속정확한 정보수집 및 전파체계 확립

○ 지진피해에 대한 이해증진과 대비요령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8) 자주재난태세의 확립

○ 재난사상의 고취

- 매년 5월을 "풍수해 예방의 달"로 설정하여 각종 재해요인을 점검하고 위험개소는 제거하며 방제의식을 제고토록 교육시킨다.
- 현수막, 프랭카드, 입간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방제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교육을 통한 학생, 주민에게 자발적인 방제의식 고취와 방제시설물에 대한 보호정신을 함양시킨다.
-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라디오등 보도매체를 통한 기상 및 재해 정보의 청취를 생활화하도록 계도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전달매체를 확립한다.
- 재해복구는 새마을 정신에 의한 자력복구를 계도하고 의타심을 배척한다.

○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실시

- 재해대책기관의 방제책임자에 대한 방제교육을 받아 방제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방제의 중요성을 주지시킨다.
- 중요시설물 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제교육을 실시한다.
- 방제요원의 업무숙달과 재해대책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제훈련을 민방위훈련시 병행실시한다.

다. 학교시설물의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1) 응급복구

○ 재해발생시 각급학교장 책임하에 기 비축된 장비자재를 동원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복구에 임한다.

○ 응급복구는 항구복구시까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에 완벽을 기한다.

2) 항구복구

○ 재해복구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협조로 복구토록 추진한다.

○ 재해복구에 있어 국고지원 및 학교재해 복구공제회에서 제외하는 시설피해에 대하여는 자력복구계획에 의하되 항구대책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에 완벽을 기한다.

라. 방제과학기술의 연구

○ 재해의 원인, 경위 및 조치사항을 방제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 앞으로 방제업무의 과학화를 도모한다.

○ 기상 및 재해에 관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방제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 급격한 도시화로 유역상황이 변화된 도시하천의 비구조적인 점을 주시하여 종합적인 차선대책 방안을 연구발전 시킨다.

마. 세부 추진 일정계획

주요내용	세 부 시 행 계 획	시행기간	관련부서 및 시행청
학교시설물안전 관리체제정비	○안전관리요원 비상연락망 정비 ○방제기관 통신망 정비 및 확인	수시 수시	각급기관 및 각급학교
재해사전예방 대책수립	○재해위험지역 관리 철저 ○수방자재물 확보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 (비닐, 삽, 가마니, 새끼, 말목등) ○주요시설 안전점검 (대상 : 건물, 축대, 담장등)	1~12월 4월말 1~12월	각급기관 및 각급학교 각급기관 및 각급학교 각급기관 및 각급학교
안전교육 훈련실시	○각종회의 및 직무교육시 병행실시 ○민방위훈련시 병행실시 ○학부모를 통한 대민홍보전개로 방제의식 강화 ○학생들에게 재해에 대비하는 행동요령 교육	1~12월 5월말 5월말	각과 및 각급기관 각급학교 각급학교 각급기관
학교시설보호	○중요시설의 관리책임자 지정 ○위험시설 개보수비 조기배정 및 공사조기 발주 ○위험시설 표지판 설치	2월말 6월말	각급기관 관리과, 시설과 각급기관
이재학생대책	○학교자체 피해시 수업대책 -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활용 - 필요시 2부제 수업 ○재해로 인한 학용품, 교과서 유실 학생대책	5월말 1~12월	각급학교 초·중과 및 각급 학교 재무과
이재민수용대책	○이재학생 공납금 면제 등 대책 및 관계협조 강구 ○이재민 발생시 이재민 수용을 위한 수용시설의 배치 및 관리계획 ○이재민 수용시 시설물관리 대책(화기 및 시설관리) ○이재민을 수용했던 시설물에 대한 사후방역 ○유관기관 요청시 복구지원 ※ 학도애향대 활동 (벼세우기, 도로환경 정비등)	 5월말 5월말 5월말	각급학교 수용지정 학교 수용지정 학교 수용지정 학교 및 각 구청보건소

바. 이재민 수용계획 (안양시)

시·군명	급별	학 교 명	건 물 용 도	이재민수용인원	비 고
안양시	초등학교	안 양 초	체 육 관	200	
		안 양 동 초	강 당	75	
		안 양 남 초	강 당	200	
		관 양 초	잉 여 교 실	75	
		삼 성 초	잉 여 교 실	240	
		만 안 초	다 목 적 교 실	500	
		안 양 서 초	체 육 관	300	
		명 학 초	다 목 적 교 실	75	
		신 안 초	잉 여 교 실	150	
		호 계 초	잉 여 교 실	250	
		석 수 초	잉 여 교 실	60	
		호 성 초	잉 여 교 실	20	
		덕 천 초	잉 여 교 실	500	
		박 달 초	잉 여 교 실	50	
		중 앙 초	체 육 관	300	
		호 원 초	다 목 적 교 실	100	
		덕 현 초	다 목 적 교 실	300	
		달 안 초	잉 여 교 실	120	
		희 성 초	잉 여 교 실	290	
		민 백 초	강 당	50	
		부 안 초	잉 여 교 실	150	
		관 문 초	잉 여 교 실	80	
	초등계			4,085	
	중 학 교	안 양 중	다 목 적 교 실	300	
		관 양 중	강 당	100	
		안 양 서 중	잉 여 교 실	80	
		부 흥 중	다 목 적 실	60	
		범 계 중	체 육 관	130	
		부 림 중	다 목 적 실	40	
		부 안 중	잉 여 교 실	100	
		과 천 중	체 육 관	200	
		문 원 중	체 육 관	500	
		신 성 중	체 육 관	100	
	중등계			1,610	
	고등학교	평 촌 고	체 육 관	200	
		부 흥 고	체 육 관	200	
		평 촌 정 보 고	체 육 관	260	
		평 촌 공 고	잉 여 교 실	100	
		안 양 여 고	강 당	100	
		안 양 예 고	강 당	120	
		백 영 고	잉 여 교 실	200	
	고등계			1,180	
	합 계			6,875	

2002 재난관리계획

안 양 소 방 서

여 백

4. 安養消防署

○ 각종 재난발생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지휘체계를 확립, 신속한 재난수습 및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재난관리법 제14조 제3항 (시·군·구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관리법 제16조 제3항 (재난상황의 관리)

□ 추진방침

○ 재난발생보고 및 출동태세 확립
○ 긴급구조 대비 인력·장비동원 체제 정비
○ 긴급구조 활동의 효율적 수행

□ 세부추진 계획

1. 재난발생보고 및 출동태세 확립

가. 재난발생 보고

【재난관리법 제17조(재난의 신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군·구 또는 소방기관 기타 관계행정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군·구 소방기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지역긴급구조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 태풍, 호우, 폭풍, 폭설, 해일, 지진 기타 이상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 준용

【재난관리법 제16조(재난 상황의 관리)3항】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의 발생을 신고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재난 상황 보고)】

○ 법 제1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난발생 일시, 장소 및 재난의 원인
-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 응급조치 및 재난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수습계획 및 수습상황
- 재난의 결과 기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는 사항

나. 긴급상황 보고

○ 근　　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 제46조

○ 주요내용(요약)

【제45조 긴급상황보고】

● 대형화재
- 인명피해 : 사망5명이상, 사상자10명이상
- 재산피해 : 20억원이상

● 중요화재
- 관공서, 문화재, 상가, 대량위험물제조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등
-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 화재상황보고 : 최초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제46조 상황보고체제와 절차】

● 속보체제

- 현장보고책임자 : 담당급이상
- 상황실 보고책임자 : 과장급이상

● 상황보고 절차

- 화재현장 지휘관 : 현장지휘와 동시보고책임자 지시
- 지휘소보고 책임자 : 상황실로 신속보고
- 상황실 보고책임자 : 상급기관에 지체없이 속보

다. 상황보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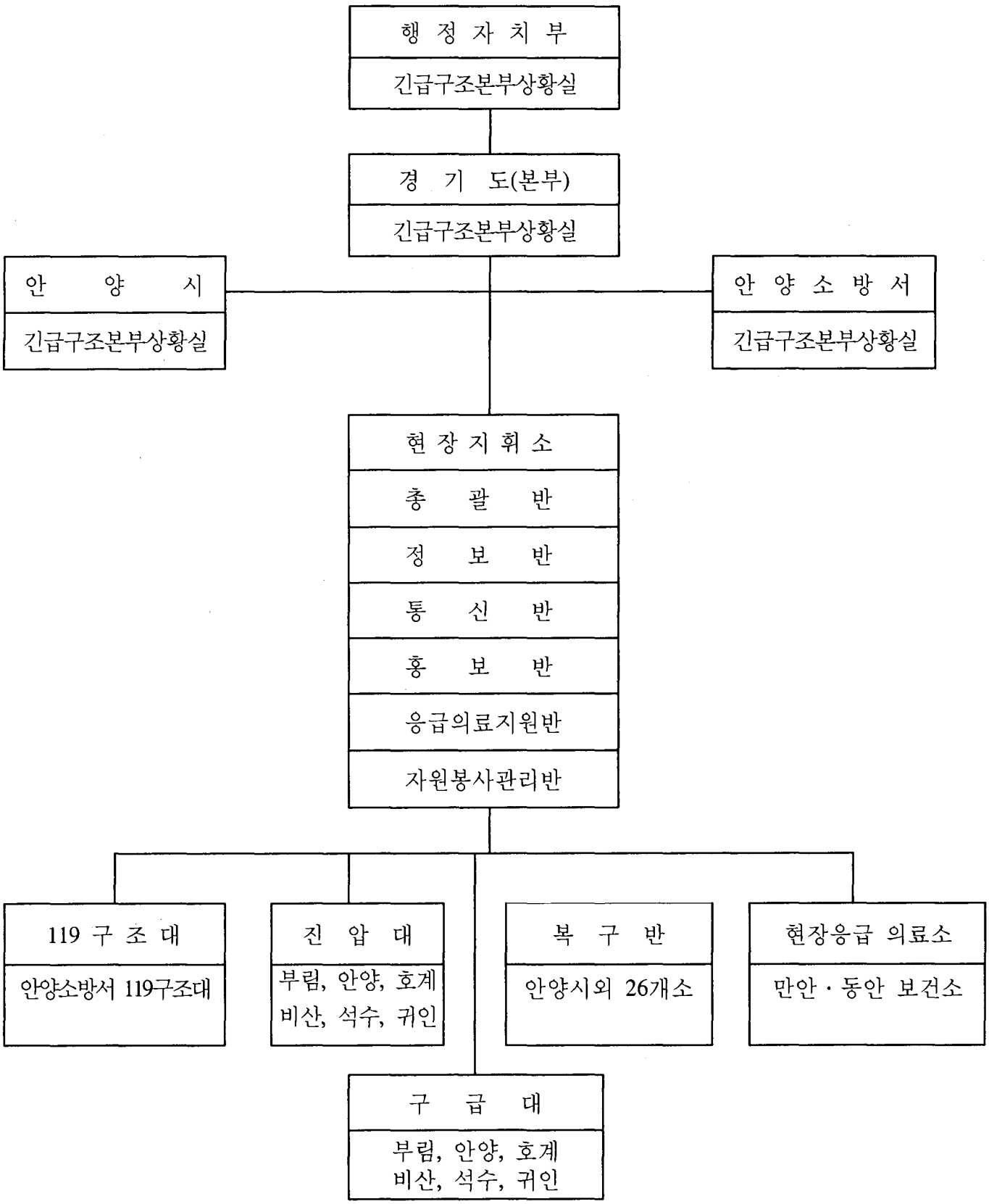
행 정 자 치 부
긴급구조본부상황실
경 기 도(본부)
긴급구조본부상황실
안 양 시
긴급구조본부상황실
안 양 소 방 서
긴급구조본부상황실
현 장 지 휘 소
총 괄 반
정 보 반
통 신 반
홍 보 반
응급의료지원반
자원봉사관리반
119 구 조 대
안양소방서 119구조대
진 압 대
부림, 안양, 호계
비산, 석수, 귀인
복 구 반
안양시외 26개소
현장응급 의료소
만안 · 동안 보건소
구 급 대
부림, 안양, 호계
비산, 석수, 귀인

라. 출동태세 확립

1) 출동장비 점검·정비 철저

○ 횟　　수 : 1일 1회(정기) 수시

○ 대　　상 : 유무선장치, 출동차량, 구조구급, 진압장비

○ 내　　용

● 통신시설 작동기능 점검

● 출동차량 시동점검, 배터리, 오일충만 점검

● 유무선망 상시 확보

○ 조　　치 : 고장, 파손시 즉시 자체보수 및 보수요청 보고(소방과)

○ 추진부서 : 전부서(각과, 구조대, 파출소)

2) 구조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 대　　상

● 긴급구조구난기관 단체 : 26개소

● 재난대비응원협정 체결기관 : 26개소

● 동원인력장비 기관단체 : 26개소

● 의료기관 : 4개소

○ 주요내용

● 비상연락체제 구축

● 재난수습 훈련시 유관기관 적극참여 유도

●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실시

● 유사시 인력장비 동원태세 유지등

○ 추진부서 : 방호과

3) 재난현장활동 안전수칙 준수(안전사고 절대방지)

○ 현장지휘자 행동요령

- 도착 즉시 화재, 재해의 규모정도와 사고내용의 신속한 파악
- 현장 및 주변상황 파악
- 출동인원, 장비의 파악 및 필요시 응원출동 요청
- 현장확인후 인명구조, 소화작업 순서를 신속히 판단할것
- 위험물, 가스등 위험물질 저장, 취급여부 신속히 파악
- 현장 도착대의 부서배치, 대원의 임무분담 및 지휘
- 상황 변동시 즉시 현장활동의 변경 및 필요한 후속조치 강구

○ 대원의 행동요령

- 각자의 행동을 삼가하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 현장활동중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지휘자에게 보고
- 진입시에는 공기호흡기 및 조명기구, 로프, 파괴기구 등을 휴대하고 자세를 낮추고 흡기측에서 진입
- 필요시 해당층의 전원차단, 이때 전원 차단으로 피난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
- 낙하물 및 위험물질의 확인등 안전관리에 유의
- 내부 진입시 2인 1조로 로프 등을 연결하고 진입할 것

○ 재난현장활동 10대 안전수칙

- 안전관리는 임무수행을 전제로하는 적극적 행동이 최선임.
- 재해현장은 항상 위험성이 잠재하므로 방심은 금물
- 위험정보를 알게된 사람은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며 지휘관은 그 사항을 신속히 전대원에게 주지
-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침착히 행동
- 각종 안전장구 및 기자재의 성능을 정확히 숙지
- 자기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확보한다는 자세를 가질것
- 복장 및 개인장구의 확실한 장착
- 평소에 체조등 운동으로 체력단련에 노력
- 각종 사고사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교훈으로 삼음.

2. 긴급구조대비 인력 · 장비동원계획

가. 동원대상

1) 긴급구조구난기관 단체등

○ 현 황

계	관공서	경찰서	군부대	공 사	민간업체	병 원	기 타
27	1	2	4	3	13	4	-

※ 세부현황 : 붙임참조

○ 추진사항

● 비상연락망 정비 : 수시

2) 재난대비 응원협정 체결 정비

계	관공서	군부대	경찰	가스	공사	민간	의료기관	기타
27	1	4	2	1	2	13	4	-

○ 추진사항

● 회 수 : 년1회

● 내 용

- 지원인력 · 보유장비 현황 파악
- 통신망 · 도로여건 변동사항
- 출동거리 소요시간 조사등

3) 동원인력 · 장비관리대상

○ 현 황

구 분	계	관공서	경 찰	군부대	공 사	민간업체	민간구조대	병 원	기 타
인 력	805	62	434	43	60	183	9	14	-
장 비	2,483	641	55	92	246	1,406	35	8	-

※ 세부현황 : 붙임참조

4) 구조구난지원 자료

○ 전문인력 기관·단체

계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폭발물·위험물처리	비 고
3(47명)	1(38명)	1(9명)	1(5명)	

○ 중장비 보유수

계	포크레인	굴 삭 기	크레인	로우더	렉 카 차	페이로더	기 타
67	-	10	4	10	14	1	28

3. 긴급구조대비 인력·장비동원 계획

○ 긴급구조대비 책임 : 소방관서장

○ 긴급구조대비 업무

● 현장지휘소 조직 편성

- 안양 긴급구조본부장 : 안양시장
- 통 제 관 : 안양소방서장(관할지역)
- 보 좌 관 : 소방과장, 방호과장
- 총괄반장 : 구조구급담당
- 정보반장 : 방호담당
- 통신반장 : 소방행정담당
- 홍보반장 : 예방담당
- 응급의료지원반장 : 진압대장
- 자원봉사관리반장 : 장비관리담당

※ 편성표 : 붙임참조

○ 담당업무(현장지휘소)

구 분	담 당 업 무
총 괄 반	ㅇ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본부장 보좌 ㅇ재난원인 조사 및 재해실태 파악 ㅇ소방활동 상황파악 및 2차 재해발생위험 파악 ㅇ재해경과의 기록 및 상황보고
정 보 반	ㅇ관계자료의 확보 및 대상물 실태 파악 ㅇ인명위험 및 재해의 확대위험 파악 ㅇ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정리 및 종합등 ㅇ사상자 발생요인 파악
통 신 반	ㅇ현장지휘망 및 유·무선 ㅇ명령전달, 통신연락 및 관계기관과의 구축
홍 보 반	ㅇ현장상황 촬영 기록보존 ㅇ기타 언론관련 업무
응급의료 지 원 반	ㅇ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긴급의료제공기관과의 협조등 ㅇ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사상자 처리
자원봉사 관 리 반	ㅇ자원봉사자의 등록접수 ㅇ민간전문가등 직할지원대의 관리 및 소모물품의 관리 및 배포등

○ 담당업무(현장응급의료소)

구 분	담 당 업 무
분 류 반	ㅇ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응급처치표 작성 ㅇ사상자 분류(사망, 중상, 경상, 귀가) - 사 망 자 : 이송반 - 중경상자 : 응급처치반 - 귀가대상자 : 인적사항 정리후 귀가조치 - 사망자중 신원미상자 : 임시 영안소 안치
응급처치반	ㅇ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ㅇ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ㅇ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비치
이 송 반	ㅇ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또는 통제 ㅇ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ㅇ사상자 이송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수용체계 수립

● 현 황

계	관공서	경찰서	군부대	공 사	민간업체	민간구조대	병 원	기 타
27	1	2	4	3	12	1	4	-

○ 추진사항

● 긴급구조기관명, 위치, 기관장 성명

● 협조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긴급연락망

● 전문인력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등 보유현황 파악 관리

○ 대형, 특수재난발생시 민간으로부터 자문과 특수기능 인력, 장비지원 수용체계 수립

● 추진사항

- 중장비 보유업체 및 중장비 조작인원 파악 관리
- 건축, 토목, 방사능기술등 전문지식 소유자(단체)
- 폭발물, 특수위험물 자격자등

● 지휘소 설치 계획

- 시 기 :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 절 차 : 당직관→서장보고(사전설치명령 : 야간 서장부재시)
- 설치책임자 : 당직관(본서→현장수송 및 설치)
- 주요임무
  - 인력동원 및 각 부서별 배치현황
  - 사상자의 인적사항 및 안치사항 관리
  - 실종자신고, 접수관리
  - 병·의원 입원실 및 영안실 수용능력 현황관리
  - 지휘소설치 운영에 필요한 물품재고 관리
  - 장비관리
    → 장비의 구입 및 배치
    → 크레인, 포크레인등 특수장비 긴급동원
    → 재난현장의 지휘소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조달

○ 긴급구조능력 보강

● 인명구조장비 보유현황(종/점)

계 (종/점)	일 반 구조장비	중량물 작업용	절단용	파괴용	측정용	호 흡 보호용	대원보호	수 난 구조용	산 악 구조용	기 타
130/639	23/232	11/19	6/13	7/24	4/7	5/46	6/56	9/36	14/71	45/135

4. 긴급구조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가. 재난신고 처리

○ 긴급구조보고 체계 확립

● 재난발견자 → 소방관서(긴급구조상황실) → 통제관(소방서장) → 긴급구조본부장(안양시장)

※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요청등 조치

○ 재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 긴급구조구난기관·단체(군부대) : 27개기관, 단체

● 긴급구조지원대상 : 27개 기관·단체

- 전문인력 기관·단체 : 23개 기관

- 의료기관 : 4개 종합병원

○ 재난신고 접수시 초기 조치

● 재난상황 최초 접수자는 구조대 출동지령 및 즉시 재난발생 상황을 통제관(서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긴급구조기관에 통보

● 통제관(서장)은 재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 출동요청 여부 결정

※ 지역 긴급구조본부장(시장)은 필요시 긴급구조기관장에게 인력, 장비등 지원요청

□ 긴급구조 훈련실시 계획

1. 종합훈련(합동훈련)

가. 훈련일시 : 2002년 5월중(자체 세부계획 별도 수립통보)

나. 훈련대상 : (별도 지정 통보)

다. 참여대상

○ 경찰, 지역군부대, 보건소, 한전, 한국전기통신공사, 병원, 민간 구조대, 중장비보유업체, 자원봉사자등

라. 훈련유형 : 재난유형중 별도 지정 통보

마. 훈련요령

○ 계획수립 단계에서 유관기관 합동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 반영

○ 긴급구조기관 참여토록 다양한 훈련실시

○ 실제훈련 실시전 사전 도상훈련 실시

○ 실제 상황시에 필요한 제반요소 고려 시나리오 작성활용

○ 지역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바. 훈련 진행순서

○ 훈련상황 부여

● 가상 재난상황 개요 부여(일시, 장소, 재난개요등)

○ 초기단계

● 상황접수 즉시 출동인력, 장비결정

- 긴급구조기관 출동요청

● 현장지휘본부(소) 설치운영(각 기관별 연락관 파견조치)

- 사전 편성된 각반별 임무수행

● 출입통제선, 보도통제선 설정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현장활동

● 현장지휘자에 의한 인명구조인력·장비배치

● 『긴급구조체계 확립지침』에 의한 재난유형별 구조활동 실시

○ 훈련종료

● 구조활동 완료확인, 종료선언(참여기관, 단체격려)

○ 훈련강평

● 총평, 잘된점, 미흡한점, 개선대책등 강구

사. 기 타

○ 훈련실시 시기,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사전홍보실시

● 지역주민등 참여 안전문화의식 정착기회로 활용

○ 인명구조장비·장구전시, 조작시범 실시

● 최신장비 소개등으로 장비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부분훈련(자체 훈련)

가. 훈련일시 : 2002년 10월중(자체세부계획 별도 수립통보)

나. 훈련대상 : 추후통보

다. 훈련유형 : 재난유형중 별도 지정 통보

라. 훈련요령

○ 도상훈련, 메시지 부여 훈련

● 사전역할분담, 전담부서 지정

●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간 통신체계 점검 정비

● 실제 상황에 대응되는 메시지 부여, 단계별 처리상황점검평가

○ 현장훈련

● 사전 취약장소 선정 현지적응훈련 실시

● 훈련요소별 구조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훈련 중점실시

□ 재난현장 구조 · 구급 일반사항

1. 재난상황의 정확한 파악

가. 재난상황의 정확한 파악

○ 초동시 파악

- 대상물상황, 화재규모, 인명위험, 확대위험, 작업위험 파악
- 관계자 신속히 확보 → 위험물, 방사성물질등 재난시 전문가 확보 및 측정기구, 응급조치 실시상황등 확인
- 방제센터에서 소방용설비, 연소범위 및 각설비 작동상황 확인

○ 인명위험에 관한 정보 파악

○ 각종 대책자료 활용

- 경방계획 및 예방정보 적극활용으로 대상물 실태파악 최선
- 건축도면, 설비도면등 확보, 내부구조등 확인

○ 선착 소방대로부터 정보입수

- 선착대 및 각급 지휘자로부터 화재 및 활동상황 파악
- 재난종류, 규모에 따라 인력, 장비 요청

나. 상황판단

○ 대상물 등에 의한 판단

- 병원, 사회복지시설등 단독피난 곤란자 다수 수용시설
  → 구조대를 포함한 군부대 조기요청 구조태세 대응
- 대상물 구조, 용도등 확인→인명위험, 확대위험 및 2차 재해위험 판단
- 특수차등 부대요청 가부 신속판단

○ 인명위험 판단

- 선착대의 수집정보 활용 신속한 인명검색 개시
- 영업중인 백화점, 복합빌딩, 영화관등 요구조자 다수
  → 신속한 인명구조태세 및 응원대 요청

○ 작업위험 판단

- 지휘관은 각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휘관 통제하에서 활동
- 위험공간에 진입시 반드시 내부구조, 방배치등 개요 및 임무를 철저히 주지

다. 활동방침 결정

○ 활동방침 신속성

-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 활동방침 결정
- 재난상황 불명확시 사태 추정하여 활동방침 결정

○ 인명구조 우선

○ 지휘중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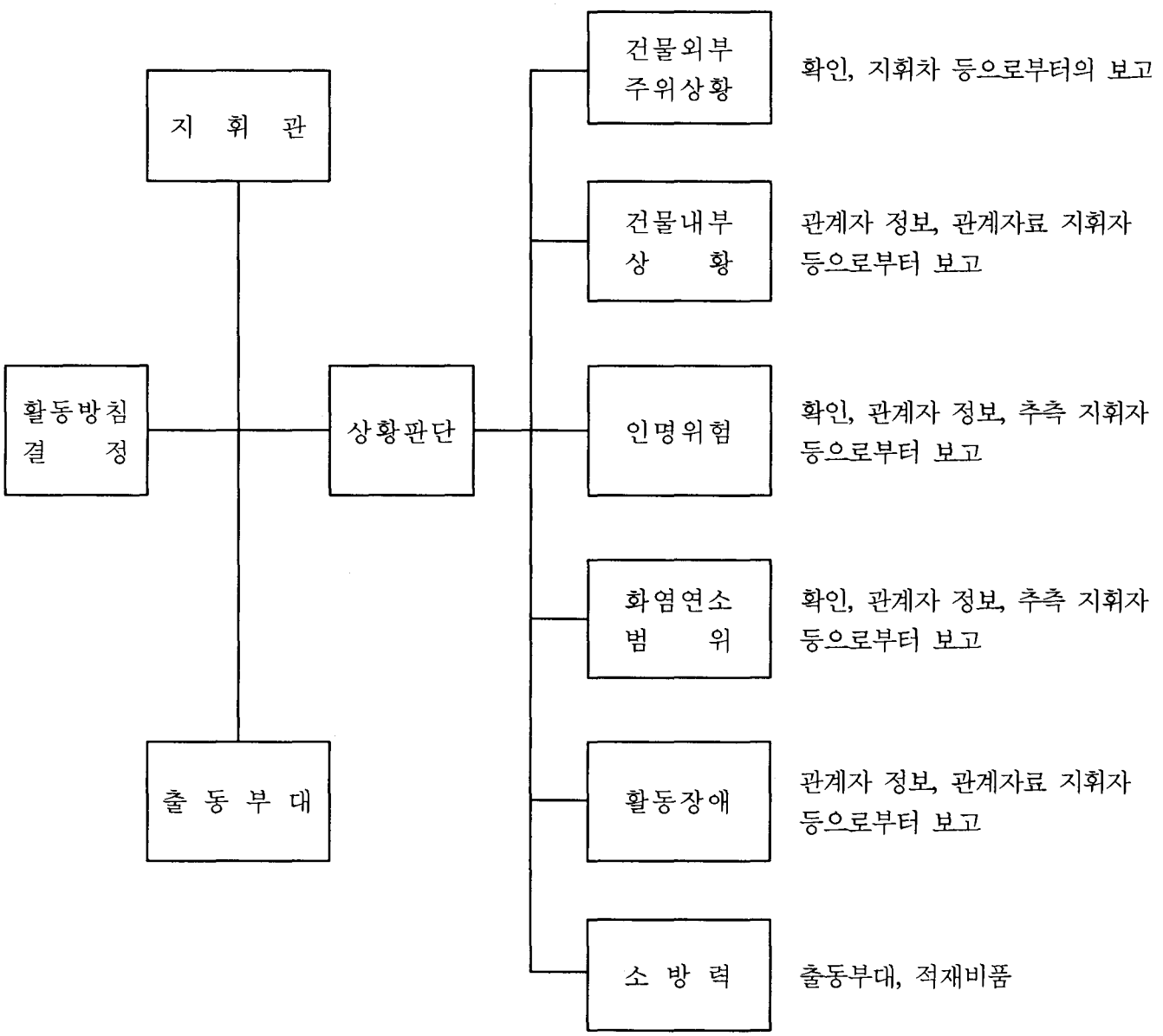

2. 경계구역(통제선)설정 운영

가. 경계구역

○ 설정목적

- 주민보호 및 효과적인 화재진압, 인명구조 실시
- 구조·구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연소방지

○ 설 정

- 법적근거 : 소방법 및 재난관리법
- 설정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설정위치

- 재난현장의 화염, 붕괴시 잔해물, 폭발등 위험이 배제되는 장소
- 초기의 설정은 안전을 고려 넓게 잡는다.
- 설정범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로프등으로 명확히 설정

○ 경찰과의 협조

-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임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할 임무 - 도로교통법 제6조

○ 위험구역의 설정

- 설정요건
  -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폭발한계의 30%를 넘는 구역
    - 가연성가스 농도가 30%미만이더라도 가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시 설정
    - 기타 도괴, 붕괴, 함몰 등의 우려시 당해건물을 감안하여 안전거리 확보 설정

※ 재해현장 부근에 제5류 위험물등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

- 설정시 조치
  - 설정(확대, 축소, 해제포함)한 경우 소방본부에 보고함과 동시 각급 지휘자를 통하여 전대원에게 주시

3. 사고수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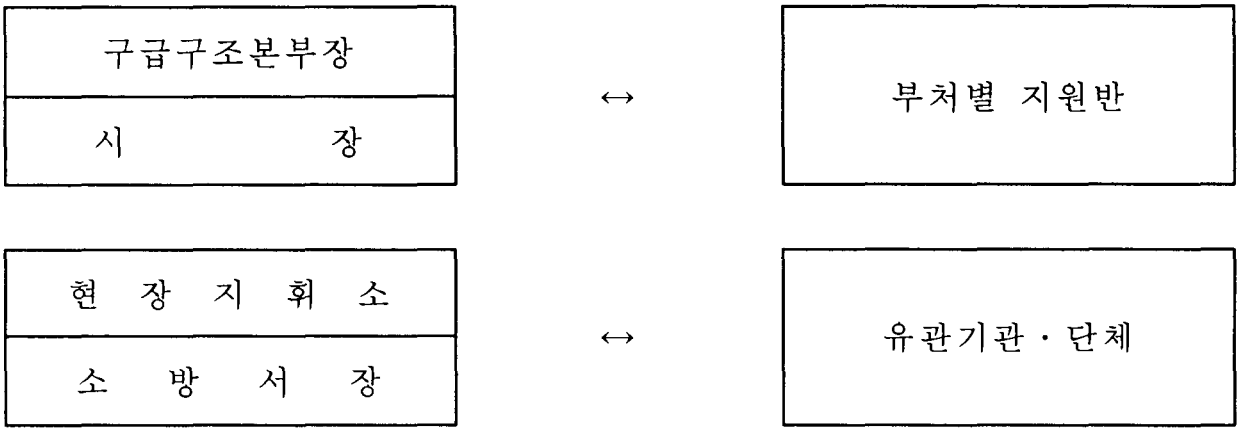

○ 현장접근통제, 경비(경찰 · 군)

○ 현장구조, 구급(경찰 · 군 · 자원봉사자등 협조)

○ 구조전략을 위한 협의 및 종합대책 수립(구조기관 대표)

○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의료기관)

○ 중장비등 동원여부 판단(관련부처)

○ 자원봉사 업무 종합 조정통제

4. 기구별 구성인원 및 임무

○ 긴급구조재난 본부

구 분	본부장	임 무
중 앙	행정자치부 장 관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 긴급구조 기관간의 역할분담 ○ 긴급구조 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 상시 상황실 설치운영 ○ 통제관 1인을 소방공무원에서 지명 ※ 지역구조 본부장은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하여 총괄 조정
시도	시, 도지사	
시군구	시 장 군 수 구청장	

○ 운영위원회

구 분	위원장	임 무
중 앙	행정자치부 장관	○중앙 구조본부 긴급구조 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위 원	시 장 군 수 구청장	○다음중 본부장(행자부장관)이 위촉 - 행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 긴급구조재난본부 상황실

구 분	설치위치	통제관	운영체제	임 무
중 앙	행 자 부 소 방 국	소 방 국 장	상시운영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시 도	시 도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시군구	소 방 서	소 방 서 장		

○ 현장지휘소

구 분	통제관	임 무
중 앙	소 방 국 장	○현장 접근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선 설치 운영 → 경찰청 협조 ○긴급구조구난 기관의 요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부여 및 인력관리 ○공동 지휘통신망 구성 ○종합적 구조전략을 위한 전문기술팀 편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 기관과의 대책회의 ○사태별 전문구조요원 적정배치 ○헬기연락관 지정 공조체제 유지 ○현장응급의료소 운용 - 보건소, 대한적십자사등 협조 ○긴급구조구난장비 물품등 수급관리 ○구조구급요원, 자원봉사자 생필품, 숙식지원 요청 ○긴급구조구난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출입통제
시 도	소방본부장	
시군구	소 방 서 장	

5. 장비 및 인력동원

○ 유관기관 정보관리(평상시 관리체제 유지)

- 지원출동 가용자원 정보관리 및 협조체제 구축
  - 구조요원, 경비요원, 중장비 조작요원
  - 소요 중장비보유업체 파악관리
  - 의료기관현황, 병상수, 전문과목 현황파악
- 전문기술단체 학회등 관리
  - 건축, 토목, 방사능 기술등 전문지식 소유자(단체)
  - 폭발물, 특수위험물 자격자등
-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
  - 관계기관, 단체의 협조 및 정보 필요시 → 출동요청
  - 전문지식, 미소유 특수장비 필요시 → 지원요청
- 자원봉사자 현황관리 강화
  - 접수창구 일원화 전문분야별 활용방안 강구
  - 기능별 현장 지휘책임자 지정통제
  -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숙식 및 휴게공간 제공

6. 현장보도

○ 주민에 대한 홍보

- 위험정보의 통보, 소방활동에의 협력요청
-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부상자 소재 제공
- 경계구역, 교통통제 등의 통보와 협력요청
- 교통통제, 경계구역 등의 해제통보, 협력요청

□ 유관기관 · 단체별 협조요청 사항

기관 · 단체명	협 조 사 항	비 고
안 양 시 청 (만안, 동안구청)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 설치운영 - 구조구난대책의 총괄조정 - 유관기관 인력 · 장비 협조체제 유지 - 복구에 필요한 인력 · 장비동원 - 재난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 및 응급의료소 설치 - 사망, 실종자의 유족보호 및 보상대책 강구 - 재해구호 성금 및 의연금품 관리 -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정비 및 동원 - 자원봉사자 접수창구 설치 ○대국민 홍보실시 - 재난발생시 주민신고 및 행동요령 -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체제 확립 - Press Camp설치, 보도질서 유지	
경 찰 서 (안양, 과천)	○인명구조구난 인력 · 장비지원 ○현장 통제선내 출입통제 ○정보수집 분석 및 현장조사 ○주민대피 소산등 피해확대 방지 조치 ○현장주변 교통정리 ○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보 건 소 (만안, 동안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의료소장 : 관할보건소장 ○현장의료소 조직편성 관리 ○의료기관 파악관리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기관·단체명	협 조 사 항	비 고
군 부 대 (4개부대)	○ 군항공대지원, 인명구조지원 인력투입 ○ 중장비 현장 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한 국 전 력	○ 재난발생 건물 등에 대한 전원차단 ○ 현장조명 전력긴급공급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한국통신(2개소)	○ 현장지휘소 긴급전화 가설 및 복구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삼천리도시가스	○ 재난발생장소 및 주위가스공급차단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의 료 기 관 (4개병원)	○ 현장 응급의료시설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한국응급구조단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경 인 설 비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대 륜 렉 카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안 양 렉 카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효 성 티 엔 씨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대한페인트잉크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한국아마추어 무 선 연 맹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기관·단체명	협 조 사 항	비 고
제일산업개발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대영종합건설기계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오 광 기 업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경 기 환 경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동 방 산 업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관악산인명구조대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산악인명구조	
삼성3119구조단	○ 재해현장 인원·장비지원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붙임 1. 응원협정체결 대상 현황 1부.

2. 안양시 긴급구조구난본부 현장지휘소 운영편성표 1부.

3. 안양시 만안구(동안) 현장응급의료소 편성현황 1부.

4. 현장지휘소 요원 연락망 1부.

5. 긴급구조구난등 비상연락 체계도 1부. 끝.

응원협정체결 대상 현황

체 결 대 상	대 표 자	위 치	체결재정비 일 자	비 고
안 양 시 청	시 장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0	'95. 7. 22	
안 양 경 찰 서	서 장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76-2	'95. 7. 7	
과 천 경 찰 서	서 장	과천시 중앙동 39	'98. 9. 24	
한국통신안양전화국	국 장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0-1	'95. 7. 12	
한국전력공사안양지점	지점장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1	'95. 7. 12	
경 인 설 비	김희순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34-10	'95. 7. 13	
삼천리도시가스경기중부지사	조용현	군포시 당정동 456	'95. 7. 13	
안 양 렉 카	황명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	'95. 7. 13	
한국응급구조단 안양지부	김태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0-25	'95. 7. 12	
한 성 병 원	병원장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968-18	'95. 3. 22	119 응 급 의료기관지정
안 양 병 원	〃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3-9	'95. 3. 22	〃
메 트 로 병 원	〃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산160	'95. 3. 22	〃
한 림 대 성 심 병 원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99. 6. 17	
육 군 제 2506 부 대	부대장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사서함210	'95. 7. 10	
육 군 제 3623 부 대	〃	안양시 안양우체국사서함 19호	'95. 5. 2	
공 군 제 8249 부 대	〃	안양시 안양우체국사서함 139호	'97. 5. 12	
육 군 제 1580 부 대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사서함 106호	'96. 5. 23	
(주) 효 성 티 앤 씨	조정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2	'95. 4. 20	
대한잉크페인트(DPI)	최광균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95. 5. 12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안양지부	이기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873-101	'96. 5. 21	
제 일 산 업 개 발	양재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77-10	'97. 2. 12	
대 영 종 합 건 설 기 계	이명종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3-2	'97. 2. 14	
오 광 기 업	박범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03	'97. 2. 25	
삼 성 3119 구 조 단	이달근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97. 11.17	
동 방 산 업	차명환	안양시 관양2동 898	'97. 6. 30	
관 악 산 인 명 구 조 대	김지명	과천시 중앙동 산81	'97. 8. 26	
경 기 환 경	민경선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911-2	'97. 6. 25	

현장지휘소의 기구 및 운영

○ 기구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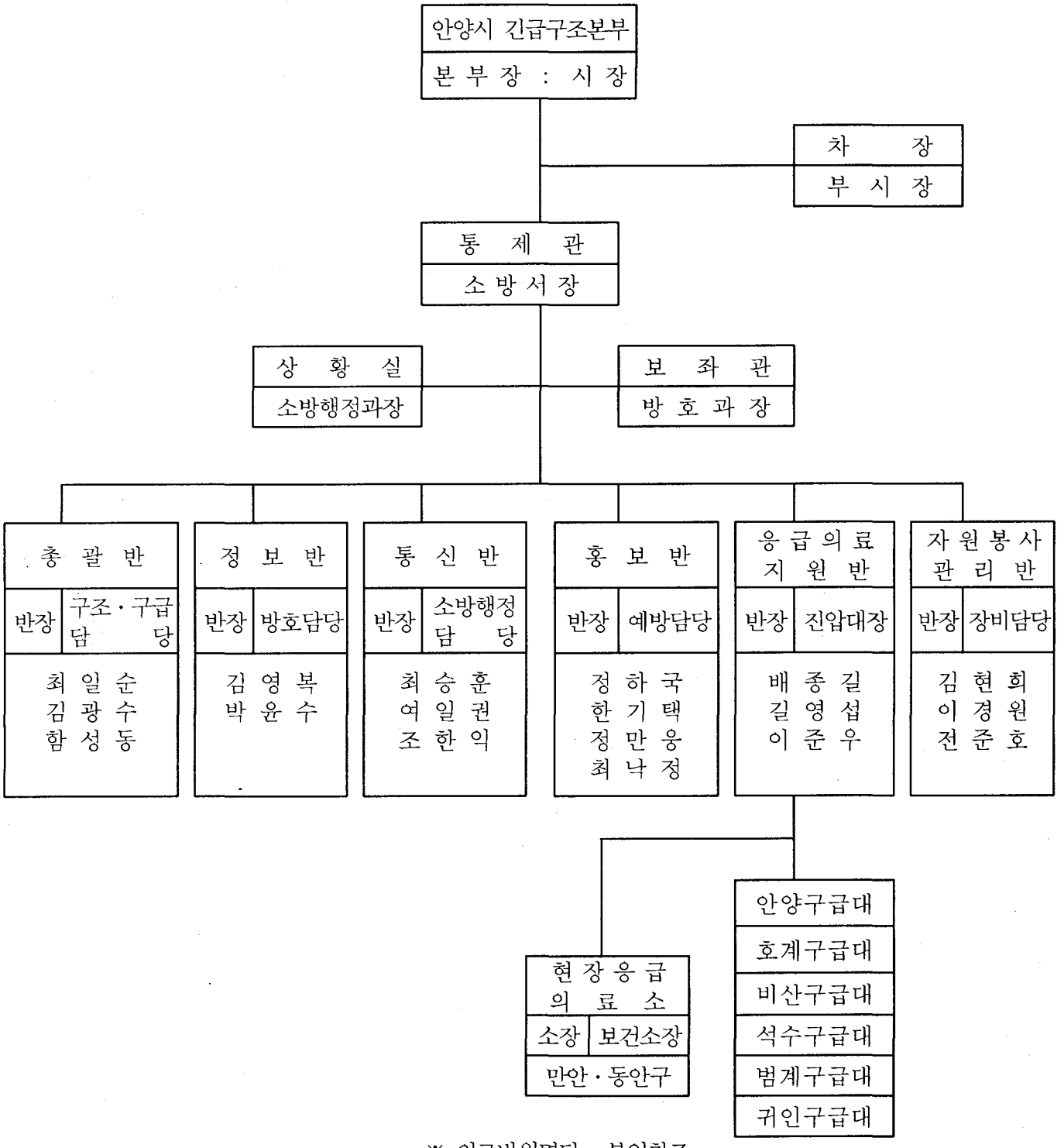

※ 의료반원명단 : 붙임참조

○ 기 능(현장지휘소)

구 분	담 당 업 무
총 괄 반	○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본부장 보좌 ○재난원인 조사 및 재해실태 파악 ○소방활동 상황파악 및 2차 재해 발생위험 파악 ○재해경과의 기록 및 상황보고
정 보 반	○관계자료의 확보 및 대상물 실태파악 ○인명위험 및 재해의 확대위험 파악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정리 및 종합등 ○사상자 발생요인 파악
통 신 반	○현장지휘망 및 유·무선 ○명령전달·통신연락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홍 보 반	○현장상황 촬영 기록보존 ○기타 언론관련 업무
응급의료지원반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긴급의료제공 기관과의 협조등 ○현장 응급의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사상자 처리
자원봉사관리반	○자원봉사자의 등록접수 ○민간전문가등 직할지원대의 관리 및 소모물품의 관리 및 배포등

○ 기 능(현장응급의료소)

구 분	담 당 업 무
분 류 반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응급처치표 작성 ○사상자 분류(사망, 중상, 경상, 귀가) - 사망자 : 이송반 - 중경상자 : 응급처치반 - 귀가대상자 : 인적사항 정리후 귀가조치 - 사망자중 신원미상자 : 임시 영안소 안치
응급처치반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비치
이 송 반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또는 통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사상자 이송

○ 현장응급의료소 편성 현황 (만안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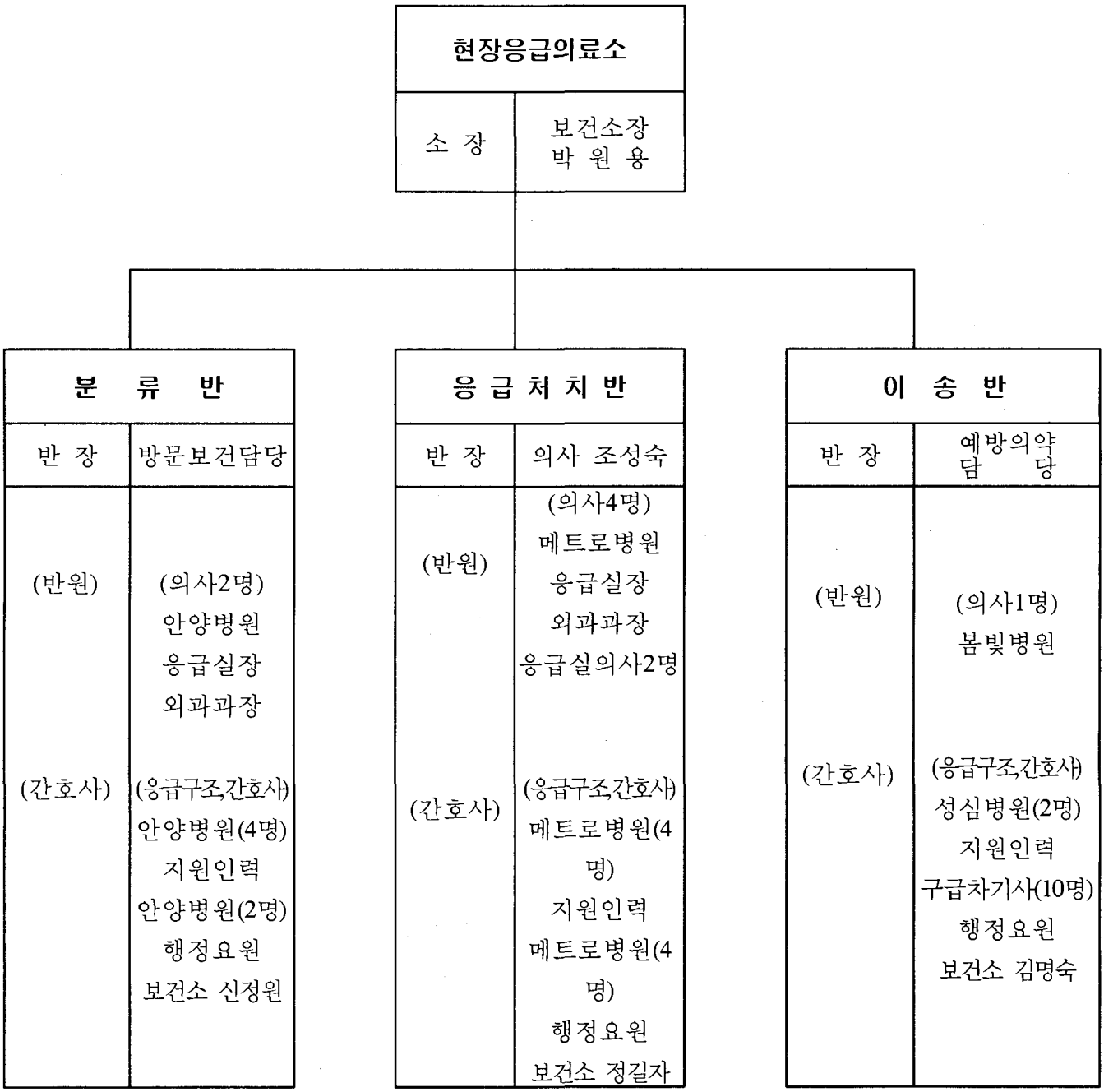

○ 현장응급의료소 편성 현황(동안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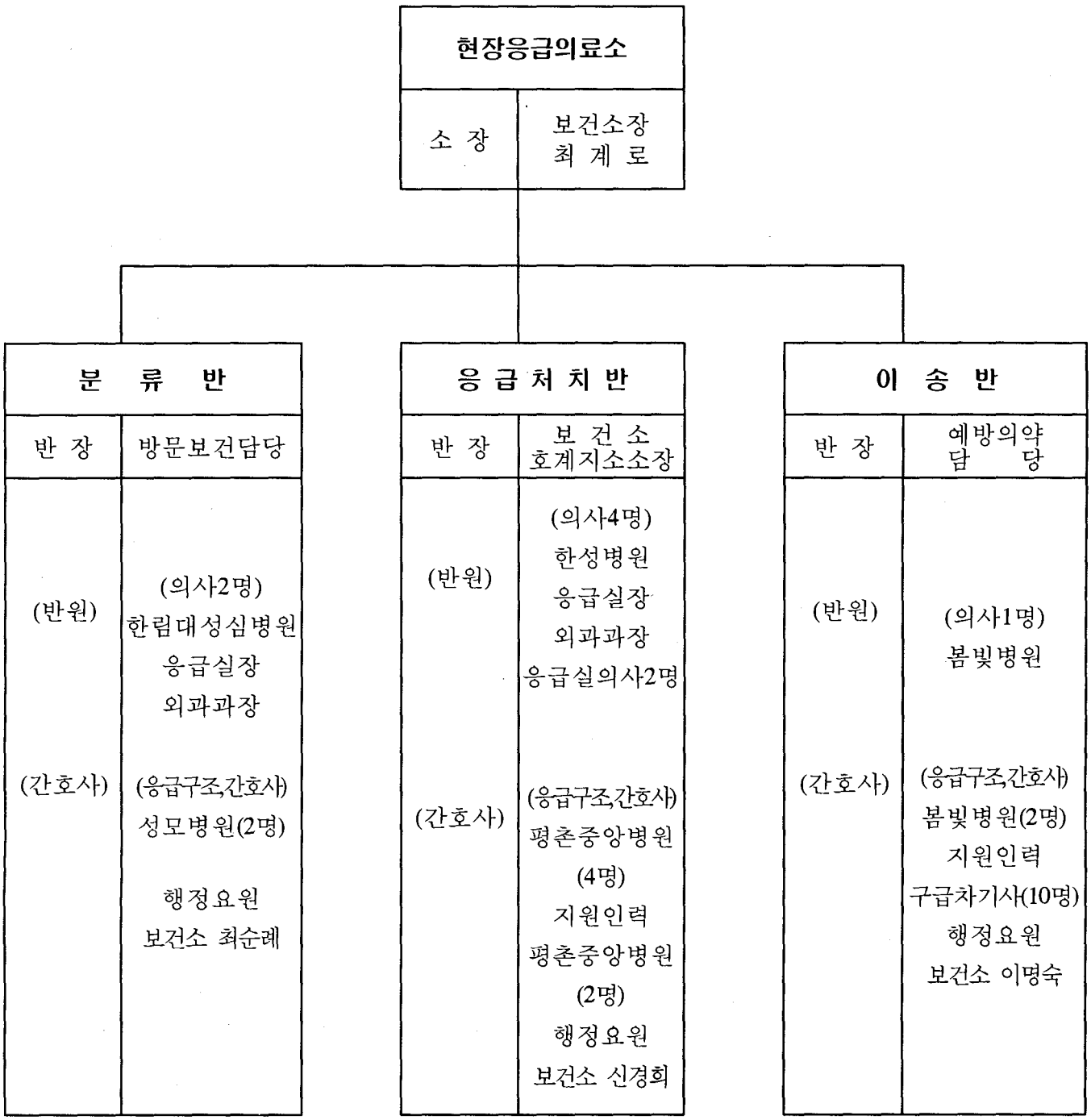

현장지휘소 요원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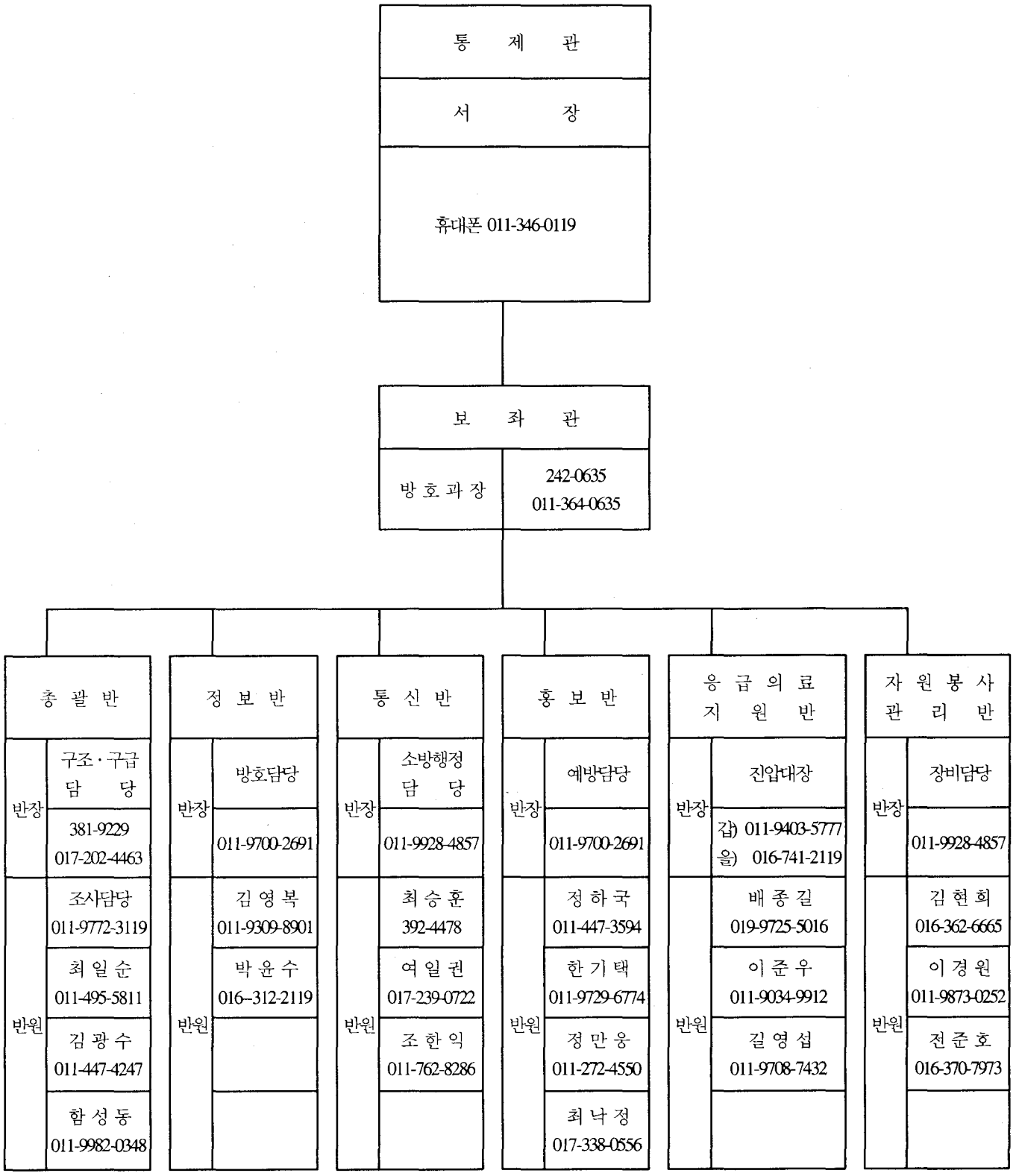
통 제 관
서 장
휴대폰 011-346-0119
보 좌 관
방호과장
242-0635
011-364-0635
총괄반
반장
구조·구급 담당
381-9229
017-202-4463
반원
조사담당 011-9772-3119
최일순 011-495-5811
김광수 011-447-4247
함성동 011-9982-0348
정보반
반장
방호담당
011-9700-2691
반원
김영복 011-9309-8901
박윤수 016-312-2119
통신반
반장
소방행정 담당
011-9928-4857
반원
최승훈 392-4478
여일권 017-239-0722
조한익 011-762-8286
홍보반
반장
예방담당
011-9700-2691
반원
정하국 011-447-3594
한기택 011-9729-6774
정만웅 011-272-4550
최낙정 017-338-0556
응급의료 지원반
반장
진압대장
갑) 011-9403-5777
을) 016-741-2119
반원
배종길 019-9725-5016
이준우 011-9034-9912
길영섭 011-9708-7432
자원봉사 관리반
반장
장비담당
011-9928-4857
반원
김현희 016-362-6665
이경원 011-9873-0252
전준호 016-370-7973

□ 안양소방서 전화번호

부 서 명	일반전화	행정/휴대폰	부 서 명	일반전화	행정/휴대폰
서 장 실	384-0111	100-1	긴급구조본부상황실	387-0045 381-9113	119, 120
소방행정과장	387-8948	200, 201	당 직 관 실	388-4110	500
소방행정담당	387-0119	210	당 직 원 실		551
소 방 행 정 팀	3387-0119	211-4	구 조 대	381-1119	511
장 비 담 당	384-5658	220	부 림 파 출 소	384-8943	521, 522
장 비 팀	384-5658	221-4	안 양 파 출 소	447-0119	501
방 호 과 장	387-8941	300, 301	호 계 파 출 소	452-0230	502
방 호 담 당	381-4119	310	비 산 파 출 소	385-5284	503
방 호 팀	381-4119	311-2	석 수 파 출 소	471-8119	504
예 방 담 당	383-7119	320	귀 인 파 출 소	382-8119	505
조 사 담 당	387-0045	331-2			
예 방 팀	385-0013	321-8	본 부 장 실	224-0119	(700) 5100, 5101
구조·구급담당	384-0019	410-1			

긴급구조구난등 비상연락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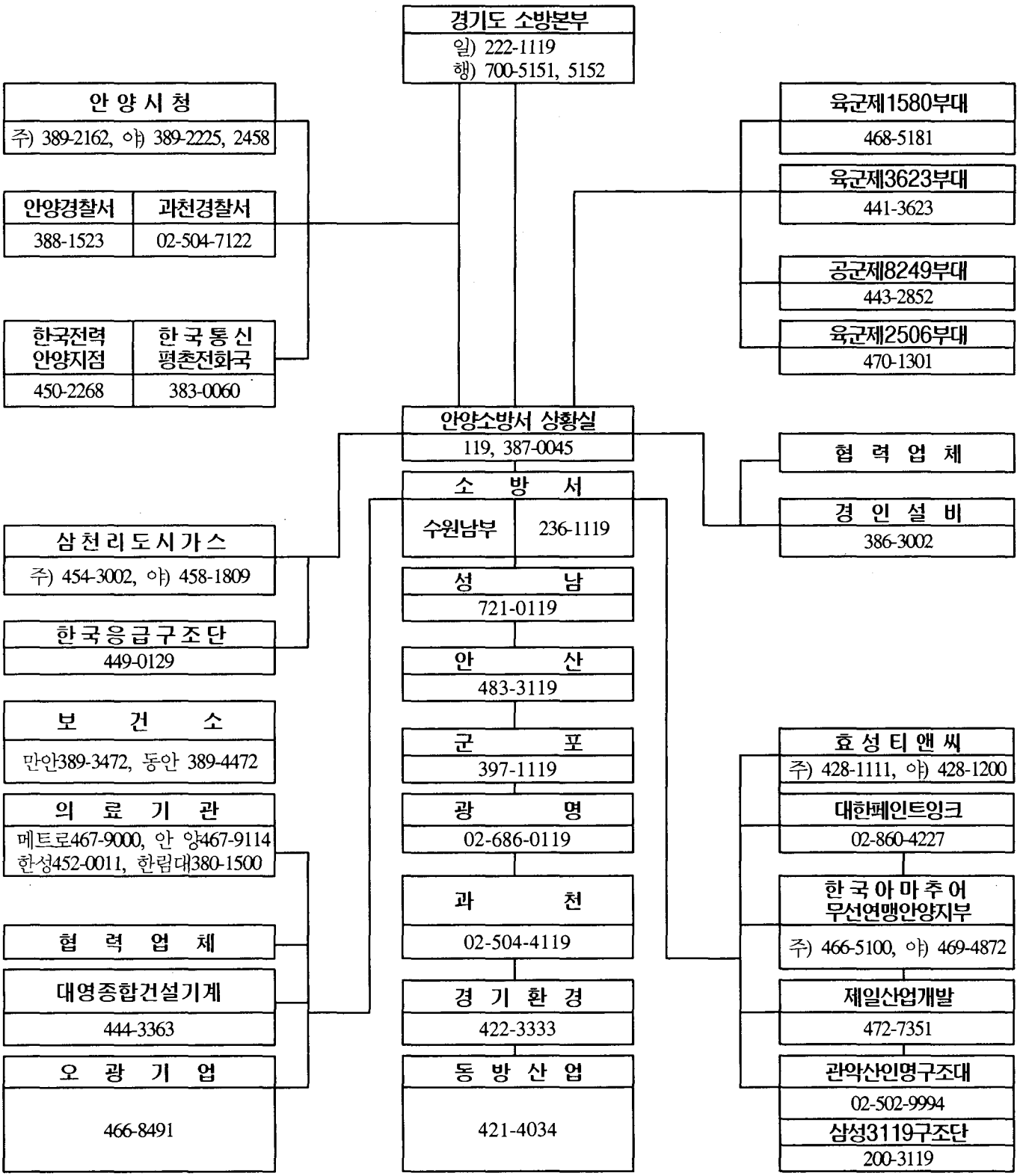

2002 재난관리계획

육군 제 1580부대

여 백

5. 육군제1580부대

1. 개 요

가. 목 적

○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군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키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나아가 적극적인 대민지원태세 유지로 국가시책구현 / 대군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음

나. 방 침

○ 기상특보 발령시 즉각 재해통제소 운영 / 통제
○ 재해·재난장비 항시 방한대책 유지
○ 신속한 상황보고 / 기상특보 청취 대책강구(상황실에 TV, 라디오 비취)
○ 한파에 따른 장비 / 물자, 급수시설 결빙 / 동파예방
○ 화재발생 방지 / 병력 방한대책 강구
○ 병참선 두절 / 고립에 따른 대비철저 (제설장비, 격오지 비상식량)
○ 악기상시 부대운영간 인명피해 예방대책 강구
  ● 야외 / 산악훈련, 혹한기 훈련
○ 재해·재난 통합지원태세 상시 유지
  ● 재난구조부대 / 5분 대기부대 출동태세 확립 (병력, 장비 / 물자)
  ● 행정관서와 통신 / 협조대책 유지

다. 중 점

○ 재해·재난 예방활동 강화
○ 재해 취약요소 사전파악 및 대비책 강구
○ 재해·재난 발생시 즉각 보고체계 확립
○ 재해복구장비 상시 출동태세 유지

라. 추진일정 / 내용

구 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기간	2001. 12. 1 ~ 12.15	2001. 12. 16 ~ 2002. 2. 28	2002. 2월 ~
내용	○ 취약지역 / 시설물 보완 ○ 재해복구장비 점검 / 정비	○ 재해통제소 운영 ○ 재난구조 / 구난활동 ○ 피해지역 응급복구	○ 피해지역 / 시설물 수습 및 복구

2. 세부 추진계획

가. 재해통제 본부 운영 / 편성

(1) 운영 : 각대대 / 단 직할중대

(2) 시기

구 분	상 황	근 무
3단계 (준비단계)	○ 기상특보 "주의보" 발령으로 재해예상시 ○ 지휘관 지시시	○ 주간 : 군수실무자 ○ 야간 : 일직근무자
2단계 (경계단계)	○ 기상특보 "경보" 발령으로 재해예상시 ○ 대형사고 발생시 ○ 지휘관 지시시	○ 각과 실무자 (정작, 인사, 군수, 시설, 통신)
1단계 (비상단계)	○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시 ○ 부대 기본임무 수행 제한시	○ 전원소집 ○ 2교대 근무

(3) 장소 : 지휘통제실(통합근무)

(4)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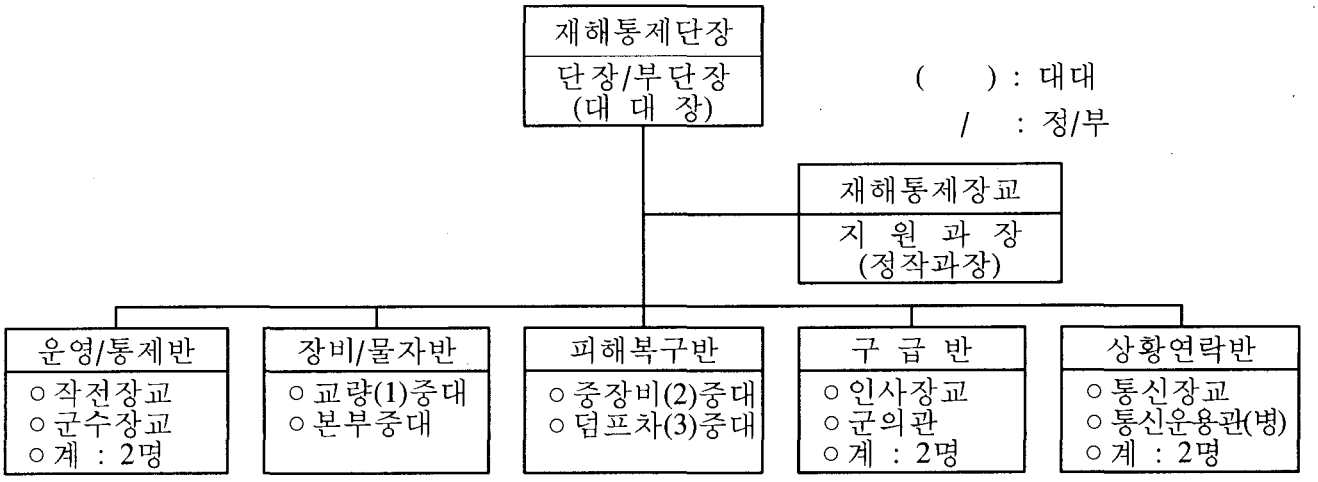

(3) 각반의 임무

구 분	내 용
재해통제단장	○ 재해통제본부 설치 운용감독 ○ 재해예산 및 확대방지
운영통제반	○ 각반의 운영계호기 수립 / 근무자 편성운용 ○ 재해 긴급조치 및 복구 ○ 재해통제지역, 행정관서 통신유지 / 보고서 작성, 보고
장비/물자반	○ 재해통제 운용장비 / 물자확보, 지원
피해복구반	○ 피해복구장비 / 물자판단 및 조치 협조 (장비/물자반) ○ 복구진도 파악 보고, 유지
구 호 반	○ 구호대책에 관한 계획 / 건의 : 방역, 환자치료, 이재민 대피 ○ 책임지역 대민임무 처리
상황연락반	○ 재해통제에 관한 상황접수 및 보고 ○ 정보 : 작전 지휘통제실, 재해통제 본부와 협조

2002 재난관리계획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여 백

6. 韓國電力工事 安養支店

가. 계획의 전제

1). 그동안의 재난관리 성과와 반성

○ 설비고장의 대폭 감소

ㅇ배전설비는 다양하고 산재되어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여 설비사고의 예방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나, 직원의 설비관리능력제고, 설비안전점검과 진단의 철저한 시행 및 적절한 본사의 지원에 따라 재형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였음

○ 가상 재난발생 대응능력(모의훈련) 체계화

ㅇ가상의 재난발생 대응능력확보를 위한 예방활동 및 긴급복구조치 계획의 체계화로 전력설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사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음.

○ 재난관리 기능 및 현장관리 취약

ㅇ안전분야 투자 위축등으로 능동적인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활동이 어려움.

ㅇ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업무 증가, 대외기관 각종점검의 중복시행,취약시기 관리업무 부담가중 등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기피현상이 발생하는등 현장관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임

나. 2002년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

○ 설비의 대형· 집중화 대비 필요

ㅇ 대용량 배전설비의 운영 거대도시의 집중화로 광역정전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필요

ㅇ 광역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설비안전점검과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재난관리 업무 내실화 요구

○ 재난구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청시

다. 재난대책본부 구성

○ 구성시기 : 기상경보 발효나 천재지변 등으로 전 배전선로의 5%이상 동시고장 발생시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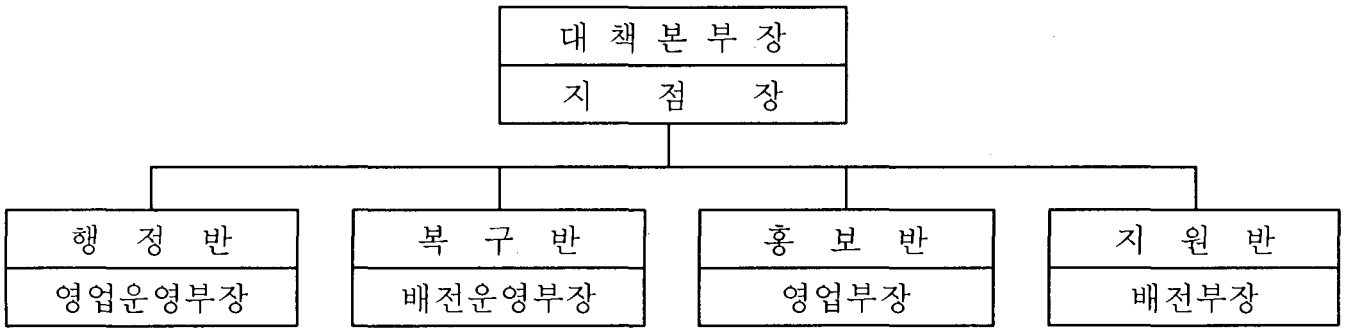

【임 무】

○ 본부장 : 상황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총괄

○ 행정반 : 비상발령, 상황실 운영지원, 일반 행정지원, 장비 및 자재 지원

○ 복구반 : 공사업체 동원, 설비피해 상황파악 및 대책강구, 긴급복구, 보고등

○ 홍보반 : 피해지역 안내 및 전기안전 홍보(홍보활동 총괄)

○ 지원반 : 비상발령 현황 파악, 설비별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파악 집계, 복구지원

○ 동원장비

구분 / 기관	활선작업차	저압보수차	작 업 차	봉 사 차	비 고
한국전력공사 안 양 지 점	1	2	2	1	

라. 재해발생 우려시 예방조치

○ 재해발생 우려개소 순시 및 안전조치

- 배수펌프장 공급선로 및 취약선로 긴급순시 · 점검
- 재해 예상지역 전기안전 계몽시행

○ 아파트 수전실 침수 예방조치 시행 지도

● 지하 변전실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 가동점검

● 비상발전기 가동점검

○ 대형 재해수습을 위한 행정관서간 협조체제 구축

● 시·군 방제 담당관, 경찰서, 언론기고나 등 관련기관 연락체제 정비

마. 배전설비 고장복구 및 정전 안내

○ 정전지역 최소화를 위한 부하전환 및 긴급 가복구 시행

● 고장확대 방지를 위한 재해예상지역 부하차단 또는 부하전환

○ 재해지역 안전조치

○ 긴급복구용 자재 및 장비 확보

○ 재해지역 단전에 따른 지역 매스컴 홍보

● 전력설비 피해현황 및 복구내용과 송전 예정시간

○ 중요고객 및 특수수용 정전안내 및 기록유지

● 비닐하우스, 양돈, 양계, 양어장, 농산물 건조수용 등에 자구책 강구 방안

○ 재난(해)시 연락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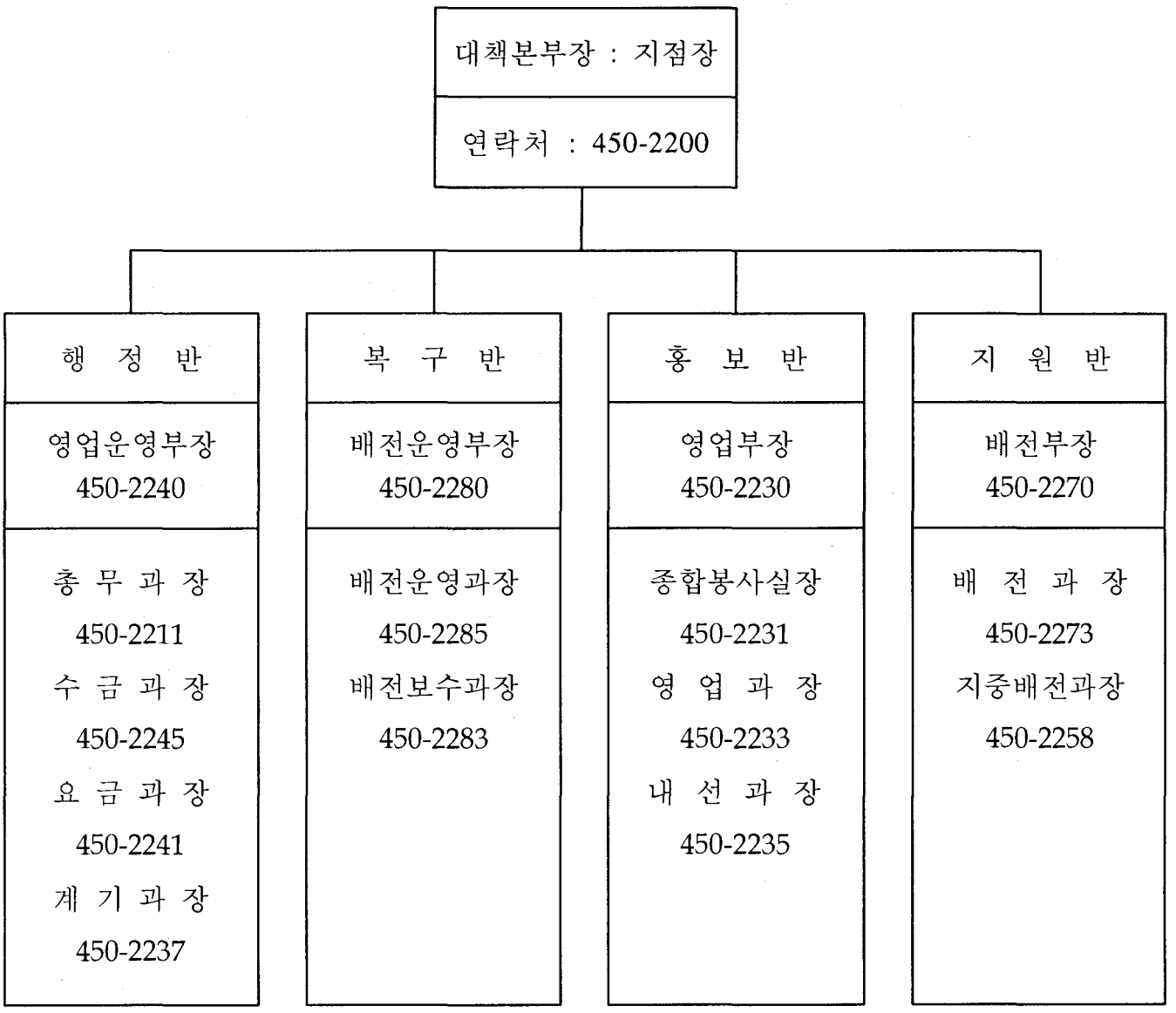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 주 간 : 배전운영과 450-2285~6
- 야 간 : 배전운영실 450-2267~9
  당 직 실 450-2203

2002 재난관리계획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여 백

7. 韓國電氣安全工事 安養支店

1) 계획의 기본방향

가. 목 적

○ 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의 사전예방·대비 및 수습·복구 능력 제고

나. 방 침

○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및 구축·운영

○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대국민 계몽·홍보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추진

2) 재난관리대책

가.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1.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 안전관리체계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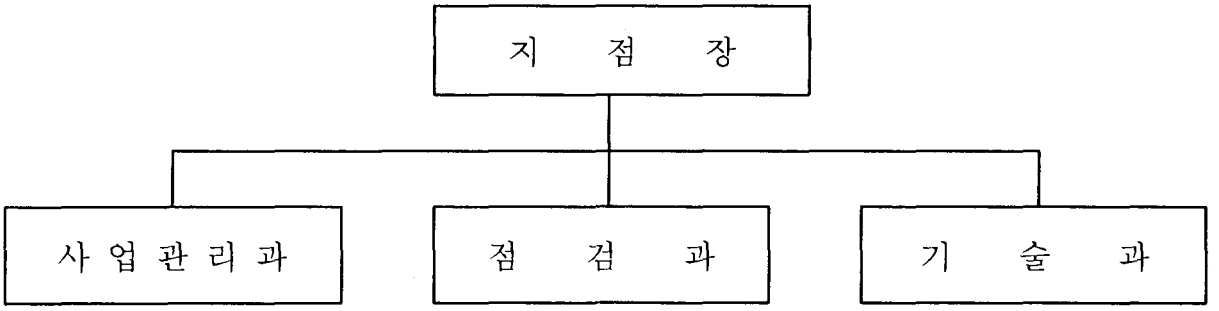

【인 원】 (2001. 11현재)

계	간 부	기 술 직	행 정 직
45	4	38	3

2. 관장업무

○ 전기사업법에 의한 업무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전기안전에 관한 자료수집·출판 및 배포
- 전기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검사 및 기술지원
-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관리법에 의한 업무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여
-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등의 지정·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의 지정·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의 지정·관리

1. 재난관리대상시설등 지정을 위한 수시조사계획

○ 대상시설 : 안전관리대행 수용가중 다중이용시설

2.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현황

○ 지정기준

- 안전관리대행 수용가로서 전기설비용량 300kw이상인 시설
- 백화점, 시장 · 상가, 병원, 호텔등 다중이용시설

○ 지정현황 (2001. 11. 현재)

계	병 원	시장 · 상가	호 텔	기 타
4	2	1	1	-

3. 관리방법

○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유지

- 재난위험시설(D, E급) : 점검결과 및 안전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수용가 및 기술과에 배치
- 중점관리대상시설(A, B, C급) : 점검결과 및 안전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장과 별도 관리

○ 안전점검

- 전기사업법에 의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공사등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

4. 정비 및 보수계획

○ 부적합 시설은 조속히 개수되도록 수용가(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미개수 수용가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보고하여 개수 명령 유도

○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점검과 병행하여 봉사활동으로 개 · 보수조치

5.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 · 단기계획

○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및 증 · 개축 건축물등 전기설비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법정 점검제도 강화 검토

-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의 사용신고시 안전점검 의무화 방안 검토

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검사 실시

1.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검사 점검

○ 신·증설중인 전기설비는 공사완료와 동시 사용전 검사 실시

○ 운영중인 전기설비는 1~3년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와 점검실시

○ 검사(점검)결과 부적합설비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속한 개·보수 추진

○ 대상설비 (2001년 기준)

-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 141,600호
-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정기검사 : 1,103건

2. 재해취약시기 사고예방 활동

○ 계절별 전기안전 강조기간 설정 추진

- 해빙기(3월) : 지반침하 등에 의한 전기설비 사고예방
- 장마철(6~7월) : 침수등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동절기(11월) : 난방용 전열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 명절연휴, 연말연시,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활동 강화

- 비상근무 실시
- 시장, 유흥업소, 숙박업소등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실시
- 사고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복구지원 실시

○ 취약설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 국가 주요시설, 사고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지원
- 점검대상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시설로서 표본 점검 형태로 시행

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1.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홍보

2. 전기안전교육 추진

○ 대 상 : 일반국민 및 수용가 직원

○ 방 법

- 법정검사·점검과 병행하여 교육
- 민방위교육 또는 사회단체모임 등에 강사지원 교육

○ 내 용 : 전기사고사례·전기제품의 안전한 취급요령등

3) 재난대비대책의 추진

가.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구축

1. 전기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목 적 : 전기분야에서 발생한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복구 내용을 신속히 파악·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방 법 :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상황근무자 편성 운영

2. 비상시 상황근무체제 강화

○ 시 기 : 대형화재, 폭발, 붕괴사고등 발생시

○ 방 법 :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동원인력 증원 및 장비 출동대기

나.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1. 동원가능 인력

○ 재난발생 규모와 기본업무 수행을 감안하여 현장업무 정원의 1/5내지 1/3의 인력을 동원

※ 동원가능인력 #1 : 재난복구에 단기간이 소요되는 규모의 사고로서 현장업무 정원의 1/5

동원가능인력 #2 : 재난복구에 장기간(10일 이상)이 소요되는 사고로서 현장업무 정원의 1/3

2. 동원가능 장비

○ 발전기 탑재 정밀검사차량 및 작업차량

○ 전열진단장비, 계측기 시험기등 계측장비

○ 작업용 공구 및 안전장구

다. 전기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 개 요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으로 전기안전과 관련되는 정보제공

2. 내 용

○ 인터넷을 통한 전기안전 정보의 제공

- 전기설비 운영과 관계되는 안전정보의 제공
- 대화방인 『열린마당』을 통한 질문접수 및 답변 제공

4) 재난의 수습대책

가. 재난발생시 초동대응 태세 확립

1. 초동출동반 편성 운영

○ 인 원 : 기술인력 3명

○ 장 비 : 발전기 탑재 정밀검사 차량 1대와 전기설비 진단장비

○ 임 무 : 재난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시행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 체제 구축

<협조기관> <복구체계> <유관기관>

산 업 자 원 부

↑상황보고

기 상 청 — 상황파악 → 본사 ← 상황파악 — 행정자치부

지 원 ↓ ↑상황보고

경기지사

지 원 ↓ ↑상황보고

한국전력 — 지원요청 → / ← 지 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 양 지 점 ☎474-1821~4 — 지원요청 ← / → 지 원 — 지 자체

복구조치 ↓ ↑주민신고

피해발생

다. 긴급구조 구급대책 추진

1. 긴급구조반 임무

○ 재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 초동단계에서의 응급대응 조치 시행

○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2. 긴급구조 업무 추진계획

○ 재난신고 체계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
- TV, 라디오 등 매스컴 보도에 의한 인지

○ 긴급구조대책

- 구조현장에 필요한 비상전원 확보
- 구조대책본부 등 주변시설 안전점검 실시

5) 재난의 복구대책 추진

가. 『합동조사반』 구성 · 운영

1. 화재감정반 편성 · 운영

○ 대형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화재감정에 참여

○ 2명의 화재감정요원 운용

○ 현장의 전기설비상태등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잔존물은 연구원에서 정밀감정

○ 감정결과는 경찰서, 소방서 등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조치

나.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1. 상황발생 단계

○ 직원 비상소집 및 초동출동반 현장 투입

○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장비 · 자재등 확보

2. 상황안정 단계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인명구조에 필요한 임시전원 가설
- 이재민 수용시설 및 복구대책본부 전기안전점검
- 사고주변시설에 대한 이상유무 안전점검

○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안전 사용 계몽·홍보

-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2002 재난관리계획

한국통신 안양전화국

여 백

8. 韓國通信 安養電話局

1) 재난관리 개요

가. 여건 및 전망

○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통신망이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 추세에 있어 대형사고 발생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통신망의 안전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 더욱이 사회적으로 대형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재난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통신케이블이 밀집 수용된 통신구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점검강화로 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나. 재난관리업무 관련근거

○ 재난관리법(법률 제4950호) 및 동법 시행령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4922호)

○ 정보통신부 재난관리계획

다. 대상시설 지정

○ 지정기준

지 정 시 설		대 상 범 위	지정부서
중점관리대상	통신구	○국내 및 인입통신구, 공동구, 지하철, 병행통신구	국무총리실
	건축물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1, 2종건축물	자 체 관 리
재난위험시설	건축물	○안전상 결함 시설물로서 전문기관 주관 안전진단 결과 D, E급인 시설물	정보통신부

2) 2002년도 재난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1. 목 표

○ 통신구 및 건축물로 인한 대형재난예방 : 사건 0건 (무사고)
○ 사회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통신지원 추진

2. 추진방침

○ 재난관리 업무의 내실화

- 안전점검 주기 및 보수·보강체계 효율화
- 점검관리 및 교육 강화

○ 대상시설 집중 감시시스템 확충과 시설물관리 체계화

- 사옥관리 체계화로 재해예방 및 건물 내구성 증진

○ 재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망의 생존성 확보

○ 긴급통신 지원체제 구축

○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해소시 까지 지속적인 관리

나. 재난관리 대상시설

구 분	중 점 관 리 시 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
통신구	○총연장 : 7.31㎞(7개 전화국) - 국내통신구 : 0.24㎞ - 인입통신구 : 1.32㎞ - 공 동 구 : 5.75㎞	없음	
건축물	○7개국 - 안양, 동안양, 호계, 서안양, 석수, 군포, 의왕	없음	

3) 재해 예방대책 추진

가. 재해취약시기별 사전조치 활동

〈 취약시기별 활동기간〉

○ 재해대비 사전조치 기간 - 풍수해 : 3~5월 - 설 해 : 10~11월	⇒	○ 재해기간 - 풍수해 : 6. 15~10. 15 - 설 해 : 12.1 ~ 익년

1. 사전 조치사항

○ 재해기간 도래전 사전조치계획 수립 실시

○ 재해취약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정비

○ 재해발생시 복구 및 수습계획 수립

○ 방제교육 및 훈련실시

2. 사전조치사항 (자체(상급기관) ⇔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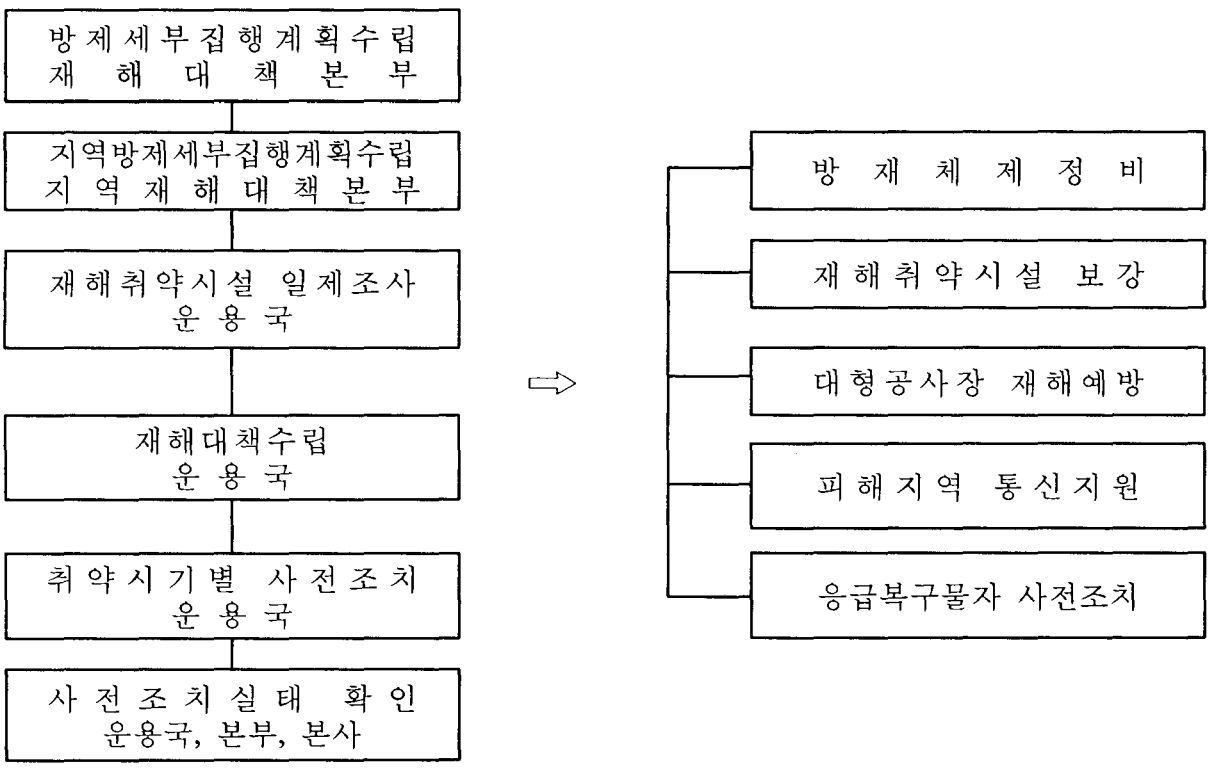

나. 재해취약시설관리의 내실화

1. 재해취약시설관리 현행 정비

○ 재해위험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 2002. 1 ~ 2월

○ 일제조사 대상시설

○ 재해취약시설물 단위로 관리카드 작성

○ 관리카드 작성내용

- 재해취약시설 자료입력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시설현황, 도면 또는 사진, 점검정비실적 등을 포함
- 재난(해)시 인원, 물자, 장비등의 대피계획을 수립
- 피해발생시 복구대책, 점검정비이력 등 기록관리

2. 시설물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관리 강화

○ 재난(해)대비 기간중 순회점검 주기 단축 점검 강화

○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임시보호조치후 대책 강구

○ 취약요인 감시 강화

- 건축물의 축대, 옹벽 등의 침하 및 우수에 의한 붕괴 가능성
- 건축물, 통신구의 배수구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물의 가능상태

3. 피해발생대비 사전대책 수립

○ 인명대비 및 구호활동

○ 문서 및 주요시설 등의 소산계획

○ 통신두절시 우회 및 긴급복구계획수립

○ 직원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연락체제 현행 관리

다. 재해취약요인 해소사업 적극 추진

1. 재해취약 요인이 있는 시설물의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

○ 사업항목 및 추진방향

○ 재해위험지구 및 고립예상지구 내의 시설물 ○ 옹벽, 축대, 교량, 저수지, 하천, 방조제, 하수도 등에 인접한 시설물 ○ 재난관리대상시설 및 각종 안전점검시 지적된 시설물 ○ 재해우려 통신시설물 ○ 무인국사등 직원비상주 시설물등

라. 시설물 점검

1. 통신구

○ 일상점검 (안양광역전화국외 6기관)

점검부서	점 검 주 기			점 검 내 용
	통신시설	전기시설	토목시설	
주관부서	일1회	주1회	월1회	- 통신구 운용관리 지침에 준함

2. 건축물

○ 일상점검 (사옥관리부서 자체점검)

-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무인국사 : 반기1회
- 재난위험시설 : 월1회

마. 점검결과 관리

1. 지적시설 기관별 관리대상

구 분	한국통신 본사관리	한국통신 경기본부관리	안 양 전 화 국
건축물	○ 안전점검결과 D, E급시설	○ 본사관리대상 및 정밀안전진단 요구 시설	- 점검결과 지적시설
통신구	○ 안전점검결과 D, E급시설 ○ 정밀안전진단 요구시설 ○ 장기 보수계획 시설 ○ 외부기관 점검결과 지적시설	○ 본사관리대상 및 정기점검결과 지적시설	- 점검결과 지적시설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추진 철저

2. 통신구 관리

○ 통신구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점검관리

○ 점검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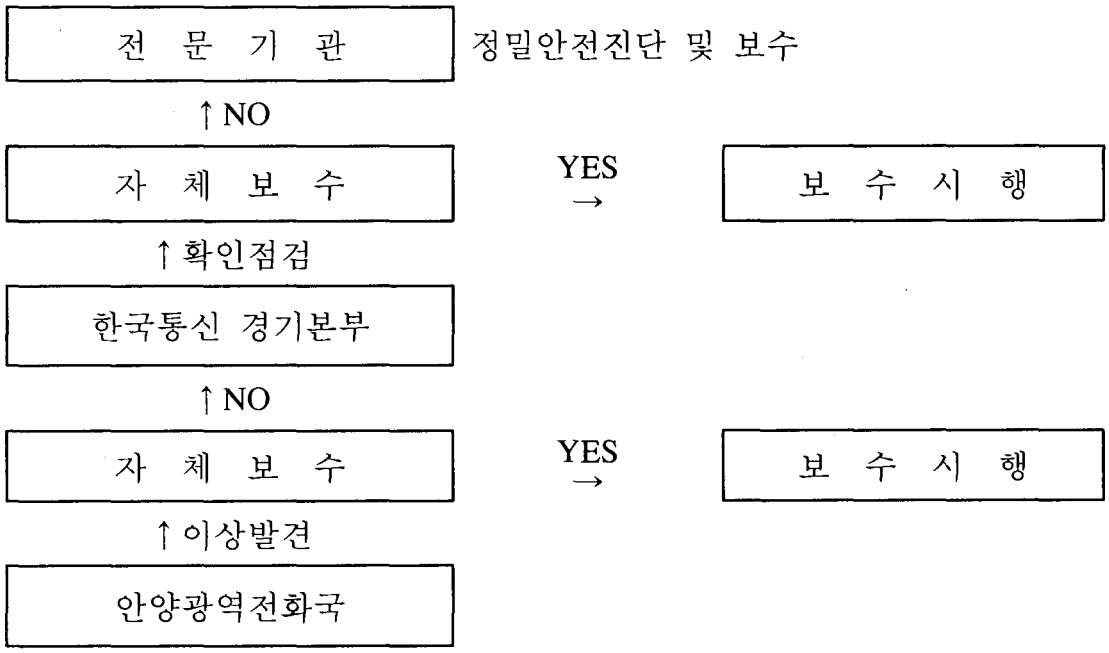

3. 건축물

○ 점검결과 관리

- 일상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철저
- 안전이상 발견시 한국통신 경기본부(상급기관)에 신속 보고하고 보존 및 관리 철저
- 한국통신경기본부는 전문직 점검후 한국통신 조달본부에 결과통보 및 확인점검 의뢰
- 한국통신조달본부는 확인점검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관리
- 한국통신조달본부는 안전우려 건물(D, E급)은 재무실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보고

○ 보수·보강공사 추진

- 안전진단 및 조달본부 점검결과에 의거 조달본부 대책 수립
- 보수·보강공사 집행
- 한국통신조달본부 : 하자보수기간이내 또는 10,000㎡이상 건물
- 한국통신경기본부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10,000㎡미만 건물
- 안양광역전화국 : 경미한 단순보수공사에 한해 집행

※ 점검결과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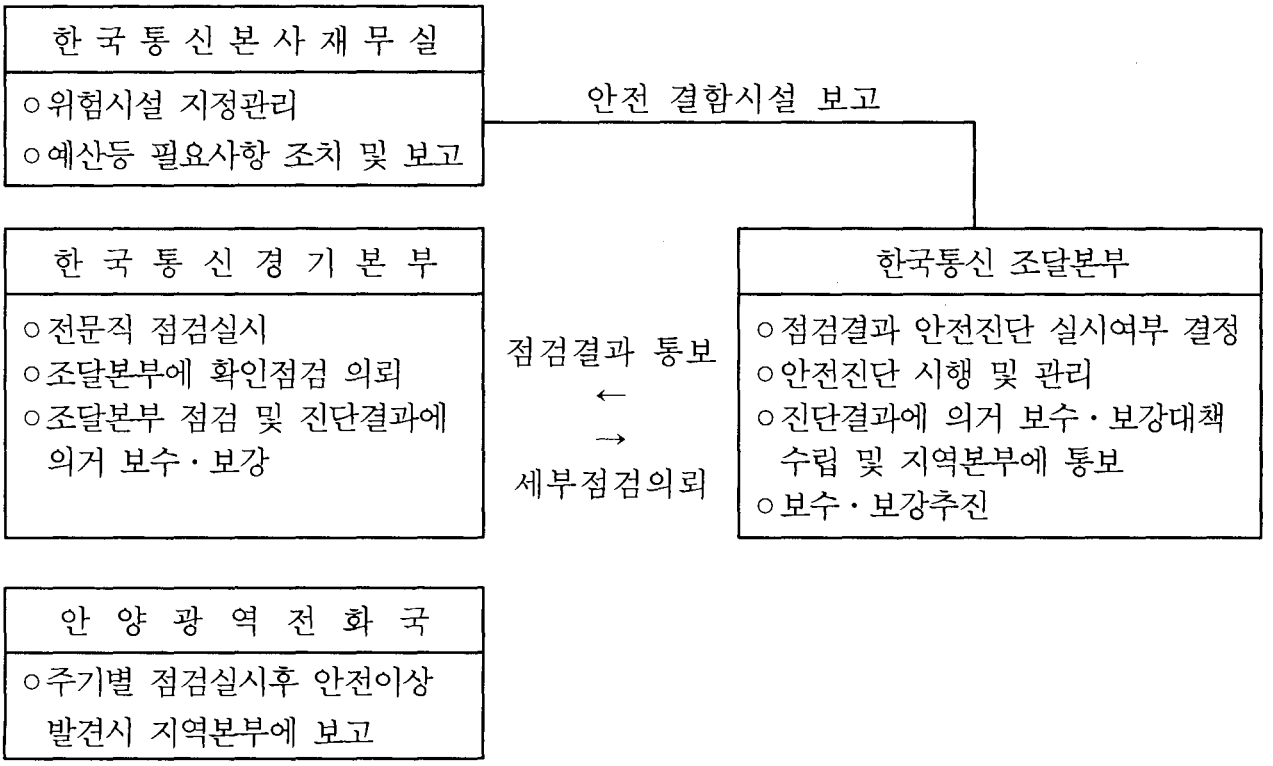

바. 재난의 예보·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1.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난의 사전 예보·예측

○ 통신구 및 건축물 점검

-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통하여 취약시설을 도출 개선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
- 무인화 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 및 순회점검 철저

2. 보고체계의 확립

○ 보고사항

- 통신시설 관련 사고 및 고장 조치현황
- 사회적인 재난발생시 긴급통신지원 사항
- 구조물의 붕괴 등 재난발생 및 시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 보고계통 : 대형고장관리 요령에 의한 보고계통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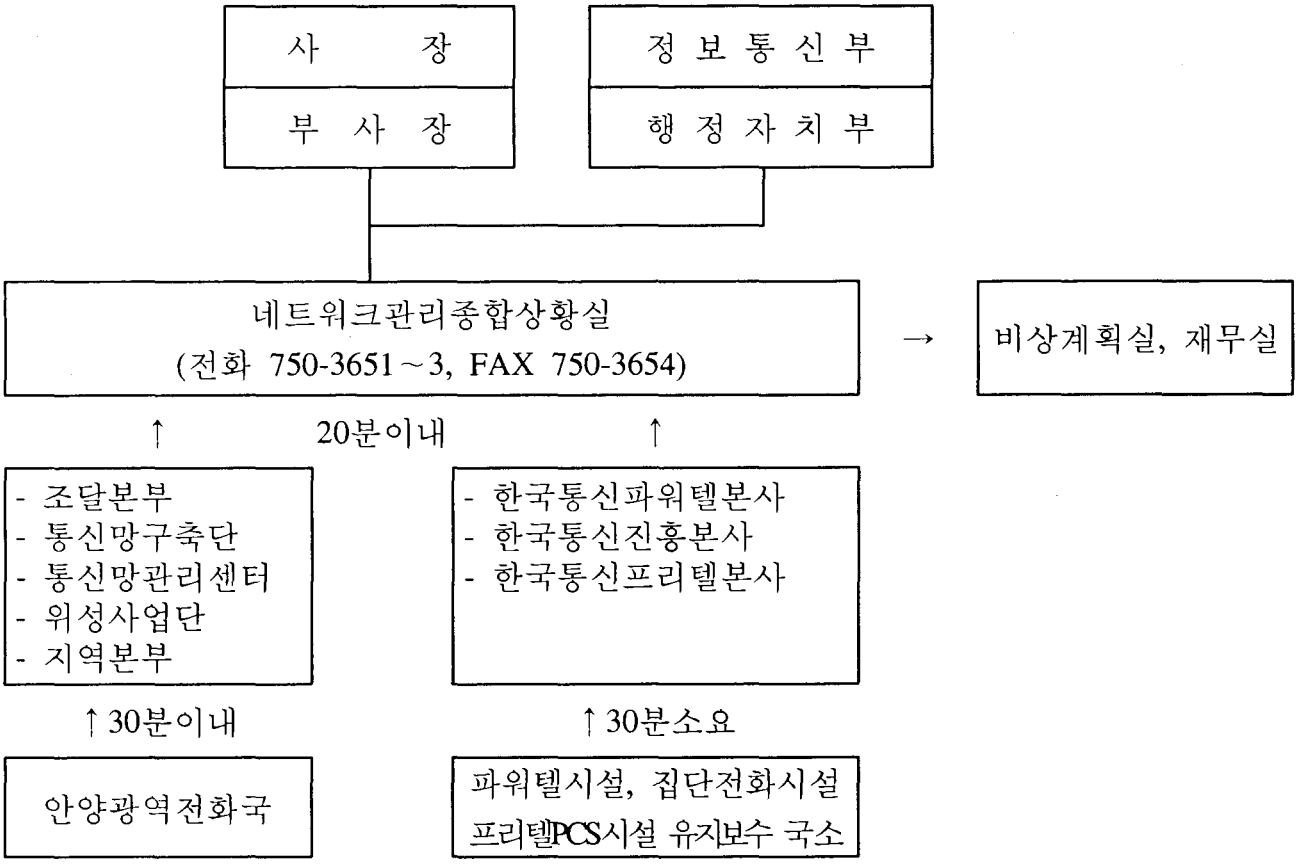

3. 재난관련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체제 구축

○ 신속한 긴급구조 및 초동조치를 위한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

○ 긴급구조·구난훈련 참여 및 지원

○ 재난관련기관 긴급통신지원 체제 강화

○ 아마추어무선(HAM)을 활용한 재난상황정보 수집

※ 상황보고 및 전파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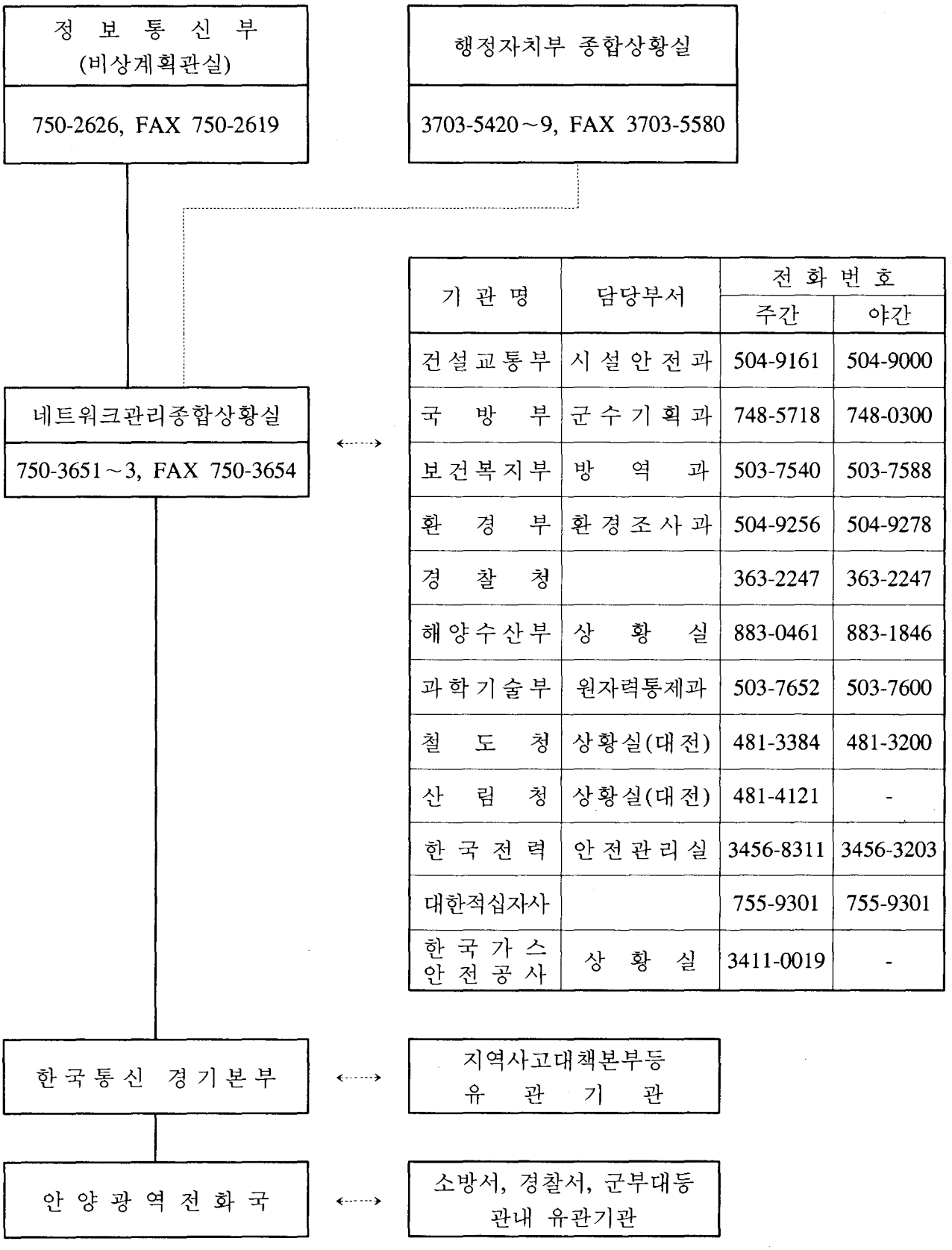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번 호	
		주간	야간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과	504-9161	504-9000
국 방 부	군수기획과	748-5718	748-0300
보건복지부	방 역 과	503-7540	503-7588
환 경 부	환경조사과	504-9256	504-9278
경 찰 청		363-2247	363-2247
해양수산부	상 황 실	883-0461	883-1846
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과	503-7652	503-7600
철 도 청	상황실(대전)	481-3384	481-3200
산 림 청	상황실(대전)	481-4121	-
한국전력	안전관리실	3456-8311	3456-3203
대한적십자사		755-9301	755-9301
한국가스안전공사	상 황 실	3411-0019	-

사. 재해상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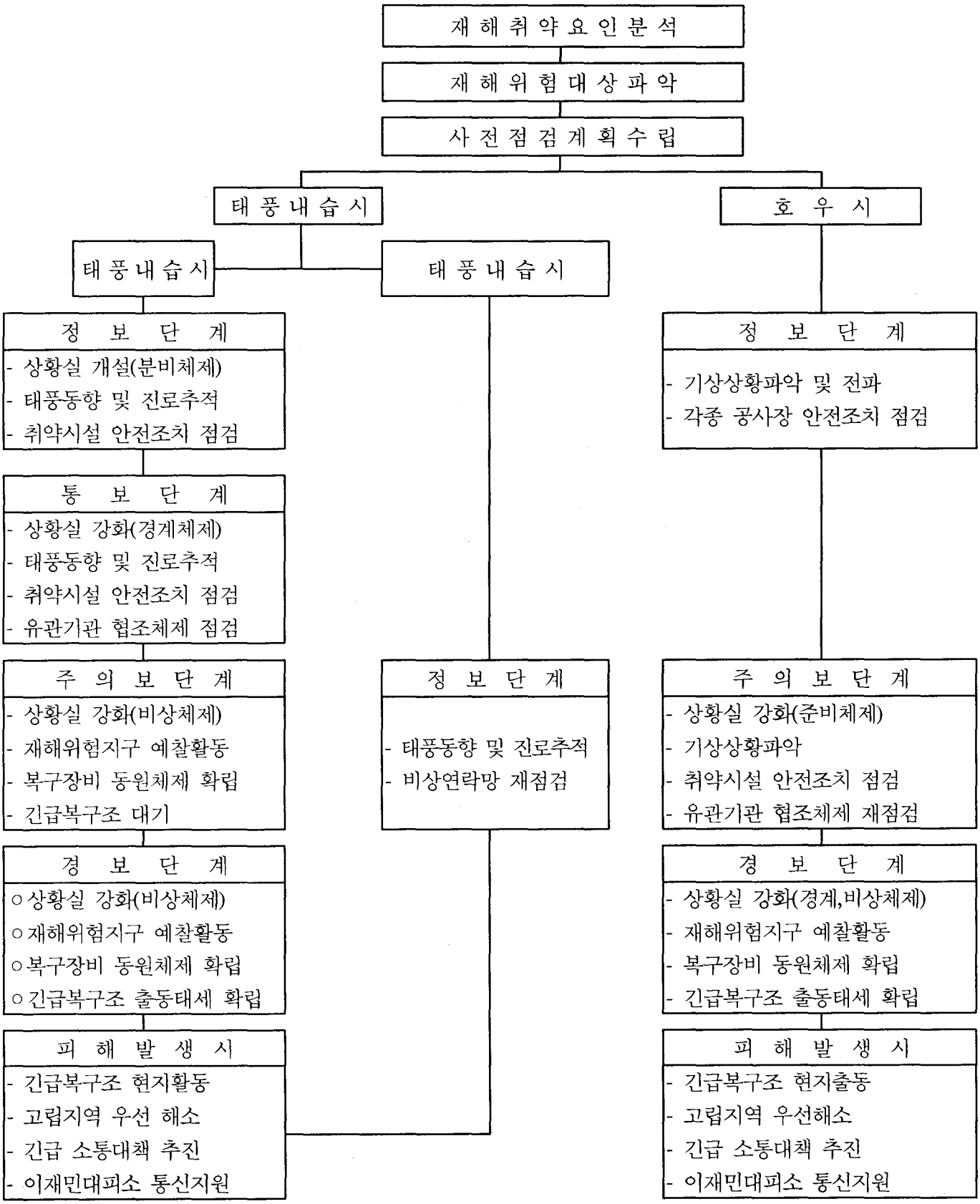
재 해 취 약 요 인 분 석
재 해 위 험 대 상 파 악
사 전 점 검 계 획 수 립
태 풍 내 습 시
호 우 시
태 풍 내 습 시
태 풍 내 습 시
정 보 단 계
- 상황실 개설(분비체제)
- 태풍동향 및 진로추적
- 취약시설 안전조치 점검
통 보 단 계
- 상황실 강화(경계체제)
- 태풍동향 및 진로추적
- 취약시설 안전조치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제 점검
주 의 보 단 계
- 상황실 강화(비상체제)
-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
- 복구장비 동원체제 확립
- 긴급복구조 대기
경 보 단 계
○상황실 강화(비상체제)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
○복구장비 동원체제 확립
○긴급복구조 출동태세 확립
피 해 발 생 시
- 긴급복구조 현지활동
- 고립지역 우선 해소
- 긴급 소통대책 추진
- 이재민대피소 통신지원
정 보 단 계
- 태풍동향 및 진로추적
- 비상연락망 재점검
정 보 단 계
- 기상상황파악 및 전파
-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점검
주 의 보 단 계
- 상황실 강화(준비체제)
- 기상상황파악
- 취약시설 안전조치 점검
- 유관기관 협조체제 재점검
경 보 단 계
- 상황실 강화(경계,비상체제)
-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
- 복구장비 동원체제 확립
- 긴급복구조 출동태세 확립
피 해 발 생 시
- 긴급복구조 현지출동
- 고립지역 우선해소
- 긴급 소통대책 추진
- 이재민대피소 통신지원

1. 상황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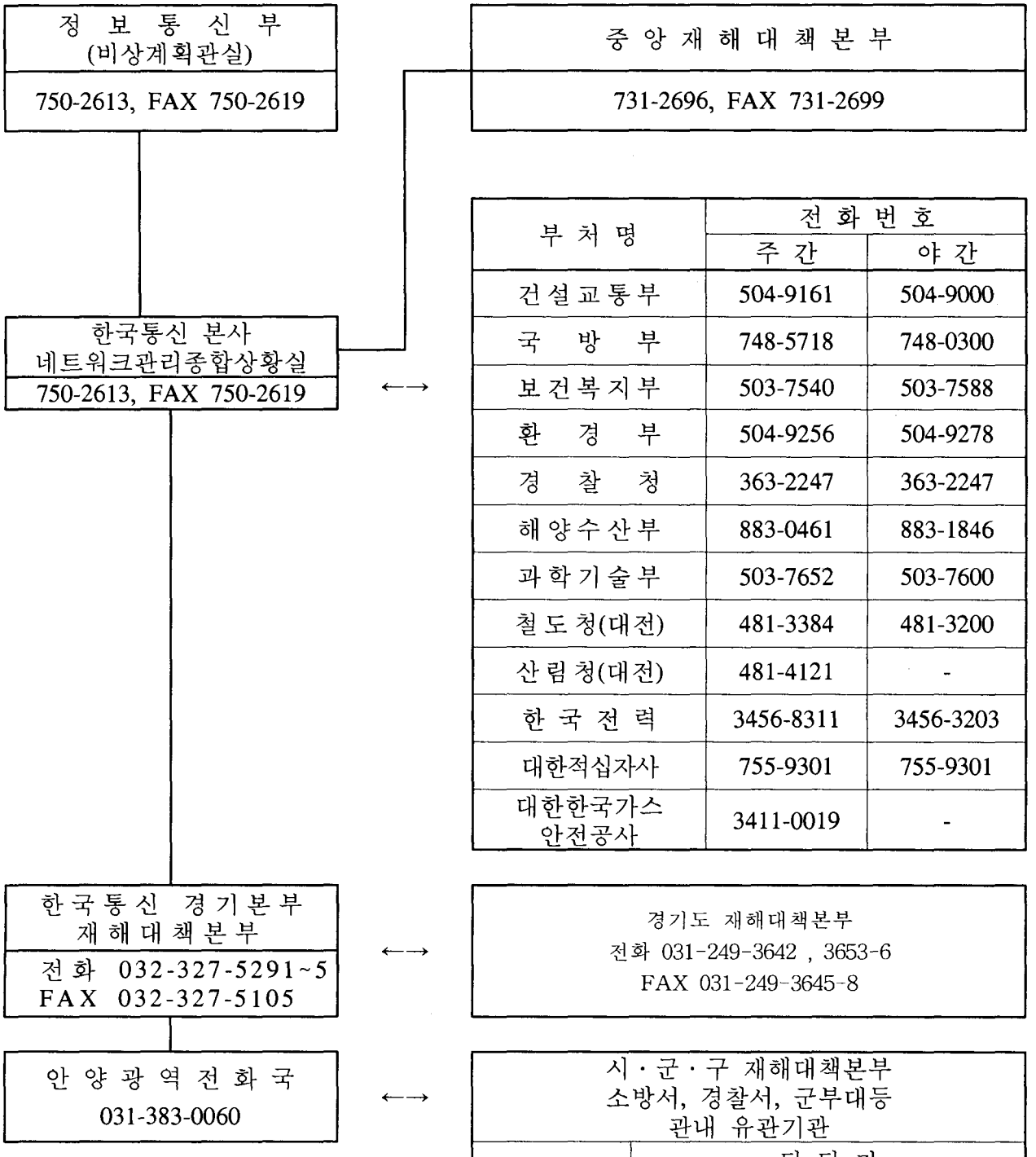

부 처 명	전 화 번 호	
	주 간	야 간
건설교통부	504-9161	504-9000
국 방 부	748-5718	748-0300
보건복지부	503-7540	503-7588
환 경 부	504-9256	504-9278
경 찰 청	363-2247	363-2247
해양수산부	883-0461	883-1846
과학기술부	503-7652	503-7600
철도청(대전)	481-3384	481-3200
산림청(대전)	481-4121	-
한 국 전 력	3456-8311	3456-3203
대한적십자사	755-9301	755-9301
대한한국가스 안전공사	3411-0019	-

부 처 명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안양시	정 중 현	389-2162
군포시	홍 인 택	390-0443
의왕시	박 종 호	428-0747

2. 재해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신속한 재해복구, 긴급구조를 위한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재해복구, 긴급구조 및 구난훈련 참여 및 지원

○ 재해관련 기관 긴급통신지원체제 강화

○ 유관기관 상황보고 및 전파계통

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1. 운 영

○ 단계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기상특보 발표에 따른 정보단계에서 1단계 운영 (선로분야)
- 기상특보 발표에 따른 경계체제 이상시 2단계 운영 (전분야)

○ 단계별 재해대비체제

단계별	상 황 별	근 무 방 법	근무요원
평시 및 준비체제	○폭풍, 호우 및 대설주의보 발표시 ○태풍경보 발표시	○근무자 지정 교대근무	1단계 (선로분야) 선로기술과
경계체제	○폭풍, 호우 및 대설경보 발표시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발표시 ○대형고장 발생으로 48시간 이상 복구지연 예상시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사회적 물의 예상시	○근무인원 증원 ○유관기관 유기적 연락체제 확립 ○유관기관 파견근무	2단계 (전분야) 기 술 부
비상체제	○홍수경보 발표시 ○태풍특보(주의보, 경보)발표시 ○지역적 막심한 피해발생시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사회적 물의 발생시	○상황실 합동근무 조편성 운영	2단계 (전부야) 기 술 부

2. 근무체제별 임무

평시 및 준비체제

○ 일일기상상태 파악
○ 이상고장 발생 유무확인
○ 이상고장 발생 접수 및 보고

경 계 체 제

○ 기상상태 수시파악
  ● 기상특보사항 및 시간별, 지역별 강우량 파악
  ● 태풍동향 및 진로추적
○ 기상상황 관련부서 및 지역 전파
○ 기상특보지역 대형공사장 이상유무 확인
○ 이상고장 발생시 복구지휘 및 상황파악
○ 보고서 작성 및 관련부서 통보
○ 통신지원시 : 회선 규모 및 개통현황 파악

비 상 체 제

○ 기상상태 수시파악 및 관련부서 전파
  ● 홍수위험지역 수위파악등
○ 기상특보 지역 대형공사장 및 취약시설 이상유무 확인
○ 이상고장 발생시 복구지휘 및 상황파악
  ● 분야별 피해내역과 복구전망 확인
  ● 물자, 장비등 지원사항 확인.조치
○ 영상보고시스템 운용
  ● 영상보고 파일작성 및 갱신
  ● 보고스크린등 관련시설 점검

3. 운영요령

○ 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 : 기상상황 및 사고의 정도에 따라 대책 본부장이 상황에 따라 시행결정

○ 상황실 근무요원은 상황단계별 임무 및 근무요령 숙지하여 유사시 대처

○ 신속한 상황실 개설을 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 정비

○ 운영요령(SDP)작성 상황실 비치

- 상황관리 요령, 보고요령등 행동요령
- 시설현황, 재해취약시설현황, 비상연락망등 각종 재해관련 현황

○ 중앙 또는 시, 도 재해대책본부 직원 파견

- 중앙 또는 시, 도 재해대책본부의 요청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파견요원 사전 지정
- 파견된 직원과의 유기적 연락체제 유지

4) 복구 및 수습대책

가.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1. 사고대비 준비단계

○ 재난의 예측·예보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재난위험시설 점검

○ 사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파악 관리, 행동요령 교육

○ 분야별 긴급복구계획 수립 및 점검

2. 초동대처 단계(긴급구조·구난 및 복구)

○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보고

○ 긴급복구반 출동 및 대책반 편성운영

○ 국가 주요회선 및 전송로 단계별 우회복구

○ 구조구난을 위한 긴급통신 지원

3. 사고복구 수습단계

○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복구 물자 조기 투입

○ 피해시설 복구 및 항구대책 수립

나. 시설복구 및 수습을 위한 조치계획

1. 긴급복구

○ 긴급복구조 구성

- 안양광역전화국 자체 복구조 및 지원조 편성
- 시설별 지원기관(경기전화건설국등)복구 지원반 편성지원
- 대책반 및 시설별 복구 지원반 편성

○ 시설별 긴급복구 우선순위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통신시설 긴급복구 우선순위

- 이상고장관리 요령의 긴급복구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

우선순위	항별	내 용	최저복구 수 준
제1순위	가 나~라 마	○국가안보(국가지도, 경호, 정보)통신 ○군사 및 치안통치 및 재해대책용 관리 및 전파관리통신 ○통신고립지역 우선해소 통신	100%
제2순위	가 나 다 라~마	○재해통신 ○공중통신, 항행안전, 기상, 소방, 전력, 수송관리, 언론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 국제연합 및 금융, 증권업체	50%
제3순위	가~나	○자원관리대상, 방위산업체 및 기타정부기관, 의료기관	50%
제4순위	가	○제1순위~제3순위 이외의 통신	

○ 지원체제 구축

- 분야별 복구지원
- 지원체계에 의한 긴급복구장비, 물자, 인원지원
- 시설별 제작업체 동원

2. 신속한 통신소통을 위한 우회절차계획 수립 : 년1회

○ 대상시설 : 국가 및 모자국간 광전송시설

○ 절체방안 : 타루트 및 타방식 예비전송로 이용 절체

○ 보완사유 발생시 수시 보완 현행관리

3. 신속한 긴급복구를 위한 훈련 추진

○ 훈련방법 : 도상 및 실제훈련

○ 훈련주기(일자변동 가능)

- 긴급복구 훈련(도상) : 반기1회

- 시행시기 : 2002년 4월, 11월일한

4. 국가 주요회선 및 긴급통신망 확보

○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긴급통신망 구성

- SNG, DAMA/SCPC 장비활용 구성

○재해용장비 및 이동교환기(SRSS)활용 구성

5. 파워텔(TRS : 주파수 공용)활용 긴급복구 지휘통신망 활용

○ 평상시 유지보수용으로 활용

○ 재난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단일복구 지휘체제로 전환 운용

○ 서비스 불가지역의 경우 (주)한국통신파워텔에 이동기지국 설치 요청

○ 복구용 자재는 보유품을 최대한 활용

6. 피해 발생지역 호폭주 대비 소통상태 감시 강화

○ 피해지역으로 걸려가는 호의 소통상태 및 교환기 부하량 감시

○ 교환기 호처리 불가상태 방지대책 강구

다. 사고대책본부

1. 구 성 (안양광역전화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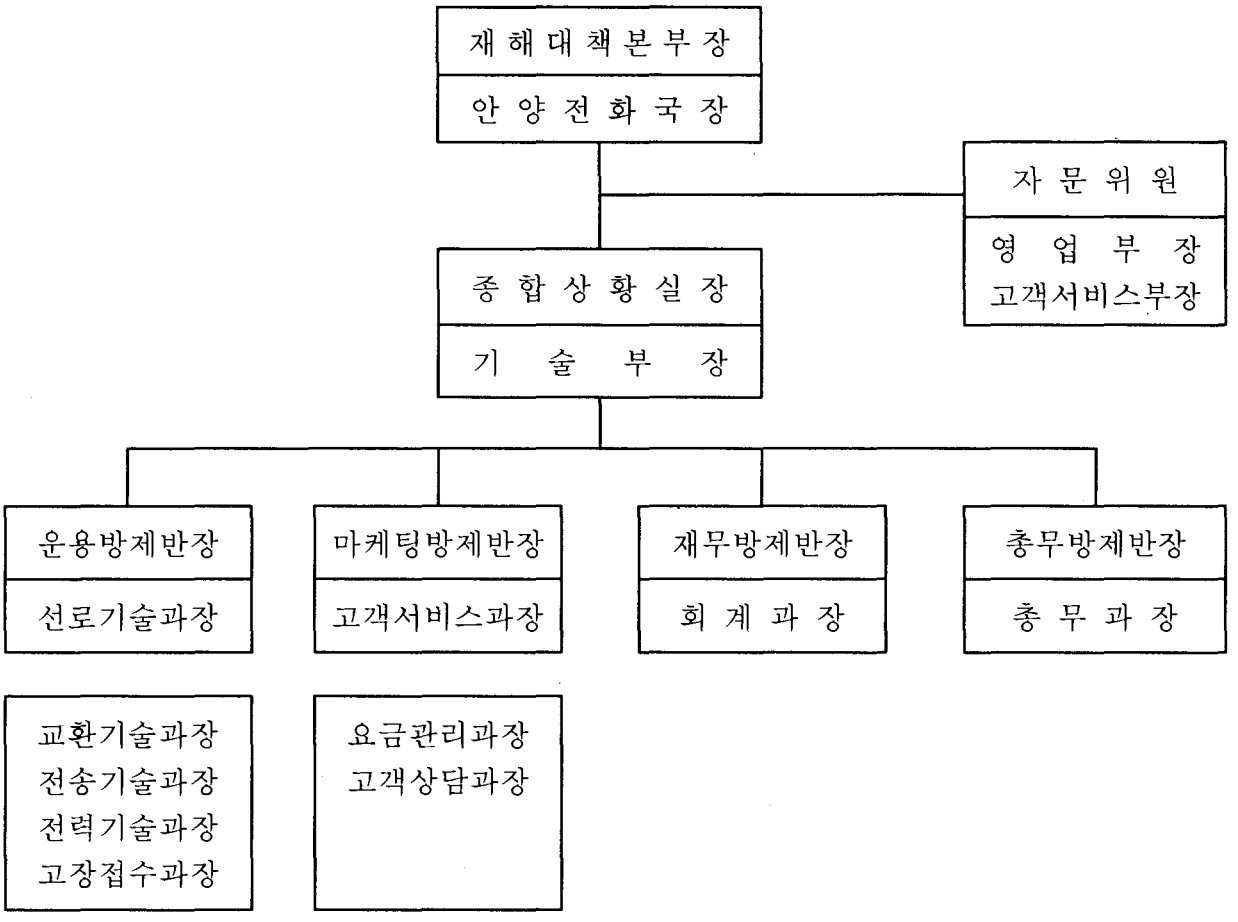

2. 임 무

담 당 별	분 장 업 무
재 해 대 책 본 부 장	○ 재해업무 총괄
종 합 상 황 실 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업무대행 ○ 대책본부 조직운영 및 상황 지휘감독
자 문 위 원	○ 재해상황별 대책수립에 따른 협조 및 자문
종 합 방 재 반 장	○ 차장을 보좌하고 차장유고시 업무대행 ○ 대책본부 조직운용 및 상황실 운영 ○ 재해피해상황 및 복구상황 종합집계 보고 ○ 재해정보수집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운 용 방 재 반 장	○ 통신시설 피해 집계 및 응급대책등 피해복구 ○ 통신불능지역 파악 및 재해지역 통신망 구성 ○ 피해복구 자재 소요량 산출 및 조치 ○ 투자용 기자재의 복구용 자재로 전용승인 ○ 각종 건설용 자재의 복구지원 ○ 통신시설 복구
마 케 팅 방 재 반 장	○ 가입전화 업무취급불능지역 파악 ○ 가입전화업무 취급중지, 고장상황등 공시 및 안내 ○ 긴급통신지원 업무처리(이동용 공중전화 포함) ○ 소관업무별 피해집계 및 복구지원 - 전용, 인터넷등 데이터통신
재 무 방 재 반 장	○ 건축물에 대한 피해 복구지원 ○ 소요예산 및 자재 지원조치
총 무 방 재 반 장	○ 인력지원, 각종 구호대책

○ 유관기관 협조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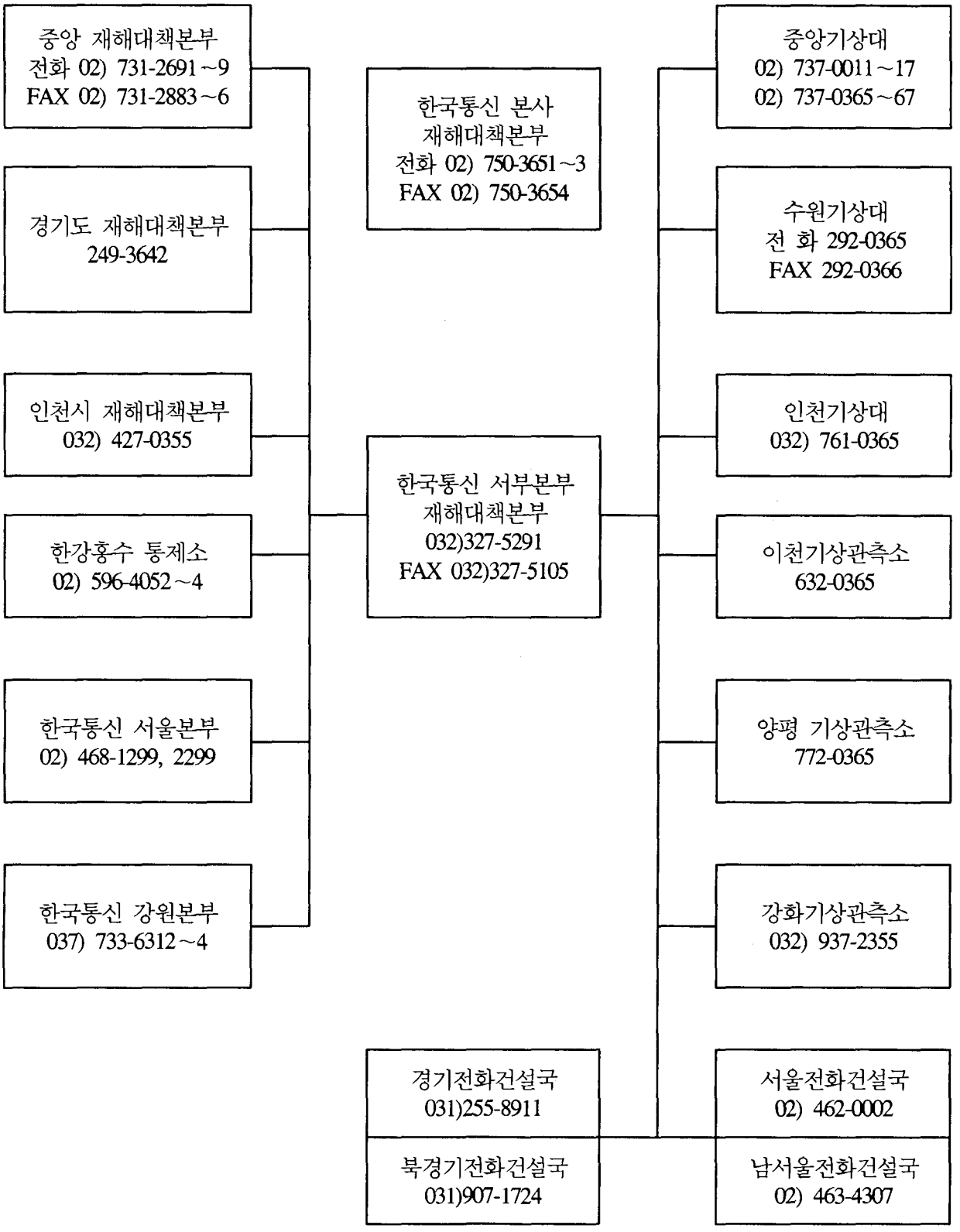
중앙 재해대책본부
전화 02) 731-2691~9
FAX 02) 731-2883~6
경기도 재해대책본부
249-3642
인천시 재해대책본부
032) 427-0355
한강홍수 통제소
02) 596-4052~4
한국통신 서울본부
02) 468-1299, 2299
한국통신 강원본부
037) 733-6312~4
한국통신 본사
재해대책본부
전화 02) 750-3651~3
FAX 02) 750-3654
한국통신 서부본부
재해대책본부
032)327-5291
FAX 032)327-5105
경기전화건설국
031)255-8911
북경기전화건설국
031)907-1724
중앙기상대
02) 737-0011~17
02) 737-0365~67
수원기상대
전 화 292-0365
FAX 292-0366
인천기상대
032) 761-0365
이천기상관측소
632-0365
양평 기상관측소
772-0365
강화기상관측소
032) 937-2355
서울전화건설국
02) 462-0002
남서울전화건설국
02) 463-4307

○ 긴급복구용 보유 현황

품 명	단위	규 격	수량	보유장소	비고
전람통합장비	대		2	물품창고	
휴대용발전기	대		5	물품창고	
양수기	대	이동용	6	물품창고	
CA 심선건조기	대	대림전자	4	물품창고	
가스탐지기	대	MSA-400(마포산업)	7	물품창고	
압착공구	대	콘넥타 25회선용	6	물품창고	
광케이블융착접속기	대	FW-310	1	광실습실	
광케이블측정기	대	0TDR	1	광실습실	
이동용콤푸레샤	대	3Hp	1	물품창고	
열수축관	개	JP200-65-500-1	10	물품창고	
열수축관	개	JP160-55-500-1	6	물품창고	
열수축관	개	JP122-38-500-1	6	물품창고	
열수축관	개	JP92-30-500-1	6	물품창고	
심선접속사	개	01-46직	200	물품창고	
심선접속사	개	25-46직	200	물품창고	
분기크립	개	JP-1형	10	물품창고	
분기크립	개	JP-2형	10	물품창고	

2002 재난관리계획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여 백

9. 韓國가스安全工事 京畿支社

1)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

가. 그동안의 재난관리 성과와 반성

○ '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이후 우리 공사에서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의 보강등 종합적가스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체계적인 가스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95년부터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관리업무를 실시하여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담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업무협의·연구 및 정보교환 등이 미흡하여 이를 보강하고 산업자원부 산하 재난관리업무 인력의 협의체제를 조속히 구성코자 함.

나.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

○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편리성추구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성 요구로 가스연료의 보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 가스소비는 매년 급속히 증가 (연평균 11.6%증가)
- 가스사고 감소 추세('99년 대비 2000년 감소율 21.4%)
- 가스소비 만톤당 사고발생은 감소추세('99년대비 2000년 30%감소)

○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 가스시설의 안전기술개발 및 안전기기 보급은 가스 수요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고의사고 등 가스안전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가스안전기술개발·보급, 가스시설의 안전성확보, 사용자의 안전의식제고 등 종합적가스안전관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석유·화학·철강 등 대규모 가스시설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 (10년경과 시설)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에도 최근의 경제난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 분야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98. 3월부터 개정·시행된 재난관리법에 재난예방업무가 더욱 강화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업확대에 따라 행정 관청은 물론 소방 및 경찰 등에서 무료점검 및 각종 안전 서비스의 요청도 폭증하고 있으나,

○우리 공사의 경우 현실 여건과 역행하여 예산 및 인원이 축소되고 있어 안전관리업무를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2) 기본방향

가. 목 적

○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 가스시설중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여 안전유지를 강화하여 대형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음

나. 방 침

○ 경영전반을 하나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가스안전관리 종합체계의 시행과 사용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가스사고예방과 가스안전관리수준의 선진화 추구

- 가스업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전환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의 지속적인 확인·평가 및 안전관리기술 지원 강화
- 노후가스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 불량가스용품, 시설미비 및 가스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기기개발·보급을 실시로 사고예방에 주력

- 가스안전기술연구개발 및 가스안전관련 정보 수집·제공기능의 확대로 국내 가스안전관리 수준 향상
- 국민의 가스안전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

3) 계획수립 세부지침

가. 법적근거

○ 재난관리법 제3조제3조제3항(국가의 책무)

지방행정기관등의 장 및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획의 성격

공사의 재난관리계획(단기계획)은 소관업무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함.

다. 계획의 주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라. 계획의 기간과 대상

○ 기 간 : 2002. 1. 1 ~ 2002. 12. 31 (1년)

○ 대 상 : 가스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난(단, 자연재해는 제외)

< 재난의 유형 >

○ 대규모 가스설비 · 장치의 폭발 또는 화재
○ 가연성가스의 폭발 · 화재
○ 유독성가스의 누출
○ 기타 가스에 의한 대형 재난사고 등

4) 재난관리대책

가. 재난예방대책의 추진

○ 재난관리체제의 확립

● 조직 및 인력 (경기지역본부)

- 기구표 (2001. 10.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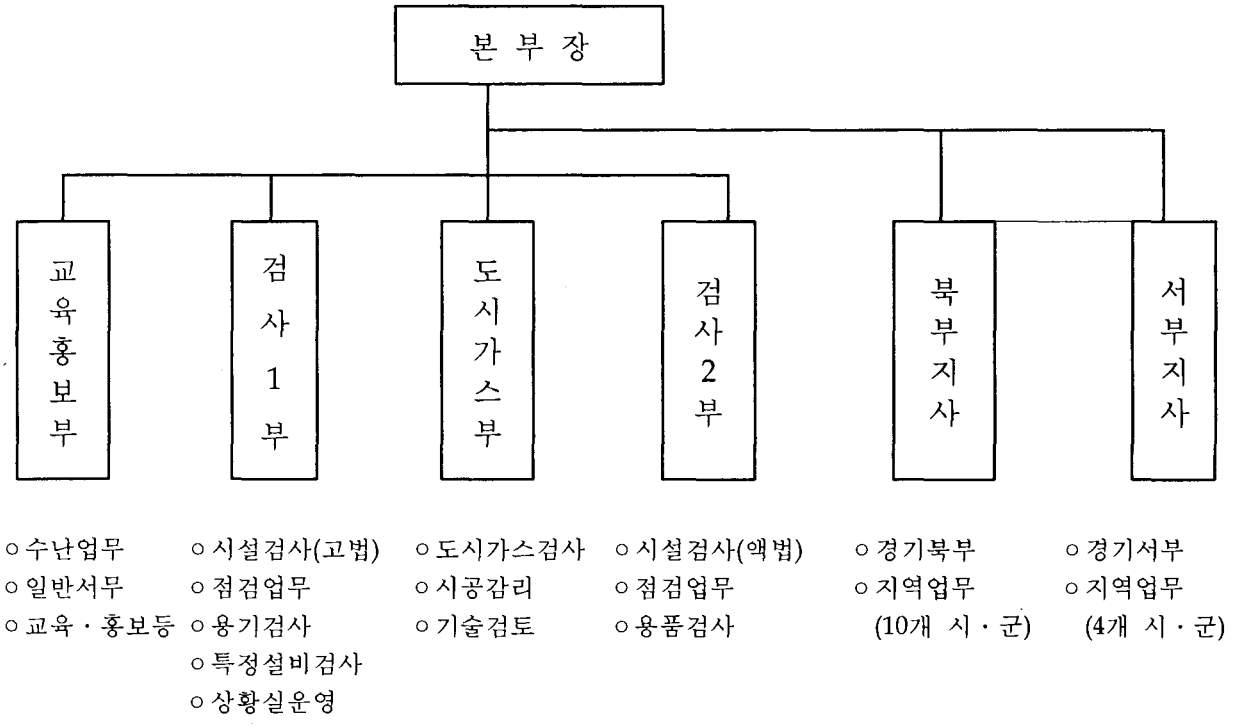

구 분	1급	2급	3급	4 급		5 급		6급	사무운전	용역	계
				행정	기술	행정	기술				
계	1	4	6	2	26	5	56	36	7	5	148
지 역 본 부	1	2	2	-	16	3	29	22	4	3	82
북 부 지 사	-	1	2	1	4	1	15	7	1	2	34
서 부 지 사	-	1	2	1	6	1	12	6	2	0	32

● 주요업무(사업내용)

- 법정고유 업무
  - 가스안전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가스사고조사 등 조사·연구사업, 가스안전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가스안전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 위탁업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중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 업무인 가스시설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시공감리, 정기검사,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수입용품검사 등
-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취약시설 및 주요시기별 특별안전점검 등

나. 분야별 재난예방 계획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구 분	점검주기	점 검 방 법
재난위험시설	분기 1회 이상	가스관계법에 의한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 9.1 ~ 11.30
○ 재난발생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시행

◯ 시설검사 및 제품검사

구 분	계 획	비 고
시 설 검 사	56,739 개	
시 공 감 리	89,232 개	
제 품 검 사	32,777,113 개	

●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에 대한 시설·기술기준의 적합여부 검사

◯ 검사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확인 및 지원

구 분	계 획	비 고
○ 시공감리업무 지도·확인	5개 도시가스사	
○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6개 기관	

◯ 취약가스시설 및 법정검사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계 획	비 고
○도시가스공급시설 집중점검	3 회	
○생활보호대상자시설의 무료점검 및 시설개선	○점검:4,500개소 ○시설개선:600개소	
○해빙기·동절기·취약시기 및 대규모행사관련특별점검	3 회	
○무료점검	15,000개소	
○요청점검	3,960개소	
○특별(합동)점검	수 시	

○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확인·평가 실시

● 대상업소 : 제조, 저장, 충전, 판매, 집단공급, 용기·용품 등 제조

○ 가스사고 조사·분석으로 가스사고예방 강화

● 가스사고 신고접수 상황실 및 사고조사반을 24시간 구성 운영

- 가스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 및 피해조사

-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지휘함으로써 2차 사고예방

● 사고조사 기능의 전문화·과학화

- 사고조사 및 분석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수강 및 세미나 참가

● 가스사고신고·접수 상황실 운영

○ 가스보일러시설 안전확보

● 가스공급자 및 보일러 사용시설 점검원에 대한 교육실시

● 가스보일러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가스 안전교육의 실시

구 분	계 획	비 고
정 기 교 육	3,112	
특 별 교 육	18,570	

● 법정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신기술 보급

○ 가스안전의 홍보

● 일반홍보

- 매스컴을 통한 홍보

  • TV, 라디오, 신문 · 잡지, 유선TV

- 대중광고물을 통한 홍보

  • 전광판, 홍보탑, 극장, 철도역, 야립광고 등

- 유인물 및 홍보용품 제작 · 배포

  • 포스터, 전단, 가스안전달력, 홍보용품 등

- 이동용 홍보용차량 등을 이용한 순회계몽교육

● 행사를 통한 홍보

- 여성단체를 통한 주부의식 조사 및 세미나개최, 가두캠페인, 중 · 고 · 대학 생 포스터 공모 및 세미나개최, 여학생 자원봉사단 등

● 가스안전 촉진대회 개최

- 가스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가스안전의식 촉진을 위한 대규모 행사로 정부 · 관련단체 및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

● 가스안전 시범지역 및 모범업소 지정 · 운영

- 가스사용자의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다. 재난위험시설의 체계적 관리

○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

●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정기점검
  • 가스관계법에 규정한 안전진단과 정기검사를 말한다.
  • 수시점검
- 가스관계법에 규정한 자체검사 및 해빙기·우기·동절기점검, 합동점검, 특별점검시 재난위험지정시설에 대하여 실시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기준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①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중 설치·가동 후 10년이 경과(최초 완성검사일 기준)된 시설

②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고압가스 일반 제조·충전시설로서 독성가스를 제조·충전하는 시설 중 설치·가동 후 10년이 경과(최초 완성검사일 기준)된 시설

③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로서 저장능력이 400톤이상인 시설중 설치·가동 후 10년이 경과(최초 완성검사일 기준)된 시설

④도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시설 중 가스를 제조(LPG+Air)하는 시설

⑤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재난발생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

- 재난위험지정시설의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시설의 안전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및 노후등에 따른 보수·정비계획등을 작성
  • 장기계획 : 불안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
  • 단기계획 : 장기계획을 1년 단위계획(연도별)으로 세분화한 것

- 장·단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시설의 보수·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설의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세부일정

  • 시설의 보수·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투자 계획

  • 시설의 보수·정비완료후 안전진단·검사 계획

○ 가스관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 실시

●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점 검 종 류		점 검 방 법
정기점검	○고법 제12조제1항· 액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자체검사 ○고법 제16조의2·액법 제20조· 도법 제17조에 의한 정기검사 ○고법 제16조의3에 의한 안전진단 ○당해 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실시한 자체점검	고법 제12조제4항·제16조제4항· 제16조의3제2항, 액법 제11조제4항·제20조제2항, 도법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간단하게 육안검사 실시
수시점검	○고법 제16조의2·액법 제20조· 도법 제17조에 의한 수시검사 ○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한 특별점검 ○사장이 특별히 지시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등급분류 : <별첨1>참조

라. 재난대비대책의 추진

○ 재난상황관리체제의 구축

● 상황근무체제 구축

- 본사 및 지사·출장소 상황실 운영

구 분		근무인원		비 고
		주 간	야간·공휴일	
본 사		2인이상	4인이상	24시간 운영 - 특별강조기간(추석, 연휴등)에는 1~2명 인원보강
경기지역	지역본부	1인	2인	
	경기북부	1인	1인	
	경기서부	1인	1인	
	계	3인	4인	
기타 지역본부·지사		1인이상	1인이상	

- 상황보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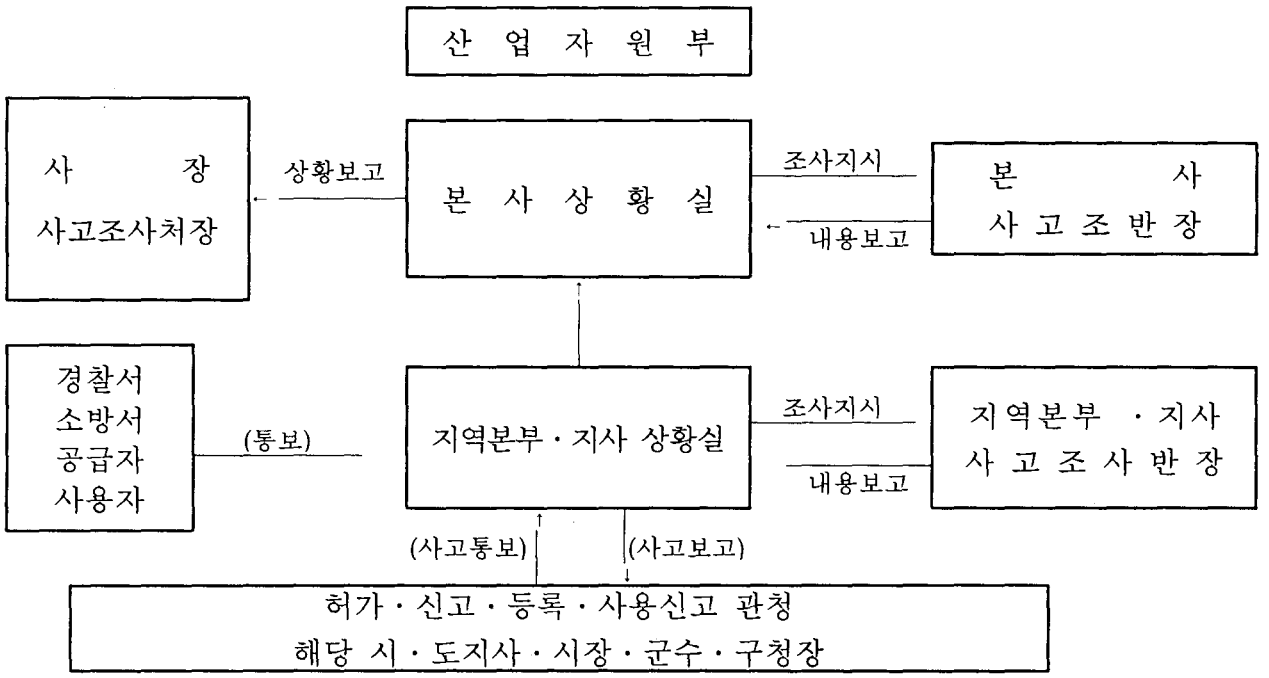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정보전달을 위한 Hot-Line 설치운영

- 경기지역본부 상황실과 경기도소방본부 및 소방서간 소방행정 전용전화(Hot-Line) 설치운영
- 지역본부·지사와 각 도시가스사간 Hot-Line 설치운영

마. 재난의 수습 · 복구 대책

○ 『사고조사반』 구성 · 운영

● 『사고조사반』 운영

- 가스시설에서 발생된 재난에 대한 신속·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28개의 『사고조사반』을 구성, 24시간 운영으로 86명이 상시 대기 함.

• 경기지역 사고조사반 : 10명(지역본부 4명, 북부 3명, 서부 3명)

※ 참고사항

• 전문 (본사) 사고조사반 : 일반가스 및 LPG분야 × 4명 = 4명

도시가스분야 × 4명 = 4명

• 지역별 사고조사반 : $\frac{\text{지역본부 · 지사 } 26\text{개}}{28\text{개}} \times \frac{3\text{명}}{86\text{명}} = 78\text{명}$

●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대형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의 마련은 물론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 학계, 업계, 유관기관 및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

○ 재난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확립

●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 인원

종 류	내 용	근무인원	비고
비상근무 제 1 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소속직원의 1/3이상	
비상근무 제 2 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 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직원의 1/5이상	
비상근무 제 3 호	○ 가스사고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영향을 끼쳐 상황실근무자로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직원의 1/6이상	
비상근무 제 4 호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1/10이상	

○ 유관기관협조체제 · 긴급구조대책 및 수습 · 복구 대책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계획에 의한다.

<별첨 1>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등급분류

등급	시 설 상 태 구 분	평 가 기 준
A급	○각 시설별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한 최상의 상태인 시설	○각 시설별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B급	○설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단한 보수, 정비가 요망되는 시설 ○준공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시설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설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단한 보수,정비가 요망되는 시설 ○최초완성검사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하고, 정기검사에 부적합된 시설
C급	○시설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방치하면 D급으로 진전될 수 있는 시설 - 조속한 보강요망시설 ○준공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태가 일부 불량한 시설 -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시설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 - 특별한 안전관리 요망시설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며, 부적합사항이 일부 보조시설(부재)의 손상으로 즉시 교체 또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서 부적합한 사항을 방치하면 D급으로 진전될 수 있는 시설 ○최초완성검사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하고, 정기검사에 부적합된 시설 ○최초완성검사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로서 시설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1.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시설로서 독성가스시설
D급	○해당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설비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 - 긴급한 개, 보수 및 시설대체 요망시설	○해당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며 부적합 사항이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구조적 결함)로 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시설
E급	○D급 대상시설중 방치하면 중대형사고 또는 안전에 큰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사용중지(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D급 대상시설중 방치하면 중대형사고 또는 안전에 큰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비 고

○등급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등급 중 하위 등급으로 판정한다.

○평가기준란 중 '시설검사기준'이라 함은 공사 사규 31200(검사업무규정) 제6조를 적용한다.

<별첨2>

2002재난대비 동원인력 및 장비현황

○ 기능인력현황

위 치 (주 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4-2	
기관장 (대표자)	직책 : 본부장 성명 : 박 영권	
☎031)주·야 : 254-0019		FAX : 031)256-4361

○ 재난 및 긴급구조 지원부서

담당부서 (관련부서)	담 당 자 (직책·성명)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업무
		평일	야간및공휴일	
검사1부	(대리,조완수)	258-5010~4	254-0019	가스사고, 재난관리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지원 및 재난대비 관련업무 담당부서 현황을 기재

○ 현장지휘자 및 연락관 지정

구분	관련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현장지휘자	검사2부	부장	신 규철	254-0651
연락관	검사2부	과장	곽 충훈	254-0651

※재난 발생시 동원(지원) 가능한 현장지휘자 및 파견할 연락관을 지정하여 기재

○기능인력현황

구분	계	일 반	기 계	금 속	가 스	화 공	기 타
근무인원	83	26	14	1	27	10	4
지원(동원) 가능인원	18	0	4	1	9	4	0

○ 구조·구난장비 현황

계	공기호흡기 마스크	양압식 공기 호흡기	가스 누설 검지기	독성 가스 검지기	염소용기 조치장비	산소인공 소생기	가스 누설 응급캡슐	국소 배기 장치	독성 가스 응급캡슐	염소가스 중화 살포기
11	1	2	1	1	1	1	1	1	1	1

○ 차량 및 구조·구난등 중장비 현황

계	사고조사차량	도시가스 FID 차량
2	1	1

○ 통신망

구 분	유 선	
	상 황 실	담 당 부 서
주 간	031-254-0019	검사 1부
야 간	031-254-0019	상 황 실

여 백

Ⅶ. 財政投資 計劃

1. 基本方針

2. '2002年度 事業 財源

여 백

Ⅶ. 財政投資計劃

1. 基本方針

○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능력제고

○ 재난상황의 유지관리 및 재난발생시 대응태세 확립

○ 지역주민 안전의식 함양

2. '2002年度 事業財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799,825	
재 난 관 리 기 금	776,504	2002.1.31확보예상액
경 상 비	23,321	

여 백

Ⅷ. 災難管理業務 評價

1. 目 的
2. 推 進 方 針
3. 主要評價 項目
4. 推 進 計 劃

여 백

Ⅷ. 2001.地域災難管理 業務 評價

1. 目 的

○ 지역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발전시키고 우수사례를 확산·파급

○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여 재난관리체제를 정착·발전

2. 推進方針

○ 재난관련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종합측정

○ 평가는 자체평가(재평가)와 상급기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과 현지평가 방법을 병행

○ 상급기관의 현지평가는 자체실정에 의거 점검항목별 가중치에 의거 배점을 부여

○ 우수사례는 확산파급과 동시 유공자 포상 조치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차기계획(시책)에 반영

3. 主要 評價 項目

가) 재난관리 기본시책

○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추진)실태

○ 지역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운영실적

○ 지역사고대책본부 운영실적

○ 중앙, 상급기관의 재난관련 지시(당부)사항 추진실태

○ 자체(상급기관) 평가결과 개선·발전실적

나) 안전점검·예방 추진

○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 월별 중점점검대상시설물의 점검계획 수립시행

○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 재난관리 등에 관한 유관기관 정보·협조요청사항 처리상황

○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및 시설물 안전점검장비 확보

○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

○ 안전문화정착 시책 추진

다) 재난상황관리 및 사태 수습

○ 재난대비 종합관리체제 확립

○ 재난대비 인력·자재·장비·의료 등의 파악 및 동원계획 수립

○ 재난정보 관리

○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

라) 긴급구조

○ 긴급구조능력의 보강

○ 긴급구조 교육·훈련

○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긴급구조 실적

4. 推進計劃

1) 평가시기 : 년2회(상·하반기)

2) 평가대상 기관 : 시청, 구청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

Ⅸ. 行 政 事 項

여 백

Ⅸ. 行政事項

1. 재난관리책임기관·단체의 장은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2. 관련부서에서는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함.

3. 관련부서에서는 부분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물자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대비하여야함.

4. 사고발생시 본 계획이 직접 적용되어야 하므로 문제점과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다음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5. 사고발생시 서식에 의거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함.

여 백

2002년도 재난대비 동원계획

여 백

목 차

1. 관련근거 346

2. 방 침 347

3. 세부동원계획 347

4. 재난관련 부서별 임무 및 책임 353

5. 재난수습 단계별 조치내용 361

6. 재난대비 동원자원 현황 363

Ⅰ. 인력자원 현황 365

Ⅱ. 장비 현황 369

Ⅲ. 수용시설 현황 372

Ⅳ. 의료시설 현황 372

Ⅴ. 물자 현황 373

7. 주요 동원자원 현황 375

Ⅰ. 인명구조대 377

Ⅱ. 헬기 현황 378

Ⅲ. 차량구난 견인업소 현황 378

Ⅳ. 중장비 현황 379

Ⅴ. 의료기관별 세부현황 382

Ⅵ. 수용시설별 세부현황 385

8.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동원대비 체제 387

▣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389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390

▣ (주)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 392

▣ 안양소방서 397

9.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 403

10. 주요 재난사고 수습사례 427

11. 재난유형별 대응 가상시나리오 447

12. 장비지원 동의서 및 단가계약 457

13. 부 록 471

가. 관내 각종 사고발생현황 및 수습결과 473

나. 재난유형별 상황전파 체계도 479

다.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480

라. 유관기관 현황 481

▣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초동대처와 효과적인 각종 수습·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물자 등의 종류를 사전 파악하여 정리한 것으로

▣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는**

이를 참고·숙지하고 사고발생시부터 수습완료시까지 재난유형에 따라 적합한 자원이 신속히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접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응원체제를 구축하고

▣ **긴급구호 및 응급구조물품에 대하여는**

재난발생 즉시 투입·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시 비축관리하고, 비축 보관관리가 곤란한 물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등 유사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특히, 유동성·가변성이 많은 자원에 대하여**

수시로 소재를 파악하여 변동사항을 추적·관리하고 임무를 부여하는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투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동원계획

○ 각종 재난발생시 유형별(가스, 붕괴, 폭발, 화재등)로 수습·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물자의 종류와 보유량을 사전 파악하여

○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수립·관리함으로서 초동대처와 효과적인 수습·복구에 대처코자함.

1. 관련근거(재난관리법)

○ 제2조(정의)

긴급구조·구난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 소방서, 경찰서, 탐색구조부대, 응급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등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와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제5조(재정상의 조치)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조치 강구

○ 제22조(긴급구조·구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구난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장비의 출동등 지원 요청

※ 긴급구조·구난기관은 상시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함.

○ 제25조(긴급구조·구난능력의 보강)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 정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2. 방 침

○ 재난사고 발생시 동원 가능한 인력, 장비, 시설, 물자의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 자원의 유동성 및 가변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개선하고 지역별, 광역별로 병행 운영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지원·협조체제 확립

○ 사상자, 이재민 등을 위한 의료시설 및 긴급 수용대피시설, 응급구호물자 확보 대책 강구

○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민간보유장비의 지원유도 및 활용

○ 재난유형별 대응관리카드 작성 관리로 위기관리능력 제고

3. 세부 동원계획

1 동원자원 지원체제 구축

○ 동원자원 파악

- 인　　력 : 공무원, 경찰, 군인, 사회봉사단체, 기능인력, 의료인력등
- 장　　비 : 구조장비, 소방장비, 중장비, 산불진화장비, 수질오염 방제장비등
- 시　　설 : 수송 및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의료시설, 장례 및 화장시설
- 물자(물품) : 수용구호물품, 응급구급, 구조물품등

○ 재난유형 및 규모별 동원자원 가능량 판단

○ 재난유형에 따라 적합한 물자·인력·장비·시설 등의 신속한 동원 및 지원체계 확립

- 필수인력의 소재파악 및 임무부여 통보, 기타 인력을 수시 소재파악 관리
- 개인소유 중장비 등은 소유주와 사전 협의하여 항시 동원 및 현장투입 가능토록 동원체계 구축
- 수용구호물품 및 응급 구조물품의 상시 비축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통하여 유사시 현장투입 가능토록 사전 대비
- 긴급수용 및 대피시설, 의료시설 등의 수용능력 및 진료범위 등을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

○ 재난사고 발생지역에서 동원 불가시 인접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응원지원체제 구축

2 재난규모 및 단계별 동원

○ 재난규모의 구분

- 1급 재난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야 할 정도의 대형재난
  - 중앙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 2급 재난
  -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수습·복구해야 할 재난
  - 2개이상 시·군에 걸친 재난 및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
- 3급 재난
  - 중형규모의 재난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재난

○ 재난발생시 자원동원 우선순위

- 제1단계 : 시·구 및 군부대, 유관기관 보유인력·장비·시설·물자동원
- 제2단계 : 민간보유인력·장비·시설·물자동원
- 제3단계 : 중앙정부, 상급기관에 지원요청 및 인접자치단체 보유인력·장비·시설·물자 동원

초동단계 동원체제

- 인　　력 : 공무원, 소방서, 경찰 및 사회봉사단체(인명구조,자원봉사대등)
- 장　　비 : 소방·구조장비 및 행정기관 장비
- 수용시설 : 인근학교, 관공서, 실내체육관 등 공공기관시설
- 의료시설 : 응급의료 지정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의원
- 물자·물품 : 시·구자체 비축물자

복구 · 수습단계 동원체제

【사고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가 필요한 대형재난 발생시】

- 인 력 : 인접 시 공무원 및 기술인력, 군부대 인력
- 장 비 : 인접 시 군부대, 기업체 및 개인보유 중장비
- 물 자 : 인접 시 비축물자 및 단가계약 물자

3 재난발생시 동원 및 수습체계

○ 자원동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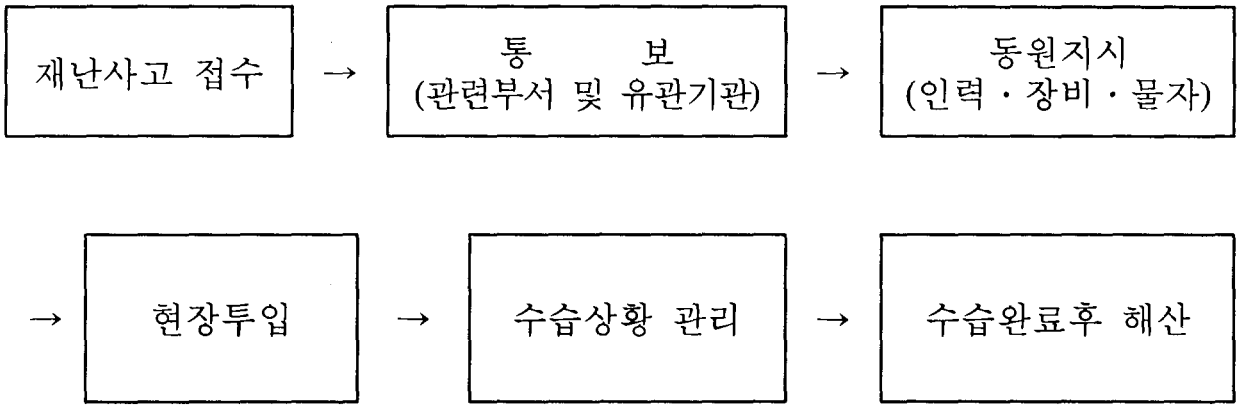

여 백

재난관련 부서별 임무 및 책임

여 백

4. 재난관련 부서별 임무 및 책임

하수과 (동원 및 경보)

○ 사고대책본부 운영관리 총괄

○ 현지대책본부 지도감독

○ 재난에 관한 정보상황 전파 및 경보발령

○ 사고발생, 진행, 결과등 각종 상황관리

○ 사고대책본부 방문인사에 대한 보고사항

환경위생과 (수질오염)

○ 사고대책실무반 비상소집 : 현장조사반, 측정분석반 현지출동

○ 관계기관 상황전파 : 인접 시·군 직하류 취·정수장등

○ 사고현장 긴급방제 실시

○ 사고발생시 상황파악 및 증거자료 수집(사진촬영, 시료채취등)

○ 유출 오염물질의 종류, 량 및 오염확산 정도조사

○ 인근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오·폐수시설, 유독물질 관련업소, 폐기물 관련 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하천·호수등 공공수역 유입 차단

○ 필요시 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유입 차단

○ 상수원 관련기관(한국수자원공사, 취·정수장등)에 취수중단, 정수방법 변경등 비상급수대책 강구 요청

보건소 (보건 및 의료서비스)

○ 앰블런스와 무선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원 배치

○ 응급치료팀을 사고현장에 급파

○ 사상자를 선별하고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안치 및 입원치료

○ 사망자가 한 병원으로 몰리지 않도록 적절한 앰블런스 투입

○ 종합병원 일반병·의원등과 의료 공조체제 구축

○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의료시설 및 사상자대책 보고

○ 방역활동 (현장소독등)

사회복지과 (이재민대책)

○ 이재민 구호물품 배정 및 사망자 장례조치

○ 이재민 기부금·품 접수

지역경제과 (전기·가스)

【전기사고 발생시】

○ 중형사고 규모이상 발생시 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중형사고 : 발전소 또는 변전소 1개소이상 고장(소손등)으로 지방행정기관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

○ 사고의 전파 및 수습·복구

○ 사고상황에 따라 주민 전력공급방안 및 절전등 수습대책 전파

【가스사고 발생시】

○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 (주)삼천리도시가스·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스관로 긴급차단 및 수습복구

○ 복구대책 및 가스공급방안 마련

교통행정과 (주차 및 교통)

○ 경찰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주변도로 및 우회도로 교통통제

○ 도로 및 교량붕괴로 인한 사고발생시 복구장비, 자재, 인원의 긴급수송 및 통행제한 조치

○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 제거용 견인차량등 동원

○ 철도사고시는 철도청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수습복구

도 로 과 (도로등 관리)

○ 사고현장지휘본부에 연락원 배치

○ 주요지점에 교통통제소 설치운영 및 우회도로 지정

○ 복구대책 및 교통소통대책 마련

건 축 과 (건물붕괴)

○ 사고현장지휘본부에 연락원 배치

○ 사고발생시 피해지점 및 피해정도에 따른 수습·복구대책수립

○ 경찰관서에 사고현장 주변 교통통제 요청

○ 소방관서, 전기·가스공사, 통신공사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하여 긴급복구 조치

○ 군부대, 민간업체 등에 복구장비 지원요청

○ 인근주택의 붕괴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및 정밀안전진단 조치

소 방 서

○ 소방상황반이 자원관리 및 상황전파

○ 피해상황, 자원요청, 분배상황 기록관리

○ 사고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간 통신체계 유지

○ 화재진압과 구조작업 지휘 및 통제

○ 인명긴급구조·구난실시 및 지휘통제

○ 위험물질의 탐색 및 제거

○ 화재발생원인 조사분석

경 찰 서

○ 소방지휘본부에 연락원 배치

○ 현장통제관과 경찰인력 개인간 통신체계 구축

○ 긴급구조·구난본부와 사고현장 부근의 치안유지

○ 사고현장 봉쇄 및 위협요인 제거

○ 주민소개 및 주민·교통통제와 우회도로 지정

○ 안전유지를 위한 순찰강화

○ 각종 재난사고 발생원인 조사

통신공사 (전화 · 통신)

○ 사고현장 지휘본부에 연락원 배치

○ 긴급복구 지휘용 통신망 구성

○ 이재민 피해가족의 긴급 통신지원

- 임시전화 가설
- 이동용 공중전화 설치

가스안전공사 및 전력(전기안전)공사

○ 사고현장 지휘본부에 연락원 배치

○ 사고대책본부의 근무지원 요구시 직원파견 조치

○ 긴급복구 · 수습을 위한 인력 및 장비 급파

○ 재난현장의 비상전원공급 및 안전점검 실시

○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가스 및 전기사고 원인조사

여 백

수습단계별 조치내용

여 백

5. 재난수습 단계별 조치내용

【조치권자】

○ 대규모 재난 2개이상 시·군에 걸쳐 발생시 ——— 도지사

○ 중·소규모 재난 ——— 시 장

▣ 출동명령 및 요청

○ 민방위대원의 동원 또는 준비명령 하달

○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군부대장등에게 출동등 필요한 조치 요청

▣ 사고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사고대책본부와 현장지휘소 통신망 구축 → 무전기, 무선핸등

○ 주·야 근무체계 유지

※ 동원될 사무기기 및 용품을 별도지정 또는 지정관리

▣ 대피명령 및 경계구역 설정

○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당해지역 주민이나 현장체류자에게 대피명령

○ 경계구역 설정, 응급대책 종사자외 출입금지(제한) 및 퇴거명령등 조치

※ 경계구역 설정사항, 금지(제한)행위 등을 보기 쉬운곳에 공고

▣ 응원요청

○ 필요시 인접 시장·군수에게 관계공무원 파견 요청

※ 응원을 받은 시장·군수는 소요경비 부담

○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건의 여부검토

▣ **응급부담**

○ 인근거주자, 당해현장에 있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토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나 가옥등 소유물 일시 사용

※ 응급조치에 의한 손실분에 대하여 협의보상

▣ **이재민 수용**

○ 임시수용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취사, 통신시설 완비

○ 응급구호를 위한 비상물품 긴급활용 및 급식조치

※ 부녀회, 사회봉사단체요원 구호활동 적극지원 조치

○ 집단수용시설 주변 방역수도 및 구급약품 비치

○ 수용장소에 관계공무원 배치, 이재민 대표자와 협조체제 유지

▣ **사상자 대책**

○ 사상자(사망, 중·경상)에 대한 병원별 분산수용

○ 병원별 현장관리공무원 배치로 피해자 가족 연계 강화

※ 수용자 신원파악, 대책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 화장장 및 장지알선, 장례식 편의제공등
- 피해자 대표단 구성 및 보상협의 주선

▣ **현장주변등 질서유지**

○ 사고현장과 사상자 후송병원간의 원활한 교통로 확보

○ 사고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조정·교통통제 등의 조치

▣ **피해조사**

○ 사고대책본부 및 관계기관등으로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

○ 사고대책본부의 피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복구 수행조치

▣ **현장복구**

○ 화재·폭발등 2차피해 유발요인 철저히 진단·제거

○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교통·통신·상하수도·전기·가스시설 등을 우선 복구

○ 사고대책본부의 피해조사 종료후 항구 복구공사 추진계획·집행

재난대비 동원자원 현황

여 백

Ⅰ. 인력자원 현황

가. 재난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실무부서장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비상연락망	
	직위	성명				주간	야간
안양시청	하수과장	배찬주	이 훈	389-2162,7	389-2854	389-2162,7	389-2225
안양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문춘경	김영종	388-1523	468-4902	388-1670	388-1670
과천 경찰서	경비과장	유재철	박성래	02-504-7122	02-504-0118	02-504-0112	02-504-0112
안양 교육청	재무과장	권오철	백성렬	380-7082	388-0187	380-7082	380-7082
안양 소방서	방호과장	이재화	최일순	384-0119	383-0046	387-0045	387-0045
안양 전화국	총무과장	유병우	윤중근	385-2299	382-1699	385-2299	382-0007 386-0007
한국전력 안양지점	배전운영과장	노성배	장정일	450-2286	450-2214	450-2286	450-2203
(주)삼천리 도시가스	안전관리팀	오필환	최두종	454-3002	454-1880	454-3002	454-3002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검사1부장	장기문	조완수	258-5010	256-4361	258-5010	258-5010
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관리부장	전강조	윤기헌	474-1821	473-9351	474-1821	474-1821
육군1580부대	지원과장	이해욱	전두희	468-5181		468-5181	468-5181
만안구청	건설과장	김명철	김창선	463-4538	463-4541	463-4538	463-4538
동안구청	건설과장	김금동	신영수	389-4538	389-4430	389-4538	389-4538

나. 동원 인력자원

○ 일반사항

(단위 : 명)

기관(부서)명		합계	기술(능) 인 력	구조(구급) 대 원	의 료 인			전화번호
					의 사	간호사	기 타	
계		8,969	6,979	37	614	779	560	
공무원 유관 기관	소 계	404	333	37	5	26	3	
	안양시청 외	352	318	0	5	26	3	389-2162
	안양소방서	37		9(28)	0	0		387-0045
	안양경찰서외	15	15		0	0	0	388-1670
민 간	소 계	8,565	6,646		609	753	557	
	민 방 위	1,975	1,975					389-2161
	예 비 군	876	876					389-2161
	기타(병원등)	5,714	3,795		609	753	557	현황 별지작성

○ 기능인력

기관(부서)명		계	기 술(능) 인 력						전화번호
			전기	방사능	정비	가스	화공	통신	기타	
계		112	438	2	13	130	71	213	20	
공무원 유관 기관	소 계	94	66	2	0	76		4	20	
	안양시청 (재난관련부서)	34	19	2	0		6	1	14	389-2162
	한전안양지점	7	7	0	0	0	0	0	0	450-2268
	가스안전공사 안양지점	37	0	0	0	27	10	0	0	254-0019
	삼천리도시가스 경기중부지사	49				49				454-3002
	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40	40	0	0	0	0	0	0	474-1821
	안양전화국	3	0	0	0	0	0	3		442-0060
	육군1580부대	77			5				72	468-5181
민 간	소 계	18	372	0	8	54	55	209	0	
	민 방 위	8	178	0	6	23	27	90	0	389-2161
	예 비 군	3	72	0	1	13	16	52	0	
	기 타	7	122	0	1	18	12	67	0	

○ 민간봉사단체 (단위 : 명)

단 체 명	동원가능 인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계	380			
새 마 을 지 도 자 회	150	동안구 관양2동 1307-37	321-3020	
새 마 을 부 녀 회	150	동안구 관양2동 1307-37	321-3020	
해 병 전 우 회	30	동안구 관양2동 1307-37	321-3020	
모 범 운 전 자 회	50	만안구 안양3동 1195-85	443-6273	

○ 특수단체

단 체 명	동원가능 인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계	137			
의 용 소 방 대	50	동안구 부림동 안양소방서	387-0045	
재 난 통 신 지 원 단	87	동안구 평촌동 72-8	425-8844~5	

○ 민간봉사단체 (단위 : 명)

단 체 명	동원가능 인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계	380			
새마을지도자회	150	동안구 관양2동 1307-37	321-3020	
새마을부녀회	150	동안구 관양2동 1307-37	321-3020	
해병전우회	30	동안구 관양2동 1307-37	321-3020	
모범운전자회	50	만안구 안양3동 1195-85	443-6273	

○ 특수단체

단 체 명	동원가능 인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계	137			
의용소방대	50	동안구 부림동 안양소방서	387-0045	
재난통신지원단	87	동안구 평촌동 72-8	425-8844~5	

Ⅱ. 장비현황

가. 구조 · 구난장비

○ 구조 · 구난 차량

(단위 : 대, 세트)

기관(부서)명	구조구난차량												전화번호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펌프차	물탱크차	조명차	배연차	구조차	굴삭기	구급차	진단차	순찰차	
계	2	1	2	11	6	1	1	2	1	9	1	2	
안양소방서	2	1	2	11	6	1	1	2	1	7	1	1	387-0045
안양시청										2		1	

○ 구조장비

(단위 : 개)

기관(부서)명	구조장비									전화번호
	매몰자탐지기	구조용로프	구명보트	구명환 및 구명동의	산소호흡기	잠수세트	에어백	유압자키	기타	
계	1	160	8	262	18	3	3	4	9	
안양시청(환경사업소)		1		36	4					380-9694
만안구청		42	5	190				1		463-4538
동안구청		7	1	32	3					389-4538
안양소방서	1	10	2	4	7	3	3	3		387-0045
안양경찰서		100								388-1670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2				9	254-0019

나. 중기 및 운반장비

○ 중장비 (단위 : 대)

기관(부)서명	중기										전화번호
	소 계	기중기	굴삭기	불도져	그레이더	로울러	덤프트럭	로우더	지게차	기 타	
계	87	10	39	4	1		22	10	1		
만 안 구 청	1						1				467-4538
동 안 구 청	1						1				389-4538
육군1580부대	30		3	3	1		20	2	1		468-5181
민 간 장 비	55	10	36	1				8			별지작성

○ 운반장비 (단위 : 대)

기관(부서)명	운 반 장 비							전화번호
	소계	견인차	청소차	버스	트레일러	화물차	기타	
계	209	48	110	3	1	47		
안 양 시 청	22	-	16 (청소사업소)	2(회계과)	-	4(회계과)	-	389-2162
만 안 구 청	19	-	-	-	-	19	-	467-4538
동 안 구 청	24	-	-	-	-	24	-	389-4538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1	11	-	-	-	-	-	380-9295
민 간 장 비	129	36	93	-	-	-	-	
육군1580부대	4	1	1	1	1	-	-	468-5181

○ 기타장비 (단위 : 대, 세트)

기관(부서)명	계	용접기	에어콤프레샤	양수기	발전차(기)	천공기	착암기	자동톱	절단기	전화번호
계	297	4	9	274	3		1	1	5	
안양시청 (주)안양시 환경사업소	4	3	1							380-9694
만 안 구 청	171			171						467-4538
동 안 구 청	95			95						389-4538
안 양 소 방 서	23		7	7	2		1	1	5	387-0045
한국전력안양지점	1				1					450-2286
육군1580부대	3	1	1	1						468-5181

다. 가스 · 전기 · 화학 · 통신 복구장비

기관(부서)명	계	가스 탐지기	전기복구 장비	통신복구 장비	화학 탐지기	제독차	무전기	기타	전화번호
계	163	14	33				134		
안양시청	3	1					21		389-2162
안양소방서	119	7					112		387-0045
한국전력 안양지점	2		2						450-2286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6	6							254-0019
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32		31					1	374-1821
재난통신 지원단	1						1		

라. 산불 진화장비

○ 산불진화장비

기관(부서)명	등짐 펌프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동력톱	휴대용 무전기	무선 기지국	무선이동국 (차량)	헬기장착용 물바켓	전화번호
계	610	3	4	11	78	3	3	3	
안양시청 (녹지공원사업소)	10	3	1	3	9	1	1	3	389-2416
만안구청	150		2	4	42	1	1		467-4511
동안구청	150		1	4	27	1	1		389-4511

○ 불갈퀴, 삽, 낫등

기관(부서)명	무선전화기	쌍안경	방화복	간이수조	방연마스크	방염텐트	기타	전화번호
계	3	13	30	3	55	45	2,354	
안양시청 (녹지공원사업소)	1	2	1	1	10	5	292	389-2416
만안구청	1	5	1	1	15	15	1,270	467-4511
동안구청	1	6	1	1	30	25	792	389-4511
안양소방서								387-0045

Ⅲ. 수용시설 현황

○ 총 괄

기관(부서)명	합 계		학 교 시 설					
			체 육 관		강 당		교 실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안 양 시	36	6,095	9	2,190	10	1,120	17	2,785-

기 타							
사 설 체 육 관		회 관		종 교 시 설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	-	-	-	-	-	-	-

○ 수용시설 현황 : 별지작성

Ⅳ. 의료시설 현황

○ 총 괄

기관(부서)명	합 계			의원 및 소규모 병원			종 합 병 원		
	개소	병 상 수	영 안 실	개소	병 상 수	영 안 실	개소	병 상 수	영 안 실
안양시	65	2,909	9	50	835		4	1,666	4

일 반 병 원			보 건 소			한 방 병 원			장 례 식 장		
개소	병상수	영안실	개소	병상수	영안실	개소	병상수	영안실	개소	병상수	영안실
5	303		2	-	-	2	105	-	2		5

○ 의료시설 현황 : 별지작성

Ⅴ. 물자현황

가. 구호 · 복구 물자

기관(부서)명	구호물자										전화번호
	천막 (조)	취사도구 (세트)	모포 (매)	침구류 (점)	의류 (점)	의약품 (점)	양곡 (kg)	기타 생필품(점)	예산확보 (천원)	기타	
안양시청 (사회복지과)	42	475	100						5,200		389-2211

나. 방역물자

○ 방역물자

기관(부서)명	장비 (대)					물자							전화
	소독차	연막기		분무기		살충제(ℓ)				우물 소독약 (kg)	예방 주사약 (kg)	비축 장소	
		차량	휴대	차량	휴대	분무	연막	옥외	옥내				
안양시청 (보건소)	24	5	12	1	17	293	216	94	231	362	225	2	

○ 방제물자

기관(부서)명	물자									전화번호
	오일훼스 (km)	유흡착포 (천개)	흡착롤 (km)	유처리제 (ℓ)	중화제 (kg)	황토반토 (kg)	소석회 (kg)	활성탄 (kg)	기타	
안양시청 (환경위생과)	0.049	8					36,000	8,000		389-2243

여 백

주요 동원자원 현황

여 백

▣ 주요 동원자원 현황

Ⅰ. 인명구조대

구조대명	위 치	대원수	구조장비	연락처
안양소방서 119구조대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2-1	9	매몰자탐지기등 190점	381-1119
한국응급구조단 안양시지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10-25	4	환장 이송차량4	449-0129
군포소방서 119구조대	군포소방서	9	구조차, 완강기 철단기, 굴절차등	397-9119
관악산 인명구조대	과천시 중앙동 81	8	산악 구조장비	02) 502-9994
해병전우회 수중인명구조대	군포시 당동 778-25	15	스킨셀트등 16점	359-0011
적십자 수난구조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6	5	잠수장비 5	238-1140
삼성 3119구조단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	123	구조장비, 이송장비, 화생방장비, 수난장비, 조명장비, 진단장비등 400여점	200-3119
해양탐험대	안산시 원시동 773-9호	120	에어탱크, 부력조절기, 잠수장비등	491-8603
공군 제3591부대 특수구조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사서함 303-13	43	제독장비, 보트등	220-1114
육군제7851부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431-5	22	암벽등반장비, 빙벽장비, 설상덧신등	032) 666-7851

Ⅱ. 기능인력

구분	주 소	성명	나이	성별	연락처
전 기	동안구 범계동 목련ⓐ 305-1008	임 득 수	38	남	381-2987
	동안구 범계동 목련ⓐ 305-1002	백 중 흠	40	남	381-1532
	동안구 범계동 목련ⓐ 501-1203	권 용 암	37	남	383-6215
용 접	동안구 평안동 초원ⓐ 301-1202	김 병 기	42	남	383-7943
	만안구 안양7동 150-5 강남연립 라-104	이 명 운	28	남	468-3798
	만안구 안양7동 124-39	서 준 일	25	남	444-0924
정 비	동안구 귀인동 906-8	권 기 익	43	남	388-6046
	동안구 비산3동 1028-17 뉴타운 4/1101	정 남 기	36	남	382-1143
	동안구 비산3동 354-10 뉴타운 2/510	유 재 호	33	남	385-4272

Ⅱ. 헬기 현황

기 관 명	위 치	대 수	연 락 처
경 기 도 청	경기도 소방본부	2	249-5121
경기지방경찰청항공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2	338-0650
공 군 제 3591부 대 (전투비행단)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8	232-6054
해 병 9927부 대	인천시 서구 금곡동 사서함 204-3	2	(032) 560-3040

Ⅲ. 차량구난 견인업소 현황

상 호	주 소	차량보유대수	연 락 처	비 고
대 륜 렉 카	만안구 안양7동 220-6	5톤 - 1대 2.5톤 - 1대	469-4949	
남도특수렉카	만안구 석수2동 268-27	5톤 - 1대 2.5톤 - 1대	421-3161	
도 일 렉 카	동안구 관양2동 896-2	2.5톤 - 1대	422-4222	
금강특수렉카	동안구 호계2동 905-19	2.5톤 - 4대	458-4200	
관악렉카운송사	만안구 안양6동 528-13	2.5톤 - 4대	423-4500	
코끼리특수렉카	동안구 바산동 422-12	5톤 - 1대 2.5톤 - 4대	388-3309	
안양특수렉카	동안구 평촌동 93-2	8톤 - 2대 5톤 - 3대 2.5톤 - 12대	422-4444	
평촌특수렉카	동안구 관양동 736-10	5톤 - 1대 2.5톤 - 4대	421-1400	
안 양 시 시설관리공단	동안구 비산동 1025	5톤 - 11대	380-7266	

Ⅳ. 중장비 현황

○ 중장비 현황

구분	장비소재	소유자	규격 (톤)	연락처 (전화)	비고
기중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3-26	삼화종합중기	10대 25(2대) 35(3대) 50(3대) 80(2대)	457-5612~7	
	수원시 송죽동 183-1	진신중기	50.0 20.0 25.0	245-1687 245-2636 245-247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8	영동중기	50.0(4대) 25.0(2대)	236-8411 236-8412 236-8413	
	군포시 당정동 200	LG전선	68		
	군포시 당정동 200	한국중공업(주)	125	350-0288	
	군포시 금정동 224-8	강동화	25 21	396-6432	
불도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8-5	아시아시멘트 공업	25	452-3451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진신중기	19	245-1687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48-2	김용진	19 21	293-1792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6-13	(주)대성	18 19 27	292-1161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8-8	삼덕산업	21	292-3812	

구 분	장 비 소 재	소 유 자	규 격 (톤)	연 락 처 (전화)	비 고
굴삭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3-26	삼화종합중기	25대	457-5612~7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1.0(2대)	472-735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98	동 방 산 업	1.1	421-4034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03	오 광 기 업	0.8	466-849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1-2	경 기 환 경	1.0(2대)	422-333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	효 원 건 설	1.0	421-811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6-1	유 지 개 발	1.0	421-3333	
	군포시 산본동 74-37	신석기업	2..0(9대) 1.3(3대) 1.0(2대) 0.8(3대)	396-6432	
	군포시 금정동 766-25	싸용건설중기	1.3(4대)	329-7100	
	군포시 당동 862-1	삼홍환경건설	0.8 (2대) 2.0	358-6162	
	군포시 당정동 549	부성자원	2.0 1.0 0.8	352-3479	
	군포시 당정동 240-1	상성중공업	1.0(2대)	328-1800	
	군포시 당정동 122	(주)경기폐차	2.2	354-4627	

구분	장비소재	소유자	규격 (톤)	연락처 (전화)	비고
로우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3-26	삼화종합중기	4.4(3대)	457-5612~7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7-10	제일산업개발	4.4(2대) 3.5(2대)	472-735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7-22	아시아시멘트	2.3(1대)	452-345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73-5	남양진흥기업	0.35(1대)	422-8871	
	의왕시 오전동 139-2	제일산업 (주)	2.30	352-8333	
	군포시 산본1동 74-37	신석기업 (주)	2.3 3.0	396-6432	
	군포시 금정동 1	한솔판지 (주)	2.7	328-2114	
	군포시 당정동 91	신호페이퍼(주)	2.4 2.5	359-0473~5	
	시흥시 대야동 484-5	시흥시장	2.6	691-3961	
	시흥시 목감동 154	정원개발 (주)	3.0	680-669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	한국자원재생공사 인천경기지사	2.4	222-7341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3	아세아시멘트공업	2.80	232-0070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9-15	천일중기	3.00	253-2123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진신중기	2.67 3.00 3.50 2.80	245-1687 245-2636 245-249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56	(주)경기개발공사	3.0 4.0	241-4261	

V. 의료기관 현황

○ 병 원 (9개소 1,969병상)

구분	총 계		종합병원		일반병원		비고
	개 소	병상수	개 소	병상수	개 소	병상수	
계	9	1,969	4	1,666	5	303	
만 안	4	774	2	631	2	143	
동 안	5	1,195	2	1,035	3	160	

○ 의 원 (50개소 835병상)

구분	총 계		병상설치		병상 미설치	한의원	보건소
	개 소	병상수	개 소	병상수			
계	410	835	50	835	295	63	2
만 안	182	345	20	345	128	33	1
동 안	228	490	30	490	167	30	1

○ 약 국 (255개소)

구 분	총 계	만 안	동 안	비 고
개 소	255	140	115	

○ 종합병원

병원명	허가 병상수	대표자	의료인력			소재지	전화번호
			의사	간호사	기타		
메트로병원	466	이대순	40	152		만안구 안양8동 342-105	467-9000
안양병원	165	이상택	35	87		만안구 안양5동 613-6	467-9114
한림대병원	763	윤대원	192	306		동안구 평안동 896, 896-1	380-4123
한성병원	272	조광열	9	24		동안구 호계3동 996-18	452-0011

○ 일반병원

병원명	허가 병상수	대표자	의료인력			소재지	전화번호
			의사	간호사	기타		
신병원	64	신영순	6	28		만안구 안양8동 559-7	449-0121
새안양성심병원	79	임종현	6	22		만안구 안양3동 695-207	449-2429
성모병원	70	문영식	6	7		동안구 비산2동 566-3	443-8651
봄빛병원	60	김성수	6	11		동안구 범계동 1049-3	380-7402
평촌중앙병원	30	민병혁	4	12		동안구 범계동 1046-6, 7	387-0114

○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병원명	병상수	응급실 인력 현황						소재지	전화번호
		응급실	계	의사	간호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계	1,870	6	19	6	13	1	10		
메트로병원	466	1	2	1	1	1	2	만안구 안양8동 342-105	467-9999
안양병원	220	1	4	1	3		2	만안구 안양5동 613-9	469-0151
한성병원	272	1	3	1	2		2	동안구 호계3동 968-18	452-0011
새안양성심원	79	1	3	1	2		1	만안구 안양3동 695-207	449-2429
성모병원	70	1	2	1	1		1	동안구 비산2동 566-3	443-8651
한림대성심원	763	1	5	1	4		2	동안구 평촌동 896	380-1500

○ 장례식장 현황

상호 (병원명)	성명	규모 (개소)				소재지	전화번호
		빈소	예식실	안치실	면적(㎡)		
계		42	17	54			
메트로병원	이정환	9	1	10	1,370(415평)	만안구 안양8동 342-105	469-1580
안양병원	이상택	8	1	10	1,221(370평)	만안구 안양5동 613-9	469-0151
한성병원	조광열	3	1	6	99(30평)	동안구 호계3동 968-18	452-0011
한림대부속병원	윤대원	7	1	10	1,082(328평)	동안구 평촌동 896	382-5004
남서울병원	고영순	4	2	6	660(200평)	만안구 안양2동 18-1	473-6919
안양장례식장	김수철	11	11	12	1,980(600평)	동안구 호계2동 167-1	455-3388

Ⅵ.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일련번호	학교명	건물용도	소 재 지	수용가능 인원	연 락 처
계	36개교			6,095	
1	안 양 초	체 육 관	안양 5동	200	441-1192
2	안양동초	강 당	비산 1동	75	447-9048
3	안양남초	강 당	갈 산 동	200	458-7814
4	관 양 초	잉여교실	관양 1동	75	384-2675
5	삼 성 초	잉여교실	석수 1동	240	471-4302
6	만 안 초	다목적교실	안양 2동	500	449-1110
7	안양서초	체 육 관	안양 9동	300	466-0202
8	명 학 초	다목적교실	안양 8동	75	449-9730
9	신 안 초	잉여교실	안양 9동	150	448-0794
10	호 계 초	잉여교실	호계 2동	250	452-7613
11	석 수 초	잉여교실	석수 3동	60	474-0487
12	호 성 초	잉여교실	호계 3동	20	453-8437
13	덕 천 초	잉여교실	안양 7동	500	449-4633
14	박 달 초	잉여교실	박달 1동	50	447-8386
15	중 앙 초	체 육 관	비산 2동	300	443-6032
16	호 원 초	다목적교실	호계 2동	100	452-6473
17	덕 현 초	다목적교실	갈 산 동	300	456-8093
18	달 안 초	잉여교실	달 안 동	120	381-0333

일련번호	시 설 명	건물용도	소 재 지	수용가능 인원	연 락 처
19	희 성 초	잉여교실	달 안 동	290	382-4220
20	민 백 초	강 당	평 촌 동	50	424-6106
21	부 안 초	잉여교실	부 림 동	150	387-4234
22	안 양 중	다목적교실	부 림 동	300	471-3147
23	관 양 중	강 당	관양 1동	100	384-7304
24	안 양 서 중	잉여교실	안양 9동	80	447-1146
25	부 흥 중	다목적실	부 흥 동	60	381-0168
26	범 계 중	체 육 관	범 계 동	130	383-0234
27	부 림 중	다목적실	부 림 동	40	381-0228
28	부 안 중	잉여교실	부 림 동	100	387-4031
29	신 성 중	잉여교실	안양 5동	100	469-0786
30	평 촌 고	체 육 관	범 계 동	200	389-1302
31	부 흥 고	체 육 관	부 흥 동	200	382-2082
32	평촌정보고	체 육 관	부 림 동	260	387-0274
33	평 촌 공 고	잉여교실	갈 산 동	100	458-9624
34	안 양 여 고	강 당	안양 2동	100	469-2012
35	안 양 예 고	강 당	안양 3동	120	466-8855
36	백 영 고	잉여교실	귀 인 동	200	387-4341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동원대비체제

여 백

▣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전기공급분야)

1. 재난사고 긴급복구공사

○ 재난사고 긴급복구계획

- 사태별 비상발령 : 적색, 청색, 백색으로 구분 발령
- 대책본부 구성 : A, B, C급으로 구분 편성

○ 고장복구체제 운영

- 긴급동원체제 구축 : 동원인원 16명
- 변전소, 배전선로 공장으로 인한 광역 정전사고시

○ 동원장비 보유현황

구분 / 기관	활선작업차	저압보수차	작 업 차	승 용 차
한국전력안양지점	1	2	2	2

2. 재난대책반 운영

○ 사업소장을 대책반장으로 편성운영

○ 특별재해지역 선포시, 인력사고 발생시 인력 및 장비지원

○ 재난현장의 비상전원 공급 및 안전점검실시

○ 유관기관과의 연락, 협조체제 유지

○ 계측장비 보유현황

장 비 명	보유수량	용 도
훅 크 온 메 타	15	○전기기기의 전류, 저압 등의 적정사용여부 확인
절 연 저 항 계	3	○고, 전압기기의 누전여부 측정
저연유내압시험기	20	○절연유의 성능시험
적외선온도측정기	3	○과열개소 측정
활선접근경보기	28	○활선상태 여부확인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전기안전분야)

○ 기구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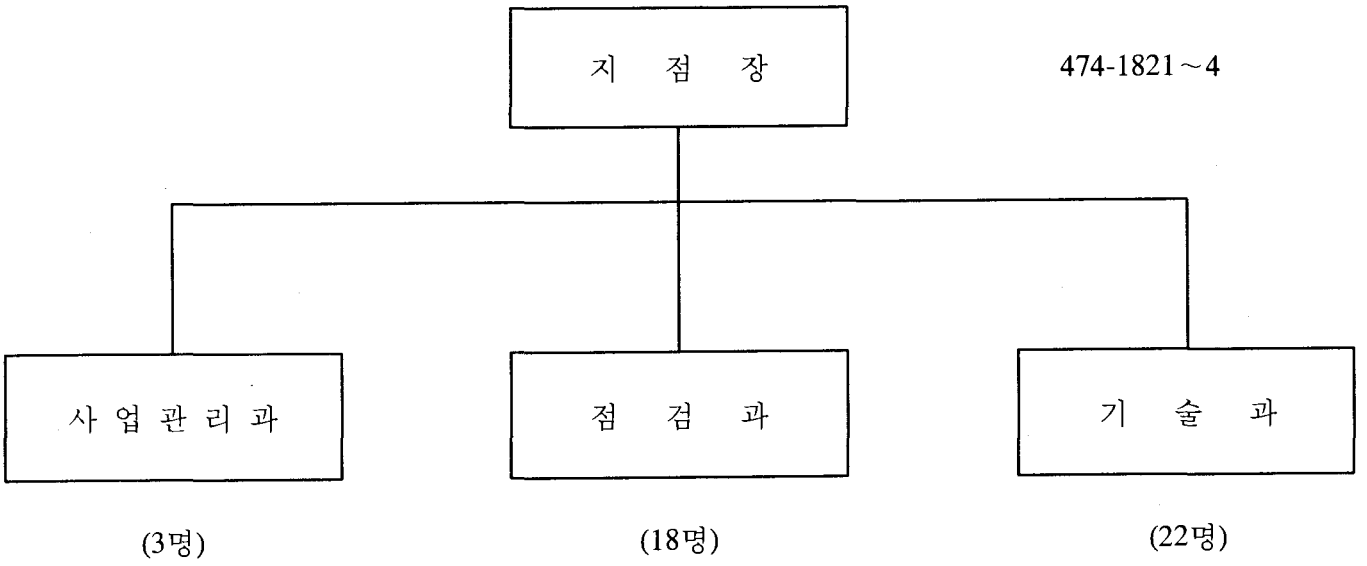

○ 안전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24시간 신고수리 및 출동태세 확립

  ※ 초동출동→인원3명, 정밀검사차량 1대, 기본장비

- 상황보고체제 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시·군등 행정관서와의 공조체제 유지
- 구급, 복구지원을 위하여 소방관서와의 협조체제 확립

○ 사고발생시 즉각 출동조치

- 초동 출동인원 : 기술인원 3명
- 발전기 탑재 정밀검사 차량

  ※ 사고규모에 따라 인력, 장비 증가 배치

전기안전상황관리 및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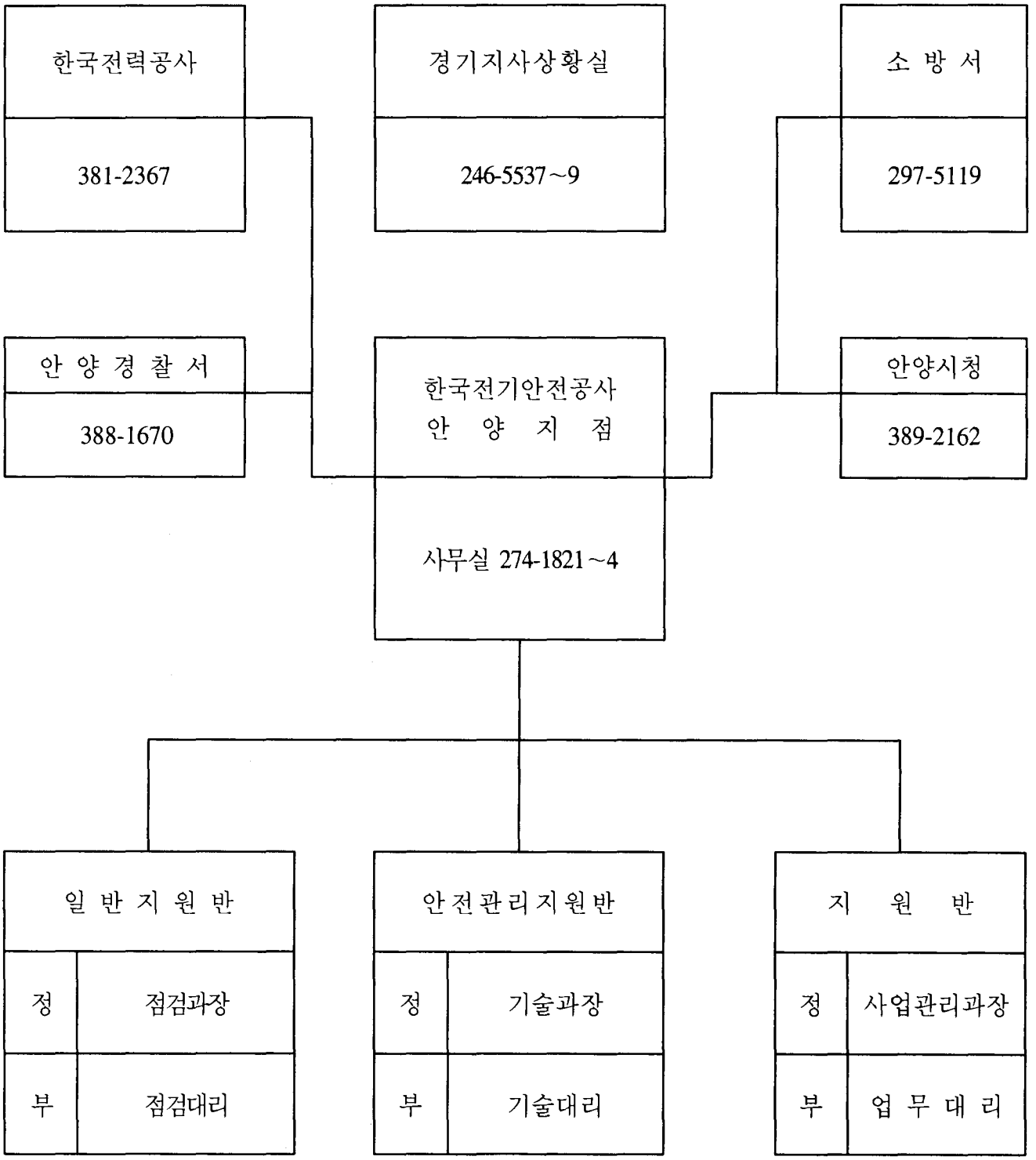

▣ (주)삼천리안양지사(가스공급분야)

1. 비상출동 기준

가. 목 적

○ 가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 신속한 연락, 출동체제등 사고대책에 관한 제반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피해를 최소화하여 복구 및 사고수습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있음

나. 사고의 범위

○ 자연재해 및 가스냄새, 가스누설, 가스폭발등 인위적 사고 및 이에 준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사고

다. 비상복구 체제

1) 사고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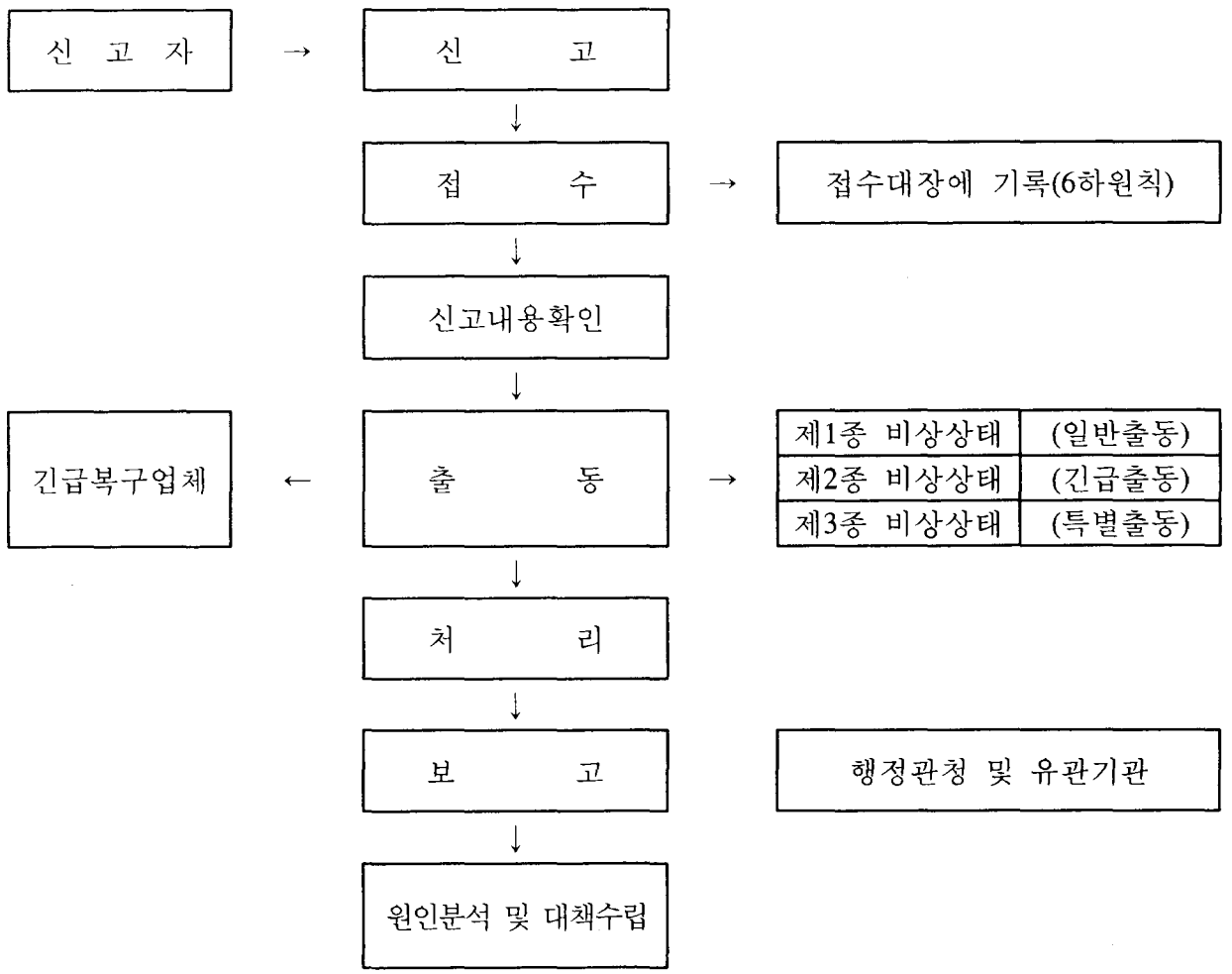

2) 단계별 출동판단 및 기준

○ 주 간 : 지사장이 통보내용 및 출동기준에 의거 일반출동, 긴급출동, 특별출동 등을 판단하여 출동지시

○ 야 간 : 상황실 책임자가 통보내용 및 출동기준에 의거 근무자 1차출동 및 사고정도에 따라 비상소집

3) 단계별 비상사태 기준

구 분		제1종 비상상태	제2종 비상상태	제3종 비상상태	비 고
정 압 기		단순누설시	가스다량 누출 화재사고시	가스다량 누출 및 폭발, 인명피해시 (가스공급중단 필요시)	
밸브박스		〃	〃	〃	
배관	중 압	〃	〃	〃	
	저 압	〃	〃	〃	
사용자 시 설	아파트	〃	〃	〃	
	상 가 (업 무)	〃	〃	〃	
	산업용	〃	〃	〃	

4) 단계별 출동차량 기준

제1종 비상상태	제2종 비상상태	제3종 비상상태
순찰차량(봉고벤)	지휘차량(승용차) 순찰차량(봉고벤) 비상출동차량(지프형)	지휘차량(승용차) 순찰차량(봉고벤) 비상출동차량(지프형) 홍보 및 통제차량 비상복구차량

라. 긴급복구 조직표

1) 일반출동시 (1단계)

○ 주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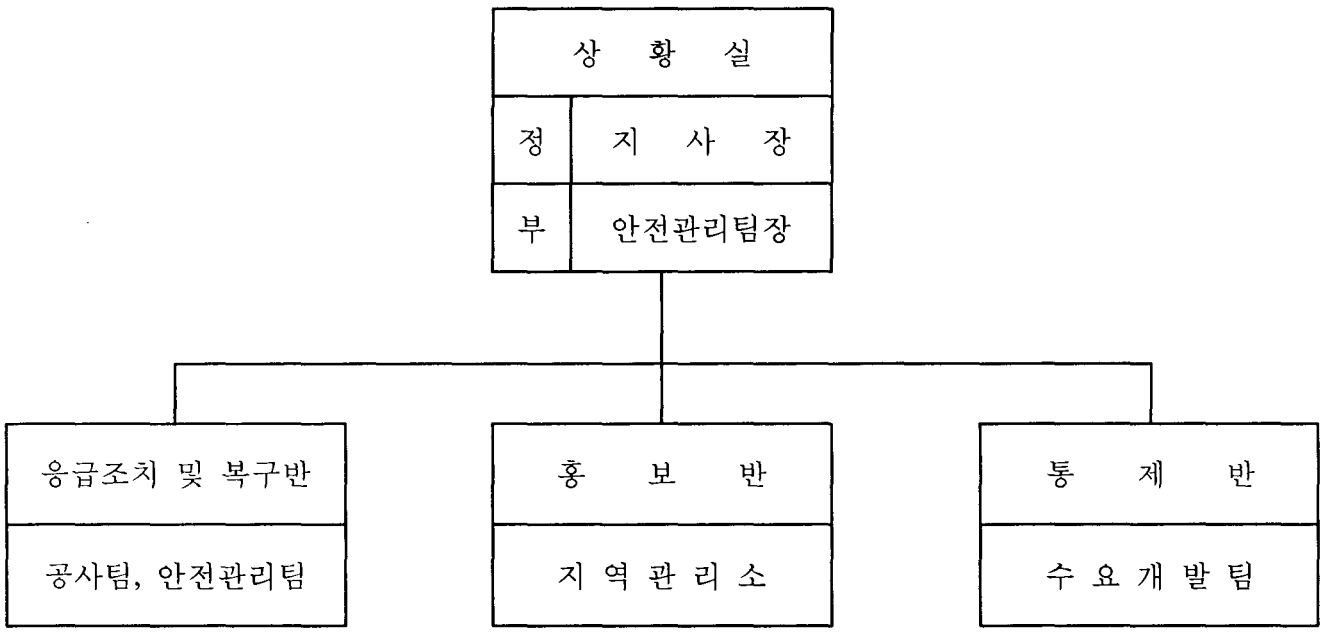

○ 야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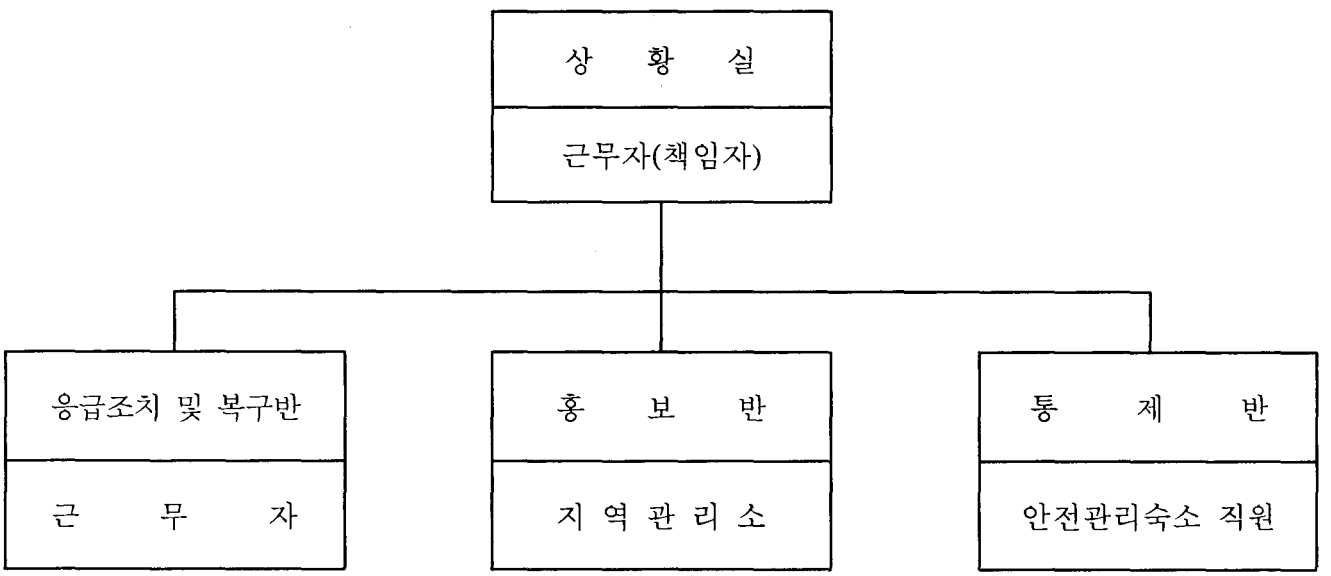

2) 긴급출동시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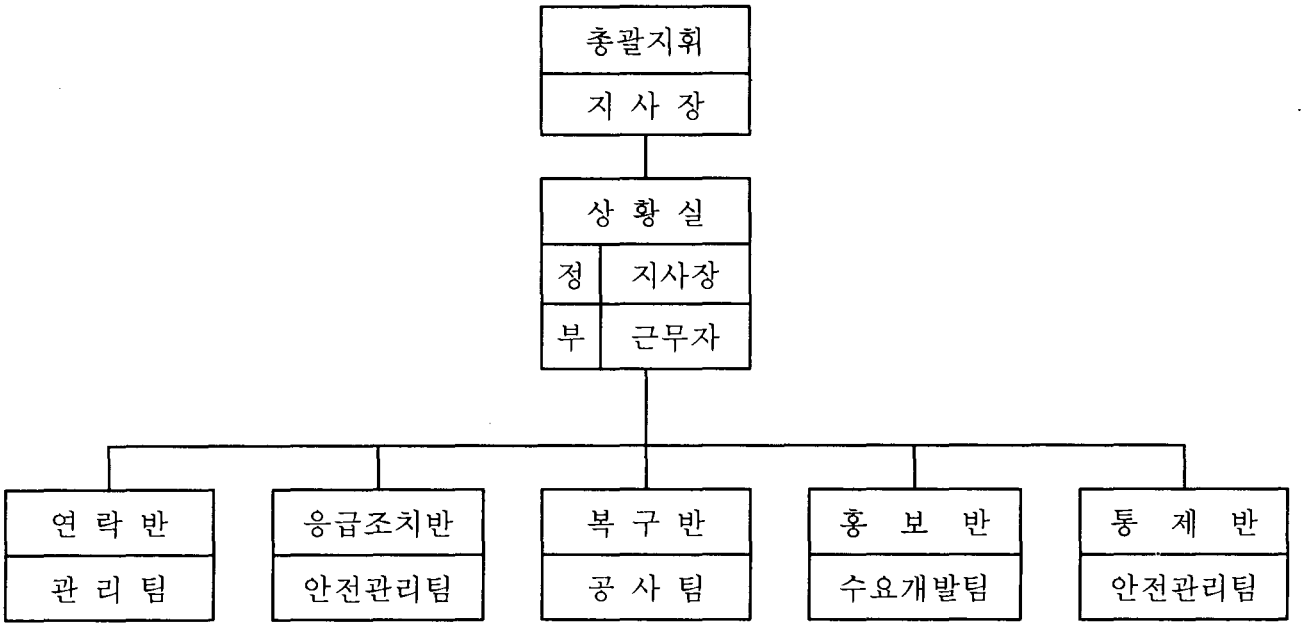

3) 특별출동시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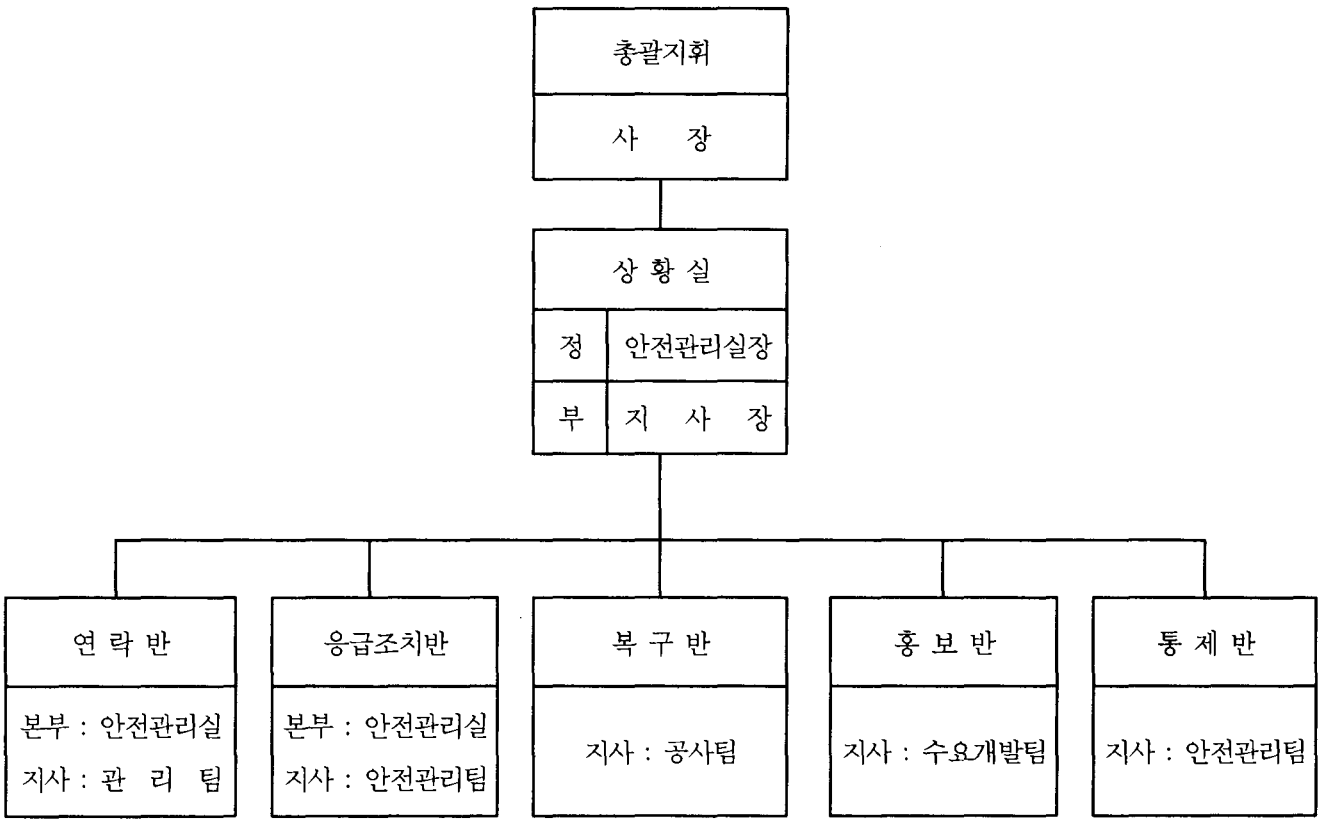

마. 반별 업무내용 (긴급, 특별출동시)

반별	업 무 내 용	지원차량
상 황 실	1. 상황 총지휘 2. 상황 종합분석 3. 상부에 상황보고 4. 일·숙직자는 지사장 도착시까지 지휘	업무용 차량
언 락 반	1.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동원 2. 지역관리소의 인력동원 3. 대민, 언론기관 사고보도 자료관리 4. 현장자재 지원, 물품 및 장비공급	업무용 차량
응급조치반	1. 가스누설상태 파악 및 응급조치 2. 긴급상황시 가스차단 3. 2차재해 가능성 검토 4. 복구작업 협조 5. 가스 재공급 상태점검	긴급출동차량 순찰차량
복 구 반	1. 복구장비 및 자재확보 유지 2. 피해시설 긴급복구 3. 가스공급 재개조치	긴급복구차량 업무용 차량
홍 보 반	1. 긴급시 가스사용시설 차단홍보 2. 복구완료 홍보 및 연소기 점검	업무용 차량
통 제 반	1. 주민 및 차량통제 2. 피해자 긴급후소 및 위험지역주민 대피안내 3. 사후처리 피해보상(보험등)	업무용 차량

▣ 안양소방서

가. 동원대상

1) 긴급구조구난기관 단체등

○ 현 황

계	관공서	경찰서	군부대	공 사	민간업체	병 원	민 간 구조대
27	1	2	4	3	12	4	1

※ 세부현황 : 붙임참조

○ 추진사항

● 비상연락망 정비 : 월 1회

2) 재난대비 응원협정 체결 정비

계	관공서	군부대	경찰	가스	공사	민간	의료기관	기타
27	1	4	2	1	2	13	4	

○ 추진사항

● 회 수 : 년1회

● 내 용

- 지원인력 · 보유장비 현황 파악
- 통신망 · 도로여건 변동사항
- 출동거리 소요시간 조사등

3) 동원인력 · 장비관리대상

○ 현 황

구 분	계	관공서	경 찰	군부대	공 사	민간업체	민간구조대	병 원	기 타
인 력	805	62	434	43	60	183	9	14	
장 비	2,483	641	55	92	246	1,406	35	8	

※ 세부현황 : 붙임참조

4) 구조구난지원 자료

○ 전문인력 기관·단체

계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비 고
3(47명)	1(38명)	1(9명)	

○ 중장비 보유수

계	포크레인	굴 삭 기	크레인, 로우더	렉 카 차	페이로더	기 타
67		10	4, 10	14	4	28

3. 긴급구조대비 인력·장비동원 계획

○ 긴급구조대비 책임 : 소방관서장

○ 긴급구조대비 업무

● 현장지휘소 조직 편성

- 안양 긴급구조본부장 : 안양시장
- 통 제 관 : 안양소방서장(관할지역)
- 보 좌 관 : 소방과장, 방호과장
- 총괄반장 : 구조구급담당
- 정보반장 : 방호담당
- 통신반장 : 소방행정담당
- 홍보반장 : 예방담당
- 응급의료지원반장 : 진압대장
- 자원봉사관리반장 : 장비관리담당

※ 편성표 : 붙임참조

○ 담당업무(현장지휘소)

구 분	담 당 업 무
총 괄 반	ㅇ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본부장 보좌 ㅇ재난원인 조사 및 재해실태 파악 ㅇ소방활동 상황파악 및 2차 재해발생위험 파악 ㅇ재해경과의 기록 및 상황보고
정 보 반	ㅇ관계자료의 확보 및 대상물 실태 파악 ㅇ인명위험 및 재해의 확대위험 파악 ㅇ각종 정보의 수집·분석·정리 및 종합등 ㅇ사상자 발생요인 파악
통 신 반	ㅇ현장지휘망 및 유·무선 ㅇ명령전달, 통신연락 및 관계기관과의 구축
홍 보 반	ㅇ현장상황 촬영 기록보존 ㅇ기타 언론관련 업무
응급의료 지 원 반	ㅇ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긴급의료제공기관과의 협조등 ㅇ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사상자 처리
자원봉사 관 리 반	ㅇ자원봉사자의 등록접수 ㅇ민간전문가등 직할지원대의 관리 및 소모물품의 관리 및 배포등

○ 담당업무(현장응급의료소)

구 분	담 당 업 무
분 류 반	ㅇ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응급처치효 작성 ㅇ사상자 분류(사망, 중상, 경상, 귀가) - 사 망 자 : 이송반 - 중경상자 : 응급처치반 - 귀가대상자 : 인적사항 정리후 귀가조치 - 사망자중 신원미상자 : 임시 영안소 안치
응급처치반	ㅇ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ㅇ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ㅇ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비치
이 송 반	ㅇ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또는 통제 ㅇ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ㅇ사상자 이송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수용체계 수립

● 현 황

계	관공서	경찰서	군부대	공 사	민간업체	민간구조대	병 원	기 타
27	1	2	4	3	12	1	4	

○ 추진사항

● 긴급구조기관명, 위치, 기관장 성명

● 협조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긴급연락망

● 전문인력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등 보유현황 파악 관리

○ 대형, 특수재난발생시 민간으로부터 자문과 특수기능 인력, 장비지원 수용체계 수립

● 추진사항

- 중장비 보유업체 및 중장비 조작인원 파악 관리
- 건축, 토목, 방사능기술등 전문지식 소유자(단체)
- 폭발물, 특수위험물 자격자등

● 지휘소 설치 계획

- 시 기 :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 절 차 : 당직관→서장보고(사전설치명령 : 야간 서장부재시)
- 설치책임자 : 당직관(본서→현장수송 및 설치)
- 주요임무
  - 인력동원 및 각 부서별 배치현황
  - 사상자의 인적사항 및 안치사항 관리
  - 실종자신고, 접수관리
  - 병·의원 입원실 및 영안실 수용능력 현황관리
  - 지휘소설치 운영에 필요한 물품재고 관리
  - 장비관리

    → 장비의 구입 및 배치

    → 크레인, 포크레인등 특수장비 긴급동원

    → 재난현장의 지휘소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조달

○ 긴급구조능력 보강

● 인명구조장비 보유현황(종/점)

계 (종/점)	일 반 구조장비	중량물 작업용	절단용	파괴용	측정용	호 흡 보호용	대원보호	수 난 구조용	산 악 구조용	기 타
130/639	23/232	11/19	6/13	7/24	4/7	5/46	6/56	9/36	14/71	45/135

4. 긴급구조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가. 재난신고 처리

○ 긴급구조보고 체계 확립

● 재난발견자 → 소방관서(긴급구조상황실) → 통제관(소방서장) → 긴급구조본부장(안양시장)

※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원요청등 조치

○ 재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 긴급구조구난기관·단체(군부대) : 27개기관, 단체

● 긴급구조지원대상 : 총 27개 기관·단체

- 전문인력 기관·단체 : 23개 기관

- 의료기관 : 4개 종합병원

○ 재난신고 접수시 초기 조치

● 재난상황 최초 접수자는 구조대 출동지령 및 즉시 재난발생 상황을 통제관(서장) 또는 당직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긴급구조기관에 통보

● 통제관(서장)은 재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 출동요청 여부 결정

※ 지역 긴급구조본부장(시장)은 필요시 긴급구조기관장에게 인력, 장비등 지원요청

여 백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

여 백

▣ 재난위험시설물 : 총 5개소 5개시설물

(2001. 11. 28.현재)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소 재 지	지정 및 해제 사유	유지관리 주 체	위험 등급	지 정 일 (해제일)	관 리 책 임 자
5개소	5개시설						
공장주택 1	1개동 1층 단독 연면적 : 326.5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 '76. 9. 6준공	동안구 평촌동 93-7	○천장 슬라브 일부에 양생 처짐	서영진	D	2001.10.23	정 : 동안 건축교통과장 부 : 동안 건축담당
성우연립 2	3개동중 1동 총 34세대중 14세대 연면적 : 810㎡ ※ '79.12.24준공	동안구 평촌동 59-9	○지반 침하로 인한 벽체 모서리 균열	신창민 등14인	D	'98. 6.15	정 : 동안 건축교통과장 부 : 동안 건축담당
양지 4교 3	L=35.8m B=35m	만안구 안양1동 1195-42	○중성화 진행으로 철근부식 현상	안양시 도로과	D	'99. 4.12	정 : 건설사업소장 부 : 도로과장
중앙지하도 상 가 4	L=96m, B=23.1m 면적 : 2,381㎡ 175점포 ※ '78. 6. 2준공	만안구 안양1동 1189-1 (중앙로)	○보 및 슬라브에 균열 ○구조체 설계기준 미달 내하력 부족	안양시 회계과 도로과	D	'99. 8.11	정 : 건설사업소장 부 : 도로과장 ○주요구조부(보, 슬라브, 기둥) 유지관리
비산대교 5	L=92m B=25m ※ '75준공, 확장 '90.11	동안구 비산동	○구조적 내하력 및 내구성 부족	안양시 도로과	D	2001. 4.11	정 : 건설사업소장 부 : 도로과장

▣ 2001하반기 일제점검결과 총괄표

(2001. 11월 현재)

구 분		전 체 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관련부서
			계	A	B	C	계	D	E	
합 계		1,890	917	727	153	37	5	5		
도로시설	교 량	60	36	15	1	20	2	2		
	터 널	1	1	1						
	육 교	32	3	2	1					
	지 하 도 (지하상가내의 지하도 제외)	26	6	6						
	축대·옹벽 (건물부대시설 제외)									
지 하 철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3	3	3						
토목공사장	대 형 공 사 장	3	3	3						
	중 단 된 공 사 장	1	1	1						
유·도 선		1								
기타 토목시설물		1	1	1						
지 방 공 공 청 사		75	59	56	2	1				
공동주택	아 파 트	1,256	424	306	118					
	연 립 주 택	161	130	112	10	8	1	1		
다중이용건축물	판 매 시 설	26	25	16	9		1	1		
	대 형 숙 박 시 설	4	4	3	1					
	종 합 여 객 시 설									
	공 연 시 설	11	6	5	1					
	집 회 시 설	21	8	8						
	관람·전시시설	3	3	1	2					
	종 합 병 원	4	4	4						
	위락·휴게시설	17	17	17						
	청소년수련시설	2	2	2						
대 형 건 축 물										
기타건축물	일 반 건 축 물	10	9	5	1	3	1	1		
	옹 벽 · 석 축	10	10	1	5	4				
	기 타	2	2		1	1				
대 형 광 고 물		17	17	17						
건축공사장	대 형 공 사 장	28	28	28						
	중 단 된 공 사 장	3	3	2	1					
위험물시설	가 스 취 급 시 설	92	92	92						
	유 독 물 취 급 시 설	11	11	11						
	화학물질취급시설	9	9	9						

▣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내역

구 분		대 상 범 위	조 사 결 과		
			계	만안	동안
합 계			922	503	419
도로시설	교 량	○ 연장 20m이상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38	26	12
	터 널	○ 전수관리	1	1	
	육 교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3	3	
	지 하 도 (지하상가내의 지하도 제외)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6	6	
	축대 · 옹벽 (건물부대시설 제외)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시설로서 높이 5m, 연장20m이상			
	기타도로부대시설	○ 기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등			
지 하 철		○ 전수관리			
삭도 · 궤도		○ 전수시설(체육시설 : 스키장 리프트, 관광시설 : 케이블카)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3	2	1
토목공사장	대 형 공 사 장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	2	1(의왕)
	중 단 된 공 사 장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	1	
유 · 도 선		○ 전수관리(5톤이상 동력선)			
기타 토목시설물		○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1	1	
지 방 공 공 청 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연면적330㎡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 건축물	59	26	33
공동주택	아 파 트	○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424	238	186
	연 립 주 택	○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131	66	65
다중이용건축물	판 매 시 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상점과 백화점등 도 · 소매시장	26	13	13
	대 형 숙 박 시 설	○ 연면적 1,000㎡이상	4	3	1
	종 합 여 객 시 설	○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등			
	공 연 시 설	○ 연면적 300㎡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6	4	2
	집 회 시 설	○ 연면적 300㎡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 발매소, 회의장등	8	5	3
	관람 · 전시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운동경기 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등	3	1	2
	종 합 병 원	○ 전수관리(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포함)	4	2	2
	위락 · 휴게시설	○ 연면적 300㎡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등	17	9	8
	청소년수련시설	○ 연면적 1,000㎡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건축물등	2	1	1
대 형 건 축 물		○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10	1	9
	옹벽 · 석축	○ 건축 5m, 연장20m이상	10	6	4
	기 타	○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시설	2	1	1
대 형 광 고 물		○ 독립된 높이 4m이상의 것	17	6	11
건축공사장	대 형 공 사 장	○ 총 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바닥면적 10,000㎡이상	28	13	15
	중 단 된 공 사 장	○ 총 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바닥면적 10,000㎡이상	3	2	1
위험물시설	가 스 취 급 시 설	○ 충전소, 판매소, 지역정압기	92	54	38
	유 독 물 취 급 시 설	○ 유독물 보관 · 저장소	11	5	6
	화학물질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9	5	4

▣ 중점관리대상 『B급』 시설물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총 계	153개 시설물			168
도로시설	교량 및 육교	명 학 대 교	호계동	L:90m, B:3m	○교각 빔에 균열(보수)	1
		진 흥 육 교	안양1동	L:29.1m, B:6m	○I형 거더도장(페인트) 박리등	1
지방공공청사		석수3동사무소	석수3동 600-3	연 727.4㎡	○기둥, 벽체균열	1
		호 계 도 서 관	호계2동 923-34	연 2,763㎡	○별관동 식당,학생열람실 증축 부분 균열 및 변형	1
공동주택	아파트	청 원 아 파 트	안양2동 80-4	2개동 150세대	○조적 줄눈부 균열	2
		화 양 아 파 트	안양4동 709-16	7개동 31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7
		동 명 아 파 트	안양5동 613-21	1개동 5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동 덕 아 파 트	안양5동 708-196	9개동 22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9
		동 산 아 파 트	안양7동 150-2	2개동 77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동성1차아파트	안양7동 155-2	3개동 141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3
		동성2차아파트	안양7동 190-6	4개동 20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4
		문 양 아 파 트	안양7동 143-4	1개동 4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은하2차아파트	안양7동 154-5	1개동 7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일 승 아 파 트	안양7동 132-2	2개동 2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적성1차아파트	안양7동 144-12	1개동 4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적성2차아파트	안양7동 138-5	1개동 2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정동2차아파트	안양7동 152-8	1개동 36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화남1차아파트	안양7동 126-5	1개동 37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명 학 아 파 트	안양7동 126-5	4개동 34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삼 신 아 파 트	석수1동 373-3	4개동 11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백조2차아파트	석수1동 373-3	5개동 14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장미·공영아파트	석수1동 388-1	8개동 16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석 수 아 파 트	석수2동 308-5, 6	3개동 9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삼 신 아 파 트	박달2동 607-1	7개동 27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7
		우 성 아 파 트	비산1동 515-2	8개동 29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8
		기 오 아 파 트	비산1동 554-10	1개동 3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성 도 아 파 트	비산1동 557-7	1개동 3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주공3단지아파트	석수3동 786번지	10개동 42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0
		덕 산 아 파 트	비산1동 554-8	1개동 16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1
		뉴타운1,2,3차(아)	비산3동 354-10	8개동 91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8
		임 곡 아 파 트	비산3동 377	2개동 8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대 화 아 파 트	관양1동 1409-4	2개동 3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신 태 양 아 파 트	관양2동 1461-9	2개동 70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대 도 아 파 트	평촌동 54-1	4개동 159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4
		주 공 아 파 트	호계3동 813	3개동 181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3
		삼 신 아 파 트	호계3동 639-2	6개동 278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6
		양 수 아 파 트	호계3동 848-2	2개동 115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2
		삼 천 리 아 파 트	호계3동 843-1	4개동 242세대	○건물노후 및 외벽균열	4
	연립	이 화 연 립	안양6동 492-19	1개동 24세대	○2층슬라브 철근노출	1
		명 학 시 장 연 립	안양6동 434-3	1개동 33세대	○외벽균열	1
		한 미 연 립	안양7동 150-1	2개동 32세대	○벽체균열및 철근노출	2
		제 일 연 립	안양7동 137-8	2개동 28세대	○벽체균열	2
		삼 성 연 립	안양8동 398-35	2개동 28세대	○가동벽체에 줄눈 균열	2
		푸 른 연 립	안양8동 394-86	2개동 28세대	○노후 및 벽체균열	1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남 부 시 장	안양1동 622-229	연 1,755㎡	○시설물노후	1
		석 수 시 장	석수2동 387-288	연 2,929㎡	○시설물노후	1
		중 앙 시 장	안양4동 676-44	연 6,029㎡	○시설물노후	1
		청 원 시 장	안양2동 688-17	연 5,394㎡	○시설물노후	1
		관 악 시 장	안양2동 41-5	연 1,297㎡	○시설물노후	1
		육 동 시 장	안양6동 434-3	연 5,626㎡	○시설물노후	1
		중부농·수산물(삼 신 시 장)	안양1동 622-337	연 3,714㎡	○시설물노후	1
		안 양 월 드	안양3동 900-10, 57	연 28,827㎡	○지하주차장 및 6,7층 미세균열	1
		뉴코아백화점	범계동 1040-1	연 63,106㎡	○지하6층주차장 보에 미세균열	1
	관람시설	안양종합운동장	비산3동 1025	연 33,412㎡	○지하공동구 누수 및 스텐드 파라펫 부식	1
		문 예 회 관	안양8동 550	연 15,084㎡	○건물 방수불량, 기둥벽체 균열	1
	대형숙박시설	코 암	안양6동 431-10	연 1,190㎡	○가스시설 외부 노출	1
	공연시설	안 양 극 장	안양4동 676-116	연 684㎡	○벽체균열	1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삼신연립가동벽체	호계3동 919-2	연 800㎡, 지상2층	○조적벽체 배부름 현상	1
	옹벽석축	정 우 (아) 옹 벽	안양3동 911-1	L:40m, H:5m	○배수구 불량 및 균열	1
		석 산 연 립 옹 벽	안양9동 산 66-6	L:110m, H:1~17m	○배수구 불량 및 균열	1
		중앙감리교회축대	안양4동 708-235	L:15M, H:3~4M	○석축부 부실	1
		비산1동주택축대	비산1동 489-31,32	L:9M, H:3.5M	○석축부 배부름	1
		일신아파트옹벽	호계1동 999-25	L:100m, H:.5m	○석축 및 옹벽 균열	1
	부대시설	세 원 연 립 담 장	박달1동 42	L:65m, H:1.6m	○담장전도 위험	1
건축공사장	중단된건축공사장	중 앙 아 파 트	안양동 817-15	연 17,985㎡	○공사중단 사업장	1 1

▣ 중점관리대상 『C급』 시설물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총계	37개 시설물			25
도로시설	교량	삼 막 교	석수2동	L:20m, B:21.4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박락발생 및 배수관 막힘	1
		만안삼성교	석수2동	L:20m, B:21.3m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스라브 박리, 박락 발생	1
		삼 성 1 교	석수1동유유산업입구	L:26m, B:8m	○슬라브 및 교대에 백태발생 ○하부기초 세균 및 배수구 막힘	1
		삼 성 2 교	석수1동유원지매표소앞	L:26m, B:8m	○슬라브 균열 발생 ○교대에 백태침식 및 세굴발생	1
		석 수 교	석수1동	L:30m, B:5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양 명 교	안양1동 양명고앞	L:95m, B:7m	○슬라브 박락 및 철근노출 ○주형에 균열 및 파손	1
		명 학 육 교	안양6동	L:45m, B:30m	○교좌장치 녹발생 ○공용년수 경과에 따른 노후발생	1
		신 촌 교	석수1동	L:30m, B:5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임 곡 교	안양1동	L:100m, B:12m	○슬라브 균열 및 신축이음고무재 파손 ○배수관 길이 부족	1
		삼 성 교	석수2동	L:45.5m, B:20m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교좌장치 받침판 부식 ○스라브 균열발생	1
		인 덕 원 교	관양2동	L:60m, B:5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관 양 교	관양2동	L:60m, B:7.5m	○슬라브 파손 및 주형균열 파손 ○배수관 길이 부족	1
		덕 천 교	비산2동	L:73.5m, B:18m	○신축이음 본체마모 및 파손 ○교대 균열 발생	1
		내 비 산 교	비산3동	L:72m, B:4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학 운 교	비산동	L:67m, B:25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수 촌 교	관양동	L:74m, B:30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동 안 교	비산3동	L:65m, B:9m	○신축이음 파손 스라브 균열발생 ○교각에 균열 및 박락,철근노출	1
		전 파 교	호계2동	L:72m, B:14m	○슬라브 휨균열 및 철근노출	1
		호계고가차도	호계동	L:255m, B:15.3m	○주형에 용접불량 ○교좌장치에 도막 박리	1
		동 양 교	호계2동	L:50m, B:6.7m	○받침장치의 부식심화	1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규모)	취 약 내 역	비고
		총계	37개 시설물			25
지방공공청사		관양2동사무소	관양동 1482-3	L:940.68㎡	○건축바닥 침하로 균역발생	1
공동주택	연립	삼건연립	안양2동 42-10	1개동 16세대	○상가 벽체에 균열	1
		동남연립	안양8동 398-34	3개동 46세대	○벽체균열	3
		삼우연립	안양9동 759-8	2개동 15세대	○벽체균열	2
		효진연립	안양9동 1037-1	2개동 26세대	○외벽균열	2
기타건축물	일반건축물	삼아연립	평촌동 97	2개동 20세대	○G동 2층 난간전도 위험 ○F동 발코니 접합부 균열	4
		충혼탑 및 무허가 다가구주택 및 옹벽석축	안양5동 618-29 (임명재) (83년준공추정)	지상5층(L=21m) 석축 : 1.8~2.5m 세맨벽돌	○건물계단부 크랙 과다 ○하단 석축 공극과다 위험	1
	옹벽석축	화양(아)옹벽	안양4동 709-19	L:100M, H:3~6M	○진입로 옹벽 상단 균열	1
		강남2차(아)옹벽	호계2동 923-29	L:60M, H:6M	○옹벽 단면부 노후	1
		경남(아)축대	호계2동 914-36	L:50M, H:2.5M	○시공재료 접합부 분리	1
		동남연립석축	안양8동 398-34	L:21M, H:4.5M	○슬라브 선단 블럭담장 기움	1
	부대시설	황궁빌라담장	호계2동 923-1, 2	L:10M, H:2M	○담장전도 위험	1

▣ 1·2종 시설물 현황

종별 / 시설물별		계	1종	2종	비 고
계		312	140	172	
민간시설	소 계	288	134	154	
	공 동 주 택	271	131	140	
	다중이용시설	14	2	12	
	일반건축물	3	1	2	
공공시설	소 계	24	6	18	
	교 량	12	6	6	
	배 수 문	2		2	
	상하수시설	3		3	
	건 축 물	7		7	

대형화재 취약지대상

순번	대 상 명	위 치	대표자	건 물 현 황		특수장소 구 분	관리 구분	비 고
				층수	연면적 (㎡)			
1	코암관광호텔	안양6동 431-10	이영규	5/1	2,091.54	호 텔	2급	
2	뉴안양관광호텔	안양6동 395-2	김병대	10/3	6,465.00	〃	2급	
3	삼원프라자호텔	안양1동 674-251	백낙금	8/2	6,879.71	〃	2급	
4	알 프 스 호 텔	호계3동 972-8	김완기	6/1	2,479	일반숙박	2급	
5	도정오피스텔	안양8동 548-46	도희연	19/6	17,020.88	오피스텔	1급	
6	호 정 타 워	안양6동 529-13	문연식	18/4	25,582.51	〃	1급	
7	중 앙 시 장	안양4동 676-44	김진동	3/1	7,415.59	시 장	2급	
8	(주) 세 반 평 촌	달안동 1109-3	강법명	5/2	28,923.00	백 화 점	1급	
9	뉴 코 아 백 화 점	호계동 1040-1	(주)뉴코아	12/6	63,106.24	백 화 점	1급	
10	킴스아울렛 백 화 점	호계동 1039-3	(주)뉴코아	12/7	69,632.62	백 화 점	1급	
11	안 양 본 백 화 점	안양1동 668-33	이종철	6/2	8,384.18	백 화 점	2급	
12	2 0 0 1아 울 렛	안양4동 627-187	김희준	7/4	35,415.71	쇼핑센타	1급	
13	부 방 E - 마 트	비산2동 411-5	이동근	4/5	27,748.53	쇼핑센타	1급	
14	유 천 안 양 월 드	안양동 900-10, 57	김병학	7/5	28,807.98	쇼핑센타	1급	
15	중 앙 지 하 상 가	안양4동 1189-1	전형수	0/1	2,795.80	지하상가	2급	
16	역 전 지 하 상 가	안양1동 1189-1	채선준	0/1	15,655.00	지하상가	1급	
17	대한페인트잉크(주)	박달동 615	한영재	3/1	35,198.00	위 험 물 제 조 소	1급	
18	삼 성 물 산	관양동 922	신세길	5/1	27,007.09	공 장	1급	
19	효 성 T & C	호계동 183	조석래	8/1	76,309.56	〃	1급	
20	킴 스 아 울 렛	호계동 1039-3	(주)뉴코아	12/7	69,632	백 화 점	1급	
21	대 영 모 방	안양7동 196-121	김영식	3/1	8,296.46	〃	2급	
22	동 화 약 품 (주)	안양7동 189	이우용	6/1	29,091.00	〃	1급	
23	조 일 세 지	호계1동 615-1	배영환	3/1	18,275.36	〃	1급	
24	L G 진 선	호계동 555	권문구	3/1	64,098.00	〃	1급	
25	크 라 운 제 과	관양동 810	윤영주	4/1	33,450.62	〃	1급	
26	대 한 전 선	관양동 785	유채준	14/1	88,296.00	〃	1급	
27	동일테크노타운C	관양동 889-1	고재일	7/2	22,209.13	〃	1급	
28	유 천 팩 토 피 아	안양7동 196	문상학	8/3	72,317.04	공 장 (아파트형)	1급	
29	삼 우 프 라 자	관양동 1505-25	오규원	10/2	5,876.94	복합건물	2급	
30	천 양 유 통	안양1동 674-62	홍천표	6/1	4,160	복합건물	2급	
31	LG POWER(주)	관양동 1014-1	조방래	3/1	22,234.15	업무시설	1급	

※ 선정기준 : 숙박시설(호텔, 5층이상여관), 판매시설(시장, 백화점 6,600㎡이상), 공장(15,000㎡이상) 11층이상 고층건물,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

가스사고시 복구장비 및 인력현황

업 체 명	비 상 대 기 조	보 유 장 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031)254-0019 (주)삼천리 454-3002	2개조 8명	○ FID : 1대 ○ 응급조치 장비세트 : 1세트
	2개조 8명	○ FID : 1대 ○ 누설검지기 : 10대

도시가스 공급기지 현황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비 고
평촌 정압기지	동안구 관양동 1014-1	압력조정, 계량 및 분배 기능	
석수 정압기지	만안구 석수동 396-6	압력조정, 계량 및 분배 기능	

도시가스 시설 현황

도시가스사	배 관	정 압 기	밸브박스	비 고
(주)삼천리	270㎞	49	315	

위험물대량위험물 제조소현황(3개소)

대 상	위 치	대표자	위 험 물 허 가 량		소방조직	
			품 명	용 량	소방차	조작인원
(주)디피이아이 <대한잉크페인트>	박달동 615	한영재	4류(휘발유외 87종)	3,000이상 ~10,000미만	화학1대	30
효성 T&C	호계동 183	조종래	4류(경유외 32종)	3,000이상 ~10,000미만	화학1대	7
LG POWER(주)	관양동 1014-1	조방래	4류(경유외 2종)	3,000이상 ~10,000미만	포 터 트레일러	5

위험물질 취급소(7개소)

업 체 명	위 치	대표 및 관리	위 험 물	저장용량	업종 및 형태
SK안 양 충 전 소	석수2동 252-2	박좌훈, 김석조	LPG충전소	95t	자동차+용기
(주) 삼 표 에 너 지	안양7동 206-12	윤용진	〃	60t	〃
상 신 가 스 충 전 소	관양1동 1383-6	이정남	〃	10t	자동차
동 일 석 유 (주) 신 안 충 전 소	호계2동 1028-7	김배근	〃	20t	〃
안 양 LPG 충 전 소	비산1동 1083	우종국	〃	10t	〃
환 경 사 업 소	박달2동 658-11	(주)대우	염소저장시설		정화
상 수 도 사 업 소	비산1동 산166	안양시	〃		정수

유독물 사용업 등록현황(10개소)

번호	업소명	소 재 지	취급품목	년간취급량(톤)	전화번호
1	동 아 유 리 (주)	만안구 박달동 620-5	NaoH	292	449-8640
2	L G 전 선 (주)	동안구 호계동 555	크레졸, 납	2,122	428-4102
3	대한페인트잉크(주)	만안구 박달동 615	황산, 톨루엔	25,095	467-6065
4	(주)삼성특수화학	동안구 관양동 913-4	크레졸, 크실렌	650	421-3731
5	동화약품공업(주)	만안구 안양동 189	메탄올, 염산	493	444-2331
6	(주) 효 성	동안구 호계동 183-2	메틸렌비스, NaoH	984	428-1112
7	안 양 복 합 화 력	동안구 평촌동 897-2	Hcl, NaoH	146	420-2553
8	대 한 전 선 (주)	동안구 관양동 785	Hcl, NaoH	394	420-9153
9	대한코톨스화학(주)	만안구 박달동 615	크실렌	200	466-6077
10	동 아 바 이 오 테 크	만안구 박달동 615	벤젠	156	474-1600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등 지정.관리현황(44개소)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조사대상 시설구분	지정관리 등 급	지정사유	전화번호
1	환경사업소(대우)	박달2동 664	건축물등 24동	A	정화시설	469-2235
2	청 소 사 업 소	평안동 897-1	폐기물소각장	A	200톤/일	389-2251
3	상 수 도 사 업 소	비산1동 산166	상수처리	A	122,000톤/일	389-2591
4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박달2동 664	건축물등 15동	A	정화시설	469-2235
5	대한잉크페인트(주)	박달2동 615	유독물사고	A	자체방제	467-6062
6	L. G 전 선 (주)	호계1동 555	유독물사고	A	자체방제	428-4101
7	현 길 석 유	안양8동 847-19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7-7590
8	상 신 주 유 소	호계2동 899-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4-5145
9	열 린 주 유 소	비산3동 1055-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385-7500
10	두 성 주 유 소	안양2동 693-23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7-8058
11	그 린 주 유 소	호계동 966-54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3-0121
12	호 계 주 유 소	호계동 1006-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5-8825
13	제 일 주 유 소	비산동 540-9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9-2796
14	근 화 주 유 소	평촌동 870-5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1-4277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조사대상 시설구분	지정관리 등 급	지정사유	전화번호
15	한 강 주 유 소	관양동 900-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2-8697
16	새 안 양 주 유 소	평촌동 81-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1-4797
17	청 강 주 유 소	비산1동 405-24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386-5151
18	영 화 석 유	호계2동 899-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21-3252
19	L G 칼 텍 스	비산3동 1055-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3-4196
20	석 정 주 유 소	석수동 280-16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66-1702
21	남 경 주 유 소	석수동 102-11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71-3467
22	쓰리원 주 유 소	호계동 900-7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5-9146
23	한 진 주 유 소	안양5동 329-10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 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48-7733
24	대 한 전 선(주)	관양2동 785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0-9150
25	(주) 효 성	호계2동 138-2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8-1112
26	오 성 제 지(주)	관양2동 813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2-0570
27	조 일 제 지(주)	호계3동 615-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52-5573
28	대 영 모 방(주)	안양7동 196-12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66-2131
29	수 석 농 산(주)	박달2동 620-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74-1600
30	동화약품공업(주)	안양7동 189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44-2331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조사대상 시설구분	지정관리 등 급	지정사유	전화번호
31	삼덕제지(주)	안양4동 782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49-4131
32	오뚜기(주)	평촌동 180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1-2127
33	크라운제과(주)	관양2동 810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2-1681
34	엘지파워(주)	평안동 976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0-1982
35	제일산업(주)	석수2동 477-10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72-7351
36	평촌폐기물소각장	평안동 879-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3-3588
37	로디아폴리아마드	호계2동 909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8-1131
38	동양섬유	평촌동 872-3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21-2511
39	동아오츠카	석수2동 450-1	대기오염사고	A	3종이상	473-0073
40	(주)조양	관양2동 984-3	수질오염사고	A	3종	421-7400
41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귀인동 934-1	수질오염사고	A	3종	389-2631
42	만안주유소	안양6동 541--2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66-1702
43	유진주유소	석수동 389-14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73-5151
44	LG칼텍스	호계동 986-12	토양오염사고	A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중20만ℓ이상시설	459-5185

대형건설공사 현황

(안양시)

연번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위치	공사금액(억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고
계	총 26개소						
1	○현대코아	○연면적 : 38,408㎡ ○층수 : 지하8, 지상12	○만안구 안양동 668-29, 42	430	'96. 1 ~ 2003. 5	현대건설(주)	중단 현장
2	○안양민자역사	○연면적 : 62,023㎡ ○층수 : 지하3, 지상8	○만안구 안양동 88-1	850	'96. 1 ~ 2002. 5.	LG건설(주)	
3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연면적 : 272,344㎡ ○층수 : 지하2, 지상7	○동안구 호계동 555-9 등 24	600	'95. 12 ~ 2002. 12	(주)대우	
4	○대한생명평촌 사옥	○연면적 : 24,631㎡ ○층수 : 지하5, 지상19	○동안구 호계동 1043	386	'98. 9 ~ 2002. 12	신동아건설(주)	공사 중단
5	○안양현대(아)	○연면적 : 252,195㎡ ○동수 및 세대수 2개동 216세대	○만안구 안양동 1060	2,450	'97. 6 ~ 2002. 12	현대건설	
6	○비산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아)	○연면적 : 141,891㎡ ○동수 및 세대수 16개동 955세대	○동안구 비산2동 415	1,376	2000.11.29 ~ 2003. 10	롯데건설	
7	○한도아파트 재건축조합(아)	○연면적 : 93,525㎡ ○동수 및 세대수 6개동 704세대	○만안구 석수동 168-4	803	2000.6.16 ~ 2002. 8	대아건설	
8	○안양현대(아)	○연면적 : 25,663㎡ ○동수 및 세대수 2개동 140세대	○만안구 안양동 1062-2	305	'99.10. ~ 2002.12.	현대건설	
9	○안양삼성(아)	○연면적 : 226,978㎡ ○동수 및 세대수 17개동 1,998세대	○만안구 안양동 90-1	305	'99. 5. ~ 2002.12.	삼성물산	
10	○평촌현대(아)	○연면적 : 124,080㎡ ○동수 및 세대수 11개동 967세대	○동안구 평촌동 314	1,163	'98.10. ~ 2002. 2.	현대건설	
11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아)	○연면적 : 322,884㎡ ○동수 및 세대수 24개동 1,977세대	○동안구 호계동 811	3,210	2000.11. 8 ~ 2003. 8.	현대건설	
12	○임광2차(아)	○연면적 : 53,957㎡ ○동수 및 세대수 5개동 426세대	○동안구 호계동 893-1	455	2000. 7.19 ~ 2002. 9.	임광건설	

연번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위치	공사금액(억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고
13	○양지빌라 재건축조합 (아)	○연면적 : 10,979㎡ ○동수 및 세대수 1개동 64세대	○동안구 평촌동 113	72	'99. 8 ~ 200. 10	지석공영(주)	
14	○현대I-SPACE 오피스텔	○연면적 : 66,037㎡ ○동수 : 1개동	○만안구 관양동 1608-2	699	2002. 2 ~ 2003. 3	현대산업개발	
15	○월마트 신축공사	○연면적 : 39,599㎡ ○동수 : 1개동	○동안구 부림동 1608	183	2002. 8 ~ 2002. 7	풍림산업(주)	
16	○LG백화점 신축공사	○연면적 : 91,431㎡ ○동수 : 1개동	○동안구 범계동 1039	420	2000. 12 ~ 2003. 12	현대건설(주)	
17	○호계주공1차 재건축(아)	○연면적 : 283,555㎡ ○동수 및 세대수 20개동 1,752세대	○동안구 호계동 813	2,700	2002. 5 ~ 2004. 5	대림건설(주)	
18	○중앙아파트	○연면적 : 17,895㎡ ○동수 및 세대수 1개동 136세대	○만안구 안양동 817-5	194	'97. 12 ~ 2003. 12	중앙공영	
19	○석수주공 재건축(아)	○연면적 : 22,471㎡ ○동수 및 세대수 20개동 1,908세대	○만안구 석수동 182-2	195	'99. 8 ~ 2002. 6	대림산업(주)	
20	○동일,삼성연립 재건축(아)	○연면적 : 29,976㎡ ○동수 및 세대수 2개동 248세대	○만안구 안양동 1157-54	241	'99. 1 ~ 2002. 3	대아건설(주)	
21	○비산주공2단지 재건축(아)	○연면적 : 642,244㎡ ○동수 및 세대수 44개동 3,806세대	○동안구 비산동 459-1외 26필지	5,858	2000. 6 ~ 2004. 1	삼성물산	

연번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위치	공사금액(억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고
22	○호계현대 재건축(아)	○연면적 : 92,979㎡ ○동수 및 세대수 7개동 604세대	○동안구 호계동 914-40	1,034	'99. 12 ~ 2002. 12	현대건설(주)	
23	○화창연립 재건축조합(아)	○연면적 : 31,467㎡ ○동수 및 세대수 1개동 250세대	○만안구 석수동 346-3	231	'97. 10 ~ 2002. 12	금융종합건설	
24	○안양효성아파트	○연면적 : 53,243㎡ ○동수 및 세대수 1개동 351세대	○만안구 안양동 산 47-5필지	36,519	2000. 3 ~ 2002. 12	효성중공업	
25	○엘리제빌리지 오피스텔	○연면적 : 46,696㎡ ○동수 : 1개동	○만안구 안양동 534-29	30,200	2000. 6 ~ 2003. 6	C.J건설	
26	○미래엠피아 아파트	○연면적 : 27,598㎡ ○동수 및 세대수 1개동 167세대	○만안구 안양동 815-13	27,598	2000. 12 ~ 2003. 6	M.I.D건설	

시공중인 1·2종 시설물 공사 현황

(안양시)

연 번	공 사 명	시설물 규모	동수 세대수	비 고
계	총26개소			
1	○현대코아	○연면적 : 38,408㎡ ○층 수 : 지하8, 지상12		2종
2	○안양민자역사	○연면적 : 62,023㎡ ○층 수 : 지하3, 지상8		1종
3	○산업기자재유통단지	○연면적 : 272,344㎡ ○층 수 : 지하2, 지상7		1종
4	○대한생명평촌사옥	○연면적 : 24,631㎡ ○층 수 : 지하5, 지상19		2종
5	○안양현대(아)	○연면적 : 252,195㎡ ○층 수 : 지하1, 지상19	2개동 216세대	2종
6	○안양현대(아)	○연면적 : 25,663㎡ ○층 수 : 지하1, 지상16	2개동 140세대	2종
7	○안양삼성(아)	○연면적 : 226,978㎡ ○층 수 : 지하3, 지상23	17개동 1,998세대	1종
8	○평촌현대(아)	○연면적 : 124,080㎡ ○층 수 : 지하2, 지상25	11개동 967세대	1종
9	○석수주공재건축(아)	○연면적 : 22,471㎡ ○층 수 : 지하2, 지상27	철근콘크리트	1종
10	○동일,삼성연립 재건축(아)	○연면적 : 29,976㎡ ○층 수 : 지하2, 지상20	철근콘크리트	2종
11	○비산주공2단지 재건축(아)	○연면적 : 642,244㎡ ○층 수 : 지하3, 지상28	철근콘크리트	1종
12	○호계현대재건축(아)	○연면적 : 92,979㎡ ○층 수 : 지하2, 지상25	철근콘크리트	1종
13	○화창연립재건축(아)	○연면적 : 31,467㎡ ○층 수 : 지하2, 지상23	철근콘크리트	1종

연 번	공 사 명	시설물 규모	동수 세대수	비 고
14	○ 비산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아)	○ 연면적 : 141,891㎡ ○ 층 수 : 지하2, 지상25	철근콘크리트	1종
15	○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아)	○ 연면적 : 322,884㎡ ○ 층 수 : 지하2, 지상27	철근콘크리트	1종
16	○ 임광2차아파트	○ 연면적 : 53,957㎡ ○ 층 수 : 지하2, 지상25	철근콘크리트	1종
17	○ 한도아파트 재건축조합(아)	○ 연면적 : 93,525㎡ ○ 층 수 : 지하2, 지상20	철근콘크리트	1종
18	○ 안양 효성아파트	○ 연면적 : 53,243㎡ ○ 층 수 : 지하2, 지상24층	철근콘크리트	1종
19	○ 엘리제빌리지 오피스텔	○ 연면적 : 46,696㎡ ○ 층 수 : 지하7, 지상20	철근콘크리트	2종
20	○ 미래엠피아 아파트	○ 연면적 : 27,598㎡ ○ 층 수 : 지하5, 지상19	철골, 철근콘크리트	2종
21	○ 호계주공1차 재건축	○ 연면적 : 282,785㎡ ○ 층 수 : 지하2, 지상27	철근콘크리트	1종
22	○ 현대I-SPACE 오피스텔	○ 연면적 : 66,037㎡ ○ 층 수 : 지하3, 지상21	철근콘크리트	1종
23	○ 월마트 신축공사	○ 연면적 : 39,599㎡ ○ 층 수 : 지하3, 지상6	철근콘크리트	2종
24	○ LG백화점 신축공사	○ 연면적 : 91,431㎡ ○ 층 수 : 지하5, 지상8	철근콘크리트	1종
25	○ 중앙공영 아파트	○ 연면적 : 17,985㎡ ○ 층 수 : 지하1, 지하20	철근콘크리트	2종
26	○ 양지빌라 재건축	○ 연면적 : 10,979㎡ ○ 층 수 : 지하2, 지상15	철근콘크리트	2종

여 백

주요 재난사고 수습사례

여 백

▣ 사고명 : 안양6동 연립주택 붕괴사고

○ 사고내용

- 조영종합건설(주) 백정호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5-16번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자
- '96. 1.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96. 1.18일 착공한후 하절기에 터파기 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오다
- '96. 8.28일 17:57분경 지하3층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공사장의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토류벽이 붕괴되면서 공사장 주변의 연립주택 2동이 완파내지 반파되고 단독주택 1동이 반파되는 사고가 발생

【시설물 현황】

○ 건물명칭 : 조영리빙타운

○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5-9

○ 규　　모

- 층　　수 : 지하3층, 지상14층
- 대지면적 : 2,820.00㎡
- 건축면적 : 1,910.98㎡
- 연 면 적 : 21,128.73㎡(6,402평)

○ 건축허가 사항

- 건축허가 : '96. 1. 8(준공예정 '98. 4)
- 용　　도 : 주상복합건물(근린, 업무, 공동주택)
- 건 축 주 : 조영종합건설(주) 백영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소재)
- 감 리 자 : (주)신건종합건축사 사무소 진병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 공　　정 : 지하터파기 90%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없음

○ 이재민 발생 : 44세대 147명

○ 건물피해

- 완파 (1동) ——— 금산빌라 C동 8세대 35명
- 반파 (2동) ——— 12세대 28명
  - 안양연립 ——— 8세대 19명
  - 단독주택 ——— 4세대 9명
- 피해우려 (4동) ——— 24세대 84명
  - 금산빌라 A, B동 ——— 18세대 65명
  - 단독주택, 슈퍼 ——— 6세대 19명

○ 도로 및 하수관 피해

- 도로파손 ——— 1개소 3.6a (60m×6m)
- 하수관 손실 ——— 1개소 90m(Ø600m/m)

▣ 일자별(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 '96. 8.28 09:50 : 최초 주민신고 접수 (붕괴위험)

○ '96. 8.28 10:00 : 주민대피명령 및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토록 지시

○ '96. 8.28 12:00 : 안전진단 실시(연세대 홍갑표 교수)

- 안양연립 : 주민대피
- 금산빌라 : 균열진행에 따라 대피 강구

○ '96. 8.28 17:30 : 주민대피 완료

○ '96. 8.28 18:00 : 안양연립 붕괴시작 (8세대)

○ '96. 8.28 19:15 : 경찰서 상황실에 차량 및 사람 접근통제 요청

○ '96. 8.28 20:15 : 금산빌라 C동 붕괴(8세대)

○ '96. 8.28 20:34 : 단독주택 일부 붕괴 (4세대/2가옥)

○ '96. 8.28 22:30 : 삼익(아)앞 도로 일부 함몰

●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및 사고대책본부 설치

- 장소 : 안양6동사무소 회의실
- 편성 : 6개반 78명

● 2차붕괴 대비 수도 및 하수관 차단

● 이재민(44세대 147명) 숙소 및 식당지정

- 숙소 : 코암호텔등 6개여관
- 식당 : 희망갈비등 3개식당

※ 숙소 및 식당에 안내공무원 상주 배치

○ '96. 8.29 07:30 : 2차붕괴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되메우기 작업실시

● '96. 8.31 17:00완료

● 동원장비 : 덤프트럭 61대, 굴삭기 2대

● 토 사 량 : 34,720㎥ (4,340대분)

○ '96. 8.29 13:00 : 인근건물 안전진단실시 (사고현장 주변)

● 검사기관 : 시설안전기술공단

● 검사인원 : 건축진단 본부장등 6명

● 검사방법 : 육안검사

● 검사결과

- 굴토부분 완전되메우기 실시
- 금산연립 A, B동 정밀안전진단 실시요

○'96. 8.29 14:00 : 현장주변 안전조치

● 절개지 천막피복 : 1,260㎡

● 우수차단 하수관 설치 : 13m

● 하수유입방지 마대 설치 : 20개

● 토지경계선 설치 : 휀스 50m

● 안내판 설치 : 10개

● 도로복구 : 연장 100m

○ '96. 8.28 17:00 : 이재민 위로금 지급

- 총 지급액 : 13,200천원
- 세 대 별 : 300천원

○ '96. 8.30 10:00 : 주민홍보 안내문 부착(10개소)

- 붕괴주변 분진등으로 인한 청소차 1대 배치
- 붕괴현장 주변 방역소독
- 쓰레기 봉투 20ℓ용 200매 배부

○ '96. 8.31 11:00 : 금산연립 A, B동 정밀안전진단실시

- 진단기관 : 시설안전기술공단
- 투입장비 : 철근탐사기, 트랜시타등
- 진단내용 : 건물 기울기 및 균열상태 조사, 계측기설치 (17대)

○ '96. 9. 1 10:00 : 정밀안전진단 계측 설치

- 대　　상 : 금산빌라등 주변건물 6개동
- 설치목적 : 변위경사 측정
- 장비설치 : 계기해석기 1대, 컴퓨터 수신용안테나등
- 실시기관 : 아주지오시스템
- 측정횟수 : 총64회
- 측정결과 : 특이사항 없음

○ '96. 9. 2 13:50 : 피해주민과의 대화(안양연립)

○ '96. 9. 2 19:00 : 피해주민과의 대화(금산빌라)

○ '96. 9. 3 10:00 : 주민여론 청취(사고현장 및 이재민 숙소)

○ '96. 9. 3 13:00 : 이재민 전용식당 위생검사 실시

- 의료구호반 상주근무
  - 만안보건소 예방의약계장외 간호사 1인

○ '96. 9. 4 10:00 : 붕괴현장 주변 도로보수 공사

- 공사개요 : 포장 5.5a, 측구 200m, 하수관 30m
- 시 공 사 : 명진산업건설(주)

○ '96. 9. 7 10:00 : 지반안전을 위한 그라우팅 시공

- 공사개요 : SGR시공, MILK119공
- 삼익(아) 담장보수공사
  - 공사개요 : 담장 210m, 파고라 1개 도색
  - 시 공 사 : 동원건설(주)

○'96. 9. 6 10:00 붕괴건물 전세입주 시작(16가옥 20세대)

- 15가옥 17세대 입주완료
- 1가옥 3세대 보상협의중

○ '96. 9. 8 10:00 : 인근건물 재입주 시작

- 22가옥 24세대 입주완료

○ '96.10. 2 19:00 : 금산C동 보상협의

- 31평기준 아파트 분양권 및 현금 3,000만원 지급

○ '96. 9.18 20:00 : 금산B동 보상협의 (세대당 1천 3백만원 지급)

○ '96.10. 5 16:20 : 단독주택 보상협의 - 결렬

○ '96.10.19 : 사고대책본부 방문자에 대한 시장 감사서한 발송

○ '96.12.31 : 사고대책본부 유공공무원 표창

- 대 상 : 5명
- 훈 격 : 시 장

○ '96.12.30 : (주)조영의 1차부도

○ '97. 1. 4 : (주)조영의 2차부도

- 피해보상 협의금 현재까지 지급안됨

○ '97. 2. 6 : 이재민 숙식비 지급

- 대 상 : 사고당시 긴급이주 대피시킨 여관 및 식당
- 지급액 : 16,873천원

※ '97. 12. 9일 현재 (주) 조영건설의 보상금 등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제3자 인수 추진중

▣ 수습상황

○ 사고의 접수 및 전파

- '96. 8.28 09:50분 최초 주민신고
- 시 건축과, 재난관리계 직원 및 만안구청 안전지도계에서 현장출동
- '96. 8.28 12:00부터 건물붕괴 징후에 따라 44세대 147명 주민대피 완료
- '96. 8.28 18:00 건물붕괴가 시작되어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및 안양경찰서 1개중대 140명이 동원 교통정리와 경계근무 실시
- 안양소방서 긴급구조대원 122명(소방관 75, 의용소방대 47) 및 차량 7대(펌프차 1, 조명차 1, 기타 5)가 동원되어 사고예방 활동 전개

○ 『사고대책본부』의 설치·운영상황

- 붕괴사고 발생후인 20:00경부터 안양6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 상황반, 구호대책반, 수습대책반, 안전조치반, 보도지원반, 유관지원반으로 구성
  - 기　　간 : '96. 8.28 ~ 사고수습 완료시까지
  - 위　　치 : 안양6동사무소 (회의실)
  - 근무요원 : 시청 및 구청 공무원으로 편성
  - 근무방법 : 각 반별 2개조로 편성 교대근무
  - 상황근무자 임무 : 각 반별 분야별 임무지정(별첨)

    (각 반의 편성은 수습상황에 따라 조정운영)
  - 사고수습보고회 개최
    - 일　　시 : 매일2회 (08:00, 18:30)
    - 장　　소 : 상황실 (안양6동사무소 회의실)
    - 보고자 : 각반장 (수습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 매일2회 사고수습상황 보고회 개최 (시장주재)

내용누락

p.435-436

○ 이재민 구호실태

● 이재민 발생 : 총44세대 147명

- 사고발생 즉시 인근 6개 여관에 분산 수용조치

  • 코암호텔 ——— 8세대 23명

  • 뉴귀빈장 ——— 6세대 12명

  • 거화파크 ——— 11세대 41명

  • 송 림 장 ——— 8세대 28명

  • 삼광파크 ——— 8세대 35명

● 여관별 안내공무원 배치 : 2개조 24명, 교대근무

- 안내공무원 임무

  • 식당안내 및 이용확인

  • 통학생 등교안내 및 도시락 지원

  • 생필품 공급안내

  • 기타 주민불편사항 파악 조치

● 이재민 수용 식당 지정 : 희망갈비등 4개소

● 구호물품 지급

- YMCA 구호품 지원 ——— 성인용 속옷 120셑

-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1가구당)

모 포	세면도구	가스렌지	코 펠	식 기	츄 리 닝	기 타
2매	1셑트	1개	1개	1셑트	2벌	속옷, 화장지, 쌀, 라면등

● 학생 등교 조치

- 대 상 ——— 19명 (초등 14, 중등 4, 고등 1)

- 지급내용

  • 초등학생 : 실내화, 책가방, 학용품

  • 중 · 고등생 : 1인당 50,000원 지급

● 이재민 위로금 지급 ('96. 8. 29)

- 대 상 ——————————세대 300천원 (총 지급액 13,200천원)
- 재 원 —————————— 시비 (불우이웃돕기 보상금)

● 이재민 의류 지원 ('96. 9. 20)

- 의류지원 —————————— LG패션
- 지원물량 —————————— 자켓 44, 양복 44개

● 중추절 위문품 전달 ('96. 9.20)

- 선물셑트 —————————— 30,000원×44개 (시)

● 이재민 이주대책 추진

- 이주대상 16가구 20세대 63명 (주택완파 및 반파세대)
- 이주시기 - '96. 9. 6일부터 세대별로 전세계약 체결일자에 따라 이주 추진
- 전세금 지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 (안양시 명의로 계약)

※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고현장 부근 24세대 84명은 본인가옥으로 재입주

○ 보상협의 현황

협의대상	협 의 내 용	비 고
금산빌라 C동 (8가옥)	○총 보상액 : 세대당 120,000천원 - 현금 30,000천원 : 12. 30일한 지급 - 나머지 90,000천원은 조영리빙타운 건설시 32평 분양해 주기로함	(협의자) 조영종합건설
안 양 연 립 (6가옥)	○협의내용 - 부동산 부분 보상 : 70,000천원 - 물건피해보상 : 3,000천원에서 10,000천원까지 가구별로 차등 지급	〃
금산빌라 B동 (8가옥)	○총 보상액 : 12,000천원 - 정신적 피해 : 7,000천원 - 건 물 피 해 : 5,000천원	〃
단 독 주 택 (1가옥)	○최해승 1가옥 3세대는 보상 과다요구로 협의 지연중 조영건설 부도	〃

▣ 문제점 및 대책

○ 사고원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재난상황의 유지체계 미흡

- 유사시 초동보고 체계 유지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하여 지체없이 계통보고

  → 신속, 개략적인 초동보고 개념 확인
- 사고발생시에는 재난부서와 개별법에 의한 관리부서가 합동으로 상황을 파악토록 하고 사고현장과 상황실간에 수시 연락 통신체계 구축
- 사고발생 조짐이 예견시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 재난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
  - 동 사고대책본부를 통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하에 사전대피, 현장지휘 등 사전·사후수습

● 공사장의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체계 미흡

-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영향구역과 공사장 자체내 안전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착공전 재난위험시설(지역)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 공사장 안전관리지도 감독체계 미흡

- 허가부서와 재난관리부서 합동으로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계측결과 확인등 점검체계 구축
  - 이상 발견시 공사중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확행

- 지하굴착공사시에는 공사장내 뿐만 아니라 피해우려가 있는 건물, 지반, 기타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의무화(인허가 조건, 공사 시방서등에 반영)
  - 계측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공정성 확보
  - 기 인허가 되거나 시공중인 공사장내 대하여 시공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계측기 설치 보완조치
- 측정결과 변위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기관 또는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에 보고 의무화(인허가 조건, 공사시방서 등에 반영)
  -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하여 인허가 기관 및 공사발주기관 등에서 시공자, 공사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확립 공정성 확보

● 사고현장 보존 미흡

- 사고지역은 사고원인조사, 향후 안전성 유무, 원상복구시 경제성 검토등 종합적인 검토·진단을 통하여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현장 보존
- 사고발생 직후 사고현장 조사반 즉시 투입체계 구축

▣ 사고명 : 박달교 교각균열 사고

○ 사고내용

- 경수산업도로 상행선에 진입하는 박달2교 고가교 1번교각(T형)의 상단 중심부위가 V자형으로 파괴
  - 상 부 : 폭 30~50㎝, 하 부 : 폭 20㎝, 길이 1.5m상당 균열
-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시설현황】

-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안양2동 (경수산업)
- 교각구조 : 상부S.T-BOX GIRDER, 하부 : T형 R.C조
- 교량길이 : 연장 880m중 산업도로 횡단 120m, 높이 4.5m
- 교 량 폭 : 9.5m RAMP구간
- 총사업비 : 410억 (시설비 285억원, 보상비 125억원)
- 사업기간 : '93. 11. 8 ~ '97. 6. 30 ('97. 7. 3개통)
- 시 공 자 : 우성건설, 삼풍건설(감리자 : 금호엔지니어링 대표 오동권)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없음

○ 물적피해 : 교각1기 파손

▣ 일자별(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 '97. 7. 23 16:06분 소방서 상황실에서 최초상황 접보

- 소방서상황실 근무자 : 최승훈
- 내 용 : 유원지 근처 곰돌이회관 앞에서 교량 붕괴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주민신고접수 사항을 전언 통보 (주민신고자 위영복 15:57분)

○ '97. 7. 23 16:08분 시청 건설과 및 만안구청에 위 내용을 전언으로 상황통보

- 즉시 현장 위치 확인 및 조치통보
- 시 건설과 : 김승건
- 만안구 건설과(최설병), 안양2동(직원), 석수1동(사무장)

○ '97. 7. 23 16:08분 시 재난관리계 김영남이 현장위치 및 내용 확인차 출동

○ '97. 7. 23 16:15분 부시장, 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계장 현장위치 및 내용확인차 출동

○ '97. 7. 23 16:40분 소방서 상황실에서 중기지원 요청

- 시 건설과 도로1계 정찬에게 통보(출동조치키로함)

○ '97. 7. 23 16:45분 도 안전지도계 및 재난상황실과 유선통화

- 안전지도계 김기세, 도 재난상황실장
- 정확한 현장위치, 위험내용을 파악 되는대로 보고하겠음

○ '97. 7. 23 16:50분 현장으로부터 최초 접보 및 도에 초동보고 - 김영남 전언통보

○ '97. 7. 23 20:50분 교각보강 작업 착수 (H빔 지지공법:4개소)

○ '97. 7. 23 21:25분 도에 종합상황 정리보고

- 정확한 위치, 교각균열 내용을 개괄적으로 FAX보고

○ '97. 7. 23 16:50분 도에 중간보고

○ '97. 7. 24 06:15분 경수산업도로 통행제한 해제(8차선중 6차선)

○ '97. 7. 24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진단 착수(육안점검)

○ '97. 7. 31 한국토목학회 정밀안전진단실시

○ '97. 8. 6 ~ 9. 10 교각에 대한 강선 설치

○ '97. 8. 20 가벤트 설치 완료

○ '97. 9. 4 교각 철거 및 복구공사

○ '97.11.30 공사완료 및 차량 전면 통행

▣ 수습상황

○ 사고의 접수 및 전파

● 최초 목격자 주민신고(위영복)→안양소방서→안양시청→관련부서 상황전파

○ 사고대책본부의 설치·운영상황

● 사고대책본부 설치 : 4개반 19명

- 상황반, 현장 점검반, 설계검토반, 보도 및 지원반

● 운영기간 : '97. 7.23 ~ 11.30

○ 응급조치 상황

● 차량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지정 - 산업도로 전면 통제

- 인원출동 : 경찰20, 소방서45, 공무원30
- 장비동원 : 지휘차1, 구급차2, 경찰차3

【경수산업도로】

- 상행선(서울방향) : 비산사거리 → 우체국사거리 → 서울방면
  비산사거리 → 인덕원사거리 → 과천 → 사당방면
- 하행선(수원방향) : 서울 → 중앙로 → 수원, 안산방면
  서울 → 만안로 → 수원, 안산방면

【박달로우회도로 진입노선】

- 상행선(안산방면) : 비산사거리 → 우체국사거리 → 안양여고사거리
  → 박달로 → 안산
- 하행선(안양진입) : 안산 → 박달로 → 안양여고사거리 → 안양시내

● 교각보강 작업 : H빔 지지대 4개소 설치

- '97. 8. 7 : 가벤트 설계완료(토목학회 구조검토)
- '97. 8. 9 ~ 8.19 : 제작
- '97. 8.20 ~ 8.30 : 설치완료

○ 복구상황

●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실시 결과에 따라 당초 교량시공 회사인 (주)삼풍건설에서 파손된 교각두부 재시공

- '97.11.30 : 공사완료후 차량 전면 통행실시

【복구내용】

○ 박달2교 안전진단 용역

● 용역비 : 235,500천원(시비→구상권 청구)

● 기　간 : '97. 7.31 ~ 9.28

● 계약처 : 대한토목학회

○ 교각에 대한 강선설치

● 금호엔지니어링 설계 토목학회 구조검토

● 삼풍건설(주) → VSL KOREA계약

● 설치기간 : '97. 8. 6 ~ 9. 10 완료

○ 가벤트 설치

● '97. 8.20 가벤트 설치 완료

○ 균열교각 복구

● 복구비용 52,371천원(삼풍에서 시공)

● '97. 9. 4 PC교각 철거

● '97.11.10 공사완료 - 콘크리트 양생

● '97.11.30 차량통행 전면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균열이 발생한 교각은 T형 교각으로서 S.T-BOX2련이 1개의 기둥이 있는 교각 양측 돌출부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둥과 교각 양측 돌출부위 하단에는 압축 응력을 받고 돌출부위 상단에는 인장응력을 받게되는바,

⇒ 인장응력을 받는 부위의 철근조립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양측돌출 부위를 철근용접이나 겹이음등으로 상호 연결하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

● 대 책

⇒ 설계시부터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가 정밀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감리감독 강화

여 백

재난유형별 대응 가상시나리오

여 백

관리번호 CODE - NO	1

위험등급	D

재난유형별 대응관리카드

【가상 시나리오】

유 형 별	건물붕괴
취약시설명	성우연립주택
위 치	동안구 평촌동 93-7

안 양 시

여 백

재난위험시설물 가상 수습사례

▣ **취약 시설명** : 성우연립(D급)

○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9-9번지

○ 시설개요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810㎡)
- 용　　도 : 연립주택 (3개동 34세대 중 1동 14세대)
- 구　　조 : 조적조 슬라브
- 건축년도 : 1979. 12. 24

○ 예상사고 개요

- 사고일시 : 2002년 0월 0일 00:00시
- 사고원인
  - 인접 대형상가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중 부실시공으로 지반침하
- 사고내용
  - 건물 1개동 완전붕괴(지상2층), 2개동 반파, 주변주택 6개동 균열
  - 1개동 반파 및 도시가스 누출로 화재발생
  - 다수인명 피해발생(실종 6명, 사망 10명, 중경상 25명)
  - 차량 19대 전파, 13대 반파
  - 이재민 발생 : 15세대(57명)
- 예상상황
  - 사고건물 2차 붕괴우려
  - 다수인명피해로 피해자 신원파악 곤란(요 구조자 방치우려)
  - 인근주민 심리불안으로 이재민 다량발생(일시 대피자)

▣ 대응 시나리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구 체 적 대 응 체 계</th></tr>
<tr><td rowspan="2">수
습</td><td>지휘체계</td><td>○ 지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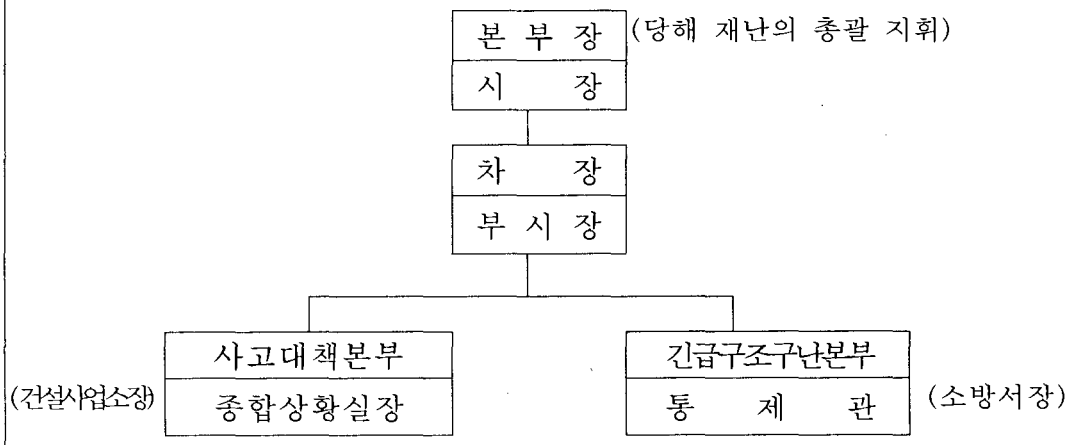

· 수습복구에 필요한 지원총괄 · 재난현장지휘
· 5개대책반 12개 실무대책반 ·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 상황별 주요조치체계
상황접수 및 보고, 전파 → 긴급구조구난 및 응급처치 → 사고대책본부설치
→ 수습·복구 → 보상협상 등</td></tr>
<tr><td rowspan="2">단
계</td><td>예 찰
체 제</td><td>○ 책임관리제 운영
· 성우연립 거주자 : ○○○ (380-0000)
· 관리책임자(정부) : 동안구 건축교통과장, 건축계장
○ 안전점검 강화 : 취약시기 및 수시
○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td></tr>
<tr><td>공조체제</td><td>○ 재난발생시 긴급연락체계 확보
· 연고관리자(주민) → 동안구 건축교통과장
→ 시 종합 상황실, 안양소방서 → 각 유관기관
○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시, 한전(안양지점) 가스안전공사(경기본부)
○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 문제점 개선, 공조방안 강구</td></tr>
</table>

구 분		구 체 적 대 응 체 계
수습단계	사고발생 신고전파 체계	□ 신고 ○ 주 민 ┌ 평촌동사무소 └ 동안구 상황실 시 종합상황실, 안양소방서 □ 보고 : 사고접수즉시 우선구두(유선)보고 ○ 동안구상황실 : 시 종합상황실, 구 건설과장, 구청장 ○ 시 종합상황실 : 시장,부시장,건설사업소장,도시교통국장,건축과장은 현장으로 출동 ○ 전파: 건설사업소장, 하수과장, 행정6급 재난관리담당, 건축과장, 각 유관기관 관련자는 현장출동 □ 보고·전파사항 (상황실 근무자가 최초파악할 사항) ○ 사고시간, 장소, 유형, 원인, 피해현황등 ※ 업무시간내 사고발생시는 즉시 청내 방송실시 ○ ○○년 ○○월 ○○일 안양시 평촌동 59-9 성우연립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사업소장, 하수과장은 지금 즉시 부시장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지역경제과는 각 과에서 3명씩 핸드폰을 지참하고 8층 재난상황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직원은 출장을 삼가하고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고수습에 필요한 지원체제로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동대책	□ 사고개황 및 피해내용 긴급파악 ○ 현장급파 : 동안구 상황근무자, 평촌동사무소 직원 ○ 상황보고체제 유지 (현장↔ 시 종합상황실) □ 현장상황실 설치 ○ 상황반장 : 건설과장 (조장: 사고소관과 6급) ○ 설치위치 : 평촌동사무소

구 분		구 체 적 대 응 체 계
수습단계	초동대책	○ 주요임무 · 현장상황조정, 통제 총괄 · 재난에 관한 정보, 동향등 제반사항 파악, 수시보고 · 사고에 관한 확인조사, 피해현황 파악 · 긴급구조구난본부와 연계, 재난수습, 지원 ※ 운영요원 전원 복장통일 (모자, 조끼, 호루라기) □ 유관기관 협조요청(우선 협조대상기관·단체 및 요청사항) ○ 안양소방서 : 긴급구조구난본부설치, 인명구조대 파견 ○ 과천경찰서 · 사고현장주변 주민통제실시 (반경 200m이내) · 피해주민 소개 (인근 아파트 공터, 또는 안양남초교) · 사고현장주변, 주·정차 차량소개 (반경 200m이내) · 사고수습, 복구차량 진출입선 적의선정 운영(임시 일방통행로 지정) · 주요도로 교통질서확립 (홍안로변) · 전기차단에 따른 사고 현장주변 경비 ○ 한 전 : 사고현장 주변 전기차단 ○ 가스안전공사 : 사고현장주변 도시가스 차단 ○ 지정의료기관 동원 : 응급실확보, 구급차지원, 의사, 간호사파견 · 한림대부속병원,한성병원,성모병원,중앙병원,안양병원. ○ 육군1580부대 : 복구인력150명, 인명구조150명파견
	사고대책본부가동	**피해현황** ○ 건물 1개동 붕괴 (지상2층) 건물 2개동 반파 (지상2층) 주변주택 6개동 균열 ○ 차량 19대 전파, 13대반파 ○ 사상자 발생(부상25명, 사망10명, 실종6명) ○ 이재민 발생 : 15세대(57명) 사고대책본부설치 ○ 설치판단 : 본부장(시장) ○ 설치장소 : 시청 대회의실(또는 적의장소)

구 분		구 체 적 대 응 체 계
수 습 단 계	사고대책 본 부 가 동	○ 직원비상소집 · 주간 : 시 종합상황실 · 야간 : 시 종합상황실 → 당직실 → 기 편성된 근무 A조 ○ 근무 : 5개대책반 13개 실무대책반 (100명/2교대) · 기 규정된 업무분장에 의해 근무 · 전화가설 : 정보통신과 □ 부서별 주요조치상항 ○ 평촌동사무소 · 현장 지휘본부 제공 · 단전, 단수 가두홍보 · 필요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등 인력동원 준비 · 피해주민파악(주민등록등본송부 → 시 종합상황실) - 실거주 비전입자, 비거주 전입자 ○ 평촌동 사무소 · 자원봉사자 휴식공간 제공 : 동사무소 회의실등 · 필요시 인력지원 준비 ○ 귀인동 사무소 · 천막설치 : 이재민수용소 (안양남초등학교 강당: 200명 수용가) · 필요시 인력지원 준비 ○ 이재민 수용대책 수립(구호반 - 시민복지과) · 수용시설 : 안양남초교(갈산동 1215번지, 458-7814) · 수용인원 : 15세대/57명 (사회복지요원 배치 2명/2교대) · 차량2대(봉고)배치 : 피해자 수용병원 순회 · 임시전화기 가설(통신공사), TV, 정수기설치 · 인근 목욕탕 지정사용 조치 · 우선소요물품 파악 및 조달 - 적십자 구호셑, 세면도구셑, 취사도구 일체, 모포, 스티로폴, 난로 선풍기, 속옷, 양말, 내의, 생수, 청소도구등 ※ 필요시 주문도시락으로 우선지원하되 따뜻한 국·밥이 제공되도록 조치

구 분		구 체 적 대 응 체 계
수 습 단 계		○ 현장 인력관리(인력장비 지원반 -지역경제과, 동안구건설과) · 동원인력현황 파악 및 적의배치 · 동원인력관리, 후생(필요물자요청 → 현장상황실→ 시 대책본부) · 식사장소 지정운영 · 휴식장소 지정운영 · 숙박장소 지정운영 : 민백초교 (필요시) ※ 예상관리대상 · 현장복구인력 : 군부대 · 주변질서 확립 : 경찰(전경포함), 해병전우회 · 현장인력 식사등지원 : 새마을 부녀회, 대한적십자사 ○ 사상자 인력관리(의료구호반 - 보건소) · 실종자 파악 :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최우선 파악 (평촌동사무소) · 응급의료소 지원(소방서, 각급병원과 연계)
	사고대책 본 부 가 동	· 사상자 현황파악 및 관리(후송병원별 담당자 파견) · 영안실 확보: 한림대병원(6),중앙병원(6),안양병원(6) ( )는 안치실수 ※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적지에 의뢰하여 연고자 파악 및 연락 ○ 의연금품, 구호물자접수, 관리(구호반 : 사회복지과) · 접수창구 : 시,구,동 민원실(구,동은 1일 결산보고 확행) · 야적장소 : 시청내 적의장소 선정 · 현장상황실과 연계하여 필요물자 수시조달 · 구호물품 수송차량 운영 (지원:회계과) ○ 현장수습, 복구(사고소관과) · 소요인력,장비파악(현장상황실과 연계) · 장비조달순위 (현황 별도 비치에 의해 운용) - 시 보유장비 → 민간지정장비 → 중·장비대여업체 ○ 안전진단반 편성운영 · 반 장 : 도시교통국장 · 반 원 : 건축과장, 건축6급, 건축사협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 피해자 대책강구 · 주민대표 선정 및 고문변호사 자문 - 사고건물 조기철거 유도 ※ 피해주민 주요 요구사항(예상) - 피해건물, 가재도구, 사상자보상비, 임시거처마련 · 신축공사장 건축주 신원확보 및 재산상태 조사

장비지원 동의서 및 단가계약

여 백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안양소방서

▣ 전화번호 : 031-387-0045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 현황 : 붙 임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30

안양소방서장 (직인)

안양시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경기도안양교육청

▣ 전화번호 : 380~1082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 현황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직인)

안양시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관명 : 안양경찰서

□ 전화번호 : 388 - 1523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현황

○ 교통경찰관 5명, 의경 10명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27.

안 양 경 찰 서 

안양시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관명 : (주) 삼천리 경기중부지사

▣ 전화번호 : (031)454-3002

▣ 지원장비 및 물자·시설·인원보유현황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주식회사 삼 천 리

경기중부지사장 조 용 현 (인)

안 양 시 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 전화번호 : 469-2235~6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 현황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30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장

안양시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 전화번호 : (031) 474 ~ 1821 ~ 4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 현황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장

안양시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한전안양지점장

▣ 전화번호 : 450-2212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 현황 : 기술사 : 5 기능인 : 2 차 : 1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

한국전력공사안양지점장

○ ○ ○ ○ (직인)

안양시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관명:한국통신 안양전화국

▣ 전화번호:031-383-0060

▣ 지원 장비 및 물자· 시설· 인원 보유 현황:별첨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29

한국통신 안양전화국장

안 양 시 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전화번호 : 031-254-0019

○ 지원장비 및 물자·시설 인원보유 현황 : 붙임 내역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1. 30.

경기지역본부장 박 영 권

안양시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1580 부대

▣ 전화번호 : 031) 468 - 5181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 현황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건)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2. 15

육 군 제 1 5 8 0 부 대 장

안 양 시 장 귀하

재난대비 응원협정 및 장비·물자·시설·인원지원 동의서

■ 기 관 명 :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 전화번호 : 031) 380 - 7266 ~ 9

■ 지원 장비 및 물자·시설·인원 보유 현황 : 견인차(11대), 인원 : 110명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태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붙임(상기 신청)의 장비와 시설·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12.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양 시 장 귀하

여 백

부 록

여 백

1. 官內 發生 各種事故 現況과 修習結果

일 시	사고명	위 치	사 고 내 용	수 습 결 과
계	10건			
'96. 4.29 18:42분	유유후마 킬 라 화재발생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유유후마킬라 공장에서 체류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4억 3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 발생 (인명피해 : 부상 3명)	○진화차량 : 33대 ○인원동원 : 185명 ※ 진화시간 1시간 19분 소요 ○부상자 : 즉시 병원 이송 입원조치
'96. 6.27 11:50분	버 스 추락사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안양경찰서에서 평촌방향으로 운행하던 부강교통(주)소속 시내 버스가 명학대교 우측난간을 들이 받고 6~7m 아래 안양천 고수부지 바닥에 추락 ○사망자 : 없음 ○부상자 : 8명	○부상자 후송 - 중앙병원 ○장비 및 인원동원 - 응급차량 13대, 인원28명
'96. 7.18 22:32	화 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박달동 소재(주)대한 페인트 잉크 제2공장에서 전기스파크로 인하여 체류된 유류증기 인화로 추정되는 화재발생 재산피해 : 6억5천2백만원 (동산6억원) 부동산 : 5천2백만원 인명피해 : 경상 5명	○진화차량 : 약60대 ○인원동원 : 약500명 ○경상자 : 병원후송 치료완료

일 시	사고명	위 치	사 고 내 용	수 습 결 과
'96. 8. 6 20:45	교통사고	시청신청사 앞 공동구 사거리	동에서 서로 달리던 택시와 북에서 남으로 달리던 그랜져 승용차와 공동구 사무소 사거리에서 택시 우측부분으로 추돌사고 인명피해 : 사망1명, 부상1명 재산피해 : 차량 2대파손	○택시승객 1명 안양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도착전 사망(21:05) ○부상자 1명 세종병원으로 후송
'96. 8.28	건물붕괴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435-7,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장 CIP토류벽 붕괴로 인한 인근 안양연립 1동 금산연립 C동, 단독주택 붕괴	○사고대책본부설치 운영 (6개반 78명) ○이재민대피 및 구호 44세대 147명 ○붕괴현장보수 및 안전조치 ○피해주민 보상협의
'96.10.15 19:00	화재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47-31	옥상 기름탱크 기름유출로 인한 화재로 재산피해는 물탱크 및 기름탱크 전소 약1,000천원 (인명피해 : 사망 1명)	○진화차량 : 8대 ※ 진화시간 : 25분소요 ○사망자 1명 경찰서조사
'96.10.19 00:24	주택가스 폭발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7-22	○비산동 소재 다가구 주택LPG 가스폭발로 건물 80평(264㎡) 반파 (인명피해 : 사망2명, 중상 4명 경상 2명) ○이재민 발생 : 8세대 25명	○출동장비 - 소방장비 : 36대 - 유관기관 차량지원 27대 ○인원동원 : 350명 (소방170, 유관기관 180) ○이재민 8세대 친인척집으로 대피 ○전세금지원 : 세대별로 가옥주에게 지급

일 시	사고명	위 치	사 고 내 용	수 습 결 과
'96.10.24	중기사고	안양시만안구 석수1동 해인중기	트레일러에 중장비(포크레인) 적치중 운전미숙으로 빗물에 미끄러져 전복되어 사망	사망자 : 회사측에서 자체 처리
'96.10.25 12:40	화 재	안양시동안구 신촌동무궁화 태영(아) 603-305	발화원인은 전기과열로 추정 되며 - 재산피해 아파트 1가구 전소 - 인명피해 : 사망 1명	○진화차량 : 33대 ○인원동원 : 185명 ※ 진화시간 1시간 19분 소요 ○사망자 : 경찰서 조사
'96.10.28	열차인명 사 고	안양역 구내 철 로 변	안양역에서 수원방향으로 약120m지점 피해자가 옷을 뒤집어 쓰고 철로변에 앉아 있다가 수원발 → 청량리행 574호 열차에치어 사망	○사망자 : 철도청 자체 처리
'97. 7.23	교량파손 사 고	안양동 박달로 우 회 도 로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하는 박달 2교 램프C교 1번 교각의 두부가 V형으로 파괴	○'97.7.24. 06:15 : 응급복구 완료 ○'97.11.30 : 항구복구 완료

사고유형별 재난수습부서

유 형 별	주무부서	협 조 기 간
1. 각종 화재사고	건설사업소	안양소방서
2. 방사능 사고	건설사업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 유독물등 수질오염사고	복지환경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강환경관리청
4. 가스·전기·광산사고	재정경제국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한국전력안양지점
		서부광산보안사무소
5. 항공기, 열차, 지하철, 자동차사고	도시교통국	철도청
		교통안전진흥공단 경기지부
6. 건축공사장 사고	도시교통국	안양건축사협회
7. 산불사고	녹지공원사업소	관할군부대
8. 도로, 교량, 하천, 제방등 붕괴사고	도시교통국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지부
		안양소방서

<별표 2>

대책반별분장사무

구 분		실무반장	분 장 사 무
대책반별	실무대책반		
총 괄 반 (건설사업소장)	상 황 반	하 수 과 장	1. 대책본부의 운영관리 총괄 2. 현지대책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3. 재해에 관한 정보상황 전파 4. 사고발생, 진행, 결과등 각종상황 관리 5.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6. 주요인사 대책본부 방문시 보고에 관한사항 7. 기타 다른 대책반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행정운영반	총 무 과 장	1. 초동상황보고 및 전파 2. 민심수습등 지역안정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인력 및 주민동원에 관한 사항 5. 외부기관·단체인사 방문시 의전에 관한 사항 6. 대책본부 직원의 복무·후생에 관한 사항
의료대책반 (복지환경국장)	구 호 반	사회복지과장	1. 수용시설 제공 2. 장례에 관한 사항 3. 의연금품 관리 4. 이재민 수용 및 구호상황의 파악과 조정 통제 5. 구호물자의 집행 6. 의료대책반내 다른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료구호반	보건행정담당 (만안, 동안)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2. 의료시설 지정 및 조정 3. 급수 및 방역대책 4.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구 분		실무반장	분 장 사 무
대책반별	실무대책반		
복구지원반 (도시교통국장)	응급복구반	건 축 과 장	1. 응급처치에 관한 협조요청 및 조치지시 2.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 3. 복구지원반내 다른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력·장비 동 원 반	시 민 과 장	1.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인력동원 조정 2. 장비동원 3. 응급복구용 장비의 지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수송지원반	교통행정과장	1. 복구수송 지원계획 수립 2. 복구 인력·장비 수송차량의 확보 및 지원
보 상 반 (총 무 국 장)	재정지원반	기획예산과장	1. 예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운용예산 확보 3. 예산지원 및 결산 4. 보상반내 다른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대민지원반	회 계 과 장	1. 피해보상 협의조정 2. 사고수습에 필요한 회계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공보담당관)	홍보기획반	공보담당	1. 사고발생 수습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2. 각종 지원활동에 대한 주민계도 3. 기타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안양시 재난관리 상황보고 · 전파체계도

건 축 물 붕 괴 사 고
- 건축사 협회 : 247-6129
- 소방서 : 387-0045
- 건설협회 : 253-4551

도 로 시 설 물 사 고
- 지방국토관리청 : 02-777-8341
- 도로공사지방본부 : 281-3461

대형교통사고
- 안양경찰서 : 388-1670
- 과천경찰서 : 02-504-7112

→

행정자치부 종합 상황실

행 정) 2691~5
FAX 2699
일 반) 731-2691~5

↑

경기도 종합 상황실

행 정) 3660, 3661
FAX 3668, 3669
일 반) 249-3660, 3661

↑

안양시 종합상황실

행 정) 2225, 2162, 2167 2458
FAX) 주)2854, 야)2226, 2854
일 반) 389-2225, 2162, 2458
FAX) 주)389-2226, 2854

↑

구 상 황 실

행 정) 538(동안, 만안)
일 반) - 만안 389-3538,9
- 동안 389-4538,9
FAX - 만안 389-3430
- 동안 389-4430

←

화 재 산 불 사 고
- 소방서 : 387-0045
- 군부대 : 459-0113
- 경찰서 - 안양 : 388-1670
  - 과천 : 02-504-7112
- 지방산림관리청(경기) : 294-1091
- 공군항공부대 : 220-1114

가스 · 석유사고
-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 : 254-0651
- 삼천리도시가스 : 454-3002
- 소 방 서 : 387-0045

전기 · 통신시설 사고
- 한전 안양지점 : 450-2203
- 전기 안전공사 안양지점 : 474-1821~4
- 한국통신 안양전화국 : 382-0007(당직실)
  383-0060(선로기술과)
  384-0060(선로기술과)

<공 통>

- 교육청 : 380-7001
- 한국산업안전공단지부 234-8116
- 안양병원 : 469-0151
- 안양모범운전자회 : 442-6273
- 안양전화국 : 449 - 0007
- 한강홍수통제소 : 02-596-4053
- 수원기상대 : 292-0365
- 메트로병원 : 467 - 9998,9
- 개인택시안양지부 : 460-1231
- 육군1580부대 : 468-5181, 5468
- 폭발물처리반 : 441-3623
- 건설협회 경기지사 246-9461
- 한림대병원 : 380-1500
- 적 십 자 : 238-1140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시 장
행 정) 2002
일 반) 389-2002
핸드폰) 011-343-3405
FAX) (행) 2820

↑

부 시 장
행 정) 2010
일 반) 389-2010
핸드폰) 011-343-3406

↑

승강기·유류·가스·시장·전기사고등
재 정 경 제 국 장
행 정) 2025
일 반) 389-2025
핸드폰) 011-393-6017

인 위 재 난 총 괄
건 설 사 업 소 장
행 정) 2033
일 반) 389-2033
핸드폰) 017-280-9119

교량붕괴·교통·철도사고
도 시 교 통 국 장
행 정) 2033
일 반) 389-2031
핸드폰) 019-210-2294

↑

대기·환경·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 사고
복 지 환 경 국 장
행 정) 2027
일 반) 389-2027
핸드폰) 016-227-5578

시 청 종 합 상 황 실
행 정) 2162, 2167,2225
일 반) 389-2162, 2225
FAX) (행정) 2854,2226
(일반) 389-2854

건축물붕괴·공사장·광고물·산불사고
도 시 교 통 국 장
행 정) 2031
일 반) 389-2031
핸드폰) 019-210-2294

↑

대형화재·유류사고
소 방 서 장
행 정) 2780
일 반) 381-4119
핸드폰) 011-346-0119

구 상 황 실
행 정) 만안, 동안 538
일 반) 만안 389-3538
동안 389-4538
FAX) (행정) 만안 3538
동안 4538

상수도시설 관리사고
상 수 도 사 업 소 장
행 정) 2035
일 반) 389-2035
핸드폰) 011-9754-7980

수 처 리 사 고
환 경 사 업 소 장
행 정) 76-120
일 반) 467-4100

쓰레기 처리장·소각장
청 소 사 업 소 장
행 정) 2250
일 반) 389-2250
핸드폰) 011-748-9395

유관기관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안 양 경 찰 서	안양시 동안구 부흥등 1105	388-1470	
과 천 경 찰 서	과천시 중앙동 39	(02) 504 - 7122	
안 양 교 육 청	안양시 관양동 1592	380-7001	
안 양 소 방 서	안양시 안양6동 472-2	387 - 0045	
안 양 전 화 국	안양시 달안동 1111-2	382 - 0007	
한국전력안양지점	안양시 호계2동 921	450 - 2114	
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4-2	254 - 0583~4	
전기안전공사안양지점	안양시 안양2동 32-9	474 - 1821	
경기도석산개발사업소	안양시 석수1동 96-7	471 - 6834	
건설부중앙장비관리사무소	안양시 평촌동 214	424 - 5302	
안양항공무선표지소	안양시 비산동 16-1	474 - 2329	
전 파 관 리 소	안양시 호계동 901	452 - 4001	
수 도 군 단	안양시 비산동	449 - 6300	
1 5 8 0 부대	안양시 박달동 사서함 106호	443 - 4249	
167연대 3대대	의왕시 내손1동 산119	459 - 0113	
안양모범운전자회	안양시 안양3동 1195-14	442 - 8324	
동안모범운전자회	안양시 관양동 1383-6	387 - 5797	
개인택시안양지부	안양시 비산동 1084	443 - 9351	
안 양 역	안양시 안양1동	449 - 7788	
석 수 역	안양시 석수동	472 - 7788	
관 악 역	안양시 석수동	471 - 7788	
명 학 역	안양시 안양8동	441 - 7788	
인 덕 원 역	안양시 관양동	421 - 7788	
범 계 역	안양시 범계동	484 - 7788	
벌 말 역	안양시 평안동	483 - 7788	
안양관악파출소	안양시 석수1동 266-13	471 - 7896	
냉 천 파 출 소	안양시 안양5동 613-1	466 - 7923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덕천파출소	안양시 안양7동 144-9	444 - 0113	
만안파출소	안양시 안양1동 842-5	468 - 2325	
명학파출소	안양시 안양6동 382-8	446 - 0112	
박달파출소	안양시 박달2동 85	449 - 0107	
석수파출소	안양시 안양2동 22-1	473 - 4007	
안양파출소	안양시 안양1동 641	449 - 2515	
양지파출소	안양시 안양3동 873-7	445 - 1113	
중앙파출소	안양시 안양4동 711-94	449 - 4951	
갈산파출소	안양시 갈산동 1118	456 - 1113	
호계파출소	안양시 호계동 970-2	455 - 0112	
호원파출소	안양시 호계2동 925-6	453 - 0112	
과천 관양파출소	안양시 관양동 1505	423 - 0112	
동안파출소	안양시 관양동 108-4	421 - 0112	
범계파출소	안양시 범계동 12-1B	381 - 0112	
비산파출소	안양시 비산동 474	466 - 7920	
운곡파출소	안양시 비산3동 1032	388 - 4112	
평안파출소	안양시 평안동 11-1B	384 - 0112	
귀인소방파출소	안양시 범계동 690-3	382 - 8119	
범계소방파출소	안양시 범계동 477-2	381 - 1119	
비산소방파출소	안양시 비산3동 7지구222B	385 - 5284	
석수소방파출소	안양시 석수2동 295-14	471 - 8119	
안양소방파출소	안양시 안양6동 472-2	447 - 0112	
호계소방파출소	안양시 호계동 1000-27	452 - 0230	
대한적십자사 안양부녀봉사회	안양시 안양8동 462-34	444 - 0880	
모범운전기사연합회(운불연)	안양시 관양2동 1307-37	425-6962	
안양시 여성단체 협의회	1	445 - 3600	
한국인명구조단 안양지부	1	032-343-3391	
안 양 해 병 전 우 회	안양시 관양2동 1307-37	425 - 6080	



안양시